

# 발 간 사

자랑스러운 국군 간부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하늘과 바다와 땅에서 위국헌신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임무를 완수하고, 명예로운 전역을 앞둔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간부 여러분들께서 쏟으신 열정과 헌신의 모습은 오래도록 우리 가슴 속에 기억될 것이며, 우리 국군이 앞으로도 국민으로부터 무한한 신뢰를 받는 선진 강군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전역 후 사회로 복귀하여 제2의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에 국방부는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전역 전·후 준비해야 할 사항을 미리 알고 관계기관 및 단체들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역간부안내서를 매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최신화하여 「2022년 전역간부안내서」를 새로 발간하였습니다.

이 전역간부안내서가 여러분들께서 청춘을 바친 군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데에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방부는 의무복무장병을 포함한 중·장기복무간부 여러분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의 가정과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22. 1. 6.

국방부 보건복지관 고위공무원 박길성

# 2022년도 달라지는 전직교육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① 진로교육	◦ 교육기간 1박2일	◦ 교육기간 2박3일
② 군복무설계교육	◦ 원격 : 콘텐츠 제작 46편	◦ 원격 : 콘텐츠 제작 30편
③ 맞춤형 전문교육	◦ 직영과정 (전문/심화) - 전문과정 : 재난안전관리사 등 2개 과정 - 심화과정 : 창업, 귀농귀촌 등 ◦ 위탁과정 : 시험준비과정 등 8개 과정	◦ 전문과정 : 시험준비과정 등 10개 과정 ◦ 심화과정 : 창업, 귀농귀촌 등 6개 과정
④ 취업박람회	◦ 온라인 3회 (3월, 6월, 9월) ◦ 온라인 + 오프라인 1회 (11월)	◦ 대상별 박람회 운영 : 3월(간부), 6월(장병), 9월(병사)
⑤ 창업멘토링	◦ 창업멘토링 : 1,000팀	◦ 창업멘토링 : 800팀 ◦ 창업 인식개선 교육 : 200회
⑥ 창업경진대회	◦ 주관 : 국방부 * 창업 인식교육→창업동아리 편성 →창업컨설팅→창업경진대회	◦ 주관 : 국방전직교육원 * 창업 인식교육→창업동아리 편성 →창업컨설팅→창업경진대회

## Contents

### 제1편 멋진 군 생활, 명예로운 마무리!

#### 제1장 전역 전·후 확인 체크리스트

#### 제2장 전역 전 조치사항

1. 부대에 반납할 사항(필수)
2. 전역증 신청 및 발급(필수)
3. 삼정검 소지 허가 신청(장군전역자)
4. 명예전역 선발 및 수당
5. 명예진급 선발
6. 퇴직자 정부포상 신청·수훈
7. 각종 급여 청구 및 상환(필수)
8. 전직지원 및 구직등록 신청(필수)
9.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신청 및 지급
10. 국방대학교 KNDU 최고경영자과정 교육(장군전역자)
11. 전역 전 보안교육 및 준수사항(필수)
12. 전직지원기간 중 사적국외여행
13. 전직지원기간 중 영리행위 금지
14. 전역식 행사

#### 제3장 전역 시 조치사항

1. 국가유공자 등록 및 혜택(훈장 수훈자)
2.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등록
3. 국가보훈 수혜 일람표
4. 체 증명서 신청 및 발급
5. 개인 신상변동 신고 및 조치(필수)
6. 체 퇴직금 및 각종 급여 수령(필수)
7. 근로 및 종합소득세 등 신고
8. 전직지원금 신청 및 수령
9. 맞춤형 복지제도 사용
10. 체력단련장 할인 이용 신청

## Contents

### 제2편 내일(My Job)이 있는 삶을 위하여!

#### 제1장 전직! 새로운 출발

1. 전직계획 수립하기
2. 전직지원교육 개념
3. 장기복무자(10년 이상 복무자) 전직지원교육
4. 중기복무자(5년 이상 ~ 10년 미만 복무자) 전직지원교육

#### 제2장 취업 준비전략 및 군내·외 일자리 현황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지원프로그램
2. 면접은 이렇게 준비!
3. 제대군인 주요 일자리(총괄)
4. 전직기간 중 유급의 현장연수

#### 제3장 취업지원기관별 지원사항

1. 국방전직교육원
2. 국가보훈처(제대군인지원센터)
3. 정부부처
4. 지자체 등
5. 취업지원기관 문의처

#### 제4장 취·창업 정보 제공사이트

1. 정부기관 사이트
2. 인력/토지 사이트
3. 취·창업(구인구직) 사이트
4. 기업/산업정보/경제지표 사이트
5. 기술/특허/지적재산권 사이트
6. 무역 및 투자/전시회 사이트
7. 전자상거래 사이트
8. 창업자금 사이트
9. 유통/물류 사이트
10. 판매/마케팅 사이트

#### 제5장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1. 목적 및 관련 법령
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3. 퇴직자 행위제한 및 업무취급 제한
4.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 제3편 제대군인의 역할과 복지지원제도!

### 제1장 예비군 제도 및 비상사태 시 행동요령

1. 예비군 제도
2. 비상사태 시 행동요령
3. 필수 준비물자

### 제2장 예비역 단체 가입 안내

1. 재향군인회
2. 성우회
3. 대령연합회
4. 대한민국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영관장교 연합회
5. 부사관총연합회
6.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7. 육군협회
8. 해군협회(대한민국 해군발전협회)
9. 공군협회
10. 한국군사문제연구원

### 제3장 제대군인 복지지원제도

1. 장기복무(10년 이상) 제대군인
2. 중기복무(5년 이상~10년 미만) 제대군인
3. 주택 우선공급
4. 국립묘지 안장 및 신청 절차
5.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장 이용

### 제4장 기타 참고사항

1. 군인연금 급여제도
2. 공적연금 연계제도
3. 군인분할연금(일시금) 제도
4. 전역 후 복장 착용 시기
5. 국방일보 구독방법
6. 절세 관련 유용한 정보
7. 군인공제회 이용 안내
8. 진료 미종결 전역자 진료안내

## 제4편 전직지원 길라잡이 Q&A

### 제1장 전직지원교육

1. 전직지원체계
2. 진로설계
3. 진로교육
4. 기본교육
5. 경력상담
6. 전직상담
7. 맞춤형 전문교육
8. 귀농귀촌 체험프로그램

### 제2장 취·창업지원사업

1. 찾아가는 진로도움 프로그램
2. 국군장병 취업박람회
3. 청년장병 뉴스타트(Ⅰ~Ⅲ형)
4. 창업동아리 멘토링

### 제3장 대외부서 협력사업

1. 직업능력개발교육비
2. 취업지원프로그램(V-TAP) 교육
3. 유관기관 취업박람회
4. KB굿잡 취업박람회
5. 일학습병행

### 제4장 주요 전직지원제도

1. 현장연수
2. 전직지원금
3. 고용촉진장려금
4. 국민취업지원제도

### 제5장 기타

1. 전직지원기간 활용
2. 전역 후 지원 혜택
3. 종합소득세 신고

## 부록 관련 구비서류 및 각종 양식

### 붙임

- 붙임 #1 국방전직교육원 구직등록카드
- 붙임 #2 2022년도 보훈보상금 등 월 지급액
- 붙임 #3 재해보상금 및 사망일시금
- 붙임 #4 민원이용 안내
- 붙임 #5 제대군인지원 신청서
- 붙임 #6 제대군인 취업희망신청서
- 붙임 #7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신청서
- 붙임 #8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
- 붙임 #9 국가보훈처 보훈(지)청 연락처
- 붙임 #10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할지역/전화
- 붙임 #11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서
- 붙임 #12 취업예정 확인서
- 붙임 #13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 붙임 #14 취업승인신청서
- 붙임 #15 업무내역서
- 붙임 #16 향군 참전/친목단체 연락처
- 붙임 #17 재향군인회 연락처
- 붙임 #18 제대군인(자녀) 입학금·수업료 및 기성회비 지급청구서
- 붙임 #19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붙임 #20 연금 외 소득신고서
- 붙임 #21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
- 붙임 #22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신청서
- 붙임 #23 연계노령유족연금/연계퇴직유족연금 지급청구서

# 제 1 편

멋진 군 생활, 명예로운 마무리!

- 제1장 전역 전·후 확인 체크리스트
- 제2장 전역 전 조치사항
- 제3장 전역 시 조치사항

# 제 1 장 전역 전· 후 확인 체크리스트

## 1. 전역 전

조치시기	내 용	조 치		
		본인	대리인	담당부서
3~1년 전	• 전직지원 교육	✓		✓
4개월 전	• 정부포상 신청·수훈			✓
1개월 전	• 퇴직급여 청구 및 각종 상환	✓		
	• 근로소득세 정산신고	✓		✓
	• 전역증 신청 및 재발급	✓		
	• 연가보상비 / 이사화물비 청구·지급	✓		✓
	• 삼정검 소지허가 신청(장군) * 자택 주소 확정시(추천)		✓	
	• 성과상여금			✓
기타 참고사항	• 각종 지급 수당 및 여비			✓
	• 전직지원기간 중 사적국외여행	✓		
	• 명예전역 신청 및 선발, 수당	✓		✓
	• 제대군인지원센터 등록 및 상담/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신청	✓		
	• 전직지원기간 중 영리행위 금지	✓		
	• 전직지원기간 중 유급현장연수	✓		✓
	• 보안교육	✓		✓

## 2. 전역 후

조치시기	내 용	조 치		
		본인	대리인	담당부서
전역 직후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등록(각 보훈지청)	✓		
	• 보국훈장 수훈자 국가유공자 등록(각 보훈지청)	✓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록 및 구직상담·직업교육	✓		
	• 전직지원금 신청 및 수령	✓		
2개월 이내	• 건강보험 변동 신청(건강보험공단)	✓		
기타 참고사항	• 연금소득세 정산신고(각 지방세무서, 재정단)	✓		
	• 종합소득세 신고(각 지방세무서, 재정단)	✓		
	• 맞춤형 복지제도 사용	✓		
	• 체력단련장·호텔·콘도 할인 이용 (국방복지포털 가입)	✓		
	• 군 경력증명서 신청 및 발급	✓		
	• 취업직위 관련 인터넷 사이트 검색 활용	✓		
	• 병적증명서 신청 및 발급	✓		
	• 기관별 서비스제공사이트에 연락처 주소 등 등록	✓		

# 제 2 장 전역 전 조치사항

## 1. 부대에 반납할 사항(필수)

- 가. 신분증 : 전역일 이전 / 소속부대 인사담당부서  
\* 신분증 분실자 : 분실에 따른 서약서 제출
- 나. 출입증 : 전역일 이전 / 소속부대 발급(정보담당)부서
- 다. 권총 및 등록증(장군) : 전역일 이전 / 소속부대 군수담당부서  
\* 반납 시 사용자 도장을 지참하고 반납 영수증(확인서) 수령
- 라. 차량(장군) : 전역일 이전 / 소속부대 군수처 및 담당부서
- 마. 부대 지급품 및 도서 등 대여품 : 전역일 전 / 해당 담당부서
- 바. 기타 개인 사물 중 불필요한 군용물(정모, 군복 등) 반납 요청 시 :  
전역일 전 / 해당 부대 군수처 및 담당부서

## 2. 전역증 신청 및 발급(필수)

- 가. 신청시기 : 전역 1개월 전 문서발송
- 나. 신청장소 : 소속부대 인사처 및 담당부서 (전역 후 재발급 시 각 지방병무청)
- 다. 구비서류 : 신분증, 전역 명령지, 증명사진 1매(1개월 내 증명사진, 2.5cm×3cm)
- 라. 전역증 교부 : 전역일(전역신고 시)      \* 전역 후 재발급 : 각 지방병무청

### 【발행권자】

구 분	장 군	장 교	준·부사관
전역증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전역장	대통령	국방부장관	

\* 전역신고(행사) 시 전역장, 감사장(배우자) 수여 : 국방부 및 각 군 발급

- 마. 사용처 : 군 관련 시설(체력단련장, 복지시설 등) 이용시, 필요시

<b>문 의 처</b>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02)748-5127	
	• 육 군 인사사령부 상훈전역과	☎ 042)550-7379	군)960-7349
	• 해 군 인사참모부 장교, 부사관/병인사과	☎ 042)553-1217, 1227	군)910-1217, 1227
	• 공 군 인사참모부 전직지원정책과	☎ 042)552-1541	군)920-1541
	• 해병대 인사참모처 인사운영과	☎ 031)8012-3124	군)928-3124

### 3. 삼정검 소지 허가 신청(장성 전역자만 해당)

가. 관련법령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나. 신청시기 : 주소지 전입신고 후

다.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경찰서 생활질서계에 방문하여 신청(전화 문의 후 방문)

라. 신청서류

1) 도검소지 허가신청서 1부(경찰서 비치)

2) 도검류 출처증명서 1부(도검제조명세서, 삼정검증서)

\* 도검제조명세서 및 삼정검증서는 삼정검과 함께 드린 서류이며, 분실 시 전역 전에 국방부 병영정책과로 연락하여 확인증 발급 필요

3) 사진 1매(3×4cm)

4) 총포 소지용 신체검사서 1부

\* 운전면허증 보유 시 총포 소지용 신체검사서 제출 불필요

문의처

• 국방부 병영정책과

☎ 02)748-5163

• 제작업체 (한국도검)

☎ 031)312-0316

### 4. 명예전역 선발 및 수당

가. 선발대상 : 명예전역 희망일 기준, 20년 이상 근속한 중장 이하의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10년 이내인 자

\* 기타 선발 세부항목 및 선발제외 대상은 Y년도 군인 명예전역 시행계획 확인

나. 신청시기

1) Y년도 전반기 : Y-1년 11월

2) Y년도 후반기 : Y년 5월

다. 수당 산출

: 봉급액의 68%×[정년 잔여 개월 수(1~60)× $\frac{1}{2}$ +정년 잔여 개월 수(61~120)× $\frac{1}{4}$ ]

\* 기준액 : 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전역월 당시 지급받는 군인 봉급표상 봉급액

라. 지급일 : 전역일 당일 지급(휴일의 경우 전역일 전날 지급)

마. 환수 : 「군인사법」 제53조의2 제4항,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제9조

- 1) 현역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2) 현역 복무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수뢰, 뇌물적용 등)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3) 현역 복무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횡령과 배임)를 범하여 벌금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4) 경력직공무원이나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 제외)
- 5) 명예전역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바. 첨부서류 : 명예전역 지원서, 명예전역수당 반납서약서 각 1부

문의처

- |                   |                 |            |
|-------------------|-----------------|------------|
|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 02)748-5127   |            |
| • 육 군 인사사령부 상훈전역과 | ☎ 042)550-7344  | 군)960-7344 |
| • 해 군 인사참모부 장교인사과 | ☎ 042)553-1217  | 군)910-1217 |
| • 공 군 인사참모부 장교인사과 | ☎ 042)552-1435  | 군)920-1435 |
| • 해병대 인사참모처 인사운영과 | ☎ 031)8012-3124 | 군)928-3124 |

## 5. 명예진급 선발

가. 지원대상 :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명예전역 선발자 중 명예진급을 지원하는 중령 및 소령, 상사 중 진급최저 복무기간을 경과하고 예비역 편입을 희망하는 자

나. 명예진급은 명예전역 선발자 중 명예진급 희망자를 대상으로 각 군의 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

- 1) 명예전역 대상 계급 : 중령 → 대령, 소령 → 중령, 상사 → 원사
- 2) 명예전역에 선발된 자는 명예진급이 선발되지 않더라도 명예전역 취소 불가

다. 선발제외대상

- 1) 군사법원에 기소된 자(단,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
- 2) 현 계급에서 중징계의 처분을 받거나, 경징계 2회 이상 받은 자  
(단,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된 자는 제외)
- 3)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거나 회부된 자
- 4) 복무기간 중 금전 수수 등 각종 비리사건으로 징계처분 또는 보직해임 받은 자
- 5) 4주 이상 군사교육과정 또는 위탁생 교육과정에서 낙제 또는 불명예스러운 사유로 교육이 중단된 자
- 6) 현 계급에서 계속복무 적합기준 미달자로 평가된 자

라. 첨부서류 : 명예전역 신청서류 및 명예진급 지원서 각 1부

<b>문 의 처</b>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02)748-5127	
	• 육 군 인사사령부 상훈전역과	☎ 042)550-7344~6	군)960-7344~6
	• 해 군 인사참모부 장교인사과/부사관병인사과	☎ 042)553-1217/1227	군)910-1217/1227
	• 공 군 인사참모부 장교인사과	☎ 042)552-1435	군)920-1435
	• 해병대 인사참모처 인사운영과	☎ 031)8012-3124	군)928-3124

6. 퇴직자 정부포상 신청·수훈

가. 전역자 정부포상

1) 포상종류 \*재직기간 : 임관일 ~ 전역일 + 양성교육 기간 1/2

재직기간	33년 이상	30년 이상 33년 미만	28년 이상 30년 미만	25년 이상 28년 미만
포상훈격	보국훈장	보국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2) 보국훈장 : 재직기간 33년 이상인 자

구분	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
군인	대장	중장	소장, 준장	영관	위관 이하

나. 신청시기 : 전역일 기준 150일 전(신청부서 : 소속부대 인사참모)

\* 개인 공적 내용 작성(2,000자 이상) 후 소속부대 인사참모 통해 문서 신청

## 다. 수여시기

- 1) 정년전역 : 전역일
- 2) 임기제, 명예/의원 전역 : 전역일 다음 분기 말  
\* 예) 1~3월 전역자 ⇒ 6월 말, 4~6월 말 전역자 ⇒ 9월 말

## 라. 추천제한

- 1) 감사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2)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3)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주요비위나 사회적 지탄 대상(도박, 불륜, 사기, 강·절도, 상해 등)이 되는 행위가 아닌 잘못으로 받은
    - ①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
    - ② 견책이 사면되었고, 당해 견책 처분이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는 자는 추천 가능
  - 4)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 또는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되는 경력기간의 행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주요비위 또는 사회적 지탄 대상 행위의 경우 선고유예 포함)  
\* 다만, 1회에 한하여 벌금 100만 원 미만은 추천 가능(경미한 잘못과 특별공적자인 경우 한정)  
\* 주요비위 : 금품·향응 수수 및 제공, 공금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 5)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6) 각종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7) 정부포상 서훈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8) 퇴직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공무원으로 복직한 자
- ※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 시 동일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단, 재포상 금지 기간은 적용하지 않음)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 국방부 병영정책과
- 육 군 인사사령부 상훈전역과
- 해 군 인사참모부 행정관리과
- 공 군 인사참모부 근무행정과
- 해병대 인사참모처 근무/행정과

- ☎ 02)2100-4096
- ☎ 02)748-5156                      군)900-5156
- ☎ 042)550-7341~3                  군)960-7341~3
- ☎ 042)553-1187, 1189              군)910-1187, 1189
- ☎ 042)552-1271                      군)920-1271
- ☎ 031)8012-3145                      군)928-3145

## 7. 각종 급여 청구 및 상환(필수)

### 가. 퇴직급여 청구

\* 세부내용은 제2편 제1장 군인연금 및 급여제도 참조

#### 1) 급여의 종류

- 가) 퇴역연금 : 19년 6개월 이상 복무 후 퇴직 시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
- 나) 퇴역연금일시금 : 19년 6개월 이상 복무 후 퇴직 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 다) 퇴역연금공제일시금 : 19년 6개월 이상 복무 후 퇴직 시 20년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 일부 기간을 일시금으로 지급
- 라) 퇴직일시금 : 19년 6개월 미만 복무 후 퇴직 시 지급

#### 2) 청구대상자

- 가) 19년 6개월 이상 복무 후 퇴직 군인 :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본인이 택일하여 청구

구 분	접수기한	지 급 일	비 고
퇴직수당/퇴역연금 (공제) 일시금	매월 말일	익월 10일	군인연금법 제13조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0조
퇴역연금	매월 말일	익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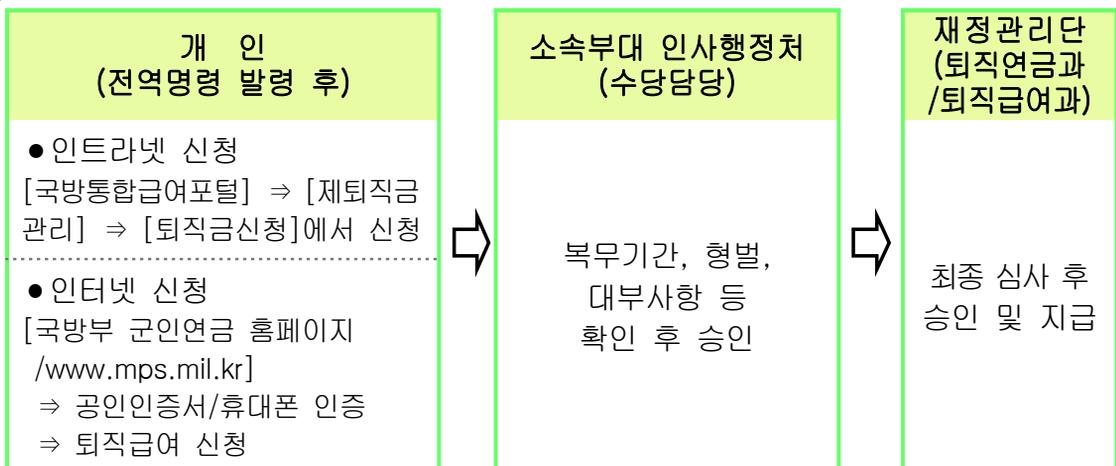
\*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

- 나) 19년 6개월 미만 복무 후 퇴직 군인 : 퇴직일시금 청구

구 분	접수기한	지 급 일	비 고
퇴직일시금	매월 1~15일	당월 25일	퇴직급여는 전역 후에만 지급
	매월 16~말일	익월 10일	

#### 3) 청구시기 : 전역 명령 발령 후

#### 4) 청구절차 : 본인 신청 → 소속부대 승인 → 국군재정관리단 지급



## 5) 군인연금증서(카드형) 신청

가) 군인연금증서란 군인연금 수급자격을 증명하고, 추가적인 카드 및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형 증서

나) 신청방법 : 가까운 우리은행 또는 국민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

\* 은행 방문 시 연금수급권자확인서(전역 익월 10일까지 자택으로 우편물 발송), 신분증 지참  
우편물 미수령 시 국군재정관리단 감사실(02-3146-6016)로 연락 후 재발급

### ※ 유의사항

(1) 퇴직급여 청구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

- 의사전달의 착오로 실제 본인이 원한 퇴직급여와 다른 종류의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발생
- 전역 후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없어서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송달되지 않아 피해 발생
- 학자금 대부 등 급여공제에 있어 분할공제 여부 등에 대한 본인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발생

(2) 급여 종류를 변경하려면 그 급여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신청서를 국군재정관리단에 제출 : 연금수령 후 종류변경 신청 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납부하여야 급여종류 변경 가능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7조(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 신청)

#### 문의처

- 국군재정관리단 퇴직급여과 ☎ 02)3146-6474~5 군) 953-6474~5
-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 02)3146-6498 군) 953-6498

## 나. 군인공제회 회원퇴직급여금/대부금

1) 군인공제회 회원퇴직급여금

가) 청구 대상 : 전역 예정자 중 군인공제회 가입자

나) 청구 : 전역명령서에 따라 국군재정관리단이 군인공제회에 일괄 청구

\* 전역(퇴직) 당월 20일까지, 말일까지

다) 지급 : 전역월 말일 또는 익월 5일(휴일일 경우 휴일 종료 후 첫 근무일)에 회원희망 급여계좌에 자동입금(별도 신청 불필요)

\* 전역명령 지연 발령 시 전역 해당 월 20일까지 개별신청 시 전역과 동시 지급

2) 대여금 상환 : 퇴직급여대여는 회원퇴직급여금 지급 시 공제

목돈수탁대여는 만기지급 시 공제

3) 회원 승계 : 전역 후 6개월 이내 군인공제회 회원자격이 있는 다른 신분(국방부분부 일반직 공무원, 군무원 등)으로 전환되었을 때 아래의 서류 구비 후 군인공제회 제출 시 회원자격 승계

청구방법	구비서류
군인공제회 우편 / FAX(02-2190-2069) / 이메일(savings@mmaa.or.kr)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계신청서 1부</li> <li>● 신규 임용명령지 사본 1부</li> </ul>

**문의처**

• 군인공제회 컨택센터

☎ 1544-9090, 1599-9090

#### 다. 학자금 대부금 상환

- 1) 신청 : 전역 전 국방통합급여포털 내에서 일시/분납 선택, 퇴직급여에서 공제
- 2) 퇴역연금 청구자 : 일시상환원칙, 1,000만원 초과금액 일시상환 후 200~1,000만원 미만 금액 3년 분할 상환 가능(청구서에 분할상환 선택)
  - \* 200만 원 미만 금액은 일시상환만 가능

#### 라. 생활안정자금 대부금 상환

- 1) 상환방법 : 퇴직급여에서 미공제 / 대부은행에 개별 상환
  - \* 퇴직급여 청구 시 수령은행은 대부은행으로만 신청 가능(대부 잔액 상환 전까지 대부 잔액 해당 금액 인출 불가)

#### 마. 중앙공제 저축 / 보험금 불입자

- 1) 해당 금융기관으로 본인이 자동이체 전환 처리

#### 바. 희망송금 종료처리

- 1) 필요 희망송금 : 종료처리 불필요
  - \* 전역 후 해당 수당(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지급 시 기등록 계좌로 이체
- 2) 불필요 희망송금 : 희망송금 종료 처리

#### 사. 연금지급 정지대상 및 연금소득 과세

- 1) 연금수령 이후 지급정지 사유

정지금액	지급정지사유
전액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받는 군인, 공무원(군무원 포함),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보수를 받을 때,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 취임 시, 국가 및 지자체 전액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으로서 근로소득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의 160% 이상인 경우
일부정지 (연금 50% 범위 내)	상시 5인이상 근로사업장 기준 근로자 1인의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퇴역연금 및 상이연금 수급권자

2) 연금 소득심사 및 연금감액 지급

- 가) 심사대상 : 연금 외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퇴역연금 및 상이연금 수급권자
- 나) 심사기준 : 상시 5인 이상 근로사업장 기준 근로자 1인의 전년도 평균 임금월액 적용(고용노동부 고시, 매년 3월)
- 다) 심사방법 : 국세청 등을 통해 파악한 월 평균소득이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소득에 따라 연금 월액의 일부 정지(최고 1/2 범위 내)

3) 소득대비 월 지급정지 예상액 (단위 : 원 / 산정 월수 : 12개월)

총 근로소득		근로소득 공제액	소득공제 후 소득		평균임금 월액(B)	초과소득 월액 (A-B)	지급정지 월액
연소득	월소득		연소득	월소득(A)			
61,081,000	5,090,083	12,804,050	48,276,950	4,023,079	4,022,975	104	10
65,000,000	5,416,667	13,000,000	52,000,000	4,333,333		310,358	31,030
70,000,000	5,833,333	13,250,000	56,750,000	4,729,167		706,192	91,230
75,000,000	6,250,000	13,500,000	61,500,000	5,125,000		1,102,025	180,600
80,000,000	6,666,667	13,750,000	66,250,000	5,520,833		1,497,858	299,350
85,000,000	7,083,333	14,000,000	71,000,000	5,916,667		1,893,692	457,470
90,000,000	7,500,000	14,250,000	75,750,000	6,312,500		2,289,525	644,760
95,000,000	7,916,667	14,500,000	80,500,000	6,708,333		2,685,358	842,670
100,000,000	8,333,333	14,750,000	85,250,000	7,104,167		3,081,192	1,040,590
105,000,000	8,750,000	14,850,000	90,150,000	7,512,500		3,489,525	1,244,760
110,000,000	9,166,667	14,950,000	95,050,000	7,920,833		3,897,858	1,448,920
120,000,000	10,000,000	15,150,000	104,850,000	8,737,500		4,714,525	1,857,260
130,000,000	10,833,333	15,350,000	114,650,000	9,554,167		5,531,192	2,265,590

\* 적용기간 : '21년 4월 ~ '22. 3월

**문의처**      •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 02)3146-6487

아. 전직지원기간(사회적응교육), 전역 전 휴가 중 수당 미지급

\* 근무함으로써 적용되었던 실적 수당 미지급 : 항공수당(조종사), 기술수당, 위험근무수당, 장려수당, 직책별 특정업무비, 시간외수당 정액분 등

**문의처**

- 육 군 인사참모부 복지정책과      ☎ 042)550-1244      군)960-1244
- 해 군 인사참모부 복지정책과      ☎ 042)553-1147      군)910-1147
- 공 군 인사참모부 복지정책과      ☎ 042)552-1511      군)920-1511
- 해병대 인사참모처 인력계획과      ☎ 031)8012-3115      군)928-3115

자. 전직지원기간 기본교육 교육과건 여비 지급

- 1) 지급대상 : 전직지원기간 기본교육 시만 지급  
\* 단, 진로교육 의무화 대상자 진로교육 시 지급 가능
- 2) 지급시기 : 해당 교육 수료 및 인사명령 발령 후
- 3) 주관부서 : 소속부대 인사참모(여비담당)

## 8. 전직지원 및 구직등록 신청(필수)

### 가. 전직지원 교육체계



### 나. 전직지원(정년, 희망, 명예) 및 전직지원기간(구 직업보도교육) 신청

- 1) 대상 : 장교 또는 준·부사관 임관 후 복무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 희망자  
**【예비역/퇴역 구분】**

구분	예비역	퇴역
전역근거	군인사법 제35조제1항, 42조	군인사법 제41조
역종개념	병역의 일종	병역에서 제외
전역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역에서 전역되는 사람으로서 퇴역되지 아니하는 사람</li> <li>여군으로서 예비역 편입을 희망하는 자 (* 예비군 훈련 편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자</li> <li>연령정년에 도달한 자</li> <li>전·공상으로 인하여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자</li> <li>여군으로서 현역을 마친 사람</li> </ul>
전역후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비군 편성</li> <li>* 편성 연령 : 해당 계급 연령 정년 시까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방위대 편성</li> <li>* 편성 연령 : 40세까지</li> </ul>
전시	재입대 가능	재입대 불가능

\* 전역 후 취업 시 예비역과 퇴역에 따른 차이는 없음(군무원 포함)

2) 전직지원기간 부여 제한 대상

- 가) 군의·치의·법무·군종병과의 장교, 민항취업(예정) 조종사, 교수(해군)  
\* 단, 3개월 이내 사회적응기간 부여 가능
- 나) 장군, 임기제 진급자, 병과장, 형벌·징계 등 처벌 계류 중인 자

3) 신청 시기

- 가) 정년 전역 : 전역지원서 제출 불필요
- 나) 희망 전역 : 희망 전역일 3개월 전까지 전역지원서 제출  
\* 재취업 등 사유 발생 시 20일 전까지 제출(취업확인서 포함)
- 다) 명예 전역 : 전반기는 전년도 11월, 후반기는 해당 연도 4월에 신청
- 라) 전직지원기간 신청 : 전 분기 첫째 월 30일까지 전역지원서 제출

【복무기간별 전직지원기간】

구 분	중기복무자			장기복무자		
	5년~7년 미만	7년~9년 미만	9년~10년 미만	10년~27년 미만	27년~30년 미만	30년 이상
전직지원 기간	1개월	2개월	3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누락 시 부대장 확인서 제출(희망시기 15일 전까지)

4) 신청처 : 소속부대에서 각 군 본부 전직지원(일자리)담당부서로 문서 보고

5) 구비서류 : 전역지원서 1부(각 군 양식 활용)

\* 국방인사정보체계 “지원서 제출/조회” 메뉴에서 작성(자필 서명)

※ 유의사항 : 전직지원기간 시작은 매월 1일(전직지원기간 시작 후에는 취소 불가, 전직지원기간 시작 전 1회에 한하여 취소 가능, 전직지원기간 만료일에 당연전역)

다. 진로설계(사이버아카데미) 교육

1) 교육대상 : 전 장병

2) 교육내용 : 교육입교 전 사전교육용 콘텐츠(전직준비전략, 강점분석, 채용 동향 등)와 전 장병 대상 공통콘텐츠(직업세계변화, 생애설계 등)로 구성

3) 이용방법 : 수시, 온라인

①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인터넷) 회원가입·로그인

② 홈페이지 좌측 ‘사이버아카데미’ 또는 ‘진로지도검사’ 클릭 후 온라인 교육수강 또는 진로지도 검사 실시

라. 진로교육(교육 참여자에 한하여 경력상담 지원)

- 1) 대상 : 5년 이상 복무자 중 전역 2년 전부터 전직지원기간 시작 전까지
- 2) 신청시기/방법 : 국방전직교육원 인터넷 홈페이지([www.moti.or.kr](http://www.moti.or.kr)) → 교육신청 메뉴에서 직접 신청(해당 교육일 2개월 전부터 인터넷 접수 가능)
- 3) 교육기간/장소 : 2박 3일/국방전직교육원(또는 온라인)
- 4) 교육내용 : 산업트렌드·고용환경 이해, 자기진단, 진로목표설정 등

마. 청년장병 지원교육(선택)

- 1) 대상 : 청년장병 (34세 이하 중·단기 간부 및 현역병)
- 2) 기간/장소 : 과정별 1~3일/교육원, 부대, 외부연수원, 필요시 온라인
- 3) 교육내용 : 진로도움교육, 취업사관학교, 기업맞춤형 취업과정, 현장채용설명회 등
- 4) 신청방법 : 개설 과정별 신청방법 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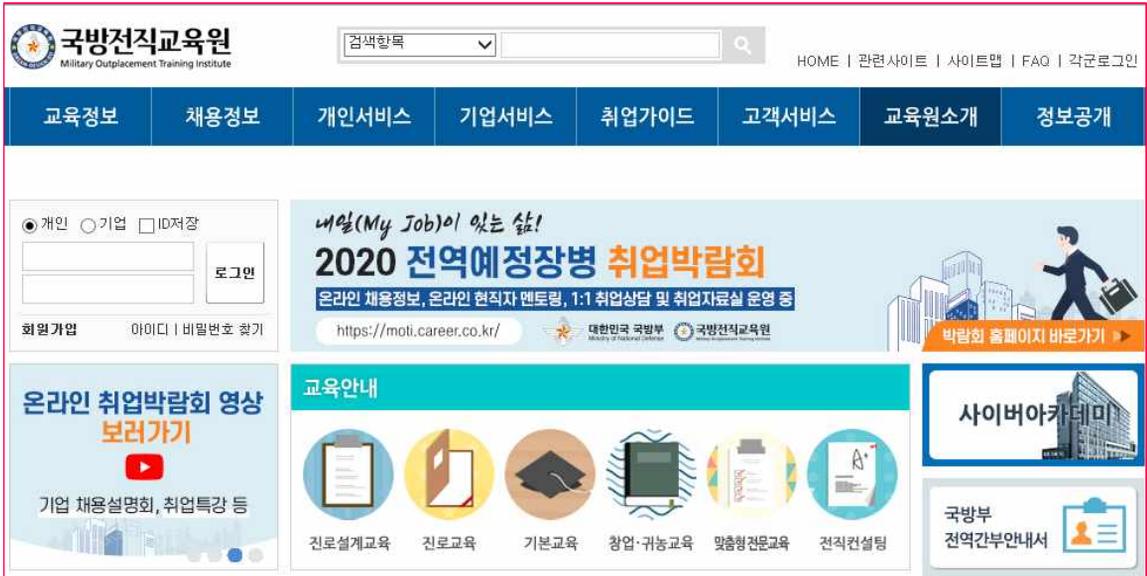
바. 전직기본교육(필수, 과정 중 1개 과정만 선택 수강)

- 1) 대상 : 전역 1년 이내인 중기복무자, 전직지원기간 중인 장기복무자Ⅲ
- 2) 신청 시기 : 국방전직교육원 인터넷 홈페이지([www.moti.or.kr](http://www.moti.or.kr)) → 교육 신청 메뉴에서 직접 신청(해당 교육일 2개월 전부터 인터넷 접수 가능)
- 3) 기간/장소 : 2박 3일/국방전직교육원(또는 온라인)
- 4) 교육구분
  - 장기기본교육 : 군관련 시험과정, 취업준비과정(장교/준부사관)
  - 중기기본교육 : 공(군)무원 시험과정, 취업준비(일반직), 취업준비(기술직)
  - 중·장기 통합기본교육 : 창업과정, 귀농·귀어·귀산촌과정

※ 유의사항 : 교육 이수자에 한해 전직상담 및 맞춤형 전문교육과정, 보훈처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 가능

아. 구직등록

- 1) 신청대상 : 취·창업을 희망하는 전 장병
- 2) 등록시기 : 전역 2년 전(진로교육 입교자)부터  
\* 5년 미만 복무자는 사업 참여 시
- 3) 신청방법/절차 :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인터넷, [www.moti.or.kr](http://www.moti.or.kr))  
가) 회원가입 : 전역(예정) 군 간부, 기업체 실무자 외 일반인 접속 금지



회원가입 메뉴를 이용하여 접속

\* 구직등록 완료 후 아이디, 패스워드 이용 상시 접속 가능

나) 개인 인증 : 군번 확인을 통한 인증(군 간부 여부 확인)

다) 구직등록 세부사항 입력(붙임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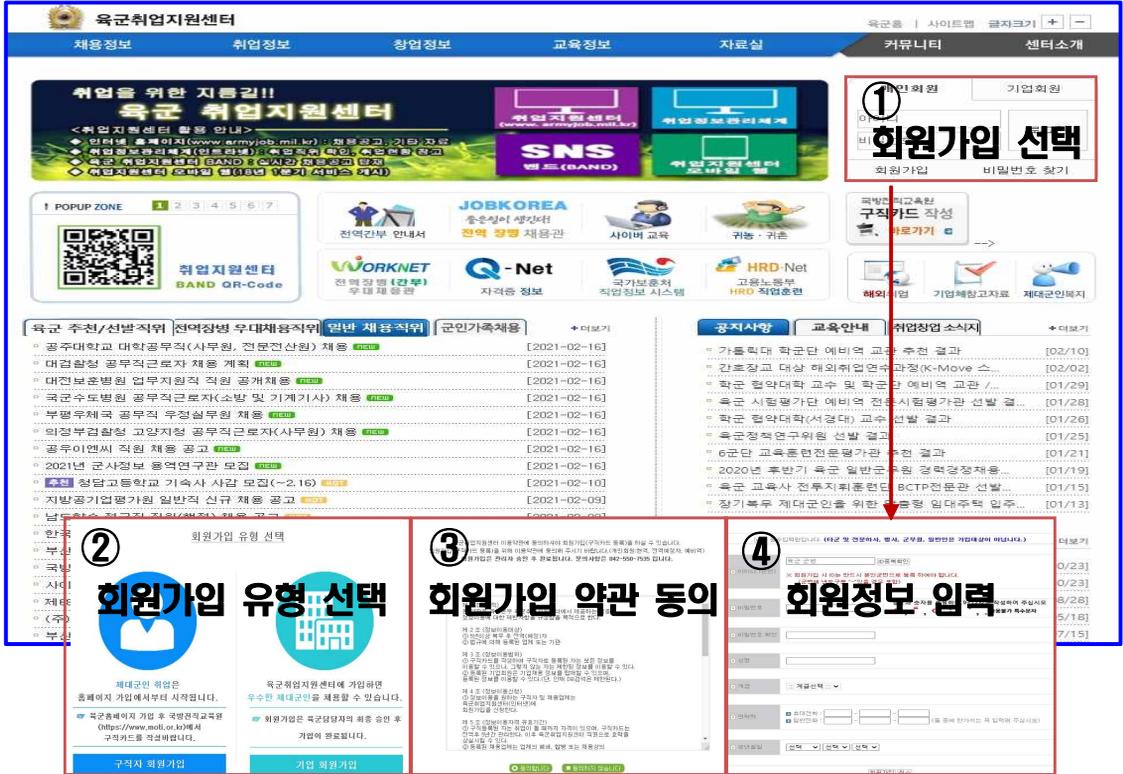
\* 개인 신상, 학력, 경력, 자격증 및 어학능력 등을 포함하여 업체 제출용 이력서 양식에 준하여 작성

문의처

- |                         |                 |            |
|-------------------------|-----------------|------------|
| • 국방전직교육원 일자리지원부        | ☎ 031)760-9340  |            |
| • 국방부 국방일자리정책과          | ☎ 02)748-6635   | 군)900-6635 |
| • 육 군 인사사령부 취업지원센터      | ☎ 042)550-7532  | 군)960-7532 |
| • 해 군 인사참모부 일자리정책과      | ☎ 042)553-1153  | 군)910-1153 |
| • 공 군 인사참모부 전직지원정책과     | ☎ 042)552-1237  | 군)920-1237 |
| • 해병대 복지/전직지원처 전직/대외협력과 | ☎ 031)8012-2812 | 군)928-2812 |

자. 구직등록(육군)

- 1) 신청대상 : 육군에서 복무한 전역(예정) 장병
- 2) 신청방법/절차 : 육군 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인터넷, [www.armyjob.mil.kr](http://www.armyjob.mil.kr)) 및 밴드  
가) 육군 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 포털사이트에서 「육군 취업지원센터」 검색



나) 육군 취업지원센터 밴드 회원가입: 홈페이지 QR코드 스캔



다) 개인 인증 : 군번 확인을 통한 인증

라) 정보이용자적 유효기간 : 전역 후 5년(필요시 재가입 가능)

문의처

• 육군 인사사령부 취업지원센터

☎ 042)550-7537

☎ 960-7537

## 9.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신청 및 지급

가. 신청대상 : 5년 이상 복무자 중 전직기본교육 이수자

\* 기본교육 미수료자는 부대장(연대장급 이상) 추천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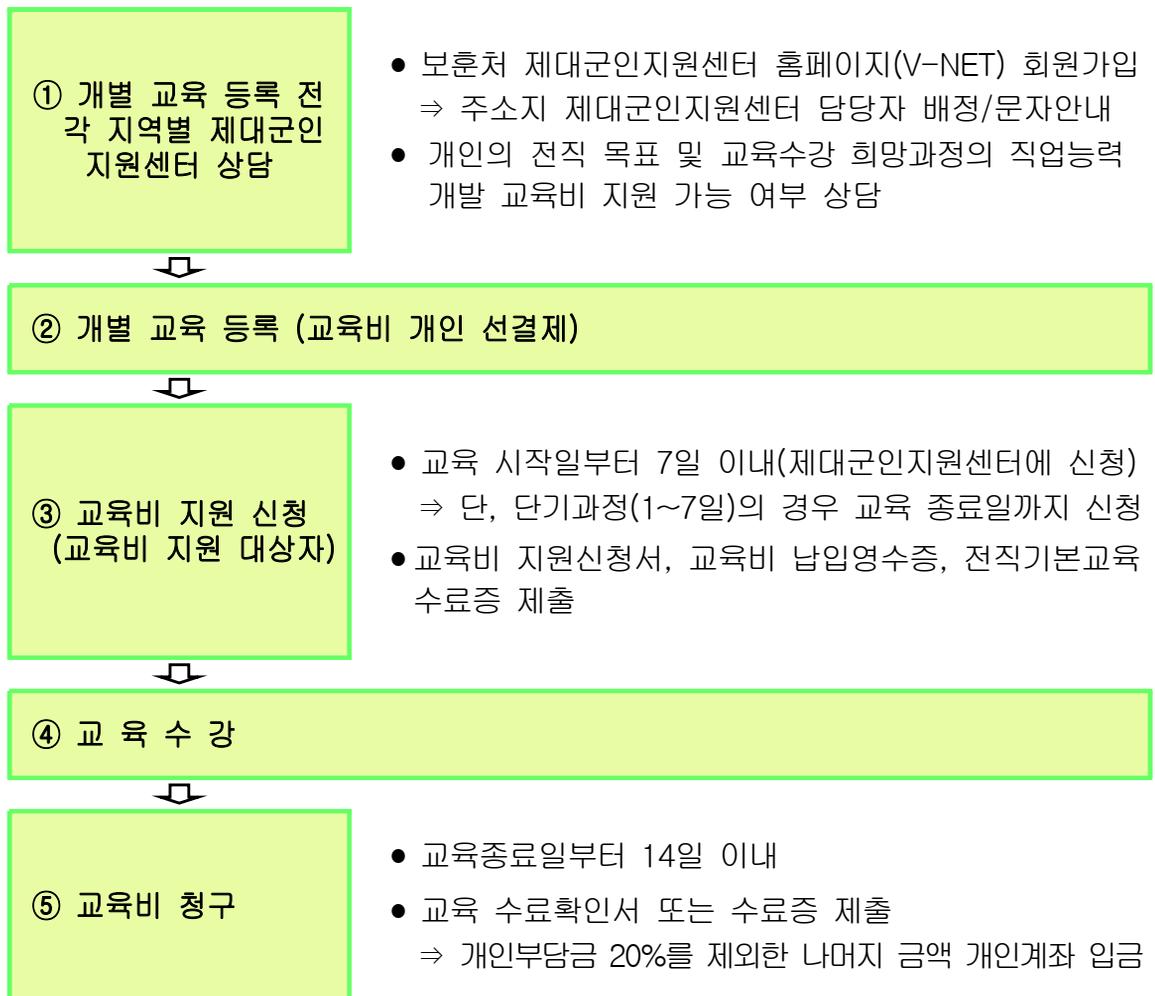
나. 신청 및 지급 금액 : 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1) 전역(예정)자 개인에게 지원되는 교육비로 개인 先 결제, 교육 수료 후 서류 제출 시 후 지급(80%)

2) 지원 기간 / 최대 지원금액 : 전직지원기간~전역 후 3년 이내 / 150만 원

\*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다. 신청절차



문의처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66-9279

## 10. 국방대학교 KNDU 최고경영자과정 교육(장군전역자)

가. 교육목표 : 전역에 따른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진로개척 및 사회지도자로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명감을 고취

나. 교육대상 : 전역(예정)장성 \* 부부 참석 권장

- 전년도 8.1 ~ 해당 연도 7.31 전역(예정) 장성
- 전년도 8월 이전 전역장성 중 교육 미이수자 (희망자)

다. 교육장소 :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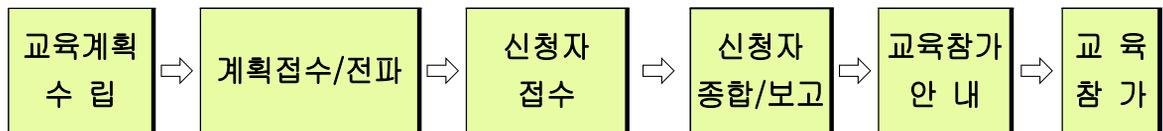
라. 교육일정 : 매년 4~6월 / 9주간

마. 교육내용 : 안보상황 이해, 사회적응 및 활동, 자기관리 등

구 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강의 (09:30~12:20)	개인연구	강의	개인연구	강의/체력단련/ 현장학습	개인연구
(12:20~13:20)	중 식				
오후 강의 (13:30~16:20)	개인연구	강의	개인연구	강의/체력단련/ 현장학습	개인연구

\* 매주 화요일·목요일 소집교육, 일정 중 국토탐사(3박 4일)

바. 신청절차 : 각 군 본부(해병대사령부 포함)에서 신청자 종합 후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로 신청 (매년 3월 초)



(국방대학교)

(국방부⇨각 급 부대)  
\* 국방일보, 성우회

(각 군 본부)  
\* 공문 / 개별신청

(각 군 본부  
⇨국방부)

(국방대학교)

(개인)

문의처

• 국방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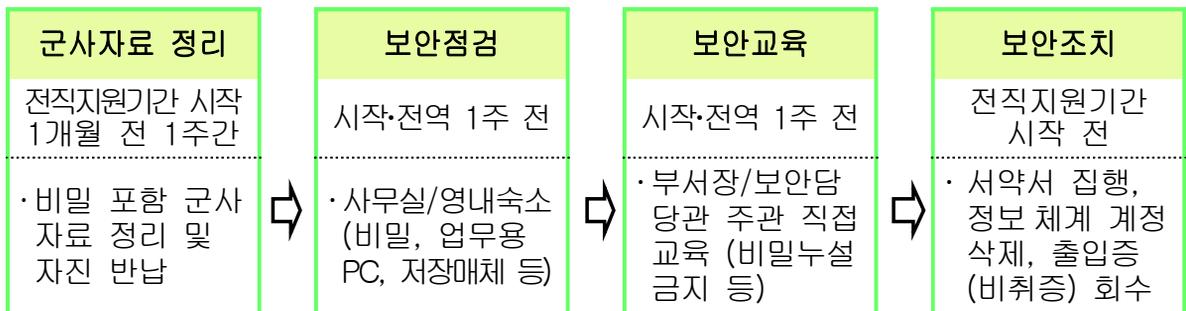
☎ 041)831-5546 군)901-5546

## 11. 전역 전 보안교육 및 준수사항(필수)

### 가. 전역자에 대한 보안조치 시행근거

-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업무상 누설)**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였던 자가 그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3년 이상 유기 징역에 처함.
- **국방보안업무훈령 제218조(전역·퇴직 및 전출 장병 보안)**  
전역 1개월 전 불시 보안점검을 통해 관리실태 확인, 전역 1주일 전 비밀 인수인계 실태 확인  
※ 군사보안업무훈령 제218조는 전역장병에 의한 보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상위법인 군사기밀보호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내용을 종합 따라서 숙소의 경우 본인 스스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한 후 보안담당관이 재확인하거나 장병이 숙소 퇴거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시 위병소에서 휴대한 물품 확인을 통해 비밀자료 소지여부를 점검할 수 있음.

### 나. 전직지원기간 전 보안대책



\* 기존 출입증은 회수하며, 전직지원기간을 명시한 일반구역 출입증으로 재발행

### 다. 군사자료 정리 기간

1) 대상/시기 : 전직지원기간 입과자(전역자) / 입과(전역) 1개월 전 1주간

2) 시행절차

가) 주관 : 비밀보관책임관 “정”의 통보에 따라 각 개인 스스로 점검

나) 시기 : 전직지원기간 입과 및 전역·퇴직·전출 1개월 전부터 1주간

다) 시행 : 대상자 각 개인이 사용하던 모든 군 관련 자료를 정리

라) 비밀문서 : 직접 실شم 확인, 보안 관련 각종 서류철 확인 병행

마) PC/저장매체 : PC 바탕화면 및 저장매체 내 저장된 파일을 직접 열어서 확인하고 불필요 파일은 완전 소거

\* 제목상 일반 파일이지만 내용이 비밀인 경우 : 직접 파일을 열어서 확인하고 반드시 완전소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삭제 조치

- 바) 책상서랍/캐비닛 : 오래 사용하지 않았던 곳을 중점적으로 확인, 불필요한 자료 세절
- 사) 일반 문서철 : 모든 바인더 및 파일철을 일일이 낱장까지 확인, 불필요한 자료 삭제
- 아) 일반 군사자료도 반드시 세절하여 처리(숙소 등에 무단투기 금지)

라. 보안점검

\* 본인 입회하에 실시

- 1) 대상/시기 : 전직지원기간 입과자(전역자) / 입과(전역) 1주 전 1일
- 2) 시행절차
  - 가) 주관 : 부서장 및 부대 보안담당관
  - 나) 시기 : 전직지원기간 입과 및 전역·퇴직·전출 1주 전 1일
  - 다) 시행 : 부서장 및 부대 보안담당관이 임명한 점검관이 수행
  - 라) 비밀문서 : 비밀 인수·인계 여부 확인(비밀 실شم 확인)
  - 마) PC/저장매체 : 불필요 파일 정리 및 완전소거 상태 등 점검
  - 바) 정보체계 : 인트라넷, 인터넷, C4I체계 등 계정 삭제 상태 확인
  - 사) 책상서랍/캐비닛 : 군사자료 방치 여부 등 확인
  - 아) 숙소 : 숙소 내 군사자료 보관 및 방치 여부 등 확인

마. 보안교육 및 보안조치

- 1) 대상/시기 : 전직지원기간 입과자(전역자) / 입과(전역) 1주 ~ 입과 전
- 2) 시행절차
  - 가) 주관 : 부서장 및 부대 보안담당관
  - 나) 시기 : 전직지원기간 입과 및 전역·퇴직·전출 1주 전 ~ 입과 전 1일
    - \* 통상 보안점검 실시 후 보안교육 및 보안조치 시행
  - 다) 시행 : 부서장 및 부대 보안담당관이 임명한 교관이 교육 및 조치
  - 라) 교육내용 : 전역·퇴직자의 비밀보호 의무와 군사기밀 누설 시 처벌내용
  - 마) 보안조치 : 전역·전출자용 보안서약서 집행, 출입증 반납 또는 공무원증 출입구역 정보 삭제, 비밀취급인가증 반납(통상 출입증에 스티커로 부착), 공무원증은 전역 시 인사참모에게 반납
    - \* 미군 출입증 소지자는 전역 전까지 후임자를 위해 반드시 소속부대로 반납 조치(후임자가 출입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바. 전역자의 비밀보호 의무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8조(비밀 엄수의 의무)**  
군인은 복무 중일 때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도 복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 **군사기밀보호법 제10, 11, 11의2, 12, 13, 13의2, 14, 15, 16조**
-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 군인복무기본법과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 형법, 군형법 등에 의해 군인은 전역 후에도 비밀보호의 의무를 갖게 되며,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됨.

## 12. 전직지원기간 중 사적국외여행

### 가. 사적국외여행의 허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지휘관은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를 승인할 수 있다.  
3. 「군인사법」 제7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탁교육 또는 전직지원 교육기간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 전직지원 기간 중 사적국외여행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직지원기간 인사명령을 근거로 절차에 따라 사적국외여행 허가를 득하여 시행

### 나. 국외여행기간 : 전직지원기간(개월) / 12 \* 21일

- \* 전직지원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불산입(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
- \* 해당 연도 연가사용 일수와 무관하게 21일 적용, 공휴일은 미포함

### 다. 제출서류 : 현역과 동일(사적국외여행 계획서, 허가서)

- \* 소속부대 인사참모 제출, 허가권자의 승인 후 국외여행허가서 발급

#### 문의처

- |                   |                 |             |
|-------------------|-----------------|-------------|
| • 육 군 인사참모부 인사근무과 | ☎ 042)550-1163  | 군) 960-1163 |
| • 해 군 인사참모부 행정관리과 | ☎ 042)553-1186  | 군) 910-1186 |
| • 공 군 인사참모부 근무행정과 | ☎ 042)552-1275  | 군) 920-1275 |
| • 해병대 인사참모처 근무행정과 | ☎ 031)8012-3141 | 군) 928-3141 |

### 13. 전직지원기간 중 영리행위 금지

#### 가. 영리행위(취업) 금지

- 법률 제15857호('18. 10. 16.)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법률 제16034호('18. 12. 2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공규 2-44('18. 8. 20.) 복무 및 병영생활 제22조(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참모총장(인사참모부장 소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나. 위반 시 징계

- 대통령령 제28266호('17. 9. 5.) 군인징계령 제7조(징계의결 요구 등)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통보받거나 발견한 비행사실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징계권자가 아닌 상관이 하급자의 비행사실을 인지하고 통보한 경우
  2. 수사기관이나 감사 관련기관에서 비행사실 등을 통보한 경우
  3. 소속 부하 또는 감독을 받는 군인의 비행사실을 발견한 경우
- 공규 2-58('19. 5. 17.) 군 전직지원 관리 및 운영 제6조  
(전직지원기간 신청 및 대상자 선발)
  - ⑥ 전직지원기간 부여 대상으로 선발된 자로서 전직지원기간 중 취업이 확정된 자는 전역 희망 월을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 14. 전역식 행사

가. 대상 : 20년 이상 복무 후 전역자(희망자)

- \* 단, 10년 이상 근무한 간부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해당 부대에서 행사(전역신고) 시행

나. 주관 : 소속 부대장(개인 희망에 따라 연고부대(연대급 이상 부대) 등에서 가능)

- \* 장군 및 대령 전역식은 각 군 본부(인사사령부)에서 월 단위로 통합 실시
- \* 육군은 원사의 경우 본인이 희망 시 부사관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음
- \* 해군은 중령의 경우 본인이 희망 시 본부에서 실시할 수 있음
- \* 공군은 과거 연고부대 행사 불가, 최종 소속부대에서 실시

다. 행사 일정/방법 : 본인 및 행사주관 부대의 여건을 고려하여 실시

- \* 정식 및 약식, 실내 및 실외 행사로 조정 시행 가능

라. 행사지원 절차

- 1) 전역자 : 전역식 행사희망부대(장소)를 결정(소속부대, 연고부대 등)하여 소속부대 인사처(행정과)에 통보
- 2) 소속부대 : 행사계획은 전역 1개월 전에 수립 후 보고 및 시행
  - \* 육군 : 인사사령부 인사행정관리과, 해군 : 인참부 근무행정과,
  - 공군 : 인참부 근무행정과 제출함
- 3) 각 군 본부 : 행사시행 지침 시달 및 각 군 본부(인사사령부) 행사 주관, 행사주관 부대에 행사비 지원
- 4) 행사주관 부대는 행사 10일 전까지 세부시행 계획 보고

마. 전역행사비 지급

- 1) 지급 방식 : 각 군별(공군 제외) 재정지원부대 계통을 행사부대 지급
  - \* 공군은 기념품(태극기) 통합 구매/지원으로 부대별 행사비 배정 없음
- 2) 지원 금액 : 장군(20만 원), 대령~부사관(4만 원)

문의처

• 육 군 인사사령부 인사행정관리과	☎ 042)550-7321	군) 960-7321
•해 군 인사참모부 행정관리과	☎ 042)553-1188	군) 910-1188
•공 군 인사참모부 근무행정과	☎ 042)552-1246	군) 920-1246
•해병대 인사참모처 인사운영과	☎ 031)8012-3124	군) 928-3124

# 제 3 장 전역 시 조치사항

## 1. 국가유공자 등록 및 혜택(훈장 수훈자)

### 가. 국가유공자 등록요건

- 1) 전몰군경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하신 분)
- 2) 전상군경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으신 분)
- 3) 순직군경 (국가수호 등과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
- 4) 공상군경 (국가수호 등과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으신 분)
- 5) 무공수훈자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
- 6) 보국수훈자 (보국훈장을 받으신 분) 등

- \* 보국훈장은 33년 이상 근무한 군인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통일, 국선, 천수, 삼일, 광복장으로 구분. 수여대상의 계급에 따라 상이  
(통일: 대장 / 국선: 중장 / 천수: 소장·준장 / 삼일: 영관장교 / 광복장: 위관장교 이하)
- \*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포함)와 그 유족은 공헌의 정도, 생활수준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

### 나. 등록 시기

- 1) 상이자 : 전역·퇴직 후 또는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 2) 무공/보국수훈자 : 전역 또는 퇴직 후
  - \* 전역·퇴직한 경우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가능 ('20.9.25부)
  - \* 국가유공자 등 보상은 국가보훈처에 등록 신청 시부터(소급 미실시) 적용

### 다. 등록 절차

- 1) 등록신청 : 본인 / 가족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2) 접수/서류 검토 :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관할 보훈(지)청)
- 3)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 심의(보훈 심사위원회)
- 4) 보훈병원 신체검사(요건을 인정받은 상이자만 해당)
- 5) 상이등급 판정 심의(보훈심사위원회)
- 6) 결정 및 통지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결정 및 결과 통보

라. 등록 구비서류

1) 전몰·순직·전상·공상군경

가) 공통서류(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및 관할 보훈청 비치)

- (1) 등록신청서 1부
- (2)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 요청서 1부
- (3) 요양급여내역 및 의무기록 열람 사본 발급 동의서 1부
- (4)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 의료지원 안내 1부
- (5)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부

나) 개별서류

- (1) 병적증명서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 생략)  
\* 6개월 이내에 전역·퇴직 사람은 전역·퇴직 예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생략)
- (3)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 (4) 사진(3.5×4.5cm) 1매 (5) 신분증
- (6) 기타 부상과 관련한 입증서류

2) 보국수훈자

가) 공통서류(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및 관할 보훈청 비치)

- (1) 등록신청서
- (2)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 의료지원 안내 1부
- (3)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부

나) 개별서류

- (1) 보국훈장증 또는 상훈수여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생략)
- (2)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 (3)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 생략)
- (4) 사진 (3 x 4cm) 1매 (5) 신분증

마. 국가유공자 보훈 혜택 : 대부, 의료, 취업, 복지 등

1) 대부지원(전국 국민은행 “나라사랑 대출창구”에서 대출)

가) 주택구입(신축)대부 :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자 모두 무주택인 가구

- 나) 주택임대차대부 : 무주택인 가구로 수권자 본인 명의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는 가구
- 다) 주택개량대부 : 신축 5년 이상 경과된 주택 소유 가구
- 라) 사업(창업)대부 : 본인, 배우자 또는 1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이 사업 중이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가구
- 마) 농토구입대부 : 본인 명의 농토구입 예정자로 본인 또는 배우자, 1년 이상 동거 중인 직계 존·비속이 해당 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가구
- 바) 생활안정대부 : 재해복구비, 경조비 등 가계자금에 필요한 가구
- 사) 아파트 특별공급(85㎡ 이하) :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

- 신청장소/시기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매년 1월 중 정기신청접수(별도 공고)
- 조건 : 본인 및 배우자, 동거 중인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자
- 선정방법 : 무주택기간, 희생 및 공헌도, 기지원 여부, 전년도 미지원 여부 등 배점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공급물량에 따라 순차적 배정
- 구비서류 : ① 주택우선공급 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추천서약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건물등기부등본 등 무주택 확인서류

아) 대부 종류별 한도액 및 상환조건('21년 기준)

구 분	대부 한도액	연이율	상환기간	담보조건
아파트 분양	4,000~8,000만 원	1.3%	20년 균등	분양아파트 (후취담보 시 부동산, 보훈급여금, 군인연금)
주택구입 (신축)	4,000~8,000만 원	1.3%	20년 균등	구입(신축)주택
주택임차 (전·월세)	1,500~4,000만 원	1.3%	7년 균등	부동산, 보훈급여금, 군인연금, 보증보험
주택개량	800만 원	2.3%	7년 균등	
농토구입	3,000만 원	1.3%	10년 균등 (3년 거치)	
사업	2,000만 원	1.3%	7년 균등	
생활안정	300~1,000만 원	1.3%	3년 균등	

※ **대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금이 감면됩니다!!!**

✓ **대부받은 은행지점에서 조세면제 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제출하면?**

- 취득세, 지방교육세 면제 (대부금으로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한 경우)
  - 주택 (아파트 포함) :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취득금액에 대해 면제**  
 전용면적 85㎡ 초과인 경우 **대부금액에 대해서만 면제**
  - 농토 : 대부금액에 대하여 면제

2) 교육지원 : 해당 사항 없음(생활수준 소득 약 160만 원 이하만 해당)

3) 의료지원

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1) 지원대상 및 범위

적용 대상자	보훈의료 지원범위	
	보훈병원	위탁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상군경</li> <li>• 공상군경</li> <li>• 재해부상군경</li> </ul>	상이처 및 일반 질병에 대해 전액 국비 지원 (위탁병원은 비급여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만 지원) * 단, '12.7.1. 이후 등록 신청한 7급 상이자는 상이처 외 질환 진료 시 10% 본인 부담	
• 무공수훈자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75세 이상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며, 비급여·약제비 미지원
• 보국수훈자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몰·순직군경유족</li> <li>• 전·공상군경유가족</li> <li>• 무공·보국수훈자 유가족</li> </ul>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에게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선순위유족이 부모인 경우 모두 지원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 선순위유족 1인 또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령자에게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며, 비급여·약제비 미지원 (선순위 유족이 부모인 경우 협의 등 1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시망군경의 배우자</li> <li>•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li> </ul>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보상금을 수령하는 75세 이상 재해시망군경의 배우자 또는 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에게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며, 비급여·약제비 미지원

\* 보훈병원에서는 비급여 진료비도 지원되나, 치아 보철·성형 등은 지원 제외

(2) 신청방법 : 각 병원 진료 접수 시 의료지원 신청(신분증 등 제시)

### (3)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안내

#### ○ 보훈병원

병원명	주소	대표전화번호
중앙보훈병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랑도로61길 53 (둔촌동)	02-2225-1111
부산보훈병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 (주례동)	051-601-6000
광주보훈병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산월동)	062-602-6114
대구보훈병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60 (도원동)	053-630-7000
대전보훈병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82번길 147 (신탄진동)	042-939-0114
인천보훈병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138 (용현동)	032-363-9800

○ 위탁병원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위탁병원 안내’ 링크 눌러 명단 확인('21.10월 기준 전국 469개소)

나) 보건소 이용 시 : 진료비 감면(지자체별 대상과 범위 차이 있음)

\*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이 보건소 진료 시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본인 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가 면제됨

### 4) 취업지원

#### 가) 취업알선 (본인·배우자)

(1) 취업희망 업체를 관할하는 보훈청 방문하여 ‘취업희망 신청서’ 제출

- \* 기업체 직종 확보 후 자격요건 등을 고려, 추천을 통해 직장 알선
- \* 운전·방호직 등 일부 직렬 공무원 희망 시 자격요건 등에 따라 보훈대상자 특별채용 시 추천

(2) 취업역량 개발 지원

① 가까운 보훈청을 방문, ‘직업교육훈련대상자 추천서’를 발급받아 해당 훈련기관에 제출하면 우선선발 대상으로 직업훈련 입소 가능

\* (훈련기관) 한국폴리텍대학(학위과정 제외),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장애인 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직업전문학교 등

② 공공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으면 월 4만 원 장려금 지급

\* 관할 보훈청에서 해당 훈련기관에 확인하여 매 분기 말 교육훈련 이수자 본인 은행 계좌로 입금(고용부 등 타부처 중복지원 불가)

③ 취업수강료 지원은 국가보훈처 취업 정보시스템에 취업수강료 지정 교육기관 확인 후 관할 보훈청에 ‘취업수강료 비용지원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사전동의서, 수강완료확인서, 영수증’ 등 제출

\* (지원대상/지원액) 유공자 본인 / 300만원. 단,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 교육비 대상자는 지원 종료 후 150만원 지원

\* (지원과정) 경비신입교육, 공인중개사, 인·적성 과정, 국가기술자격취득과정 일부(상이자 한정) 등 국가보훈처 지정과정

\* (기타) 취업수강료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훈관서(보훈과) 문의 후 수강 및 비용지원 신청

(3) 채용시험 시 : 가점 (본인 10%, 배우자 5%)

① 보훈청 방문 또는 민원24(www.minwon.go.kr),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기업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사 등 채용시험, 6급 이하 공무원 시험 : 가산 표기란에 표시하면 가산, 합격자 발표 후 제출

## 5) 복지지원

### 가) 민간요양시설을 이용 시

(1) 관할 보훈청에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① 신청대상 : 국가유공자, 배우자, 수권 부모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 1~5등급 받고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제공받고 있는 분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② 구비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 (생활수준조사를 위한 동의서 필요)

(2)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본인 부담액을 통보받아 매월 15일 본인 계좌로 입금 (급여 부분 본인부담액 40~80% 지원)

②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 이용 분부터 지원

### 나) 보훈요양원으로 입소를 원할 시

(1) 보훈요양원에 직접 입소신청

① 신청대상 : 국가유공자, 배우자, 수권 부모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요양등급 판정자 중 '시설급여' 해당자

(2) 보훈요양원에 입소하면 요양 급여비 중 급여 부분 일부를 감면

①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 배우자, 수권 부모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감면율 : 본인 부담액의 40~80% 감면

수원보훈요양원 ☎ 031-240-9006	광주보훈요양원 ☎ 062-602-5851	김해보훈요양원 ☎ 055-340-8512	대구보훈요양원 ☎ 053-606-3005
대전보훈요양원 ☎ 042-829-3011	남양주보훈요양원 ☎ 031-579-7011	원주보훈요양원 ☎ 031-579-7000	

다) 부양할 사람이 없어 보훈원으로 입소를 원할 시

(1) 보훈원에 입소 신청서를 제출

\* 신청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족(자녀 제외) 중 65세 이상의 남자 또는 60세 이상의 여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분

(2) 입소대상 여부는 보훈원에서 결정하며 입소하면 의식주 제공 및 의료보호, 사후 묘지안장 등을 지원함

보훈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 (☎031-250-1521)
-----	-------------------------------------

바. 사망 시 예우 : 국립현충원 안장

- 1)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에 신청
- 2) 안장대상으로 통보 시 안장일정을 국립묘지(현충과) 확인 및 구비서류 준비
- 3) 보훈청 보상과에 영구용 태극기와 영현함 수령, '국가유공자 확인원' 증명서도 함께 발급(유족이 신청한 경우 장례식장으로 전달·증정)
- 4) 화장장에 '국가유공자 확인원' 증명서를 제출, 화장 후 국립묘지에 안장
- 5) 배우자 합장은 유공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된 경우에 가능, 배우자가 먼저 사망 시에는 사설 납골당에 모셨다가 유공자 안장 시 합장 신청

국립대전현충원 ☎ 042-820-7051	국립서울현충원 ☎ 02-826-6238	국립이천호국원 ☎ 031-645-2336	국립임실호국원 ☎ 063-643-6081
국립산청호국원 ☎ 055-970-0731	국립영천호국원 ☎ 054-330-0850	국립괴산호국원 ☎ 043-830-1133	

사. 그 밖에 여러 가지 혜택

- 1)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입었다면
  - 가) 관할 보훈청 복지과에 재해발생 신고
    - \* 보훈청에서 행정안전부의 국민재난안전포털로 피해사실 확인
  - 나) 재해위로금은 지급기준 해당 여부 확인 후 지급
- 2) 개인택시 면허 신청용 증명서 발급은
  - 가) 지방자치 단체별 공고문 요건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 신청
  - 나) 관할 보훈청에 개인택시 면허 신청용 증명서를 발급받아 신청
- 3) 문화생활 이용 시 : 국가유공자(유족) 증 제시

100% 감면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궁 및 능원, 국·공립공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li> <li>• 국·공립박물관/미술관, 국·공립수목원, 국·공립자연휴양림</li> </ul>
50% 할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립 공연장(대공연장 제외), 국·공립 공공체육시설</li> </ul>

\* 대상 :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수권유족(단, 수권유족이 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 해당)

4) 국내선 항공기 이용 시 : 국가유공자(유족) 증 제시,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항공 30% 할인

5) 각종 증명서 발급 시 :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 열람 및 교부 수수료,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인감증명 발급, 변경신고 수수료, 가족관계증명서, 지자체 제 증명 수수료 등

6) 보훈 휴양원 및 협약 콘도 저렴하게 이용 가능

충주보훈휴양원 ☎ 043-854-2121	소노호텔&리조트(전국) (홈페이지 예약)	일성 리조트(전국) ☎ 1566-8113
청풍 리조트(제천) ☎ 043-640-7000	한화 리조트(전국) (홈페이지 예약)	강릉 주문진 리조트 ☎ 033-661-7400

7)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 임대)

가) 신청자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등에 따라 아래 사항이 모두 해당하는 분

(1) 분양 또는 분양전환임대 : 특별공급 받은 적이 없는 세대

(2) 아파트 특별공급 지원 후 3년이 경과한 분

\* 단, 분양·분양전환임대로 기 지원받으신 분은 분양·분양전환임대로 재신청 불가

(3)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수권유족,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그의 배우자 포함) 모두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특별공급

나) 매년 1월 초 정기접수 (보훈처 발간 나라사랑 신문 공고 확인 요망)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보훈청 신청

다) 신청 후에는 배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4월 말경 안내

\* 아파트 특별공급 시 대부한도액 내 신청, 대부금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지방세 감면

8) 국가보훈처 심리재활서비스

가)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 및 그 유가족)

나) 절차 : 접수(가까운 지역 마음나눔터로 방문 또는 유선) → 면담 → 심리검사 → 프로그램 지원 → 상담완료 → 사후관리(필요시)

\* 국가보훈처 심리재활집중센터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KT여의도타워 13층  
☎ 02-786-7937

문의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2.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등록

### 가. 제대군인 등록

- 1) 대상 : 5년 이상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
- 2) 구비서류
  - 가) 제대군인지원신청서                      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다) 사진(3×4cm)                              라) 병적증명서, 전역증
  - 마)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신청 시 추가서류
  -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소득신고 및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3)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 또는 우편, 온라인 신청

### 나.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회원가입

- 1) 채용정보 제공
  - 가) 군관련직, 제대군인 우대·선호 및 적합직종 위주의 채용정보 제공
  - 나) 최신 채용정보, 기업 채용정보, 워크넷 채용정보 제공
- 2) 교육 및 행사 일정 안내 : 센터별 워크숍, 순회상담, 특강, 일자리 두드림 데이(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 교육 및 행사 일정 확인, 센터 활동 소식 제공
- 3) 가입절차 : 홈페이지 가입([www.vnet.go.kr](http://www.vnet.go.kr))

①	②	③	④	⑤	⑥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버튼	회원약관 동의	개인정보 입력	완료	1:1 상담사 배정 /초기상담

### 4) 관련 혜택

- 가) 전역 후 6개월간 전직지원금 지원 \* 연금 수급자 제외
- 나) 직업교육훈련 바우처(교육비) 지원 및 취업 안내

문의처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대표전화

☎ 1666-9279

## 3. 국가보훈 수혜 일람표

가. 보상금 월 지급액 : 붙임 #2 참조

나. 재해보상금 및 사망일시금 : 붙임 #3 참조

## 4. 제 증명서 신청 및 발급

### 가. 군 경력증명서 발급

- 1) 종류 : 군 경력증명서, 비행경력증명서, 군복무(재직)확인서, 군운전경력확인서 등
- 2) 발급기관 : 국방부 및 각 군 민원실, 인사사령부 병적민원과, 각군 일자리(전직지원)정책과
- 3) 신청방법

가) 방 문 : 국방부 및 삼군통합 민원센터, 각 지역 주민센터

나) 인터넷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http://www.epeople.go.kr)) “민원신청”

다) 우 편 : (육 군)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33호  
(우편번호 32800) 병적민원과 담당자 앞

(해 군)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201호  
(우편번호 32800) 일자리정책과 전직지원/제증명담당자 앞

(공 군)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303호  
(우편번호 32800) 전직지원정책과 담당자 앞

(해병대)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33호  
(우편번호 32800) 병적민원과 담당자 앞

\* 작성내용 : 계급, 군번, 성명, 용도, 수신방법, 연락처 등

#### 문의처

- |                     |                            |
|---------------------|----------------------------|
| • 육 군 인사사령부 병적민원과   | ☎ 042)550-7353, 7355, 7359 |
| • 해 군 인사참모부 일자리정책과  | ☎ 042)553-1156             |
| • 공 군 인사참모부 전직지원정책과 | ☎ 042)552-1542             |
| • 해병대 인사참모처 군무원과    | ☎ 031)8012-3156            |

### 나. 병적증명서 발급

- 1) 방문신청 : 각 지방병무청 또는 지방행정관서(면·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 신청자는 신분증, 위임자는 위임장 지참

- 2) 인터넷 : 민원 24 홈페이지 ([www.minwon.go.kr](http://www.minwon.go.kr))

#### 문의처

- |                 |                           |
|-----------------|---------------------------|
| • 병무청 대표전화      | ☎ 1588-9090               |
| • 서울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 02)820-4352, 4354, 4338 |
| • 대전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 042)250-4258, 4269      |

## 5. 개인 신상변동 신고 및 조치(필수)

### 가. 주민등록 전입신고

- 1) 신고시기 :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 2) 담당기관 : 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3) 구비서류 : 전입신고서 1부(해당기관 보관), 주민등록증  
\* 공인인증서 소지 시 인터넷(민원 24 사이트)으로 신청 가능

### 나. 건강보험 변동 신청

#### 1) 직장보험 상실 신고

- 가) 상실신고 : 전역 후 14일 이내 소속부대 인사참모 조치  
\* 공본 정책연구관 : 근무행정과 신청/확인
- 나) 상실신고 이후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  
(가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험증 주소지로 우편 발송)

#### 2) 건강보험 변동 신청

구 분		내 용
본인 직장이 있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직장에서 자동으로 신규 등록(직장가입자 처리)</li> </ul>
본인 직장이 없을 경우	가족 직장이 있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앞으로 피부양자 등록</li> <li>* 피부양자 등록 소득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세 과세액 : 5.4억 원 이하, 또는 5.4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경우 연소득 1,000만 원 이하</li> <li>- 연금·근로·기타소득 합계액이 연 3,400만 원 이하</li> <li>-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li> <li>-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주택임대소득 제외)</li> </ul> </li> </ul>
	가족 직장이 없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li> <li>* 현역 복무 시 건강보험료보다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많이 부과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 제도 이용</li> </ul>

#### 3)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경우

##### 가) 부양요건

-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배우자의 직계비속만 인정
- (2)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되,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 중 소득·재산·부양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나) 소득요건 : 금융·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 등 합산 연간 3,400만 원 이하

구분	내용
사업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li> <li>•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주택임대소득 제외)</li> <li>•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 없이 연간 소득 500만 원 이하</li> <li>• 기혼자는 부부 모두 해당되어야 인정</li> <li>• 구비서류 : 직장가입자격취득신고서 1부</li> </ul>

다) 재산요건

(1)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 인정, 재산과표 5.4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만 인정

(2) 형제자매 : 재산과표 1.8억 원 이하만 인정

4) 임의계속가입 제도

가) 전역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보험료가 많이 산정될 경우, 본인 신청에 의해 전역일로부터 3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제도  
\*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보험료 비교 후 신청

나) 신청방법 : 본인이 건강보험공단지사 방문 신청

다) 신청기한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보험료를 고지 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라) 신청대상 : 본인 및 피부양자(직장가입자와 동일)

마) 보험료산출 :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연도별 보험료율+소득월액 보험료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다. 군 이동전화 해지

1) 관련 근거

- **군사보안업무훈령 제4절 제115조(개인소유 정보통신장비 통제)**  
⑦항 간부 개인용 군 이동전화 가입자 전역·퇴역 등으로 군 이동전화 보유 자격 상실 시 신분변동 1개월 이내에 군 이동전화 해지 조치
- **군 이동전화 운용지침('14. 5. 1.) 제4장 제16조 ①,②항(일반용 전화번호 회수)**  
개인용 군 이동전화 가입자가 전역, 퇴직 등으로 인하여 가입자격을 상실한 경우, 신분변동 후 1개월 이내에 군 이동전화 대리점으로 통보하여 전화번호 반납

**문의처**

• 각 지역 군 이동통신 대리점

## 6. 제 퇴직금 및 각종 급여 수령

### 가. 제 퇴직금 수령

구분	급여명	지급부서	지급시기
정상 전역	명예전역수당	국군 재정관리단	• 전역일 (전역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
	퇴직수당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 전역 익월 10일 지급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휴일인 경우 그 전일)
	퇴역연금		• 매월 25일 지급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휴일인 경우 그 전일)
상이 전역	장애보상금	국군재정관리단	• 청구 / 심사결정 후
	공무상요양비	의무사	• 청구 / 심사결정 후
	보훈연금	보훈처	• 청구 / 심사결정 후
순직	사망보상금 보훈연금	보훈처	• 청구 / 심사결정 후
	사망조의금 퇴직수당 유족연금	국군 재정관리단	• 청구 후 25일 지급 (1~15일 접수분) • 다음 달 10일 지급 (16~말일 접수분)

### [ 형벌 / 징계에 의한 퇴직금 제한사항 ]

구분	제한사항			비고
	연금	일시금	퇴직수당	
내란, 외환, 반란, 이적의 죄 등	전액 미지급	전액 미지급	전액 미지급	기여금 반환
고의에 의한 질병, 부상, 재해	전액 미지급	전액 미지급	전액 미지급	기여금 반환
복무 중의 사유로 인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실형 선고)	50% 지급	50% 지급	50% 지급	
선고유예	전액 지급	전액 지급	전액 지급	유예기간 중형 확정시 50% 환수
불기소 처분	전액 지급	전액 지급	전액 지급	
부적격 전역	전액 지급	전액 지급	전액 지급	
파면	50% 지급	50% 지급	50% 지급	
해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에 의한 징계로 해임)	75% 지급	75% 지급	75% 지급	일반해임 전액 지급
강등	전액 지급	전액 지급	전액 지급	
정직	전액 지급	전액 지급	전액 지급	

문의처

•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 02) 3146-6481 ~9

## 나. 연가보상비/급식비 청구·지급

### 1) 연가보상비

가) 전역 전 개인별 사용일수, 제외기간 등을 계산하여 미 실시 기간만큼 환급

나) 연가보상비 계산

(1)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 봉급액 × 86% × 1/30 × 연가 보상일수(10일 이내)

(2)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가)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동일 방법(연가 잔여일수가 10일 이상 남은 자에게 5일 보상)으로 지급

(나)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 봉급액 × 86% × 1/30 × 연가 보상일수(해당 연도 연가 실시일수와 연가보상비 지급일수를 제외한 연가 잔여일수) - 6월 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

(3) 연가 보상일수 : 미사용 연가일수 × (12 - 제외기간) × 1/12

(4) 지급 제외자 : 파면, 제적, 부적격, 자살, 강등

(5) 기타 : 국내·외 교육기간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제외

\* 초·고급반, 육대, 국방대학교 교육생, 전직지원교육, 기타교육 등

\* 권장연가일수 : '21년 권장연가일수(10일) × [실근무 개월/12월]

※ 유의사항 : 파면, 제적, 부적격, 자살, 강등)으로 전역자 및 국내외 교육기간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2) 급식비 : 후불 지급으로 전역 익월 20일에 개인 통장 자동입금

## 다. 성과상여금

### 1) 지급대상

가) 하사 이상~소장 이하 군인(임기제 부사관 포함)

나) 해당 연도 2개월 이상 근무하고 12월 31일 재직자

다) 해당 연도 2개월 이상 근무하고 연도 중 전역자

\* 20년 연도중에 전역하는 인원도 2개월 이상 근무시 21년 성과상여금 지급

2) 평가 기준 및 계급 적용일 : 10월 31일

3) 지급기준일 : 12월 31일

### 문의처

- 국방부 복지정책과
- 육 군 인사참모부 복지정책과
- 해 군 인사참모부 복지정책과
- 공 군 인사참모부 복지정책과
- 해병대 인사참모처 인력계획과

- ☎ 02)748-6611      군) 900-6611
- ☎ 042)550-1244      군) 960-1244
- ☎ 042)553-1147      군) 910-1147
- ☎ 042)552-1511      군) 920-1511
- ☎ 031)8012-3115      군) 928-3115

## 라. 이사화물 수송비 청구

- 1) 지급대상 : 인사(전역)명령에 의거 지급하며 근속연수, 거리에 따라 가족동반 이사와 단독이사로 구분지원(임관일로부터 5년 미만 근무 후 전역 시 미지급)
- 2) 청구방법 : 이사 후 관계 서류를 첨부해서 소속부대 이사화물수송비 담당 부서에 제출
- 3) 관계서류
  - 가) 이사화물수송비 지급신청서(소속부대 보관)
  - 나) 인사명령지 사본 또는 전역예정 증명서
  - 다) 신·구 거주지가 명시된 주민등록등본      라) 본인 예금통장 사본

## 7. 근로 및 종합소득세 등 신고

### 가. 근로소득세 정산신고

- 1) 정산대상 : 전역 해당 연도 1월 ~ 전역월까지 급여에 대한 정산
- 2) 조치사항 : 추가 제출서류 등 개인 조치사항 없음.
  - \* 급여시스템에 의해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자동 처리
  - \* 추가 정산을 희망할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 혹은 국세청 홈페이지(홈텍스)에서 개별 신고
- 3) 정산결과 : 전역월 급여 지급일(10일)에 환급·추징

#### 문의처

• 국군재정관리단 급여운영과

☎ 02)3146-6453    군)953-6453

### 나. 종합소득세 신고

- 1) 신고대상 : 군인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 \* 타 소득이 없고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신고 제외
- 2) 신고시기 : 과세 대상년도 다음 해 5월('22년 전역자의 경우 '23년 5월 신고)
  - \* 연중전역자의 경우 반드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3) 신고방법 : 인터넷 신고(국세청 홈텍스)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 4) 제출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국군재정관리단 인터넷 민원 신청),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취업업체 및 기관 발행)

#### 문의처

• 국군재정관리단 급여운영과

☎ 02)3146-6453    군)953-6453

• 국군재정관리단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02)3146-6014~6

## 다. 연금소득세 정산신고

### 1) 신고방법

가) 연중적연자 : 퇴직금 청구 시 전역 전 근로소득정산 시의 기본 공제 대상자를 연금소득 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자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여 퇴직급여 신청 시 연금소득으로 연계되므로 연말정산 신고 불필요

\* 단, 추가 공제(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는 12월 말까지 별도신고

나) 연금수급자 : 매년 11월 연금소득 신고 안내서 우편 발송(국군재정관리단)

\* 12월 말까지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로 서류 제출(우편/팩스)

\* 의 인적공제 대상에 변동이 없을 경우 신고 불필요

### 2) 구비서류

가) 연금소득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국방부 군인연금 홈페이지 서식방)

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 3) 연금소득 연말정산 범위 : 인적공제만 해당

\* 기타 공제(의료비, 교육비, 카드사용액 등)는 연금 외 소득(근로, 사업, 이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가능

\* 재취업자(근로소득자)는 부양가족 이종공제가 불가하니 소득액이 많은 곳(재취업장 또는 국군재정관리단)을 선택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

### 4) 정산결과 : 매년 최초 연금 지급일(1월 25일)에 환급·추징

**문의처**

•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 02)3146-6482    군)953-6482

## 라. 퇴직자 재산변동 신고 [정기재산변동신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

1) 관련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변동사항 신고)

2) 신고대상 : 재산등록의무자(대령 이상 장교, 2급 이상 군무원 등)였던 자

\* 단, 6개 업무 분야(국방관련 계약/검수, 방위력개선, 군사시설, 군사법원/ 군경찰, 감사, 수사 분야)로 별도 지정된 부서에 근무하는 중령/군무 3급은 퇴직 전에 의무면제 재산변동신고를 하였으면 퇴직 재산변동 신고의무 없음

3) 신고기간 : 퇴직(전역)일 ~ 퇴직(전역) 후 2개월이 되는 말일까지

\* 퇴직일 이후 10일 이내 '재산등록 안내' 수신 문자 없을 시 담당자에게 유선 통보

\* 매년 1월~2월 퇴직자는 전년도 말일 기준 정기변동신고를 하지 않고 퇴직일 기준 재산신고서만 제출(단, 12월 말까지 전역일 유선 통보 필수)

4) 신고사항 : 전역일 기준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채무 등)의 가액 입력

\* 부동산 및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제출자는 제공된 부동산 및 금융정보를 활용하여 입력

5) 신고요령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하여 신고자 본인의 은행용 공인인증서(또는 범용인증서) 또는 주민등록증 발급일과 PETI에 등록된 본인 명의 휴대폰 번호로 로그인 후 해당 내역을 입력·작성 하며 24시간 제출 가능

\* 신상정보-친족정보-총괄표-변동요약서 작성 후 반드시 '제출' 단계까지 진행하여 '확인' 버튼을 눌러야만 신고서가 제출됨(접수증은 본인 보관)

\* 2016. 6. 30. 개정된 양식의 「금융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시스템에 업로드)에만 퇴직 재산신고 시 금융 및 부동산 정보 제공

6) 위반 시 제재 : 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공직자윤리법」 제24조 제1항)

문의처

• 국방부 감사관실

☎ 02)748-6921~3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문의

☎ 1522 - 4273

## 8. 전직지원금 신청 및 수령

가. 지급대상 :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자)

나. 지급금액(수급 중 취·창업 시 잔여기간 총지급액의 1/2 일시금 지급)

1) 중기(5년 이상~10년 미만) 복무자 :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

2) 장기(10년 이상~19.6년 미만) 복무자 : 월 7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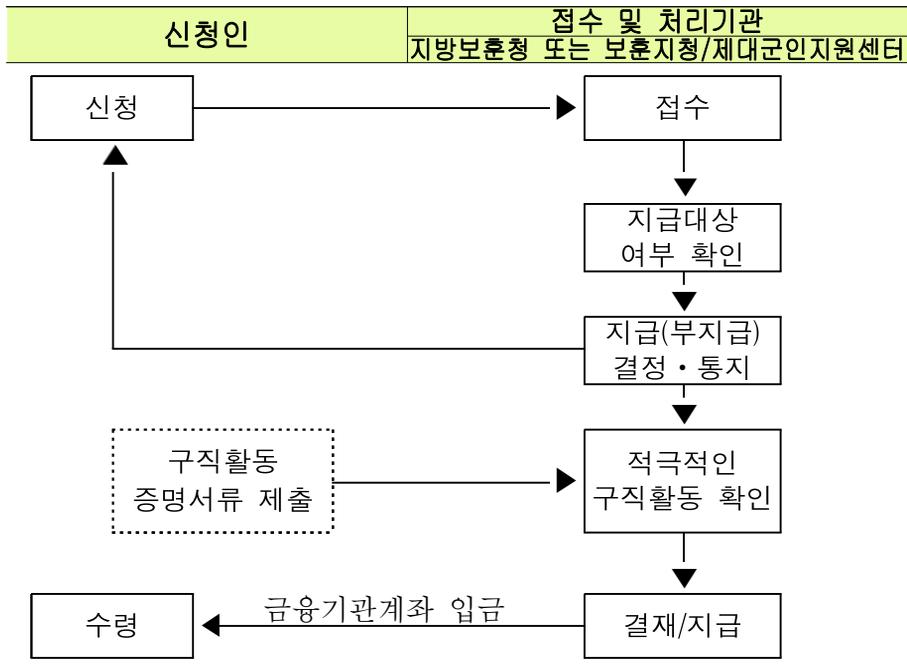
다. 지급제외

1) 전역 6개월 후 지급신청자

2)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등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라. 구비서류 : 지급신청서, 개인정보이용 사전동의서, 예금통장(사본)

마. 신청 및 지급절차



⇒ 지급대상 결정 후 매일 적극적 구직활동 증명서류 제출

**문의처**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대표전화

☎ 1666-9279

## 9. 맞춤형 복지제도 사용

가. 단체보험 : 전역과 동시에 소멸

\* 배우자 및 자녀의 경우 본인의 복무 해당 분기 말까지 보장

나. 복지포인트 : 전역일이 포함된 분기까지 기배정된 복지포인트에 한하여 전역 연도의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문의처**

• 맞춤형복지지원센터

☎ 1661-6400

군)900-4870

## 10. 체력단련장 할인 이용 신청

가. 이용대상 : 19.5년 이상 근속 후 전역(퇴직)한 장교, 준·부사관, 군무원

나. 이용시설 : 국방부 및 각 군 체력단련장

다. 이용절차

- 1) 각 군 복지시설예약체계(모바일 인터넷 웹/PC 홈페이지) 등록
- 2) 복지시설 이용 시 안내에 의거 전역증으로 본인 여부 확인 후 이용

# 제 2 편

내일(My Job)이 있는 삶을 위하여!

- 제1장 전직! 새로운 출발
- 제2장 취업 준비전략 및 군내·외 일자리 현황
- 제3장 취업지원기관별 지원사항
- 제4장 취·창업 정보 제공 사이트
- 제5장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 제1장 전직! 새로운 출발

## 1. 전직계획 수립하기

### 가.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내부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실성(장기근속)과 Loyalty</li> <li>• 강인한 체력과 건전한 사고</li> <li>• 방침 준수 및 Process적 사고</li> <li>• 추진력과 리더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즈니스 Mind 부족</li> <li>• 상명하복 및 FM 준수 : 고정관념(틀)</li> <li>• 보수성향 및 '甲'의 Mind 내재</li> <li>• 軍 이외의 인맥에는 취약</li> </ul>
	기회요인(Opportunity)	위협요인(Threat)
외부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역예정군인 취업 지원 강화</li> <li>• 고령 인력의 재취업 확대 정책</li> <li>• 임금피크제 :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li> <li>• 선/후배, 동기간의 인맥(전우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위상의 점진적 하락세</li> <li>• 10人1色 문화에 익숙 → 적응에 회의적</li> <li>• 상대적 고연령</li> <li>• 상시 구조조정 및 비정규직 증가</li> </ul>

- 1) 환경의 변화는 물론 신분의 변화를 동반하는 전역예정간부의 취업전략은 통상 일반 직장인의 재취업 전략과 상당 부분 유사하나 단기 실행 가능한 전직목표 설정이 중요함
- 2) 군 간부로서 차별화된 SWOT(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분석을 통한 전략을 수립

### 나. 전역예정간부의 취업전략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자기진단	정보조사	How Fit
체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성(역량)과 경험(업적)</li> <li>• 성격과 태도(성향)</li> <li>• 가치관</li> <li>• 흥미와 관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한 자질과 역량(인재상)</li> <li>•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 희망 업종 → 회사 선택</li> <li>• 근무조건(지역, 보수 등)</li> </ul>	<p>자신의 희망과 능력, 그리고 현실에 비추어 최적의 방향으로 설계</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b>Action Plan</b></p>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적성 검사</li> <li>• MBTI/DISC/버크만 등</li> <li>• SWOT 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디어</li> <li>• 인터넷</li> <li>• 커리어 체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o Play, No Error!</li> <li>• 이유 → 되는 방법</li> <li>• to be = to do</li> </ul>

## 다. 직업심리검사(직업흥미검사)

### 1) 개요

- 가) 직업과 관련된 관심 또는 활동에 참여하려는 경향성을 측정하는 도구
- 나) 직업 성공을 예언하기 위한 검사로서 산업체에서 인사 결정 자료로 활용
- 다) 구직자 및 전직예정자의 교육계획과 진로지도, 자기 이해 등의 목적 활용

### 2) 한국고용정보원 제공 검사도구

- 가)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업심리검사는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http://www.work.go.kr))를 통해 무료 제공
- 나) 개인의 능력과 흥미, 성격 등 심리적 특성이 각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수준 및 특성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해 직업탐색 지원
- 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도구는 총 13종이 있으며, 각 검사의 안내사항을 참조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검사 실시
- 라) 진로 및 직업 선택에 있어 '직업선호도 검사'가 가장 널리 활용 중

### 3) 직업선호도 검사 : 워크넷([www.work.go.kr](http://www.work.go.kr))

- 가) 검사 비용 : 무료
- 나) 검사 유형 : S(Short, 25분)형과 L(Long, 60분)형 중 선택 가능
- 다) 검사 / 진단내용
  - (1) 개인의 흥미유형 및 성격, 생활사 특성
  - (2) 좋아하는 활동, 관심 있는 직업, 선호하는 분야 등
    - \* 검사 / 진단내용을 분석하여 직업흥미유형에 적합한 직업을 안내
- 라) 검사 방법 : 온라인과 지필 검사 모두 가능
  - (1) 온라인검사 :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실시

워크넷 홈페이지 > 직업·진로 > 직업심리검사 실시 > 성인대상 심리검사  
> 직업선호도 검사 선택 > 검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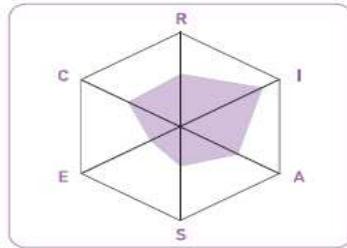
- (2) 지필 검사 : 가까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 신청, 내방 검사

마) 결과 예시

이름	홍길동	성별	남
나이	55세	검사실시일	0000년 00월 00일

□ 직업흥미검사 결과

※ 홍길동님의 대표 흥미코드는 'IA'입니다.



- ... R (현실형) \_ 실행 / 사물지향
- ... I (탐구형) \_ 사고 / 아이디어
- ... A (예술형) \_ 창조 / 아이디어
- ... S (사회형) \_ 자선 / 사람
- ... E (진취형) \_ 관리 / 과제
- ... C (관습형) \_ 동조 / 자료

• 직업 흥미 유형별 점수

당신의 흥미코드 : IA (탐구형/예술형)						
구분	현실형(R)	탐구형(I)	예술형(A)	사회형(S)	진취형(E)	관습형(C)
원점수	15	19	15	12	9	12
표준점수	46	53	58	46	54	51

> 원점수

원점수는 스스로가 좋아하거나 싫어한다고 주관적으로 여기는 흥미 정도입니다.

> 표준점수

표준점수는 타인과 비교하였을 때의 흥미수준을 말하며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흥미검사 해석

흥미검사 결과에서는 개인별 흥미코드, 흥미유형별 원점수, 표준점수, 흥미의 육각 모형이 제공됩니다. 다음의 해석방법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결과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흥미의 육각모형

		육각형 모양	
		한쪽으로 찌그러진 모양	정육각형에 가까운 모양
육각형 크기	크다	특정 분야에 뚜렷한 관심을 보입니다. 흥미가 잘 발달되어 있고 안정적인 형태입니다. 성격, 능력, 경험 등이 관심분야와 조화로운지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심분야가 폭넓은 경우입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 호기심이 있지만, 자신의 진정한 흥미분야가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능력, 성격, 경험 등을 고려하여 흥미분야를 좁혀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다	특정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크지 않은 편입니다. 또한 대체로 어떤 분야에 흥미가 있는지 탐색이 더욱 깊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 적극적 탐색을 해 봅시다.	뚜렷한 관심분야가 없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등과 같은 자기이해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과거에 즐거웠거나 잘할 수 있었던 작은 경험부터 떠올려 봅시다.

4) 버크만 검사 : 버크만코리아 ([www.birkmankorea.co.kr](http://www.birkmankorea.co.kr), 02-2676-0400)

가) 검사 비용 : 유료 \* 베이직리포트 일반형 11,000원

나) 검사 / 진단내용

- (1) 개인의 관심분야와 선호 행동, 행동 강점, 받고자 하는 지원 및 동기
- (2) 문제 및 직무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 등

다) 검사 방법 : 온라인과 지필 검사 모두 가능

- (1) 온라인검사 : 버크만코리아 신청 후 메일수신, 링크 연결 검사
- (2) 지필 검사 : 버크만코리아 신청 후 안내에 따라 내방하여 지면으로 검사

라) 결과 예시

**Organiz. Focus Overview**

---

이 보고서는 다음 사람에 대해 작성되었습니다.  
**JOHN PUBLIC**  
**JM CAREER**



**B00070**

**조직지향점(ORGANIZATIONAL FOCUS)**

조직지향점(Org)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잠재적 가능성이 높은)근무 환경과 개인의 업무방식을 보여줍니다. 조직지향점 결과는 각 개인이 네 가지 다른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얼마나 유사성이 있는가를 확인하여 산출됩니다.

조직지향점:JOHN PUBLIC



조직지향점 세부 내용 (색깔별 표시)

**빨간색- 운영/기술**

---

- \* 주로 진술에 초점을 두며,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접근을 강조하는 근무 환경.
- \* 실행을 강력히 강조하고 결과물에 중점을 두어 업무 수행.

**초록색- 영업/마케팅**

---

- \* 판매, 판촉, 타인을 지도하고 동기 유발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근무환경.
- \*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업무 수행.

**노란색- 관리/회계**

---

- \* 표준, 일관성, 질적 완성도를 강조하는 근무환경.
- \* 효율적인 절차와 정책에 기초하여 업무 수행.

**파란색- 기획/전략**

---

- \* 기획, 혁신 및 창조를 강조하는 근무환경.
- \* 주로 전략에 강한 초점을 두는,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업무 수행.

## 라. 전직계획서 작성

### 1) 전직계획서 작성의 필요성

- 가) 전직에 필요한 제반 요소를 확인
- 나) 구직 장애 요소를 파악
- 다) 효율적인 전직활동 실행으로 빠른 기간 내에 전직목표 달성

### 2) 전직계획서 작성의 효과성

- 가) 꼭 필요한 것과 바라고 있는 것의 차이점 인식
- 나) 전직의 원칙과 결정을 내려주는 것
- 다) 변화에서 오는 불안을 해소시키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

### 3) 전직계획서 작성 시 고려 요소

- 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가진 자산을 확인하는 것은 전직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
- 나) 어디로 갈 것인가?  
현재 나의 위치와 환경을 이해하여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
- 다) 무엇을 하고 싶은가?  
기준과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택과 결정하기

### 4) 전직계획서 활용 방법

- 가) 전직목표와 준비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과 검토 가능
- 나) 전직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자들과의 의사소통 도구로 활용
- 다) 전직활동과정의 오류에 대한 점검기준

### 5) 전직계획서 작성 순서

- 가) 정보수집 및 구조화 : 변화관리요소, 환경요소, 개인요소, 전직활동의 프로세스, 성공 전직 사례 등 전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수집 정리
- 나) 작성 : 현재 상황 분석, 선택직업 평가, 자기가치분석, 전직목표분석 전직 활동계획, 전직 사명서로 구성하여 작성합니다. 작성 시에는 본인 이 직접 작성하고, 사소한 내용이라도 생략하지 말고 기록
- 다) 편집(수정·보완) : 전직계획서는 필요시 언제든지 수정·보완이 가능하며, 작성 이후 최소 3명에게 조언 요청

# 현재 상황 확인

sample

구분	주 제	내 용	평 가				
환경이해	고용시장	- 전직할 분야에 대한 고용시장 정보 수집이 이루어졌는가?	1	2	3	<b>4</b>	5
	직업 이해	- 전직 목표(분야)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졌는가?	1	2	<b>3</b>	4	5
	군과 기업	- 군과 기업의 문화 차이를 이해했는가?	1	<b>2</b>	3	4	5
자기이해	군 경력과 연관성	- 자신의 군 경력과 전직 분야 연관성을 이해하였는가?	1	2	3	<b>4</b>	5
	잘하는 것	- 자신의 강점을 이해하였는가?	1	2	3	4	<b>5</b>
	직업가치관	- 자신의 직업 가치관이 무엇인지 이해하였는가?	1	2	3	<b>4</b>	5
	흥미, 성향	- 자신의 흥미, 성향을 이해하였는가?	1	2	<b>3</b>	4	5
	구직 장벽	- 자신의 구직 장벽을 이해하였는가?	1	2	<b>3</b>	4	5
준비정도	전문능력	- 전직 목표달성을 위한 전문능력을 갖추었는가?	1	2	3	<b>4</b>	5
	자신감	- 전직 목표달성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가?	1	2	3	<b>4</b>	5
	목표 수립	- 전직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1	2	<b>3</b>	4	5
	실천력	- 전직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을 실천하였는가?	1	2	3	4	<b>5</b>

### [ 해 설 ]

- <현재상황 확인>은 환경 이해(3문항), 자기 이해(5문항), 준비 정도(4문항)의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질문에 자기 자신으로부터 한발 물러서 가급적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평가해 봄으로써 전직을 준비하기 전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느 지점인지 확인하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 본 평가는 전직준비자인 자신의 절대적인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상대적인 평가의 지표로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 답변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좌편향(숫자가 작음)일수록 준비나 수준이 미흡하고 우편향(숫자가 큼)일수록 준비나 수준이 양호하다는 의미입니다.

# 선택 직업 평가

sample

※ 자신이 원하는 성과를 얼마나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매우 그럴 것이다 3 / 어느 정도 그럴 것이다 2 /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1

구 분	전직 목표 1	전직 목표 2	전직 목표 3
	취업	귀농/귀촌	창업
배우자	3	1	2
자 녀 (고등학생 이상)	3	2	1
부모님	3	2	2
재정(연봉)	2	2	3
직책/권한	2	3	3
자신감	3	3	1
미래 비전	2	3	3
합 계	18	16	15

## [ 해 설 ]

- <선택직업 평가>는 현재 상황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이 희망하는 전직형태(취업, 창업, 귀농/귀촌 등) 혹은 직업군(사무직, 관리직, 연구직, 교수직 등)에 대해 생각해 본 것 중에서 3순위까지 선택하는 것으로서, 가급적 세분화하여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평가는 전직준비자인 자신의 전직 및 직업형태 선택에 대해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님)들의 예상 지지도 혹은 만족도와 본인이 생각하는 만족도(보수, 지위, 자신감, 미래비전 등)에 대하여 3점 척도로 평가하여 합산하는 것입니다.
- 점수합산 결과 수치가 가장 높은 목표1(취업)이 본인과 가족들에게 높은 지지도 및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전직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며, 그다음 성공률은 목표2(귀농/귀촌)와 목표3(창업) 순입니다.

## ■ 나는 누구인가? (자기 분석)

문제해결능력, 설득력, 도전정신, 관계형성능력, 아이디어 조직화, 직접 소통	교육학 석사	인사관리, 인력 운영 전시계획 수립
	<b>오 성 공</b>	
중등교사, 심리 상담사, 코칭 리더십 프로그램	CEO 동기	조직화, 친근함, 결단력, 사려 깊다, 솔직하다



## ■ 내가 가지고 있는 것

### 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및 강점

- 문제해결능력, 기획력, 성과 관리, 의사소통 능력
- 설득력, 책임감, 전략적 사고·아이디어 조직화, 직접 소통 선호

### ② 나의 능력

1. 학위 및 전공 : 교육학 석사

2. 자격 및 교육 이수 사항

- 중등교사 2급 자격증·심리상담사 자격증·코칭 리더십 프로그램 교육 이수

3. 경력 및 경험

- 기획 업무 총괄
- 국회 담당 전시계획 수립
- 정보 및 보안업무
- 인력 모집 및 운영

### ③ 나의 성향(성격)

- 실제적인 문제에 대면했을 때 결단력이 있음
- 새로운 업무에 대해 조직화하는 것에 소질이 있음

### ④ 활용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

- CEO 동기
- 컨설턴트



## ■ 무엇을 채워야 하는가?

- 군 경력을 어떻게 사회화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
- 민간기업의 시스템 경험 부족 → 경험의 기회 필요(인턴제 등 활용 가능 방안 모색)

### [해설]

- <자기가치 분석>은 자기분석의 도구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및 강점, 능력(학위 및 전공, 자격 및 교육, 경력 및 경험 등), 성향 및 성격, 인적 네트워크 등 분야별 정보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앞으로의 전직에 있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을 도출해 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 다음 단계인 <전직목표 분석>(직무분석)과의 상호비교를 통하여 효과적인 전직을 위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실현가능성이 높은 전직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전직 활동 계획

sample

최 종 전직 목표	예비전력 담당관
--------------	----------

단 계	단기 목표	목표달성을 위해 해야 할 일	목표달성 기간
1단계	1차 시험 준비 (서류, 체력, 면접)	1. 응시원서 작성 2. 체력검정 대비 운동 3. 모의 면접	1개월
2단계	2차 시험 준비 (필기시험)	1. 4개 과목 - 과목별 1개월 내 정독 - 모의고사 실시 - 오답노트 작성	8개월
3단계	자격증 취득 / 정보화 능력 향상	1.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취득 2. 워드프로세서 1급 취득 3. 컴퓨터 학원 수강	3개월



단 계	장기 목표	목표달성을 위해 해야 할 일	목표달성 기간
1단계	가족 여행	1. 여행 일정 및 장소 선택 2. 가족과의 대화 3. 경비 마련	1년
2단계	악기 배우기	1. 배우고 싶은 악기 선택 2. 악기 강습 기관 확인 3. 적절한 여가시간 확보	1년 6개월
3단계	대체요법	1. 건강 서적 탐독 2. 주기적인 산행으로 약초 연 구	10년

## [ 해 설 ]

- <전직 활동 계획>은 현재 상황 확인 - 선택직업 평가 - 자기가치 분석 - 전직목표 분석을 거쳐 온 마지막 단계로서 앞으로 수행할 전직 활동에 대해 장·단기 목표설정을 비롯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해야 할 일, 목표달성 기간 등을 설정하여 자신의 전직계획서 작성을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 단기목표는 지금부터 향후 1~2년 사이에 달성 가능한 일들로 설정하고, 장기목표는 평생을 통해 이루고 싶은 일들을 버킷리스트(bucket list)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으로서 목표달성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목표달성 기간을 현실화할수록 실현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2. 전직지원교육 개념

가. 목적 : 전역예정간부들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전직역량 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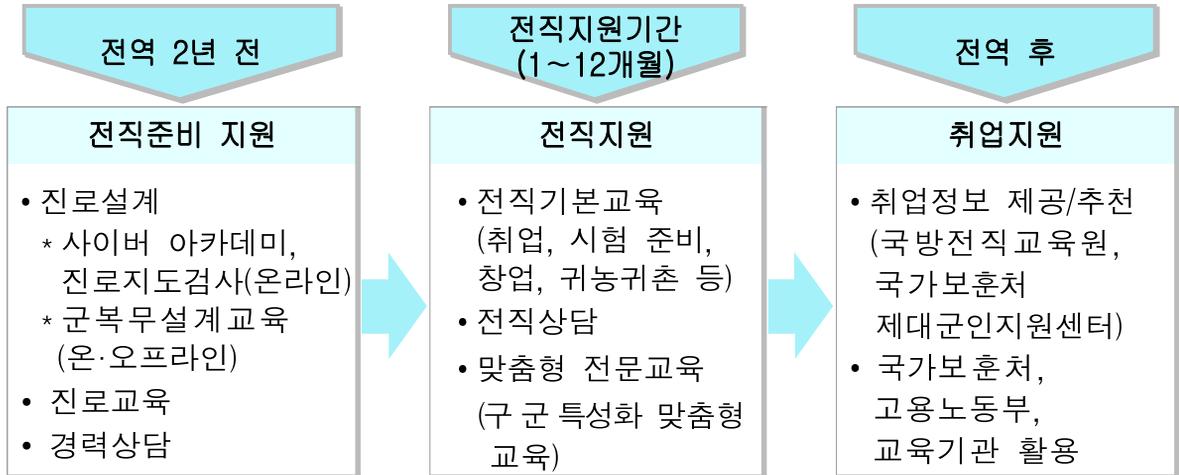
나. 관련법령

- 1) 「군인사법」 제46조의 2(전직지원교육)
- 2)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 2, 제60조의 3
- 3) 군 전직 및 취업지원에 관한 훈령

다. 기본방향

- 1) 전직지원교육을 통한 사회적응 능력 및 전문지식 배양
- 2) 진로설정 및 목표 분야별 세부적 전직역량 향상
- 3)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및 단계별 지원

라. 단계별 지원 / 교육 방향



1) 전역 후 성공적인 전직을 위해 단계별 교육 지원

가) 중·장기이상 복무자(5년 이상 복무) : 1차 경력상담(구직등록 시) → 진로설계 → 진로교육 → 2차 경력상담 → 전직기본교육 → 전직상담 / 맞춤형전문교육 순

- \* 중기복무자(5~10년 미만 복무자)는 전직지원기간 입교 전에 진로설계, 진로교육, 전직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전직지원기간에는 취·창업 활동 보장
- \* 전직컨설팅은 구직카드 등록 시(1차 경력상담) → 진로교육 이수 시(2차, 희망자 경력상담) → 기본교육 이수 시(희망자, 전직상담) 순으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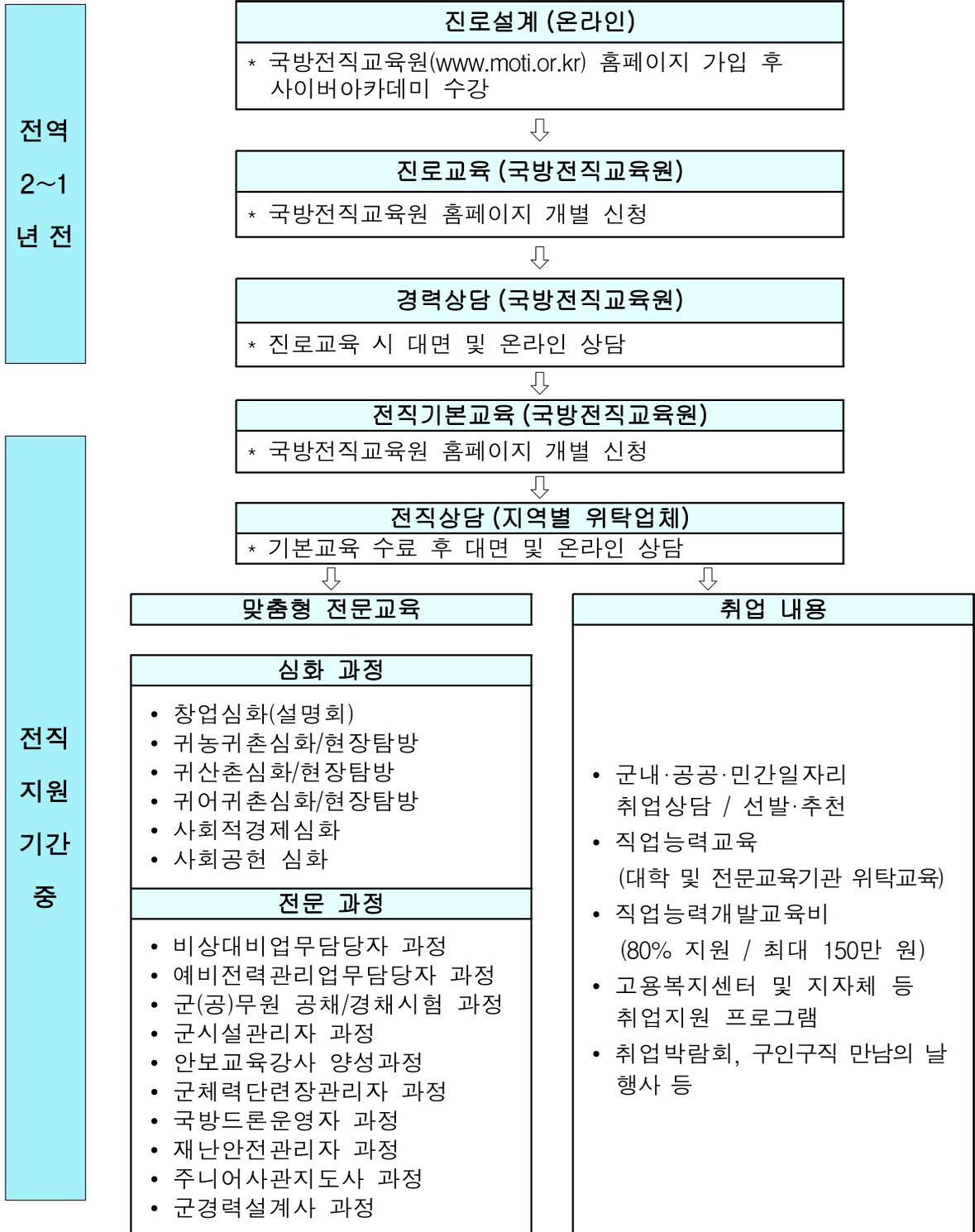
나) 단기복무자(5년 미만 군 복무 장병 중 희망자) : 진로설계 → 찾아가는 진로도움교육 → 1:1 취업(진로) 상담

2) 개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상시 학습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 강화

- \* 국방전직교육원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버아카데미, 나라사랑포털, M-kiss 등

### 3. 장기복무자(10년 이상 복무자) 전직지원교육

#### 가. 지원절차



나. 진로설계 교육

- 1) 목적 : 군 복무 중 온라인 및 소집교육을 통해 군복무설계와 전역 후 진로에 대한 준비 및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 교육
- 2) 방법
  - 가) 온라인 교육 :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www.moti.or.kr](http://www.moti.or.kr)) 사이버아카데미, 진로지도검사
  - 나) 군복무설계 교육 : 초군반/초급반, 고군반/중급반 등 각 군 병과학교
- 3) 교육내용
  - 가) 직업 가치관, 직업선호도 검사, 창업 진단, 구직준비도 검사
  - 나) 생애설계, 전직준비전략, 취업 준비 기본, 기업/전직성공 선배 인터뷰 등

다. 진로교육

- 1) 목적 : 군 복무 중 개발·향상된 개인별 직무역량을 확인하고 전역 이후에도 군 경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력목표 탐색·수립
- 2) 장소/기간 : 국방전직교육원(경기 성남)/2박 3일 (소집/온라인)
- 3) 교육내용

구 분	1일 차	2일 차	3일 차
오 전	교육 등록/접수	진단을 통한 자기분석	진로목표설정 및 진로계획서 작성
	과정 소개		
오 후	산업변화에 따른 일자리 변화	진로탐색을 위한 정보수집	과정설문 경력상담
	경험기반의 강점 발견하기	(장기) 휴먼네트워크 활용 (중기) 자격증 정보 탐색	

라. 경력상담 지원

- 1) 목적 : 구직등록 시부터 초기상담을 통해 조기에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진로 목표에 부합한 경력설계가 이루어지도록 대면 및 온라인 상담 지원
- 2) 운영 계획
  - 가) 대상 : 구직등록자 및 진로교육 참여자
  - 나) 신청 : 구직등록 시(구직자 전원) / 진로교육 시(희망 신청)
- 3) 상담 내용
  - 가) 구직등록 후 개인경력, 자격, 진단 등을 통한 진로방향 및 목표설정 지원
  - 나) 진로목표에 부합한 역량개발, 경력설계 등 추진 상담

마. 전직기본교육

- 1) 목적 : 중·장기복무 전역예정간부의 전직목표(취업, 창업, 귀농귀촌 등)에 맞춤형으로 지원되는 구직역량 향상과정
- 2) 장소 / 기간 : 국방전직교육원 (경기 성남) / 2박 3일(소집/온라인)
- 3) 교육내용(목표 분야별 과정, 1개 과정만 선택 가능)

구 분	내 용				
<b>군 관련직 시험 준비 과 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및 군무원 취업을 목표로 하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응시자격, 시험 준비 노하우 등 교육</li> <li>• 세부 편성 : 연 3회 / 회차별 2박 3일</li> </ul>				
	구분	1일 차	2일 차		3일 차
	오전	등록 및 과정 소개 일(job)과 변화	시험 분야별 분반(1일)		지원서류작성/ 성공면접 노하우
	오후	자기 이해 전직지원제도 안내	비상대비 업무담당	예비전력 관리업무 담당	군무원 군인연금 퇴직금 활용방안 설문/수료
<b>일 반 취업 준비 과 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기업 및 기관 등에 취업을 목표로 하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기초전직준비 및 취업 준비 전략 등을 교육</li> <li>• 세부 편성 : 연 32회(장교 16회, 준부사관 16회) / 회차별 2박 3일</li> </ul>				
	구분	1일 차	2일 차		3일 차
	오전	등록 및 과정 소개 일(job)과 변화	직업정보 탐색		성공 면접 방법/ 면접 커뮤니케이션
	오후	자기 이해 전직지원제도 안내	입사지원서 작성법/ 작성 실습		군인연금 퇴직금 활용방안 설문/수료
<b>창 업 사회적경제 과 정 (중장기복무자 통합과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을 전직목표로 하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관련 지식 및 정보 제공</li> <li>• 세부 편성 : 연 6회 / 회차별 2박 3일</li> </ul>				
	구분	1일 차	2일 차		3일 차
	오전	등록 및 과정 소개 정부지원정책 안내	소상공인 창업		기술창업
	오후	창업의 이해 전직지원제도 안내	프랜차이즈 창업 사회적 경제 창업		창업계획서 작성법 창업자금 컨설팅 설문/수료
<b>귀 농 귀 산 귀 어 (중장기복무자 통합과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농·귀어·귀산을 전직목표로 하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관련 지식 및 정보 제공</li> <li>• 세부 편성 : 연 2회 / 회차별 2박 3일</li> </ul>				
	구분	1일 차	2일 차		3일 차
	오전	등록 및 과정소개 귀농귀촌 지원정책 및 사기피해 예방	귀농작물 선택과 농작물 안전관리		농지제도와 농지은행 이해
	오후	귀농창업의 이해 전직지원제도 안내	귀농귀촌 마케팅 전략 수립 귀어귀촌 지원정책 안내		귀농창업 계획과 설계 귀산촌 지원정책 안내 설문/수료

바. 전직상담 지원

1) 목적 : 장기복무간부들은 장기간 사회와 단절되어 있어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지원이 절실하므로 이를 위해 경력상담과 연계하여 전직 지원기간에 성공적인 취·창업 등이 이루어지도록 전문컨설턴트에 의한 1:1 맞춤형 상담 지원

2) 운영 계획

가) 대상 : 장기복무자로 전직기본교육을 이수한 자(구직등록자)

나) 신청 : 국방전직교육원으로 수시 신청

다) 권역 : 3개 권역

구 분	경기북부·서울·강원	경기남부·대전·호남	부산·영남
전직센터	의정부, 서울, 원주	수원, 대전, 광주	창원, 부산, 대구

라) 진행방법 : 집중상담프로그램, 개인 상담,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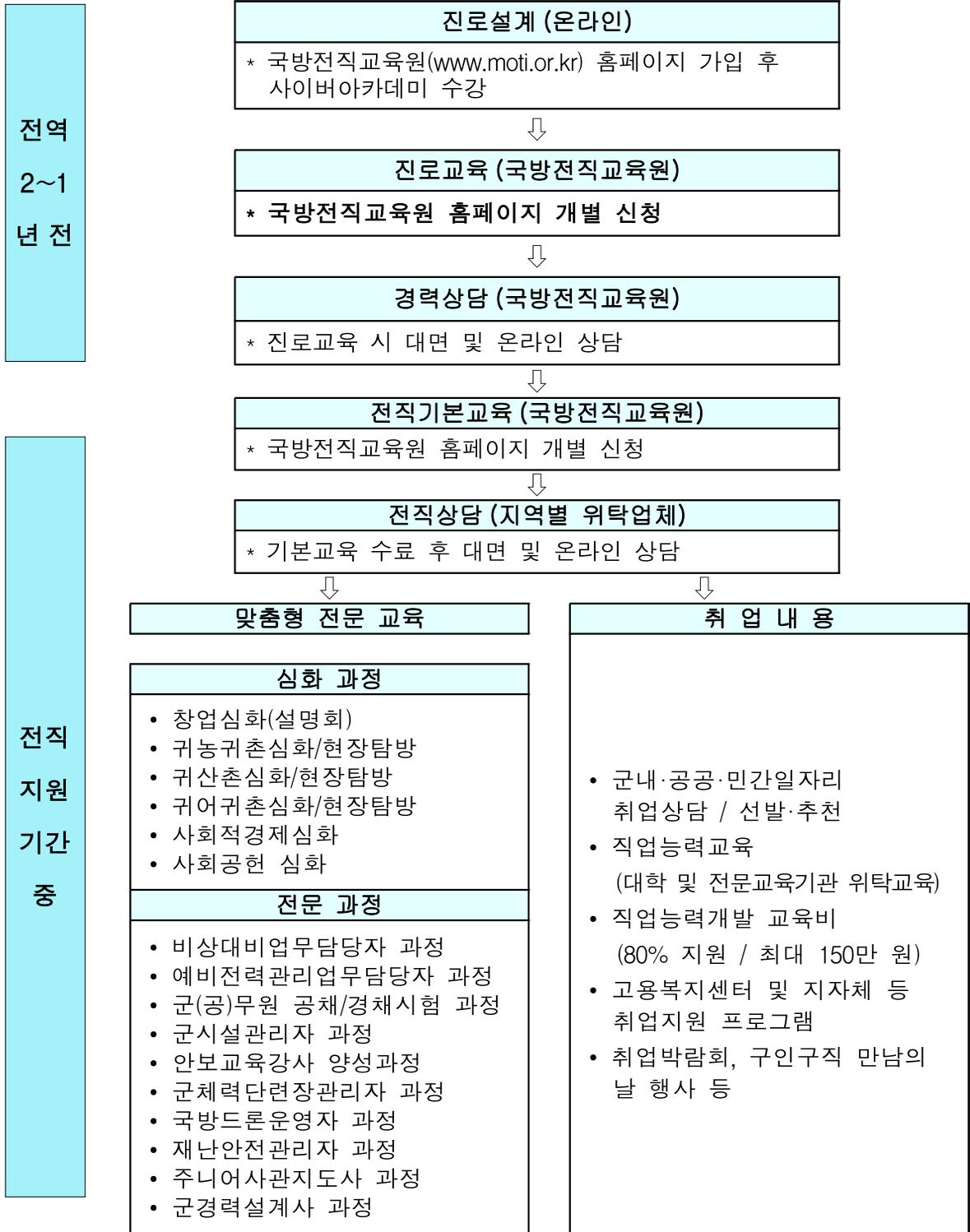
※ 집중상담프로그램 내용

구분	공통 과정	권역별 특화 과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직정보 활용 실습</li> <li>• 구직서류 작성 실습</li> <li>• 면접 실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야별 직업 및 자격정보 탐색</li> <li>• 유형별 실전 면접 및 평가</li> <li>• 전직준비 계획서 작성 등</li> </ul>
비고	교육 전·후 개인 및 그룹 상담	

사. 맞춤형 전문교육 : '4. 중기복무자 지원교육' 참고

## 4. 중기복무자(5년 이상 ~ 10년 미만 복무자) 전직지원교육

### 가. 지원절차



나. 진로설계 교육

- 1) 목적 : 군 복무 중 온라인 및 소집교육을 통해 군복무설계와 전역 후 진로에 대한 준비 및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 교육
- 2) 방법
  - 가) 온라인 교육 :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www.moti.or.kr](http://www.moti.or.kr)) 사이버아카데미, 진로지도검사
  - 나) 군복무설계 교육 : 초군반/초급반, 고군반/중급반 등 각 군 병과학교
- 3) 교육내용
  - 가) 직업 가치관, 직업선호도 검사, 창업 진단, 구직준비도 검사
  - 나) 생애설계, 전직준비전략, 취업 준비 기본, 기업/전직성공 선배 인터뷰 등

다. 진로교육

- 1) 목적 : 군 복무 중 개발·향상된 개인별 직무역량을 확인하고 전역 이후에도 군 경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력목표 탐색·수립
- 2) 장소/기간 : 국방전직교육원(경기 성남)/2박 3일 (소집/온라인)
- 3) 교육내용

구 분	1일 차	2일 차	3일 차
오 전	교육 등록/접수	진단을 통한 자기분석	진로목표설정 및 진로계획서 작성
	과정 소개		
오 후	산업변화에 따른 일자리 변화	진로탐색을 위한 정보수집	과정설문 경력상담
	경험기반의 강점 발견하기	(장기) 휴먼네트워크 활용 (중기) 자격증 정보 탐색	

라. 경력상담 지원

- 1) 목적 : 장기복무간부들의 사회진입을 위하여 군 복무 중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기에 진로목표 설정을 위한 온라인 및 대면 상담 지원
- 2) 운영 계획
  - 가) 대상 : 구직등록자 및 진로교육 참여자
  - 나) 신청 :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 수시 신청
- 3) 컨설팅 내용
  - 가) 구직등록 및 진로교육 이수 후 개인 자격, 학위, 경력 등 작성
  - 나) 개인별 자격과 전문성, 경력을 고려하여 진로 분야 안내 및 설정

마. 전직기본교육(과정형 교육과정)

- 1) 목적 : 중·장기복무 전역예정간부의 전직목표(취업, 창업, 귀농귀촌 등)에 맞춤형으로 지원되는 구직역량 향상과정
- 2) 장소/기간 : 국방전직교육원 (경기 성남)/2박 3일(소집/온라인)
- 3) 교육내용 (목표 분야별 과정, 1개 과정만 선택 가능)

- 중기복무자 전직기본교육

구 분	내 용			
<b>공(군)무원 시험 준비 과 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 및 군무원 취업을 목표로 하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공무원 및 군무원 채용정보, 공무원(군무원) 준비 노하우 등을 교육</li> <li>● 세부 편성 : 연 12회 / 회차별 2박 3일</li> </ul>			
	구 분	1일차	2일차	3일차
	오 전	등록 및 과정소개	자기기술서·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성공적인 면접방법
		일반취업시장의 이해와 변화방향 설정		
	오 후	채용직렬 및 업무 분석	필수·공통과목 출제유형 분석	재무설계
군·공무원 전형방법 안내		분야별 가산점제도 공략	설문/수료	
<b>일반취업 과 정 (일반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기업(기관)의 사무직, 공공기관, 관리직 등 일반직 취업을 목표로 하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기초전직준비 및 취업 준비전략 등을 교육</li> <li>● 세부 편성 : 연 15회 / 회차별 2박 3일</li> </ul>			
	구 분	1일차	2일차	3일차
	오 전	등록 및 과정소개	입사지원서 작성법/실습	성공적인 면접방법
		채용동향 및 변화방향 설정		
	오 후	직무 및 기업분석	개인역량분석	재무설계
채용정보 탐색 실습			근로기준법	
<b>일반취업 과 정 (기술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기업(기관)의 IT, 항공, 선박, 토목/건축 등 기술직 취업을 목표로 하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기초전직준비 및 취업 준비전략 등을 교육</li> <li>● 세부 편성 : 연 8회 / 회차별 2박 3일</li> </ul>			
	구 분	1일차	2일차	3일차
	오 전	등록 및 과정소개	입사지원서 작성법/실습	성공적인 면접방법
		직업세계의 변화 및 채용동향		
	오 후	기술직 직무·기업 분석	개인 역량 분석	재무설계
취업전략 수립		자격증의 이해/채용정보 탐색	설문/수료	

- 중·장기복무자 통합 기본교육

구 분	내 용			
창 업 사회적경제 과 정 (중장기복무자 통합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을 전직목표로 하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관련 지식 및 정보 제공</li> <li>• 세부 편성 : 연 6회 / 회차별 2박 3일</li> </ul>			
	구분	1일 차	2일 차	3일 차
	오전	등록 및 과정 소개	소상공인 창업	기술창업
		정부지원정책 안내		
	오후	창업의 이해	프랜차이즈 창업	창업계획서 작성법
전직지원제도 안내		사회적 경제 창업	창업자금 컨설팅 설문/수료	
귀 농 귀 산 귀 어 (중장기복무자 통합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농·귀어·귀산을 전직목표로 하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관련 지식 및 정보 제공</li> <li>• 세부 편성 : 연 2회 / 회차별 2박 3일</li> </ul>			
	구분	1일 차	2일 차	3일 차
	오전	등록 및 과정소개	귀농작물 선택과 농작물 안전관리	농지제도와 농지은행 이해
		귀농귀촌 지원정책 및 사기피해 예방		
	오후	귀농창업의 이해	귀농귀촌 마케팅 전략 수립	귀농창업 계획과 설계
전직지원제도 안내		귀어귀촌 지원정책 안내	귀산촌 지원정책 안내 설문/수료	

사. 전직상담 지원

1) 목적 : 중기복무간부들의 조기 사회정착을 위해 경력상담과 연계하여 전직 희망분야에 부합한 1:1 맞춤형 전직상담을 통해 전역 후 빠른 재취업과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

2) 운영 계획

가) 대상 : 중기복무자로서 전직기본교육을 이수한 자(구직등록자)

나) 신청 : 국방전직교육원으로 수시 신청

다) 권역 : 4개 권역(위탁운영)

구 분	온라인	경기북부·서울·강원	경기남부·대전·호남	부산·영남
지 역	전 지역	의정부, 서울, 원주	수원, 대전, 광주	창원, 부산, 대구

라) 진행방법 : 온·오프라인 상담(집중상담 및 취업 지원)

(1) 상담횟수 : 최소 8회 이상 상담(대면 1회 포함)

(2) 클 리 닉 : 구직서류/면접/인·적성 검사 등

(3) 정보제공 : 취업 정보(기업, 박람회, 지자체 등)

※ 프로그램 내용

구분	소집 교육 및 대면 상담 시	온라인 교육 및 비대면 상담 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교육 시) 대면 상담</li> <li>• 유선, 이메일 상담</li> <li>• 전직계획서 및 구직서류 작성</li> <li>• 전직활동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간 온라인 상담</li> <li>• 유선, 이메일 상담</li> <li>• 전직계획서 및 구직서류 작성</li> <li>• 전직활동 지원</li> </ul>
비고	국방부 방역 지침에 따라 적용 / 취업 시까지 취업정보제공 및 상담지원	

아. 맞춤형 전문교육

1) 목적 : 군 간부의 직무능력과 특성을 고려하여 경쟁력 있는 자격과정 개발 및 맞춤형 교육으로 전역예정간부의 안정적 취업에 기여

2) 지원 방침

가) 교육비

(심화과정) 교육비 무료 ※일부 교육과정은 지자체 및 유관기관 협업

(전문과정) 개인이 교육기관에 선납하고 출석률 80% 이상 수료시 환급

※ 교육비 자비부담률 20%

나) 개인별 개설 과정의 수강은 1개로 제한

\*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였을 경우 다른 과정에 한하여 1회 추가 수강 가능

3) 교육과정

구분	심화과정	전문과정
교육기간	1박 2일 또는 3주	1~4개월
교육형태	소집 및 온라인교육	소집 및 온라인 교육
교육장소	교육원 및 협업기관 지정 장소	위탁 교육기관
수료기준	80% 이상 교육 이수	80% 이상 교육 이수
세부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심화(설명회)</li> <li>• 귀농귀촌심화/현장탐방</li> <li>• 귀산촌심화/현장탐방</li> <li>• 귀어귀촌심화/현장탐방</li> <li>• 사회적경제심화</li> <li>• 사회공헌 심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대비업무담당자 과정</li> <li>•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과정</li> <li>• 군(공)무원 공채/경채시험 과정</li> <li>• 군시설관리자 과정</li> <li>• 안보교육강사 양성과정</li> <li>• 군체력단련장관리자 과정</li> <li>• 국방드론운영자 과정</li> <li>• 재난안전관리자 과정</li> <li>• 주니어사관지도사 과정</li> <li>• 군경력설계사 과정</li> </ul>

# 제2장 취업 준비전략 및 군내·외 일자리 현황

##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지원프로그램

가. 국방전직교육원 (www.moti.or.kr) 홈페이지 활용 : 무료



\* 회원가입 / 로그인 ⇨ 좌측 하단 [취업정보나가기] ⇨ [이력서 / 자기소개서 샘플]

## 나. 관련 인터넷 사이트 활용

사 이 트 명	주 소	유 / 무료	전화번호
인크루트	www.incruit.com	유 료	1588-6577
(주)스카우트	www.scout.co.kr	유 료	02-3482-3366
인터비즈시스템	www.interviz.co.kr	유 료	02-799-7900
워크넷	www.worknet.go.kr	무 료	1577-7114
사람인	www.saramin.co.kr	유 료	02-2025-4733
잡이스	www.jobis.co.kr	유 료	02-2263-5858
잡코리아	www.jobkorea.co.kr	유 료	1588-9350
(주)제니엘	www.zeniel.co.kr	무 료	1588-1581
커리어	www.career.co.kr	유 료	1577-9577
코리아잡	www.koreajob.co.kr	유 료	02-569-5437
이비즈 브레인	www.ebizbrain.co.kr	유 료	010-5959-3144

## 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 1) 지원서 작성 요령

가) 지원서에 내용을 작성하기 전, 지원서 양식을 전체적 확인하고,

\* 기관(기업)별 특정 요구사항을 기록하도록 요구

나) 지원서는 작성해야 하는 모든 부분을 작성하고, 정직하게 작성하며,  
자기 자신을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

다) 연락처는 직접 받을 수 있는 가능한 연락처 기록 및 두 번 이상 확인

### 2) 이력서 작성

#### 가) 인적사항

(1)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기재하며, 일반적으로 이름과 주소,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 기록

(2) 채용담당자가 이력서를 받았을 때 가장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이력서  
첫 장 상단에 작성

(3) 제출한 이력서가 1쪽 이상일 경우에는 머리글, 바닥글에 본인의  
이름과 이력서 쪽 번호를 기록하고 다른 이력서와 섞이지 않도록 주의

#### 나) 경력사항

(1) 지원 분야와 관련 있는 경력만을 작성, 관련 없는 경력은 과감히 삭제

(2) 자신의 능력 및 강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표현

(3) 가장 최근 경력부터 오래된 경력순으로 작성하는 “연대기적 작성법” 적용

(4) 경력이 20년 이상으로 길고 수행한 직무가 다양하다면 가급적 지원  
분야와 관련된 핵심경력을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그 외  
경력은 직무 내용이나 성취업적을 간략하게 정리 기록

(5) 담당했던 직무의 범위에 대해 기재할 때는 그 일의 중요성과  
범위, 수준, 예산 및 보고체계 등의 내용을 포함

\*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대해서만 쓰는 것이 아닌 성취결과에 대해서도  
수치 또는 결과 등을 표기하여 내용 기술

다) 학력사항(블라인드 채용 시 제외) : 학력은 지원하는 업무와 관련  
있는 학위, 학교명, 전공, 졸업 연도 기록

#### 라) 자격증 또는 교육 이수 사항

(1) 취득한 자격증 중 지원하는 분야와 관련이 있는 것만 기재

(2) 그 외 이수한 교육이나 훈련과정 등도 목적에 부합되는 것만 기재

마) 이력서에 포함하지 말아야 할 사항 : 서류심사 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보는 이력서 작성 시 포함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 요청

\* 지원 분야와 관련 없는 정보, 희망연봉, 개인적인 정보나 신체의 특징, 정치적·종교적 성향, 나이 등

### 3) 자기소개서 작성

#### 가) 성장과정

- (1) 성장과정은 성향과 직업에 대한 가치관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가치관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채용담당자들이 반드시 확인
- (2) 경력직 지원자의 경우에는 직장생활과정을 서술함으로써 인생과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어떤 방향으로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기록

#### 나) 성격

- (1) 성격의 장단점을 솔직하게 서술하되 단점보다는 장점을 부각
- (2) 단점의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혹은 그 단점이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했던 경험 등 기록
- (3) 직무에 따라 선호되거나 요구되는 성격을 미리 파악하여 작성

#### 다) 경력사항

- (1) 지원 분야와 관련이 있는 내용 위주로 경력사항과 업무성과 서술
- (2)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과감히 삭제
- (3) 업무성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수치화시켜 작성

#### 라) 지원동기 및 포부

- (1) 지원동기 및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포부를 적고 어떤 방식으로 조직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 의욕적으로 작성
- (2) 조직 내에서 자신의 발전가능성과 더불어 어떻게 업무에 임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와 계획, 적성과 지원하는 분야의 직무가 어떻게 맞으며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 서술

#### 마)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 (1)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에 적합한 자기소개서를 작성
- (2) 맞춤법에 유의하고 지나친 미사여구 사용 금지
- (3) 도입부분에서 채용담당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문장이나 소재목 선정
- (4) 자신의 성향과 역량 중 회사가 바라는 인재상에 부합하도록 서술

## 이 력 서(예문)

<p style="color: red; font-size: small;">* 민간기업 지원 시 단정한 정장차림의 사진으로 입력</p>	<b>이 름</b>	홍 길 동	<b>영 문</b>	Hong Gildong	<b>한 문</b>	
	<b>주민번호</b>	000000-0000000			<b>나 이</b>	만 53세
	<b>휴대폰</b>	010-0000-0000	<b>전화번호</b>	02-000-0000		
	<b>E-mail</b>	<a href="mailto:000@00.com">000@00.com</a>				
	<b>주 소</b>	00시 00구				

### 학력사항

재 학 기 간	학 교 명 및 전 공	학 점	구 분
2000.00.00~2000.00.00	00대학원 / 00학과	-	졸업
1900.00.00~2000.00.00	00대학교 / 00학과	-	졸업

### 경력사항

근 무 기 간	회 사 명 및 부 서	직 위	담 당 업 무
2000.00.~2010.00	000사단	00장	조직운영 및 총괄, 기획 및 사업관리
1900.00.~2000.00	000사령부	00000장	인사 및 조직관리, 00중장기 계획총괄
1900.00~1900.00	000사단 참모부	00참모	군수지원 및 개발사업
1900.00~1900.00	00사단 00연대	00연대장(00장교)	조직운영 및 작전계획 수립

※ 민간직위 지원 시 군대용어는 가급적 민간직위 관련 전문용어로 변경(예: 부대관리⇒조직관리)

### 자격사항

기 간	자 격 명	기 관
2000.00	행정사	행정자치부
2000.00	운전면허 1종	경찰청

※ 지원 분야와 관련된 자격사항을 중심으로 최근 취득자격부터 기재

교육 / 연수

기 간	과 정 명	기 관
2000.00 ~ 2000.00	00고급과정	00대학교
1900.00 ~ 1900.00	0000연수과정	00학교

수상 내역

기 간	상 세 내 용	기 관
2000.00	대통령 표창	대한민국
2000.00	00장관 표창	국방부
1900.00	00도지사 표창	00도

※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역으로 자기소개서에 기술된 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 경 력 기 술 서(예문)

### 경력 요약

- 주요정책부서 근무를 통한 기획 및 계획 능력 구비
- 000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주요 00분야 사업관리로 군 전력화 기여

### 경력 사항

1. ○ ○ ○ 2000.00 ~  
2000.00

#### 주요업무

- 000 지휘관 및 참모(기획 및 사업관리)

#### 주요성과

- 경영 효율화를 통한 00분야 예산 절감(매년 약 10억 원)

2. ○ ○ ○ 1900.00 ~  
2000.00

#### 주요업무

- 지휘관 및 참모 활동(인사 및 조직관리 등 주요업무)

#### 주요성과

- 합리적 부대관리 및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통한 군 위상 제고

3. ○ ○ ○ 1900.00 ~  
1900.00

#### 주요업무

- 정책부서의 기획 및 계획업무

#### 주요성과

- 000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유의사항

- 군대용어보다는 민간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서술
- 군경력 중 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직무능력 부각
- 본 샘플은 가공된 내용이오니 작성 시 개인별 해당 내용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 자 기 소 개 서(예문)

### 성장 과정

#### 실무를 겸비한 경영관리 분야 최적의 책임자

국가와 군을 위해 지난 00년을 다양한 업무에 헌신하며 리더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었습니다. 지원직무와 관련된 근무성과 및 보유역량은 첫째 우수한 조직관리와 문제 해결능력입니다. 00 근무 시 효율적 조직관리와 완벽한 임무수행으로 000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작성 시 예문과 같이 군에서의 경력성장과정을 기록해 주십시오.)

### 성격의 장·단점

#### 강한 추진력과 솔선수범으로 화합·단결의 역량 보유

한번 결심한 사항은 끝까지 완수하는 의지와 강한 추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강한 업무추진력이 오히려 민간기업에서는 역효과의 가능성이 있어 커뮤니케이션 교육 및 이미지메이킹 교육 등을 통해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작성 시 예문과 같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장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노력을 포함시켜 주세요.)

### 지원동기

####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성과 창출 및 조직발전에 기여

귀사의 핵심가치와 인재상에 깊이 공감하며 국내 1위 기업에서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귀사의 많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최고의 서비스를 경험하였으며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00분야에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전 조사를 통하여 지원 분야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분야를 점검하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합니다.)

### 입사 후 포부

#### 업계 선두주자로서의 위상 제고

귀사의 비전과 가치에 부합하는 전문경영인으로서 업계 1위로서의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통해 소통과 화합의 문화를 이끌어가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기업가치 및 인지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지원기업의 현재 위상을 높이 평가하고 입사 이후 기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모습을 서술해 주십시오.)

※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지원서류 관련 예문 확인은

국방전직교육원([www.moti.or.kr](http://www.moti.or.kr))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영문이력서 양식

**LOO, JOO**

0000 V-Apt, 000-dong, 000-GU, 0000-si, 000-do, KOREA

Mobile Phone: / E-mail:

**Objective**

---

---

**To obtain the position of CEO**

**Executive Summary**

---

---

Results-oriented professional with more than 30 years of experience in diverse 000 and 00000 environments. Effective leader, disciplined, training and military-trained expert in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00000. Specified capabilities include:

- A highly-experienced professional with more than 30 years of comprehensive background in Business Developing, Product Management
- Managing and developing staff and building a high-performance culture
- Leadership, personal drive and integrity with commitment to the principle of the company

**Experience**

---

---

- Deputy Commanding Officer Mar. 2000~Jun. 2010
  - Develops the operation plan and rules of engagement at each type of operation
- 000 Planning Officer Mar. 1990~Jun. 2000
  - In charge of numerous administrative and strategic issues within 000

**Education**

---

---

- 00 University(Master of 000) Mar. 1900~Feb. 2000
- 00 University(Bachelor of 000) Mar. 1900~Feb. 2000

**Licence / Skills / Awards**

---

---

- Administrative scrivener  
Jan.2000
- Ministry of 000 Medal  
Jan.2000

## 2. 면접은 이렇게 준비!

### 가. 면접 참가

#### 1) 면접 전 고려사항

- 가) 면접 질문을 준비하고 연습
- 나) 제출한 지원서류를 잘 파악하고 숙지
- 다) 회사와 지원 분야의 직무에 대한 사전 조사
- 라) 예상 이외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

#### 2) 면접 진행

- 가)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므로 자연스럽게 행동
- 나) 일찍 도착하여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
- 다) 면접관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여 긍정적이고 열성적으로 답변
- 라) 언어사용에 주의하며 논쟁 금지
- 마) 가능한 한 명확하게 답변하고 진실을 과장하여 언급 금지
- 바) 면접이 끝나면 면접관들에게 면접기회 제공에 대한 감사 표시

#### 3) 면접 후

- 가) 면접관의 연락처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 감사 이메일 발송
- 나) 의사결정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적절한 시점에 전화로 확인
- 다) 불합격의 경우라도 좌절하지 말고, 재도전 준비

### 나. 면접 질문

#### 1) 기본적인 질문

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1) 1~2분 정도의 지원업무와 관련된 핵심내용으로 짧고 명료하게 준비
- (2) 자신의 강점을 구체적으로, 회사의 인재상과 맞는 내용으로 언급
- (3)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객관적 사례와 성과를 제시

나)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 (1) 지원 직무와 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 필수
- (2) 충분한 사전 조사의 열의를 느낄 수 있도록 논리적 답변
- (3) 업무의 구체적인 부분을 참고하여 자신이 책임자임을 설명

다) 전 직장에서의 주요업무는 무엇이었습니까?

(1) 수행 업무 중 지원 분야 관련 위주로 가장 최근 업무부터 언급

(2) 회사의 당면문제 등을 미리 파악, 군 경험 중 기여할 수 있는 부분 강조

라)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었습니까?

(1) 달성한 성과는 구체적 사례와 수치화된 객관적 자료로 제시

(2) 과장된 표현은 금지, 지나친 겸손도 면접에서는 불리하게 작용

마) 회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이 있습니까?

(1)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질문이 좋으나, 마땅한 질문이 없을 때는 면접 준비를 위해 충분한 내용을 숙지했으며 면접기회 제공에 감사 표시

(2) 질문은 간결, 연봉이나 휴가 등의 근무조건 관련 질문은 금지

\* 가능한 질문 : 언제쯤 채용결과에 대해 알 수 있습니까? / 채용된다면 제가 일하게 될 팀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등

## 2) 까다로운 질문

가) 왜 이전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까?

(1)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답변(과거의 논쟁은 언급 금지)

(2) 군 관련 기업이 아니라면 군의 전역시스템을 짧게 언급하고 군 경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력전환을 준비해 왔음을 설명

나) 업무를 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상황이 있습니까?

(1) 어려움은 있었으나 궁극적으로는 잘 해결된 사례를 위주로 설명

(2) 문제 상황을 간략히 설명, 문제해결능력과 대응방안으로 성과 제시

다) 지원 분야에 비해 자질이 넘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1) 지원 분야에서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

(2) 지원 분야 및 회사의 이념과 관련된 직업 가치관을 강조

라) 다른 곳에서도 채용제외가 있었습니까?(다른 곳에도 지원하셨습니까?)

(1) “전혀 없다.”는 자칫 구직 의지가 약해 보일 수 있어 주의 요망

(2) 다른 지원처나 경쟁사보다 더 근무하고 싶은 회사임을 강조

마) 우리 회사에 들어온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습니까?

(1) 회사의 모든 것을 바꾸겠다는 표현은 오히려 부정적 영향 요소

(2) 회사의 장점을 먼저 부각하고, 장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법 제시

### 3. 제대군인 주요 일자리(총괄)

#### 가. 군 내 주요일자리

일자리 명	대 상	선발 시기	비 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3년 이내 전역한 영관장교 및 대위·준사관·부사관 (퇴역은 연령정년 퇴역만 해당)	연 2회 (2월, 8월 공고)	공 통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10년 이상 근무자	12월경	
군무원	3년 이내 전역(예정)자 2년 이상 경력자	3월 공고 5~6월 시험	
복지시설 근무원	-	소요 발생 시	
군사학술용역 연구관	예비역 소령 이상 전문능력 구비자	12~2월경	
비상근 예비군	• 1~6년 차 예비역 간부 • 7년 차 이상은 동원훈련 참가 시 가능(계급별 연령정년까지)	1~8월(수시) 9~10월(정기)	
육군 전투지휘훈련단 예비역 장성 관찰관	3년 이내 전역한 장성	소요 발생 시	육 군
육군 정책발전연구위원			
육군 전투지휘훈련단 예비역 BCTP 교관	3년 이내 전역한 영관장교		
육군 군단급 교육훈련 전문평가관			
육군 KCTC 교관			
육군 교리연구위원			
육군 전문상담교관			
육군 미래혁신연구관	3년 이내 전역한 장성 및 영관장교		
육군 임관종합평가관	3년 이내 전역한 장교 및 부사관		
해군발전연구위원	장성, 대령		
예비역 연습지원관	3년 이내 전역한 원사~장성	소요 발생 시	
해상훈련 전문평가관	3년 이내 전역한 장교, 준·부사관		
해군교리연구관	3년 이내 전역한 영관장교		
임관종합평가관			
강의전담초빙교수	3년 이내 전역한 영관장교	1~2월	
예비역음향자료지원관	준·부사관		

일자리 명	대 상	선발 시기	비 고
연합·합동훈련 평가관 (훈련관찰관)	전역 3년 이내 예비역 장성, 대령	소요 발생 시	공 군
항공력발전 연구위원			
위게임 운영요원	전역 3년 이내 예비역 장성, 대령, 중령 이하 영관장교		
비행시뮬레이터 전문평가관	전역 3년 이내 조종병, 예비역 영관장교		
항공정비훈련기술 전문평가관	전역 3년 이내 예비역 준·부사관		
통신전자 전문평가관			
전술항공통제 전문평가관	전역 3년 이내 조종병, 예비역 영관장교		
교리연구관	전역 3년 이내 예비역 중령 이하 영관장교		
임관종합평가관	전역 3년 이내 예비역 영관장교		
강의전담교수			
리더십 전문연구원	전역 3년 이내 예비역 중령 이하 영관장교		
해병대 전투발전연구위원	3년 이내 전역한 영관장교 이상	소요 발생 시	해병대
해병대 전투모의센터 전문/기술교관	3년 이내 전역한 장교(전문교관), 관련 분야 근무자(기술교관)		
해병대 교육훈련 전문평가관	3년 이내 전역한 영관장교 이상		
해병대 훈련관찰관	3년 이내 전역한 장성 및 대령 (전투병과 : 보병, 포병, 기갑)		
해병대 임관종합평가관	3년 이내 전역한 장교, 준·부사관		
해병대 교리연구관	3년 이내 전역한 영관장교		
항공교육훈련전문평가관	항공 사고분야 조사 경력 (2년 이상자) 예비역 영관장교		

나. 군 외 주요일자리

일자리 명	대 상	선발 시기	비 고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대위~대령	4월, 10월경	공 통
한국연구재단 전문경력 인사 초빙활용 사업	예비역 장성	연 2회 4월, 10월경	
군 특성화고 산학겸임 교사	군 관련 복무경력 15년 이상인 자	2월, 8월경	
롯데그룹 신입사원	전역(예정) 장교	3월	
BGF리테일 영업관리			
ADT캡스 BP (Blue Patrol 출동직)	전역(예정) 간부 (장교 및 부사관)	2월~10월 중 6회 공채 진행	
LG유플러스 영업전문인재	전역(예정) 간부 (장교 및 부사관)	2월, 7월	
학군단 설치대학 안보학 교수	20년 이상 복무(중령 이상 장교, 준위, 상사 이상 부사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소요 발생 시	
학·군 제휴대학 군사학과 및 부사관학과 교수	10년 이상 준·부사관, 대위~장군		
학·군 제휴대학 특수학과 교수			
학군단 예비역 교관/행정관	교관 : 소령 행정관 : 대위, 준사관, 중사~원사,		
부사관학군단 예비역 단장, 교관 및 행정관	단장 : 중령 이상 교관 : 상사, 대위 이상 행정관 : 예비역 간부		
군인공제회 및 산하 사업체 (군경력직)	대위~대령(직급별 구분)	전 계층	
MOU 체결대학/교수/교관/ 정비사			
LG하이프라자	전역(예정) 위관장교	연 1~2회	육 군
남동발전	전역(예정) 영관·위관 장교, 부사관	소요 발생 시	해 군
해운업체	· 항해(기관)사 : 3급 면허 소지자, · 부원: 면허 미소지자 또는 4급 이하 면허 소지자	연 1회	

---

# 전 군 공 통

---

## Ⅰ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 1) 업무주관

국방부 동원기획관실	육군 동원참모부	해군 정보작전참모부	수임군부대
예비전력과 (02)748-5248~9	예비군조직관리과 (042)550-5534	예비군과 (042)553-3522	동원참모처

### 2) 선발계획 공고

가) 시험실시(경력경쟁 채용시험) : 연 2회 전·후반기

나) 공고 : 원서접수 20일 전 각 군 홈페이지 게재

### 3) 응시자격(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5조)

가) 직위별 응시 가능 병과

구 분	응시 가능 병과
지역 및 직장 예비군부대 지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군 :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병과[인사과(지휘관 직위 경력자는 제외), 재정과 및 공보정훈과는 제외] 및 「군인사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병과 중 의정과</li> <li>• 해군(해병대는 제외) :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기본병과(조함과, 재정과 및 공보정훈과는 제외) 및 「군인사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병과 중 의무과(「병역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군사특기 중 의정만 해당)</li> <li>• 해병대 :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병과(재정과 및 공보정훈과는 제외)</li> <li>• 공군 :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기본병과(재정과 및 공보정훈과는 제외) 및 「군인사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병과 중 의무과(「병역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군사특기 의무 중 접미어 행만 해당)</li> </ul>
예비 전력 관리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각 군의 기본병과</li> <li>• 「군인사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수병과 중 육군 의정과와 해·공군 의무과(「병역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군사특기 중 의정, 공군 군사특기 의무 중 접미어 행만 해당)</li> </ul>
동원보충대대 정작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군 / 해군 :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공병과</li> </ul>

나) 직위별 응시 가능 계급

구 분		계 급	비 고
지역 및 직장 예비군부대 지휘관	여단장·연대장	예비역 또는 퇴역 대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인사법」 제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장기복무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li> <li>• 「군인사법」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준사관 중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li> </ul>
	대대장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	
	지역중대장 및 직장중대장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	
예비전력 관리기구	일반군무원 5급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현역에서 6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 또는 퇴역 위관장교와 부사관은 일반군무원 7급에 응시 가능</li> </ul>
	일반군무원 6급 이하	예비역 또는 퇴역 대위·준사관·부사관	

- \* 퇴역 기준 : 「군인사법」 제41조 제2호(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의 사유로 현역에서 바로 퇴역한 경우만 해당
- \* 여군의 경우 「군인사법」 제41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전역시 예비역으로 선택하는 경우 응시 가능

4) 시험방법 : 서류심사, 체력검정, 면접시험, 필기시험, 신체검사, 현역 복무실적 등 평가

5) 필기시험 과목별 배점(40점)

구 분	계	공 통 과 목(40점)			
		예비군법령	병역법령	예비군훈령	통합방위법령
배 점	40	15	10	10	5

6)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60점)

가) 평가기준

평가요소	계	현역 근무평정	현역 근무경력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근무병과	심의평가	상훈
배점	60점	40점	7점	1점	1점	9점	2점

나) 현역 근무평정(40점) : 전역일 또는 퇴역일 기준 최근 5년간 근무 성적표상 절대평가점수 합산(매년 8점 만점)

다) 현역 근무경력 (7점) : 보직경력(2.5점) + 복무경력(4.5점)

(1) 보직경력(2.5점)

직 위	근 무 경 력		배 점
	계 급	경 력	
연대장	대령	연대장 직위 이수	2.5점
		연대장 직위 미이수	2.0점
대대장	중령	대대장 직위 이수	2.5점
		대대장 직위 미이수	2.0점
중대장, 5급 군무원	소령	중대장 직위 이수	2.5점
		중대장 직위 미이수	2.0점
6급 군무원 이하	대위, 준사관, 부사관		2.5점

(2) 복무경력(4.5점) : 임관 및 전역일을 기준으로 4.5점 만점

\* 점수는 현역복무연수에 0.15를 곱하고, 1년 미만 잔여기간은 0.01점부터 0.14점까지 계산 산출(「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별표5] 참조)

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등급 가점 (1점)

시험의 종류	인 증 등 급	가 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1급	1점
	2급	0.8점
	3급	0.6점
인정기준	※ 위 표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선발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선발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획득한 인증등급만 인정	

마) 병과별 적용기준(1점)

구 분	병 과	
전투 병과 (1점)	육군	보병과, 기갑과, 포병과, 방공과, 정보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항공과
	해군	함정과, 항공과, 정보과 및 해병대 보병과, 포병과, 항공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기갑과, 정보과
	공군	조종과, 항공통제과, 방공포병과
그 밖의 병과 (0.5점)		

## 7) 제출서류

구 비 서 류	소요 매수
기본증명서(최근 3개월 내 발행 원본, 연·대대장은 1부)	2부
병적증명서	1부
병적기록표(전역자만 해당, 연·대대장은 1부)	2부
본인신용정보조회서(중대장·5급·7급 응시자만 해당)	1부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자격이 되는 7급 응시자만 해당)	1부
군 경력증명서(연·대대장은 1부)	2부
정부포상수여증명서(군 경력증명서에 미기록자만 해당)	1부
전역지원서 사본, 전역예정확인증명서(전역예정자만 해당)	1부
명예진급자 선발결과 사본(명예진급 예정자만 해당)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부
사진(3.5cm × 4.5cm)	1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인증서 소지자만 해당)	1부
면접용 군 경력증명서	1부

## 8) 선발 및 임명

직 위	임 명	선 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비전력관리 군무원 5급 (지역예비군 중대장 포함)</li> <li>직장예비군 대대장 이상</li> </ul>	국방부장관	육·해군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비전력관리 군무원 7급</li> </ul>	각 군 참모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장예비군 중대장</li> </ul>	수입군부대장	

### 문 의 처

- 국방부 예비전력과 ☎ 02)748-5248~9 군)900-5248~9
- 육 군 동원참모부 예비군조직관리과 ☎ 042)550-5534 군)960-5534
- 해 군 정보작전참모부 예비군과 ☎ 042)553-3522 군)910-3522

## 2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1) 선발시기 : 매년 2월, 7월경(채용공고 12월, 5월)

2) 자격요건

가) 학력 및 경력(아래 사항 중 하나를 충족)

- 5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나) 자격증 보유

- 국가자격증 : 임상심리사 / 직업상담사(한국산업인력공단), 사회복지사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정신건강사회복지사(보건복지부), 전문상담교사(교육부), 청소년상담사(여성가족부)
- 민간자격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증(상담관련), 임상심리전문가(한국임상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2급(한국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2급(한국상담학회), 군상담수련전문가(대한군상담학회), 군상담심리사1·2·3급(대한군상담학회), 한상담수련전문가(한상담학회), 한상담전문가 1·2급(한상담학회), 가족상담전문가 수련감독전문가, 가족상담전문가 1·2급(한국가족문화상담협회)

\* 10년 이상 군 경력자(군종장교는 1년) 중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관련된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자는 상담 경력이 없어도 응시 가능

3) 계약조건

가) 계약기간 : 2년(필요시 5년 범위 내에서 1년 단위 연장 가능)

나) 급여수준 : 월 305만 원(4대 보험 및 요양보험 부담금 포함)

4) 구비서류

가) 응시 지원서 1부, 신원진술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경력, 실적은 반드시 증명서 첨부)

다) 종합병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최근 1년 이내)

라) 개인정보 제공/공개 동의서 1부, 확인서 1부

마) 최종학력 증명서 1부(전공 기재), 자격증 사본 1부

문의처

• 국방부 병영문화혁신팀

☎ 02)748-5165 군)900-5165

### 3) 군 무 월

#### 1) 업무주관 및 선발대상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육군 인사사령부	해군 인사참모부	공군 인사참모부
(02)748-5297~9	(042)550-7145~6	(042)553-1284	(042)552-1453/1457
각 군 5급 이상 및 국직 전 계급	6급 이하	6급 이하	6급 이하

#### 2) 선발(시험)시기 및 방법

가) 시기 : 연 1회(3~4월 중 채용공고, 6~7월 중 필기시험)

\* 일간신문, 국방일보, 국방부·각 군 인트라넷/인터넷 홈페이지, 군무원 채용관리, 나라  
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 공고

나) 방법

(1) 공채 : 필기시험, 면접시험

(2) 경채 :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 3) 응시자격

가) 공통 :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제10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공채 : 9급(18세 이상), 7급 이상(20세 이상)

\* 학력·경력 제한 없으나, 기술직 일부 직렬은 직렬별 응시자격증 필요

다) 경채

(1) 전역군인의 경채

(가) 임용예정일 기준 3년 이내 전역(예정)자로 다음 채용계급별  
대우기준표의 군인계급 이상에서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나) 채용계급별 대우기준표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장 군	대 령	중 령	소 령	대 위	준 위	원·상 사	중 사	하 사

(2) 공무원 경력자의 경채

(가) 임용예정일 기준 3년 이내 퇴직자로 임용예정 계급의 이상 직급  
에서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예정계급 \ 경력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특정직 공무원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경찰공무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 정감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판사·검사			5호봉 이상	2호봉 이상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포함)	대학	교수 3년 이상	교수	부교 수	조교 수				
	초·중등학교 교원 및 그 밖의 공무원			24호봉 이상	16호봉 이상	12호봉 이상	11호봉 이하		

(3) 자격증, 면허증 소지자의 경채(경력은 자격/면허증 소지 후 경력)

4급	5·6급	7·8급	9급
기술사 4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급 기술사 소지</li> <li>6급 기사 4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급 기사 2년</li> <li>8급 기사 소지</li> </ul>	산업기사

(4) 직무 관련 학위 소지자의 경채(경력은 학위 취득 후 경력임)

구 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박 사	11년 경력	8년 경력	4년 경력	학위 소지		
석 사		11년 경력	7년 경력	3년 경력	학위 소지	

(5) 직무 경력자의 경채

구 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직무 관련 분야 근무경력자 또는 연구실적 소지자			13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4년 이상

### 3) 필기시험

가) 과목 : 계급·직렬에 따라 상이,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별표 2 참고)

나) 출제 형태 : 객관식 25문항 4지 택일형

다) 출제 수준

(1) 5급 이상 : 정책의 기획/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 검정 수준

(2) 7급 이상 :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수준

(3) 9급 이상 :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지식 검정 수준

4)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점수(50)+면접점수(50) 합산한 성적순으로 결정

문의  
처

- |                      |                  |
|----------------------|------------------|
| •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 ☎ 02)748-5106    |
| • 육 군 인사사령부 장교군무원선발과 | ☎ 042)550-7145~6 |
| • 해 군 인사참모부 군무원인사과   | ☎ 042)553-1284   |
| • 공 군 인사참모부 전직지원정책과  | ☎ 042)552-1236   |
| • 해병대 인사참모처 군무원과     | ☎ 031)8012-3152  |

#### 4 복지시설 기간제근로자

##### 1) 업무주관

국군복지단	육군 인사사령부 근무복지과	해군본부 복지정책과	공군본부 복지시설운영과
군) 984-6417 (02)810-6417	군) 960-7121 (02)505-7121	군) 910-1176 (042)553-1176	군) 920-1523, 7 (042)552-1523, 7

##### 2) 선발주기 및 방법 : 수시

##### 3) 임용 결격사유

- 가) 피성년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원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사)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타)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선발대상 및 임용

- 가) 국군복지단 : 기숙사 생활관장 이상(소령급 이상)
- 나) 육군 : 인사사령부 근무복지과 및 해당 복지시설
- 다) 해군 : 해군본부(위관장교 이상) 및 해당 복지시설(준·부사관)
- 라) 공군 : 공군본부 복지시설운영과 및 해당 복지시설

## 5 군사학술용역연구관

### 1) 업무주관

가) 추천 : 합참, 안보지원사, 육·해군 교육사, 해군 기참부, 공군 전투발전단

육 군	해 군	공 군	합 참	안보지원사
(042)878-6427 군) 975-6427	(042)553-2216 군) 910-2216	(042)552-5454 군) 920-5454	(02)748-3953 군) 900-3953	(02)731-4072 군) 907-4072

2) 수행 업무 : 각 군의 교리연구, 교범편찬, 제도 및 정책분야 연구에 군사 전문지식과 경륜을 가진 예비역 간부를 활용하는 제도

### 3) 연구관 선발

가) 자격기준 : 전역간부 미취업자 중 전문연구능력을 구비한 자

나) 모집공고 : 매년 연말 및 익년도 초에 기관별로 국방일보 및 각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다) 구비서류

(1) 개인 : 지원서, 경력증명서(참모총장 발행), 건강보험증 사본, 연구 논문, 학위증, 자격증사본(소지자), 사진 2매(2×2.5cm)

(2) 민간 연구기관 : 추천 연구관(개인 신청자 구비서류 일체), 법인사 업체 등록증, 보증보험 가입증서, 군사전문가/연구관 명단, 연구실 내·외부 전경 사진, 연구계획 제안서

라) 선발방법 : 서류심사 후 개별 통보

마) 연구기간 : 매년 10개월 범위 내(연구실적에 따라 재계약 가능)

### 4) 연구내용

가) 교리, 교범 분야 : 교리연구, 교범 편찬

나) 일반과제 분야 : 군사정책, 군사제도 연구

## 6 비상근 예비군

### 1) 선발 시기 및 절차

절 차	시 기	기 타
선발 공고	1 ~ 8월('22년 수시)	• 각 군·예비군 홈페이지 공고 및 지원서 교부·접수
지원서 접수	9 ~ 10월('23년 정기)	
선발심사	수시 : 1~8월(월 1회) 정기 : 10월	• 선발기준 : 병과, 계급, 예비군 연차 등
선발통보	매월 말일	• 개별 통보

### 2) 자격요건 :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 \* 0년 차와 7년 차 이상의 예비역은 동원훈련 참가 조건으로 모집 가능
- \* 여군의 경우 「군인사법」 제41조 제2호(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전역시 예비역으로 선택하는 경우 선발 응시 가능

### 3) 운영부대 :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국군수송사령부

육 군	해 군	공군	해병대	국군수송 사령부
동원사단, 동원지원단, 호송단, 민사부대, 군수부대, 동원포병단, 군사경찰부대, 공병부대	재취역함정 운용대, 건설전대, 특전단	민항기지 대대, 60전대, 91전대	9여단, 1사단, 교육훈련단	이동 관리단, 육로 수송단

### 4) 지원지역 : 전 지역 지원 가능(소집부대의 지리여건, 지원자의 훈련 참석여건 고려)

### 5) 복무기간 및 보상

\* 동원훈련 2박 3일 별도

#### 가) 복무기간

- (1) 단기 비상근 예비군 : 연 30일 이내(기본 12일/월 1~2회)
- (2) 장기 비상근 예비군 : 연 180일 이내('22년, 동원사단 50명 시험적용)

#### 나) 훈련보상비

- (1) 단기 비상근 예비군 : 1일 10만원(휴일 15만원)
- (2) 장기 비상근 예비군 : 1일 15만원(휴일 22.5만원)

#### 문의처

- 육 군 동원참모부 예비군조직관리과 ☎ 042)550-5531 군) 960-5531
- 해 군 정보작전참모부 동원과 ☎ 042)553-3511 군) 910-5735
- 공 군 정보작전참모부 동원과 ☎ 042)552-3411 군) 920-3411
- 해병대 작전계획참모처 동원예비군과 ☎ 031)8012-3391 군) 928-3391
- 국군수송사령부 정작동원과 ☎ 02)3419-7621 군) 970-7621

## 7 비상대비업무담당자

1) 주관/담당 부서 : 행정안전부(비상대비자원과, 044-205-4337)

2) 선발 공고/시험 : 전반기(4월/5월), 후반기(10월/12월)

3) 응시자격

가) 대위~소령급 직위(업체 비상대비업무담당자) : 기본병과 출신의 예비역 대위, 소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위, 소령인 경우 임용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나) 중령급 직위(업체 비상대비업무담당자) : 기본병과 출신의 예비역 중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중령으로서 임용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다) 대령급 직위(업체 비상대비업무담당자) : 기본병과 출신의 예비역 대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령으로서 임용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라)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 :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대위, 소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위, 소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마) 전문경력관 가군 직위 :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소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소령인 경우 임용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자

바) 일반직공무원 4급 직위(임기제) :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중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중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전문경력관 가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자

사) 일반직 고위공무원(임기제) 및 부이사관(임기제) 직위 :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대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아) 상기 각 항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임용 후 3년 이상 근무 가능한 자

자) 군에서 불명예 전역하지 아니한 자, 전역 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자,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자 및 기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 자질이 부적합하지 아니한 자

차) ① 명예진급 및 명예진급 예정자는 명예진급 및 예정계급에만 응시할 수 있으며, 서류전형 경력평가에서 감점할 수 있음

②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의 응시기회는 3회로 제한

\* 원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5일 이내 응시 철회 시 응시횟수에 미포함

#### 4) 시험요강

##### 가) 시험과목 및 배점 기준

구 분	총점	서류전형	필 기 시 험			면점
			과목 I	과목 II	논술	
업체 중령급 이상 및 임기제 공무원, 전문경력관 가군	100	15	28	12	25	20
업체 소령급 이하 전문경력관 나군	100	10	70	-	-	20

##### 나) 서류전형

###### (1) 서류전형 배점표

구 분	경력	교육	상훈	정보화 자격증	처벌 감점
업체 중령급 이상 및 임기제 공무원, 전문경력관 가군	4.0~7.5	1.0~2.0	1.5~2.0	0.0~1.0	1.0~5.0
업체 소령급 이하, 전문경력관 나군	3.0~4.5	-	1.5~2.0	0.0~1.0	

######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인증등급 가점

등 급	가 점	인정기준
1급	2점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턴 역산하여 5년이 되는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선발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획득된 인증등급만 인정.
2급	1.5점	
3급	1점	

###### (3) 정보화 자격증(가점 1점) 종류

직무 분야	인 증 자 격 증
통신·정보처리분야 (한국산업인력관리 공단)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운영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기운영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사무관리분야 (대한상공회의소)	컴퓨터 활용능력(1, 2급), 워드프로세스(1급)
인정기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획득·발급된 자격증

\* 폐기된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라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인정

다) 필기시험

(1) 법령(선택형)

과목 1 (시행령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대비자원관리법</li> <li>• 예비군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방위기본법</li> <li>•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li> </ul>
과목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헌법</li> </ul>	

(2) 논술 : 25점

\* 시험위원이 마련한 채점 기준에 따라 채점

라) 면접시험 : 20점(각 4점)

- (1)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의 국가관, 태도, 소양
- (2) 조직적응력 및 협조성
-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 (5) 창의력·의지력 및 전략적 사고 등

5) 지원방법 및 선발 시기

가) 원서접수 : 각 군 본부에서 응시원서 접수 후 행정안전부로 제출

나) 제출서류

- (1) 서류전형심사자료(총괄표)
- (2) 개인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 (3) 정보화자격증 사본
- (4) 훈장, 포장, 표창 등 사본
- (5) 석사학위 증명서 사본
- (6) 군 경력증명서
- (7) 한국사검정능력시험 인증등급 사본

다) 선발 시기 : 반기 단위(5월, 12월)

\* 재직 중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였던 자는 선발 후 취업 이전에 반드시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 절차를 거쳐야만 함(161페이지 참조)

6) 임기 및 정년 \* 세부내용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참조

가) 임기제 고위공무원(대령급)은 기본 3년에 추가 2년 범위 내 연장,  
임기제 서기관(중령급)은 기본 3년에 추가 3년 범위 내에서 연장,  
전문경력관 가·나군은 60세 정년

나) 공공기관 및 업체, 단체 등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의 임기는 임용 당시, 임용기관에서 정한 기본정년(「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 및 인사규칙의 정년)

문의처

- 육 군 인사사령부 취업지원센터 ☎ 042)550-7533 군)960-7533
- 해 군 인사참모부 일자리정책과 ☎ 042)553-1154 군)910-1154
- 공 군 인사참모부 전직지원정책과 ☎ 042)552-1236 군)920-1236
- 해병대 해군본부 인사참모부 일자리정책과 ☎ 042)553-1154 군)910-1154

## ⑧ 학군단 설치대학 안보학 교수

- 1) 자격 기준 : 군 경력 20년 이상(중령 이상 장교 준위)이고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
- 2) 적격심사 기준 : 전역 후 3년 이내, 60세 이하
- 3) 채용 : 해당 대학 자율채용
- 4) 근무 기간 / 급여 : 최초 3년 채용 후 학교와 교수 간 협의로 2년 연장 가능 / 약 3,600만 원 수준으로 대학별 상이
- 5) 강의 과목 : 5개 과목(국가안보론, 무기체계론, 리더십, 전쟁사, 북한학)으로 대학의 모든 학생이 수강할 수 있도록 교양과목으로 개설
- 6) 선발대학

구 분	대 학 명
협약대학	강남대, 경남대, 동의대, 대전대, 부산외대, 서울과기대, 영남대, 청주대, 울산대, 원광대, 호남대, 상명대, 상명대(천안), 흥익대(세종), 서경대, 가톨릭대, 대구가톨릭대, 대진대, 백석대, 한밭대, 선문대, 용인대, 동양대, 동명대, 남서울대, 우송대, 이화여대, 경동대, 평택대, 전남대(여수), 숙명여대, 성신여대, 광주대, 경남과기대, 제주대, 항공대, 한서대, 교통대
자체채용대학	비협약 대학 중 대학의 판단에 의하여 선발 * 채용 이력이 있는 대학 : 건양대, 호서대, 배재대, 전주대, 인천대, 단국대(죽전), 공주대, 순천대, 순천향대, 대구한의대, 동아대, 부산대, 수원대, 목포대, 경성대, 조선대, 서원대, 한성대, 우석대, 대구대, 세종대, 건국대(글로벌), 한림대

문의처

•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 02)748-6244 군)900-6244

## ⑨ 학군 제휴대학 군사학과 및 부사관학과, 특수학과 교수

- 1) 선발 시기 : 해당 대학에서 추천 소요가 제기되었을 때(최종채용 : 대학)
- 2) 자격요건 \* 대학별 소요 제기 시 추가 조건 제시(계급, 병과, 학위 등)
  - 가) 군사학과 : 중령 이상 장교, 채용일 기준 3년 이내 전역자 및 전역 예정자, 박사(전임) 및 석사(초빙) 이상 학위 소지자
  - 나) 부사관학과 : 예비역 부사관 이상자, 채용일 기준 3년 이내 전역자 및 전역 예정자,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다) 특수학과 교수 : 10년 이상 장기복무자로서 준·부사관, 영관장교, 채용일 기준 3년 이내 전역자 및 전역 예정자 중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3) 계약 기간

- 가) 전임교수 : 교육부 소속, 정년 65세(일부 대학 재임용 기간 설정)
- 나) 초빙/겸임교수(계약직) : 1~2년 단위 재계약

4) 구비서류

- 가) 응시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공개 동의서 각 1부
- 나) 군병원 또는 종합병원 신체검사서 1부
- 다) 최종 민간학력 졸업증명서 및 군 관련 연구실적 사본(요약본) 각 1부
- 라) 기능사 자격증 등 각종 자격증 사본 및 확인서 각 1부

4) 선발대학

구분	대학명
군사학과	대전대, 경남대, 조선대, 원광대, 용인대, 청주대, 건양대, 영남대, 고려대, 상명대, 서경대, 충남대, 동양대
부사관 학과	가톨릭상지대, 강릉영동대, 경기과기대, 경남정보대, 경민대, 경북과 학대, 경북도립대, 경북전문대, 계명문화대, 구미대, 국제대, 김해대, 대경대, 대구공업대, 대구과학대, 대구미래대, 대덕대, 대원대, 대전 과기대, 대전보건대, 동강대, 동부산대, 동원대, 두원공과대, 마산대, 부산과기대, 상지영서대, 서영대, 선린대, 송곡대, 수성대, 신성대, 안 동과학대, 여주대, 연성대,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 우송정보대, 원 광보건대, 장안대, 전남과학대, 전주기전대, 전주비전대, 조선이공대, 창원문성대, 청암대, 충북보건과학대, 충청대, 포항대, 한국관광대, 대전과기대
특수학과	경기공업, 구미1, 대덕, 상지영서, 전남과학, 창신, 창원대학

\* 재직 중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였던 자는 선발 후 취업 이전에 반드시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 절차를 거쳐야만 함(161페이지 참조)

문의처

- 육 군 인사사령부 취업지원센터 ☎ 042)550-7532 군)960-7532
- 해 군 인사참모부 일자리정책과 ☎ 042)553-1154 군)910-1154
- 공 군 인사참모부 전직지원정책과 ☎ 042)552-1236 군)920-1236
- 해병대 복지전직지원처 전직대의협력과 ☎ 031)8012-2813 군)928-2813

## 10 군 특성화고 산학 겸임교사

1) 선발 시기 : ①신규학교로 선정 시, ②기존 학교 교사 교체 시 국방부에서 추천 선발 (4배수 이내), 해당 학교에서 면접 후 최종 선발(최종채용:군 특성화고)

2) 자격요건 및 계약 기간

가) 자격요건

구분	자격요건
기본 자격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 관련 복무경력 15년 이상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 전역예정자는 임용일 이전 전역(퇴직) 가능한 자 * 지원서 접수일 기준 1년 이내 전역자</li> <li>• 해당 병과 및 관련 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자 *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전문특기 부여자 특별 우대</li> <li>•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li> </ul>
우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 교관 및 교수 직위 근무경력자 또는 교수 및 교사(실기교사 포함) 등 교원자격증 취득 소지자</li> <li>• 국방 관련 우대 학위 소지자(국방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자 우대) * 학위 증명서에 안보, 북한, 군사, 통일, 위기관리, 재난, 안전, 방재, 소방 등의 관련 분야 학과명 또는 전공명 등이 명시되어 서류전형 심의위원회에서 관련 분야 학위로 인정한 경우로 접수일 마감일까지 수여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우대 평가</li> <li>• 해당 분야 및 정보화, 무도(3단 이상), 한자(2급 이상) 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사무관리 : 컴퓨터 활용능력, 워드프로세스(1,2급), e-TEST(엑셀, 한글, 파워포인트 각각) 국가공인자격,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자격 등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li> </ul>
결격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사 및 징계별) 처벌 사실이 있는 자 * 선발 공고시 세부사항 명시</li> <li>•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교육공무원 자격기준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li> <li>• 응시 최고 연령은 55세 미만으로 제한 * 기본 3년 이상 복무 가능자</li> </ul>

나) 계약기간 : 최초 3년 채용 후 학교(장)와 교사 간 사전협의와 국방부 운영성과평가 시 우수하게 평가될 경우 만60세까지 연장 근무 가능 단, 군특성화고 운영 지침에 의거 해임 사유(계약해지)에 해당 사항 발생시 해임절차를 거쳐 해임 가능

3) 구비서류 \*군 인사자력표상에 기록 변경된 사항에 대한 자력은 구비서류 불필요

가) 응시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공개 동의서 각 1부

나) 군병원 또는 종합병원 신체검사서 1부

다) 최종 민간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 기사본 1부

라) 직무 및 정보화 관련 자격증 등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4) '21년 특성화고 군 지원사업 운용학교 : 45개 학교 \* 마고: 마이스터고

서울(8)	경기/인천(7)	대전/충청(7)	강원 / 제주(3)	부산 / 대구 / 경상(14)	광주/전라(6)
성동공고 송파공고 서울로봇고 한양공고 인덕과기고 광운전자공고 경기기계공고 용산공고	도화기계공고 인천정보산업고 인천해양과학고 수원공고 부평공고 안산공고 세경고	동아마고 대전공고 서산공고 예산전자공고 증평공고 연무대기계공고 충남기계공고	춘천기계공고 태백기계공고 서귀포산업과학고	경북항공고 부산전자공고 대구일마고 경남자동차고 신라공고 상서고 경북기계공고 대구공고 경북하이텍고 영남공고 조일고 김해건설공고 영천전자고 한국국제조리고	금파공고 진안공고 강호항공고 정남진산업고 남원제일고 한국치즈과학고

문  
의  
처

-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 ☎ 02)748-5187 군)900-5187
- 육 군 인사참모부 획득정책과 ☎ 042)550-1156 군)960-1156  
인사사령부 취업지원센터 ☎ 042)550-7534 군)960-7534
- 해 군 인사참모부 인재획득과 ☎ 042)553-1255 군)910-1255  
인사참모부 일자리정책과 ☎ 042)553-1154 군)910-1154
- 공 군 인사참모부 인재개발과 ☎ 042)552-1165 군)920-1165  
인사참모부 전직지원정책과 ☎ 042)552-1236 군)920-1236
- 해병대 인사참모처 인력획득과 ☎ 031)8012-3133 군)928-3133  
인사참모처 인력계획과 ☎ 031)8012-3118 군)928-3118

## II 학군단 예비역 교관/행정관

- 1) 선발 시기 : 해당 학교에서 추천 소요가 제기 시(최종채용 : 대학)
- 2) 자격요건 및 계약 기간
  - 가) 자격요건(10년 이상 복무자, 채용일 기준 3년 이내 전역자·전역예정자)
    - (1) 교관 : 소령 및 학사학위 이상
    - (2) 행정관 : 대위, 중사 이상 준·부사관 및 고졸학력 이상자
  - 나) 계약 기간
    - (1) 교관 : 3년, 계약 종료 후 1년 단위 재계약(10년까지 가능)
    - (2) 행정관 : 중사/대위(3년), 상사~준위(5년), 계약 종료 후 1년 단위 재계약(15년까지 가능)
- 3) 구비서류
  - 가) 응시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공개 동의서 각 1부
  - 나) 군병원 또는 종합병원 신체검사서 1부
  - 다) 최종 민간학력 졸업증명서 1부
  - 라) 정보화 자격증 등 각종 자격증 사본 및 확인서 각 1부
- 4) 선발대학 : 평택, 서경, 대진, 가톨릭, 대구가톨릭, 선문, 한밭, 백석, 동명, 동양, 서울과기대, 강남, 용인, 상명, 상명(천안), 홍익(세종), 전남(여수), 숙명, 성신, 경남과기대, 경동, 광주, 남서울, 우송대, 명지, 경북(상주), 대전, 강원(삼척), 공주(천안), 원광, 건양, 조선, 상지, 경남, 목원, 한국교통대, 숙명여대, 국립경상대
 

\* 재직 중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였던 자는 선발 후 취업 이전에 반드시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 절차를 거쳐야만 함(161페이지 참조)

### 문의처

- |                       |                 |            |
|-----------------------|-----------------|------------|
| • 육 군 인사사령부 취업지원센터    | ☎ 042)550-7531  | 군)960-7531 |
| • 해 군 인사참모부 일자리정책과    | ☎ 042)553-1154  | 군)910-1154 |
| • 공 군 인사참모부 전직지원정책과   | ☎ 042)552-1236  | 군)920-1236 |
| • 해병대 복지전직지원처 전직대외협력과 | ☎ 031)8012-2813 | 군)928-2813 |

## 12 부사관 학군단 예비역 단장, 교관 및 행정관

1) 선발 시기 : 해당 학교에서 추천 소요가 제기 시(최종채용 : 대학)

\* 채용공고 확인방법 : 국방부 홈페이지(알림마당) → 채용 → “상담관” 검색

2) 자격요건 및 계약 기간

가) 자격요건

구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단장	예)중령 이상	예)중령 이상	예)중령 이상	예)중령 ~대령
교관	예)대위 ~소령	예)소령 ~중령	예)대위 이상 장교, 상사 이상 부사관	예)대위 ~대령
행정관	예)상사 이상	예)중령 이하 장교, 중사 이상 부사관	예비역 간부	예)준위 ~소령, 상사 이상 부사관

나) 계약 기간

구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단장	1년	2년	3년 단임	1년
교관				2년
행정관				1년

\* 계약 연장 기간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각 군에 문의

3) 구비서류(군별로 상이)

가) 응시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나) 개인정보 제공/공개 동의서 1부

다) 군병원 또는 종합병원 신체검사서 1부

라) 최종 민간학력 졸업증명서 1부

마) 정보화 자격증 등 각종 자격증 사본 및 확인서 각 1부

4) 선발대학

가) 육군 : 대전과기대, 경북전문대, 전남과학대 나) 해군 : 경기과기대

다) 공군 : 영진전문대

라) 해병대 : 여주대

문의처

- 육군 인사사령부 취업지원센터
- 해군 인사참모부 일자리정책과
- 공군 인사참모부 전직지원정책과
- 해병대 복지전직지원처 전직대외협력과

- ☎ 042)550-7531    군)960-7531
- ☎ 042)553-1154    군)910-1154
- ☎ 042)552-1236    군)920-1236
- ☎ 031)8012-2813    군)928-2813

### 13 한국연구재단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사업

- 1) 선발 시기 : 연 2회(6월/12월)
- 2) 자격요건 : 예비역 장성 또는 정무직 및 1급 이상 국가공무원, 연구기관 20년 이상 연구경력자
- 3) 활용기관 및 임기 \* 초빙교수 활용 인원 : 대학별 최대 5명 가능

활용기관	4년제 대학 (서울/경기/인천 제외)	국·공립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수대학 (국방대/사관학교 등)
임 기	3년	3년	2년

#### 4) 임용절차

가) 활용기관과 활용 대상자가 수시로 과학재단에 신청

(1) 활용기관 : 초빙대상인사 지정 또는 활용 분야 등 일정한 조건만 정해서 신청(활용기관용 신청서 제출)

(2) 활용 대상자 : 희망기관(지역), 세부 학문 분야 등 참여 활동계획이 포함된 참여희망인 사용 개인 신청서 제출

\* 국방대, 사관학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 후 승인(국방부장관 추천자 승인)

나) 신청 기간 : 초빙활용 예정일 기준 6개월 전까지 수시 신청

\* 전반기 : 전년도 9월, 하반기 : 해당 연도 3월 기준

다) 선정절차 : 과학재단 심사위원회에서 소정 절차에 따라 심의/선정

#### 5) 보수 : 연구장려금(월 300만 원 이내) 지급

#### 문 의 처

- 한국연구재단 학술기획팀 ☎ 042)869-6371
- 홈페이지([www.nrf.re.kr](http://www.nrf.re.kr)), 주소 :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201

### 14 군인공제회 및 산하 사업체 군 경력직

#### 1) 채용 직급

\* 채용 모집공고 시 자격조건 명시

구분	사무직	M2 (본부장)	M1 (팀장)	S2 (차장)	S1 (과장)	C2/C1 (대리/사원)	지원직
	기술직		T5 (팀장)	T4 (차장)	T3 (과장)	T2/T1 (대리/사원)	

#### 2) 모집공고

가) 모집 시기 : 소요 발생 시 수시채용(공개채용)

나) 공고 장소 : 군인공제회, 국방전직교육원, 취업 전문기관 홈페이지

### 3) 제출서류

- 가) 지원서/이력서    나) 자기소개(주요업적) 및 경력소개서    다) 복무계획서  
 라)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    마) 경력증명서(군/사회)  
 바) 자격증 사본    사) 장애인증명서    아) 운전경력증명서  
 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보훈처 발행)    차) 채용결격사유확인서  
 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타)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4) 채용절차 : 모집공고(군인공제회/전직교육원) → 선발 및 임명(군인공제회)

5) 선발방법 : 서류심사, 면접, 이사회 또는 인사위원회 의결

- 가) 서류심사 : 심사위원(4명 이상) \* 학력/전공분야, 경력, 자격증, 건강 등 고려  
 나) 면접심사 : 서류심사합격자 \* 직무·인성 평가(필요시 실기/필기시험 실시)

6) 최종합격자 선발 \* 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가) M2급 이상 직원 : 이사회

나) M1급(T5) 이하 직원 : 인사위원회(산하 사업체 장에게 위임 가능)

\* 재직 중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였던 자는 선발 후 취업 이전에 반드시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 절차를 거쳐야만 함(161페이지 참조)

\* 취업제한 대상기업 : 대한토지신탁(주), 한국캐피탈(주), 공우이앤씨(주)

## 19 MOU 체결대학 교수/교관/정비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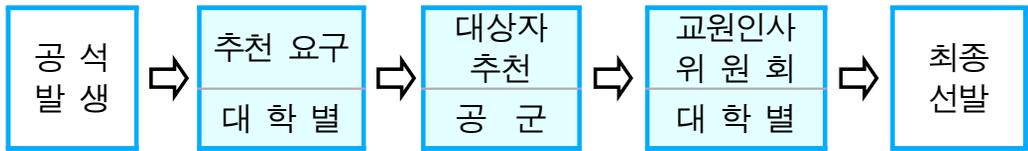
### 1) 채용기준 및 근무조건

구분		세종대	아주대	영남대	교통대	한서대	항공대	영진전문대
채 용 기 준	교수	4명	5명	4명	6명	3명	3명	2명
	교관	-	-	-	2명	2명	4명	2명
	정비사	-	-	-	2명	3명		-
	행정관	-	-	-	1명	1명		1명
계		3명	5명	4명	11명	9명	7명	5명
임기		기본1년 최대5년	기본2년 최대5년	기본2년 최대5년	기본2년 최대5년	기본2년 최대5년	기본2년 최대5년	기본3년 최대5년
보수(만원)		연3,600	연3,600	연3,600	연3,600 ~2,500	연3,600 ~2,500	연2,400 ~1,800	연3,600 ~2,500

## 2) 채용 시기 및 절차

가) 채용시기 : 대학별 공석 발생 시(3.1부 또는 9.1부)

나) 채용절차



## 16 롯데그룹 전역장교 신입사원

1) 선발 시기 : 상반기 공개채용, 매년 3월 중

2) 자격요건 : 전역(예정)장교로서 경영, 영업, 기계시공, 금융, 물류, 생산 관리, 일반 직무 등에 해당하는 자

3) 채용절차

가) 서류 접수

(1) 그룹 공식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서류 접수 진행

(2) L-TAB전형

나) 면접전형

다) 입문교육

4) 구비서류 : 입사지원 서류 등 그룹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 문의처

• 롯데그룹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문의 (job.lotte.co.kr)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신정동 29)

## 17 BGF리테일 영업관리

1) 선발 시기 : 상반기 공개채용, 매년 3월 중

2) 자격요건

가) 전역(예정)장교로서 영업관리 직군 희망자, 학점 3.0 이상(4.5 만점 기준)

나) 영어, 일본어, 중국어, 유통관련자격, 역사, 한자, OA활용능력 등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자

3) 채용절차

가) 서류 접수 : 그룹 공식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서류 접수 진행

나) 인성검사

다) 1차, 2차 면접

4) 구비서류 : 입사지원 서류 등 그룹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 문의처

• BGF리테일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문의 (www.bgfretail.com)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5 (삼성동)

## 18 ADT캡스 BP(Blue Patrol 출동직)

- 1) 선발 시기 : 연간 채용 서류 일정 계획(2~10월 중 약 6회 공채 진행)
- 2) 자격요건
  - 가) 전역(예정)간부(장교 및 부사관)로서 보안 출동직 희망자
  - 나) 1종 보통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운전경력 1년 이상 필수)
  - 다) 경비지도사(일반 또는 기계) 자격증 소지자 우대
  - 라) 공인 무술 유단자 우대
- 3) 채용절차
  - 가) 서류 접수 : 그룹 공식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서류 접수 진행
  - 나) 채용캠프      다) 본부면접      라) 현장체험      마) 신입입문과정
- 4) 구비서류 : 입사지원 서류 등 그룹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 문의처

- ADT 고객지원팀 (job.adtcaps.co.kr) ☎ 02)510-8573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13 (삼성동)

## 19 LG유플러스 영업전문인재

- 1) 선발 시기 : 연간 채용 서류 일정 계획(분기별, 연 4회 공채)
- 2) 자격요건 : 전역(예정)간부(장교·부사관)로서 영업전문, 서비스 직군 희망자
- 3) 채용절차
  - 가) 서류 접수 : 그룹 공식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서류 접수 진행
  - 나) 온라인 AI면접 및 스몰과제      다) 1Day 면접, 임원면접
  - 라) 채용검진      마) 입사 및 웰컴 행사      바) 입문교육
- 4) 구비서류 : 입사지원 서류 등 그룹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 문의처

- LG유플러스 채용홈페이지 (recruit.lguplus.com)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2

---

# 육 군

---

## Ⅰ 육군 전투지휘훈련단 예비역 장성 관찰관

### 1) 업무주관

운영(주관)부서	모집공고부서	최종 선발부서
교육사 전투지휘훈련단 계획지원처	인사사 전역장병지원처 취업지원센터	교육사 전투지휘훈련단 계획지원처
군)975-5115, (042)878-5115	군)960-7531, (042)550-7531	군)975-5115, (042)878-5115

### 2) 선발시기 : 소요 발생 시

### 3) 자격요건

가) 전역 3년 이내인 예비역 장성, 채용일 기준 전역예정 장성

\* 군단 선임관찰관: 군단장을 마친 중장, 사단 선임관찰관: 군단장 또는 사단장을 마친 중장 또는 소장, 관찰관: 예비역 소장 또는 준장

나) 군단급 이상 제대 관련 참모 역임자

다) 도덕성과 인격을 겸비한 덕망 있는 자

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4) 계약기간 : 1년 계약 후 1년 재계약 가능(총 2년)

### 5) 구비서류

가) 응시 지원서 및 개인정보 제공/공개 동의서 각 1부

나) 군병원 또는 종합병원 신체검사서 1부

다) 군사 분야 논문 및 연구실적 사본 1부(희망자)

**2 육군 전투지휘훈련단 예비역 BCTP 교관**

1) 업무주관

운용(주관)부서	모집공고부서	최종 선발부서
교육사 전투지휘훈련단 계획지원처	인사사 전역장병지원처 취업지원센터	교육사 전투지휘훈련단 계획지원처
군)975-5115, (042)878-5115	군)960-7531, (042)550-7531	군)975-5115, (042)878-5115

2) 선발시기 : 소요 발생 시

3) 자격요건

- 가) 영관장교로 계약일 이전 전역 3년 이내 또는 전역 예정자
- 나) 계약 만료 시까지 활용 가능자
-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채용방법 : 1차 필기시험/서류심사, 2차 면접

필 기 시 험	서 류 심 사	면 접 심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투지휘 훈련지침서</li> <li>• 창조21모델 사용자 지침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 경력 증명서</li> <li>• 전산 관련 자격증</li> <li>• BCTP 자격증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과제 발표</li> <li>* 발표력, 품행/품성 평가 병행</li> </ul>

### 3 육군 군단급 교육훈련 전문평가관

#### 1) 업무주관

통제부서	모집공고부서	최종 선발부서
육본 정작부 교육훈련정책과	인사사 전역장병지원처 취업지원센터	각 군단(작전사) 선발 심의위원회
군)960-3324, (042)550-3324	군)960-7531, (042)550-7531	각 부대별 교육훈련참모처 평가과

#### 2) 선발시기 : 소요 발생 시

#### 3) 자격요건

- 가) 예비역은 영관장교로서 채용일 기준 전역 후 3년 이내인 자
- 나) 현역은 영관장교로서 채용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
- 다) 군사Ⅱ급 비밀 취급이 가능하며, 보안적부심의를 이상이 없는 자
- 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4) 채용방법

- 가) 1차 선발은 인사사령부 취업지원센터에서 서류심사로 선발 및 추천
- 나) 2차 선발은 1차 선발 인원을 운용부대에서 체력측정 및 면접 후 선발

#### 5) 구비서류

- 가) 응시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컬러사진 2매(3X4cm)
- 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신원진술서 각 1부
- 다) 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또는 정례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1부
- 라) 부가세납부 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각 1부
- 마) 개인사업 여부 사실관계 증명서 1부
- 바) 군 경력증명서(또는 관련 부대 및 근무 확인서) 1부
- 사)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급) 1부
- 아) 학위증명서, 국가자격증, 관련 분야 학술연구지/기고자료(희망자)

#### 4 육군 KCTC 예비역 교관

##### 1) 업무주관

운영(주관)부서	모집공고부서	최종 선발부서
육본 과학화전투훈련단 훈련부 훈련계획과	인사사 전역장병지원처 취업지원센터	육본 과학화전투훈련단 훈련부 훈련계획과
군)879-3115, (033)460-8316	군)960-7531, (042)550-7531	군)879-3115, (033)460-8316

##### 2) 선발시기 : 소요 발생 시

##### 3) 자격조건

- 가) 예비역은 영관장교로서 채용일 기준 전역 후 3년 이내인 자
- 나) 현역은 영관장교로서 채용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
- 다) 근무병과 : 전투병과, 기술병과
- 라) 군사Ⅱ급 비밀 취급이 가능하며, 보안적부심의에 이상이 없는 자
- 마)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4) 채용방법

- 가) 1차 선발은 인사사령부 취업지원센터에서 서류심사로 선발 및 추천
- 나) 2차 선발은 1차 선발 인원을 운용부대에서 면접 후 선발

##### 5) 구비서류

- 가) 응시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컬러사진 2매(3X4cm)
- 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신원진술서 각 1부
- 다) 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또는 정례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1부
- 라) 군 경력증명서(참모총장 명의 또는 장관급 이상 부대의 관인날인)

## 5) 육군 교리연구위원

### 1) 업무주관

운영(주관)부서	모집공고부서	최종 선발부서
교육사령부 교리부 교리기획과	인사사 전역장병지원처 취업지원센터	교육사령부 교리부 교리기획과
군)975-6425, (042)879-6425	군)960-7531, (042)550-7531	군)975-6425, (042)879-6425

### 2) 선발시기 : 소요 발생 시

### 3) 자격조건

- 가) 예비역은 영관장교로서 채용일 기준 전역 후 3년 이내인 자
- 나) 현역은 영관장교로서 채용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
- 다) 군사Ⅱ급 비밀 취급이 가능하며, 보안적부심의에 이상이 없는 자
- 라) 군사 교육기관 교수·교리연구 및 작성자, 군 관련 연구 및 평가자 등 유경험자
- 마)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4) 채용방법

- 가) 1차 선발은 인사사령부 취업지원센터에서 서류심사로 선발 및 추천
- 나) 2차 선발은 1차 선발 합격자 중 면접 평가(면접, 논술, 경력평가)로 구분 시행, 최종 선발은 2차 성적순 및 심의로 선발

### 5) 구비서류

- 가) 응시 지원서, 면접용 경력확인서, 신원진술서 각 1부
- 나) 육군 발행 군 경력증명서 1부
- 다) 사진 2매(3×4cm)(최근 3개월 이내 촬영)
- 다) 종합병원/건강검진기관 신체검사서 (채용기준 1년 이내) 사본 1부  
\* 현역으로서 매년 부대에서 실시하는 정기 신체검사 결과 제출 가능
- 마) 전역증 또는 전역명령서 사본 각 1부  
\* 전역예정자는 장관급 부대장이 발급한 전역예정 확인서와 자필 작성한 전역지원서 사본 첨부
- 바) 교리 관련 연구자료 등 증명할 수 있는 근거문서 사본 1부
- 사) 정보화 자격증 사본 1부 \* 자격증 보유자에 한함

## 6 육군 전문상담교관

### 1) 업무주관

운영(주관)부서	모집공고부서	최종 선발부서
교육사 리더십/임무형지휘센터 인성/상담교육과	인사사 전역장병지원처 취업지원센터	교육사 리더십/임무형지휘센터 연구개발과
군)975-6748, (042)878-6748	군)960-7531, (042)550-7531	군)975-6713, (042)878-6713

### 2) 선발시기 : 소요 발생 시

### 3) 자격조건

- 가) 예비역 영관장교(전역 후 3년 이내 또는 전역예정자) 또는 군 관련 업무(군 교육기관 교수·교리연구 및 작성 등) 종료 후 3년 이내 자
- 나) 인성/상담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 교관근무 경력자 우대
-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4) 채용방법

- 가) 1차 선발은 인사사령부 취업지원센터에서 서류심사로 선발 및 추천
- 나) 2차 선발은 1차 선발 및 추천 인원을 운용부대에서 면접 후 선발

### 5) 구비서류

- 가)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근무복안, 신원진술서(B) 각 1부
- 나) 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또는 정례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1부
- 다) 보훈대상자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라) 학위증명서, 국가자격증, 관련 분야 학술연구지/기고자료(희망자)

## 7 육군 미래혁신연구관

### 1) 업무주관

통제부서	모집공고부서	최종 선발부서
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 미래전략과	인사사 전역장병지원처 취업지원센터	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 미래전략과
군)960-6903, (042)550-6903	군)960-7531, (02)550-7531	군)960-6903, (042)550-6903

### 2) 선발시기 : 소요 발생 시

### 3) 자격요건

- 가) 대·중·소령 전역 후 3년 이내 예비역 또는 채용일 기준 전역 가능자
- 나) 석사 이상 학위 보유자
- 다) 국방정책, 군사전략, 연합·합동작전, 무기체계 분야 근무경험자 우대
- 라) 징계 사실이 없는 자 (서류심사 시 확인)
- 마) 정부, 타 기관과 용역 계약을 맺고 있지 않은 자
- 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4) 채용방법

- 가) 1차 선발은 인사사령부 취업지원센터에서 서류심사로 선발 및 추천
- 나) 2차 선발은 1차 선발 인원을 미래혁신연구센터에서 면접 후 선발

### 5) 구비서류

- 가) 응시 지원서, 자기소개서, 신원진술서 각 1부
- 나)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3X4cm)
- 다) 육군 발행 군경력증명서 1부
- 라) 종합병원 및 건강검진기관 신체검사서 1부 (채용기준 1년 이내)
  - \* 현역으로서 매년 부대에서 실시하는 정기 신체검사 결과 제출 가능
- 마) 전역증 또는 전역명령서 각 1부(사본)
  - \* 전역예정자는 장관급 부대장이 발급한 전역예정 확인서와 자필 작성한 전역지원서 사본 첨부
- 바) 기타 관련 증빙자료(자격증·학위증명서·연구실적 근거문서 등 사본 각 1부)

## 8 육군 임관종합평가관

### 1) 업무주관

운영(주관)부서	모집공고부서	최종 선발부서
교육사령부 교육훈련부 학교교육과	인사사 전역장병지원처 취업지원센터	교육사령부 교육훈련부 학교교육과
군)975-6664, (042)879-6664	군)960-7531, (042)550-7531	군)975-6664, (042)879-6664

### 2) 선발시기 : 소요 발생 시

### 3) 자격조건

- 가) 전역 후 3년 이내인 예비역 또는 채용일 기준 전역이 가능한  
영관장교, 상·원사
- 나) 병과 : 전투병과(보병·포병·기갑·공병·정보통신·정보·방공·항공)
-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4) 채용방법

- 가) 1차 선발은 인사사령부 취업지원센터에서 서류심사로 선발 및 추천
- 나) 2차 선발은 1차 선발 합격자 중 면접 평가로 시행  
최종 선발은 서류심사와 면접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선발 심의위원  
회에서 심의 의결

### 5) 구비서류

- 가) 사진(3×4cm) 2장을 포함한 응시원서 1부
-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다) 사진(3×4cm) 1장을 포함한 신원진술서 1부
- 라)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2부
- 마) 군경력확인서 1부
- 바) 전역증 또는 전역명령서 사본 1부
- 사) 정보화 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 보유자)

**9 육군 정책발전연구위원**

1) 업무주관

운영(주관)부서	모집공고부서	최종 선발부서
육본 정책실 정책조정과	인사사 전역장병지원처 취업지원센터	인사사 전역장병지원처 취업지원센터
군)960-2123(6211) (042)550-2123(6211)	군)960-7531, (042)550-7531	군)960-7531, (042)550-7531

2) 선발시기 : 소요 발생 시, 소요심의위원회 결정

3) 자격조건

- 가) 예비역은 채용예정일 기준 전역 3년 이내인 자, 현역은 채용예정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
-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다) 정부 등 다른 기관에 취업하거나 유급용역 계약을 맺고 있지 않은 자
- 라) 계약기간 동안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
- 마) 기능 분야 근무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
  - \* 육군 추천 직위와 군 관련 직위에 선발되어 2년 이상 근무 중인 자, 근무경험이 있는 자는 선발에서 제외

4) 채용방법 : 인사사 취업선발심의위원회 심의 (서류심의)

5) 구비서류

- 가) 응시 지원서, 개인정보 제공 / 공개 동의서 각 1부
- 나) 개인별 업무 관련 연구실적 사본 1부(희망자)



---

# 해 군(해병대 포함)

---

## 1 해군 발전연구위원

- 1) 선발시기 : 매년 12월 / 공석 발생 시
- 2) 자격요건
  - 가) 전역 3년 이내인 예비역 장성/대령(채용일 이전 전역자)
  - 나) 미래 해군력 건설에 필요한 경력 및 전문성을 보유하고 1년 이상 연구가 가능한 자
  - 다) 정부 등 다른 기관과 용역계약을 맺고 있지 않은 자
- 3) 계약기간 : 1년 단위 재계약(최대 2년)
- 4) 급 여 :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 차등 지급(월 장성 240여만 원, 대령 210여만 원)
- 5) 구비서류 : 응시 지원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군경력증명서 등

### 문의처

- 해군본부 인사참모부 일자리정책과 ☎ 042)553-1154 군)910-1154
- 해군본부 정책실 정책기획과 ☎ 042)553-2216 군)910-2216

## 2 해군 예비역 연습지원관

- 1) 선발시기 : 소요 발생 시
- 2) 자격요건
  - 가) 전역 3년 이내인 예비역 원사~장성(채용일 이전 전역자)
  - 나) 계급에 상응한 전문연구능력을 구비한 자
  - 다) 정부 등 다른 기관과 용역계약을 맺고 있지 않은 자
  - 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3) 계약기간 : 1년 단위 재계약/대령·준위·원사 3년, 중령 5년, 소령 10년
- 4) 급 여 :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 차등 지급(월 장성 240여만 원, 대령 이하 210여만 원)
- 5) 구비서류 : 응시 지원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군경력증명서 등

### 3) 해군 해상훈련전문평가관

- 1) 선발시기 : 소요 발생 시
- 2) 자격요건
  - 가) 전역 3년 이내인 예비역 원사 ~ 장성(채용일 이전 전역자)
  -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다) 정부 등 다른 기관과 용역계약을 맺고 있지 않은 자
- 3) 계약기간 : 1년 단위 재계약 / 대령·준위 3년, 중령 5년, 소령 10년
- 4) 급 여 :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 지급(월 210여만 원)
- 5) 구비서류 : 응시 지원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군경력증명서 등

#### 문의처

- 해군본부 인사참모부 일자리정책과 ☎ 042)553-1154 군) 910-1154
- 연습훈련참모처 작전교리지원과 ☎ 051)679-3123 군) 917-3123

### 4) 해군 교리연구관

- 1) 선발시기 : 소요 발생 시
- 2) 자격요건
  - 가) 전역 3년 이내인 예비역 영관장교(채용일 이전 전역자)
  - 나) 계급에 상응한 전문능력을 구비한 자
  - 다) 정부 등 다른 기관과 용역계약을 맺고 있지 않은 자
  - 라) 작전부대 작전/전술 및 교리 관련 분야 근무 유경험자
  - 마)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3) 계약기간 : 1년 단위 재계약 / 대령 3년, 중령 5년
- 4) 급 여 :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 지급(월 210여만 원)
- 5) 구비서류 : 응시 지원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군경력증명서 등

#### 문의처

- 해군본부 인사참모부 일자리정책과 ☎ 042)553-1154 군) 910-1154
- 전평단 교리발전처 교리기획과 ☎ 042)553-7711 군) 910-7711

## 5 해군 임관종합평가관

- 1) 선발시기 : 신규소요 / 공석 발생 시
- 2) 자격요건
  - 가) 전역 3년 이내인 전투병과 예비역 영관장교(채용일 이전 전역자)
  - 나) 정부 등 다른 기관과 용역계약을 맺고 있지 않은 자
  - 다) 교육부대 중대장/대대장 경력자, 교관 경력자 우대
  - 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3) 계약기간 : 1년 단위 재계약 / 대령 3년, 중령 5년, 소령 10년
- 4) 급 여 :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 지급
- 5) 구비서류 : 응시 지원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군경력증명서 등

### 문의처

- 해군본부 인사참모부 일자리정책과 ☎ 042)553-1154 군) 910-1154
- 교육사 평가실 ☎ 055)907-2092 군) 969-2092

## 6 해군 강의전담 초빙교수

- 1) 선발시기 : 매년 1~2월
- 2) 자격요건
  - 가) 현역은 채용일 기준 1개월 이전에 전역해야 하며 예비역(20년 이상 장기 근속자)는 최초 지원 시 전역 후 5년 이내인 자
  - 나) 모집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교육 또는 연구경력 10년 이상(단, 군사학 등 특수분야는 강의 전담 초빙교수 추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분야 근무경력을 인정)
  - 다) 현역복무기간 중 중징계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현역 복무 부적합 사유로 전역되지 않은 자
  - 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3) 계약기간 : 1년 단위 재계약 / 대령 3년, 중령 5년, 소령 10년
- 4) 급 여 :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 지급
- 5) 구비서류 : 응시 지원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군경력증명서 등

### 문의처

- 해군본부 인사참모부 일자리정책과 ☎ 042)553-1154 군) 910-1154
- 해군사관학교 교수부 교무처 ☎ 055)907-5213 군) 969-5213

## 7 해군 리더십코칭전문관

- 1) 선발시기 : 소요 발생 시
- 2) 자격요건
  - 가) 전역 3년 이내인 예비역 영관장교(채용일 이전 전역자)
  - 나) 코칭 관련 자격증 보유자(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자격)
  - 다) 영관급 지휘관 1년 이상 필한 자
  - 라) 정부 등 다른 기관과 용역계약을 맺고 있지 않은 자
  - 마)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3) 계약기간 : 1년 단위 재계약 / 대령 3년, 중령 5년, 소령 10년
- 4) 급 여 :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 지급(월 210여만 원)
- 5) 구비서류 : 응시 지원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코칭전문관 활용계획서 등

### 문의처

- 해군본부 인사참모부 일자리정책과 ☎ 042)553-1154 군)910-1154
- 해군리더십센터 교육부 ☎ 055)907-2812 군)969-2812

## 7 해군 음향자료지원관

- 1) 선발시기 : 매년 1~2월
- 2) 자격요건
  - 가) 대잠, 음향신호 분석 분야 근무경력자
  - 나) 대잠, 음향신호 분석체계 운용 근무경력자
  - 다) 함정 음탐기 운용/정비 분야 근무경력자
  - 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3) 계약기간 : 1년 단위 재계약 / 준위·원사 3년, 상사 5년
- 4) 급 여 : 연봉 약 2,300여만 원
- 5) 구비서류 : 응시 지원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근무경력증명서 등

### 문의처

- 해군본부 인사참모부 일자리정책과 ☎ 042)553-1154 군)910-1154
- 해군 정보단 ☎ 055)549-5846 군)919-5846

## 8 해병대 전투발전연구위원

1) 자격요건 : 아래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한 예비역

- 가) 전역 3년 이내인 예비역 장성 및 영관장교 이상(채용일 이전 전역자)
- 나) 연합/합동상륙작전, 연합/합동강제진입작전, 해안양륙군수지원작전, 도서지역작전 분야에서 정보/작전/교육훈련/지속지원/전투발전 관련 업무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다) 미래 해병대 건설에 필요한 경력 및 전문성을 보유하고 1년 이상 연구가 가능한 자
- 라) 군인사법 제10조 2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 선발 배점 기준

(단위 : 점)

총 점	근무실적 (평정)	학위	과거 채용경력	전역기간	면접시험	위원회 평가	연구 기고실적
100	30	10	10	10	10	15	15

3) 제출서류

- 가) 응시지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컬러사진 2매(3X4cm)
- 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다) 신원진술서, 자기소개서 1부
- 라) 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또는 정례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1부
- 마) 개인사업 여부 사실관계 증명서 1부
- 바) 군 경력증명서(또는 관련 부대 및 근무 확인서) 1부
- 사)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급) 1부
- 아) 학위증명서, 관련 분야 학술연구지/기고 자료

4) 급여('20년 기준) :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 차등 지급(월 장성 236만원, 영관 206만원/급식비 월 13만원, 상여금 연 80만원 별도 지급)

### 문의처

- 해병대사령부 전투발전처
- 해병대사령부 복지/전직지원처

☎ 031)8012-4212

☎ 031)8012-2811~3

## 10 해병대 전투모의센터 전문교관/기술교관

### 1) 자격요건

- 가) 전역 3년 이내인 예비역 장교(전문교관), 관련 분야 근무자(기술교관)  
 \* 기술교관은 모델개발 및 운용 등의 관련분야 실무 경험자, 전산(H/W, S/W)분야 개발, 유지보수 관련분야 유경험자 채용
- 나) 해병대 BCTP 전문교관 자격증 보유자
- 다) 군인사법 제10조 2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복무 부적합 사유로 전역하지 아니한 자

### 2) 선발 배점 기준 / 평가방법

#### 가) 전문교관

(단위 : 점)

계	근무실적 (평정)	학위	과거 채용경력	전역 기간	면접 시험	위원회 평가	필기/ 실기	자격증	
								BCTP	정보화
100	30	5	10	10	10	15	10	5	5

\* 필기 : 전자봉 모델 사용자 지침서 / 실기 : 컴퓨터 활용능력

#### 나) 기술교관

(단위 : 점)

계	근무실적 (평정)	학위	과거 채용경력	전역 기간	면접 시험	위원회 평가	필기/ 실기	자격증	
								BCTP	정보화
100	-	5	10	10	10	15	40	5	5

\* 필기 : 전자봉 모델 운용자 지침서 / 실기 : 컴퓨터 활용능력

### 3) 제출서류

- 가) 응시지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컬러사진 2매(3X4cm)
- 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신원진술서 각 1부
- 다) 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또는 정례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1부
- 라) 개인사업 여부 사실관계 증명서 1부
- 마) 군 경력증명서(또는 관련 부대 및 근무 확인서) 1부
- 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급) 1부
- 사) 자격증 사본 1부
- 아) 모델개발 및 운용 등의 관련 분야 실무 경험자, 전산 분야 개발, 유지보수 관련 분야 근무경력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부
- 4) 급여(20년 기준) :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 차등 지급(월 236만 원(기술교관), 206만 원(전문교관)/급식비 월 13만 원, 상여금 연 80만 원 별도 지급)

#### 문의처

• 해병대 전투모의센터

☎ 031)8012-2712

• 해병대사령부 복지/전직지원처

☎ 031)8012-2811~3

## II 해병대 교육훈련전문평가관

### 1) 자격요건

- 가) 전역 3년 이내인 예비역 영관장교(채용일 이전 전역자)
- 나) 연합/합동상륙작전, 연합/합동강제진입작전, 해안양륙군수지원작전, 도서지역작전 분야에서 정보/작전/교육훈련/지속지원/전투발전 관련 업무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다) 군인사법 제10조 2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2) 선발 배점 기준

(단위 : 점)

총 점	근무실적 (평정)	학위	과거 채용경력	전역기간	면접시험	위원회 평가	자격증
100	40	10	10	10	10	15	5

### 3) 제출서류

- 가) 응시지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컬러사진 2매(3X4cm)
- 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신원진술서 각 1부
- 다) 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또는 정례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1부
- 라) 부가세납부 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각 1부
- 마) 개인사업 여부 사실관계 증명서 1부
- 바) 군 경력증명서(또는 관련 부대 및 근무 확인서) 1부
- 사)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급) 1부
- 아) 자격증 사본 1부

### 4) 급여(20년 기준) :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 차등 지급(월 206만 원

/급식비 월 13만 원, 상여금 연 80만 원 별도 지급)

#### 문의처

- 해병대사령부 교육훈련참모처 ☎ 031)8012-3523
- 해병대사령부 복지/전직지원처 ☎ 031)8012-2811~3

## 12 해병대 훈련관찰관

### 1) 자격요건

- 가) 전역 3년 이내인 예비역 영관장교(채용일 이전 전역자)
- 나) 연합/합동상륙작전, 연합/합동강제진입작전, 해안양륙군수지원작전, 도서지역작전 분야에서 정보/작전/교육훈련/지속지원/전투발전 관련 업무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다) 군인사법 제10조 2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2) 선발 배점 기준

(단위 : 점)

총 점	근무실적 (평정)	학위	과거 채용경력	전역기간	면접시험	위원회 평가	자격증
100	40	10	10	10	10	15	5

### 3) 제출서류

- 가) 응시지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컬러사진 2매(3X4cm)
- 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신원진술서 각 1부
- 다) 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또는 정례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1부
- 라) 개인사업 여부 사실관계 증명서 1부
- 마) 군 경력증명서(또는 관련 부대 및 근무 확인서) 1부
- 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급) 1부
- 사) 자격증 사본 1부

- 4) 급여('20년 기준) :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 차등 지급(월 206만 원 /급식비 월 13만 원, 상여금 연 80만 원 별도 지급)

#### 문의처

- 해병대사령부 교육훈련참모처 ☎ 031)8012-3513
- 해병대사령부 복지/전직지원처 ☎ 031)8012-2811~3

### 13 해병대 임관종합평가관

#### 1) 자격요건

- 가) 전역 3년 이내인 예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 나) 연합/합동상륙작전, 연합/합동강제진입작전, 해안양륙군수지원작전, 도서지역작전 분야에서 정보/작전/교육훈련/지속지원/전투발전 관련 업무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다) 군인사법 제10조 2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라) 전투지휘능력, 교육훈련 지도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교육과 경험이 풍부한 자

#### 2) 선발 배점 기준

(단위 : 점)

총 점	근무실적 (평정)	학위	과거 채용경력	전역기간	면접시험	위원회 평가	자격증
100	40	10	10	10	10	15	5

#### 3) 제출서류

- 가) 응시지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컬러사진 2매(3X4cm)
- 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신원진술서 각 1부
- 다) 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또는 정례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1부
- 라) 개인사업 여부 사실관계 증명서 1부
- 마) 군 경력증명서(또는 관련 부대 및 근무 확인서) 1부
- 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급) 1부
- 사) 자격증 사본 1부

- 4) 급여('20년 기준) :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 차등 지급(월 206만 원 /급식비 월 13만 원, 상여금 연 80만 원 별도 지급)

#### 문 의 처

- 해병대사령부 교육훈련참모처
- 해병대사령부 복지/전직지원처

☎ 031)8012-3521

☎ 031)8012-2811~3

## 14 항공교육훈련전문평가관

### 1) 자격요건

- 가) 항공 사고분야 조사 경력(2년 이상자)을 보유한 예비역 영관장교
- 나) 군인사법 제10조 2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2) 선발 배점 기준

(단위 : 점)

총 점	근무실적 (평정)	학위	과거 채용경력	전역기간	면접시험	위원회 평가	자격증
100	40	10	10	10	10	15	5

### 3) 제출서류

- 가) 응시지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컬러사진 2매(3X4cm)
- 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신원진술서 각 1부
- 다) 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또는 정례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1부
- 라) 개인사업 여부 사실관계 증명서 1부
- 마) 군 경력증명서(또는 관련 부대 및 근무 확인서) 1부
- 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급) 1부
- 사) 자격증 사본 1부

- 4) 급여('21년 기준) :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 차등 지급(월 206만 원 /급식비 월 13만 원, 상여금 연 80만 원 별도 지급)

#### 문의처

- 해병대사령부 군수참모처
- 해병대사령부 복지/전직지원처

☎ 031)8012-3463

☎ 031)8012-2811~3

## 15 해병대 교리연구관

### 1) 자격요건

가) 예비역 영관장교

나) 연합/합동상륙작전, 연합/합동강제진입작전, 해안양륙군수지원작전, 도서지역작전 분야에서 정보/작전/교육훈련/지속지원/전투발전 관련 업무 2년 이상 근무경력자

다) 군인사법 제10조 2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2) 선발 배점 기준

(단위 : 점)

총 점	근무실적 (평정)	학위	과거 채용경력	전역기간	면접시험	위원회 평가	자격증
100	40	10	10	10	10	15	5

### 3) 제출서류

가) 응시지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컬러사진 2매(3X4cm)

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신원진술서 각 1부

다) 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또는 정례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1부

라) 개인사업 여부 사실관계 증명서 1부

마) 군 경력증명서(또는 관련 부대 및 근무 확인서) 1부

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급) 1부

사) 자격증 사본 1부

4) 급여('21년 기준) :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 차등 지급(월 206만 원 /급식비 월 13만 원, 상여금 연 80만 원 별도 지급)

### 문의처

- 해병대사령부 전투발전혁신처
- 해병대사령부 복지/전직지원처

☎ 031)8012-4212

☎ 031)8012-28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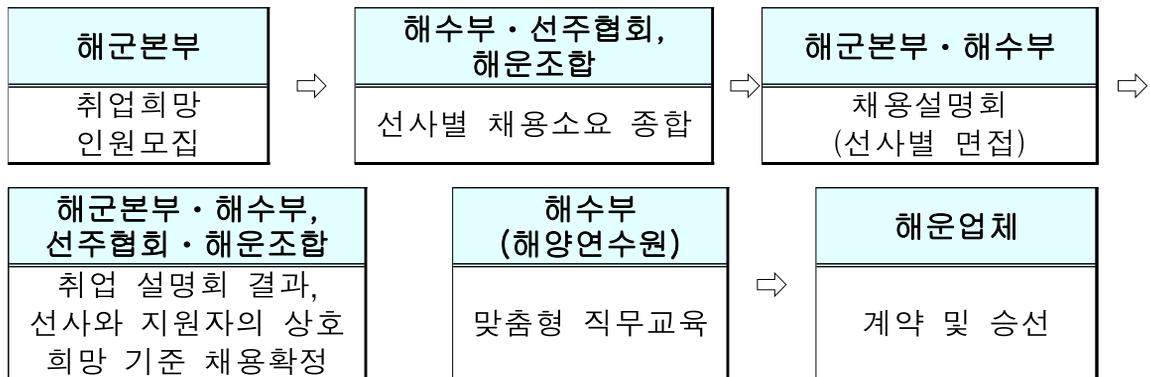
## 16 남 동 발 전

- 1) 선발시기 : 소요 발생 시
- 2) 자격요건
  - 가) 채용일 이전 전역 가능한 현역
  - 나) 채용일 종료일 기준 전역 후 3년 이내인 자
  - 다) 중징계 및 형사사건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3) 계약기간 및 처우 : 계약기간 업체별 상이, 보수 월 250 ~ 350만 원
- 4) 구비서류
 

가) 응시 지원서	나) 자기소개서
다) 경력기술서	라)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마) 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 17 해 운 업 체

- 1) 선발시기 : 연 1회(후반기)
- 2) 자격요건
  - 가) 항해(기관)사 : 3급 면허 소지자
  - 나) 부원 : 면허 미소지자 또는 4급 이하 면허 소지자
- 3) 채용절차



- 4) 구비서류 : 해운업계 취업 지원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자기소개서

**문 의 처**

• 해군본부 인사참모부 일자리정책과 ☎ 042)553-1154 군)910-1154

---

# 공 군

---

## ① 항공력발전 연구위원

- 1) 선발시기 : 해당 연도 12월~익년도 1월(공석 발생 시 수시채용 가능)
- 2) 자격요건
  - 가) 전역 3년 이내인 예비역 장성/대령(채용일 이전 전역자)
  -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 타 기관(공공기관·기업체 등)과 근로·용역계약을 맺지 않은 자
  - 라) 해당 근무병과에 대해 전문성을 구비한 자
- 3) 계약기간 : 1년 단위 계약(최대 2년)
- 4) 급 여 :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 지급
- 5) 구비서류
  - 가) 응시지원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신원진술서 각 1부
  - 나) 건강보험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각 1부

## ② 연합·합동훈련 평가관

- 1) 선발시기 : 당해 연도 12월~익년도 1월(공석 발생 시 수시채용 가능)
- 2) 자격요건
  - 가) 전역 3년 이내인 예비역 장성/대령(채용일 이전 전역자)
  -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 타 기관(공공기관·기업체 등)과 근로·용역계약을 맺지 않은 자
  - 라) 작전계획 및 운영부서 근무경력자
- 3) 계약기간 : 1년 단위 계약(최대 2년)
- 4) 급 여 :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 지급
- 5) 구비서류
  - 가) 응시 지원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신원진술서 각 1부
  - 나) 건강보험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각 1부

문의처

• 공군본부 전직지원정책과

☎ 042)552-1233

☎ 920-1233

### 3 위계임운영요원

- 1) 선발시기 : 해당 연도 12월~익년도 1월(공석 발생 시 수시채용 가능)
- 2) 자격요건
  - 가) 전역 3년 이내인 예비역 장성/영관장교(채용일 이전 전역자)
  - 나) 계급에 상응한 전문연구능력을 구비한 자
  - 다) 타 기관(공공기관·기업체 등)과 근로·용역계약을 맺지 않은 자
  - 라) 위계임 운영부서 및 작전계획/운영부서 근무경력자
- 3) 계약기간 : 1년 단위 계약(최대 3년)
- 4) 급 여 :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 지급
- 5) 구비서류 : 응시 지원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신원진술서, 건강보험 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각 1부

#### 문의처

- |                |                |            |
|----------------|----------------|------------|
| • 공군본부 전직지원정책과 | ☎ 042)552-1233 | 군)920-1233 |
| • 항작본부 전쟁모의과   | ☎ 031)669-5157 | 군)930-5157 |
| • 전발단 모의분석과    | ☎ 042)552-5721 | 군)920-5721 |

### 4 비행시뮬레이터 전문평가관

- 1) 선발시기 : 해당 연도 12월~익년도 1월(공석 발생 시 수시채용 가능)
- 2) 자격요건
  - 가) 전역 3년 이내인 조종병과 예비역 중·소령(채용일 이전 전역자)
  - 나) 계급에 상응한 전문연구능력을 구비한 자
  - 다) 타 기관(공공기관·기업체 등)과 근로·용역계약을 맺지 않은 자
  - 라) 조종 및 CPT분야 근무경험자
- 3) 계약기간 : 1년 단위 계약(최대 3년)
- 4) 급 여 :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 지급
- 5) 구비서류 : 응시 지원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신원진술서, 건강보험 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각 1부

#### 문의처

- 10비 감찰안전실 표준평가과 ☎ 031)220-1091 군)935-1091

## 5 항공무기정비 전문평가관

- 1) 선발시기 : 해당 연도 12월~익년도 1월(공석 발생 시 수시채용 가능)
- 2) 자격요건
  - 가) 전역 3년 이내인 예비역 준·부사관(채용일 이전 전역자)
  - 나) 타 기관(공공기관·기업체 등)과 근로·용역계약을 맺지 않은 자
  - 다) 항공기 정비 관련 전문지식 및 기술능력을 구비하는 자
- 3) 계약기간 : 1년 단위 계약(최대 3년)
- 4) 급 여 :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 지급
- 5) 구비서류
  - 가) 응시 지원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신원진술서 각 1부
  - 나) 건강보험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각 1부

문의처

• 공군본부 항공무기관리과

☎ 042)552-4171 군)920-4171

## 6 통신전자 전문평가관

- 1) 선발시기 : 해당 연도 12월~익년도 1월(공석 발생 시 수시채용 가능)
- 2) 자격요건
  - 가) 전역 3년 이내인 예비역 준·부사관(채용일 이전 전역자)
  - 나) 타 기관(공공기관·기업체 등)과 근로·용역계약을 맺지 않은 자
  - 다) 방공관제레이더, 항공관제레이더분야 정비능력을 구비한 자
- 3) 계약기간 : 1년 단위 계약(최대 3년)
- 4) 급 여 :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 지급
- 5) 구비서류
  - 가) 응시 지원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신원진술서 각 1부
  - 나) 건강보험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각 1부

문의처

• 관제사 전자체계처 기반통신과

☎ 031)669-6425 군)993-6425

• 7전대 전술통신과

☎ 031)690-2104 군)924-2104

## 7 전술항공통제 전문평가관

- 1) 선발시기 : 해당 연도 12월~익년도 1월(공석 발생 시 수시채용 가능)
- 2) 자격요건
  - 가) 전역 3년 이내인 조종병과 예비역 영관장교(채용일 이전 전역자)
  - 나) 타 기관(공공기관·기업체 등)과 근로·용역계약을 맺지 않은 자
  - 다) AGOC 교육 수료자 영어회화 및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
- 3) 계약기간 : 1년 단위 계약(최대 3년)
- 4) 급 여 :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 지급
- 5) 구비서류
  - 가) 응시 지원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신원진술서 각 1부
  - 나) 건강보험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각 1부

문의처

• 항공지원작전단 교무과

☎ 033)730-5613    군)934-5613

## 8 공군교리연구관

- 1) 선발시기 : 당해 연도 12월~익년도 1월(공석 발생 시 수시채용 가능)
- 2) 자격요건
  - 가) 전역 3년 이내인 예비역 영관장교(채용일 이전 전역자)
  - 나) 전역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현역 복무 시 장교 근무성적 평정 결과 “지속관찰 필요” 또는 “계속 복무 부적합”을 부여받은 적이 없는 자
  - 다) 타 기관(공공기관·기업체 등)과 근로·용역계약을 맺지 않은 자
- 3) 계약기간 : 1년 단위 계약(최대 5년)
- 4) 급 여 :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 지급
- 5) 구비서류
  - 가) 응시 지원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신원진술서 각 1부
  - 나) 건강보험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각 1부

문의처

• 전발단 교리발전과

☎ 042)552-5825    군)920-5825

## 9 임 관 종 합 평 가 관

- 1) 선발시기 : 당해 연도 12월~익년도 1월(공석 발생 시 수시채용 가능)
- 2) 자격요건
  - 가) 전역 3년 이내인 예비역 영관장교(채용일 이전 전역자)
  -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다) 타 기관(공공기관·기업체 등)과 근로·용역계약을 맺지 않은 자
- 3) 계약기간 : 1년 단위 계약(최대 3년)
- 4) 급 여 :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 지급
- 5) 구비서류 : 응시 지원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신원진술서, 건강보험 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각 1부

문의처

• 교육사 평가실

☎ 055)751-6511 군)922-6511

## 10 강 의 전 담 교 수

- 1) 선발시기 : 당해 연도 12월~익년도 1월(공석 발생 시 수시채용 가능)
- 2) 자격요건
  - 가) 전역 3년 이내인 예비역 영관장교(채용일 이전 전역자)
  -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다) 현역 복무기간 중 중징계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및 현역 복무 부적합 사유로 전역되지 아니한 자
  - 라) 타 기관(공공기관·기업체 등)과 근로·용역계약을 맺지 않은 자
- 3) 계약기간 : 1년 단위 계약(최대 3년)
- 4) 급 여 :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 지급
- 5) 구비서류 : 응시 지원서, 신원진술서, 교수 활동계획서, 성적증명서, 경력 증명서(軍 이외의 경력증명 입증서류)

문의처

• 공군사관학교 교학과

☎ 043)290-6322 군)921-6322

## II 리더십 전문연구원

- 1) 선발시기 : 당해 연도 12월~익년도 1월(공석 발생 시 수시채용 가능)
- 2) 자격요건
  - 가) 전역 3년 이내인 예비역 영관 장교(채용일 이전 전역자)
  -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다) 인문·사회과학분야 전공자(석사 이상)로서 연구 및 교수활동 가능자
  - 라) 타 기관(공공기관·기업체 등)과 근로·용역계약을 맺지 않은 자
- 3) 계약기간 : 1년 단위 계약(최대 3년)
- 4) 급 여 :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 지급
- 5) 구비서류 : 응시 지원서, 신원진술서, 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최종학력), 경력증명서(군 이외의 경력증명 입증서류)

### 문의처

• 보라매리더십센터 계획운영실 ☎ 043)290-4313 군)921-4313

## 4. 전직기간 중 유급의 현장연수

### 가. 군 내 주요 일자리 현장연수 교육 근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7조(전역 예정자의 중소기업 현장연수)**  
전직지원교육 대상이 되는 전역 예정자는 전직지원교육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유급의 현장연수를 받을 수 있다.
- **국방부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9조제7항**  
유급현장연수 교육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전역예정자의 지원에 의해 관련서류(중소기업등록증, 근로계약서 등)를 구비하여 각 군의 인사명령으로 승인한 기업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각 군 규정 참조**

### 나. 신청방법

- 1) 현장연수 시작일 전 관련 서류 첨부하여 문서로 신청  
\* 첨부서류 : 근로계약서(4대보험 제외), 중소기업등록증, 현장연수확인증 등
- 2) 서류 확인 후 파견(교육) 인사명령 발령(각 군)

### 문의처

- |                       |                 |            |
|-----------------------|-----------------|------------|
| • 육 군 인사사령부 육군취업지원센터  | ☎ 042)550-7535  | 군)960-7535 |
| • 해 군 인사참모부 일자리정책과    | ☎ 042)553-1154  | 군)910-1154 |
| • 공 군 인사참모부 전직지원정책과   | ☎ 042)552-1234  | 군)920-1234 |
| • 해병대 복지전직지원처 전직대의협력과 | ☎ 031)8012-2812 | 군)928-2812 |
| • 각 기업 및 중소벤처기업부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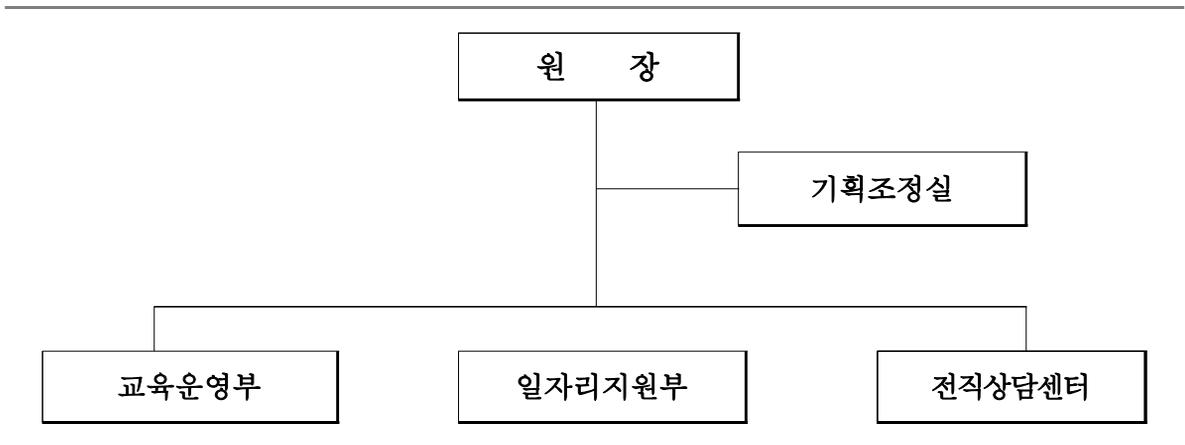
# 제3장 취업지원기관별 지원사항

## 1. 국방전직교육원

### 가. 임무

- 1) 전직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전문성 향상 및 직업능력 개발 등 전직 및 취업 지원교육
- 2) 취업정보 제공, 취업 상담·추천, 구인처 개발, 취업박람회 등 취업 알선
- 3) 다양한 취업 관련 정보제공 및 전직지원정보시스템 운영

### 나. 조직



- 1) 기획조정실 : 기획, 대회 협력, 예산 계획 등 총괄업무
- 2) 교육운영부 : 장병에 대한 진로·기본교육, 각종 취업역량 교육 등 시행
- 3) 일자리지원부 : 취업지원 및 행사, 취업직위 개발·확대, 취업정보 제공·추천
- 4) 전직상담센터 : 장·중기 복무자에 대한 전직컨설팅 및 취업지원 수행

### 다. 취업지원 대상 : 현역 장병

### 라. 취업지원 활동

#### 1) 구직등록 및 자료관리

가) 전역예정 간부들은 전직지원교육 입교 시와 전역 전에 의무적으로 국방전직교육원(www.moti.or.kr)에 구직등록하도록 규정화

\* 구직등록을 하지 않는 자는 전직교육원에서 지원하는 취업추천에서 제외

나) 전역 시 「구직등록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구직등록증명서」는 전직교육원에 구직등록 완료 후 전산망에서 즉시 활용 가능

\* 구직등록된 자료는 업체에 취업추천 시 개인경력 및 자기소개서로 활용

2) 채용정보 획득 및 제공

가) 채용정보 제공(종합 제공)

- (1) 인터넷 검색 또는 구인처 방문 활동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
- (2) 타 취업 전문기관과 제휴를 통해 획득한 정보
- (3) 구인 업체가 직접 국방취업전산망에 구인 요청한 정보

나) 제공방법 : 국방취업전산망, 국방일보, 개인 E-mail 및 휴대폰 문자

\* 전직교육원 등록 구직자는 전직교육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www.moti.or.kr) 수시 확인 가능

3) 취업상담 : 전화상담, 전직교육원 직접 방문상담, 국방취업 전산망의 상담코너(군 관련 취업상담, Q&A)를 통한 상담, E-mail 상담 등 이용

4) 취업추천 : 공개 광고를 활용한 취업 추천 원칙, 구직신청자는 개인 E-mail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 모집 추천

마. 취업지원 행사 및 활동

1) 찾아가는 진로도움 프로그램

- 가) 대상 : (교육) 전역 후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장병  
(상담) 진로도움 교육 이수인원 중 희망장병

나) 주요 내용

구 분	진로도움 교육	1:1 취업상담
시기	전역 연도 1월 ~12월까지	
편성	- 오프라인 교육 시 : 1일 3H - 온라인 교육 시 : 1일 2H	개인별 3회 내외
방법	부대 방문, 대대급 통합교육	부대 방문, 개인별 상담
내용	진로설계 및 취업역량 교육	개인별 취업상담 및 취업 매칭

※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지침 고려 온·오프라인 교육 및 상담 병행

다) 지원내용 : 1:1 취업상담 후 취업 매칭까지 One - Stop 지원

\* “진로도움교육” + “찾아가는 1:1 진로 및 취업상담” 통합

## 2) 국군장병 취업박람회

가) 대상 : 현역 장병

나) 시기 : 연 3회(3월(간부 맞춤형), 6월(전 장병), 9월(전 장병))

다) 주요 내용

(1) One-Stop 입사지원 : 박람회 참여기업 입사지원 → 서류심사  
→ 온·오프라인 면접참여

(2) 역량개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 현직자멘토링, 모의면접, 컨설팅  
(자기소개서, 면접, 진로 등), 채용설명회, 취업특강, AI 인·적성 검사

(3) 취업정보 제공 : 취업박람회 홈페이지에 채용공고, 최신취업동향,  
성공취업영상 등 업로드

## 3) 청년장병 뉴스타트(New start)

가) 대상 : 전역 후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장병

나) 주요 내용

(1) 뉴스타트 I 형(청년장병 취업 사관학교) (1박 2일)

(가) 대상 : 진로 및 업종별 희망 청년장병

(나) 편성 : 연 32회 / 1회당 80여 명

(다) 기간/장소 : 1박 2일 또는 1일 / 외부 연수원 또는 부대, 필요시 온라인

(라) 방법 : 진로 및 취업 희망분야별 그룹화 후, 유형별 직업교육 및  
관련 기업과 매칭하는 맞춤형 취업과정 운영

(2) 뉴스타트 II 형(기업 맞춤형 취업과정) (과정별 2~3일)

(가) 대상 :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후 취업을 원하는 청년장병

(나) 기간/장소 : 과정별 2~3일 / 교육원 또는 외부연수원, 필요시 온라인

(다) 방법 : 군 특기(경력)를 활용할 수 있는 유사 직종의 구인희망  
업체와의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후 취업 연계

(3) 뉴스타트 III 형(찾아가는 현장 채용설명회) (1일)

(가) 대상 : 청년 장병 3,000명

(나) 기간/장소 : 1일 5H / 중진공, 군부대 내 시설 활용, 필요시 온라인

(다) 방법 : 청년장병의 선호도가 높은 희망 기업 또는 공직분야의  
채용정보 제공 및 채용 연계 기회 제공

## 4) 창업컨설팅 : 창업인식개선교육, 창업동아리 멘토링

5) 창업경진대회(연1회 : 각군 대회 → 국방부 대회 → 정부부처 대회)

6) 전직성공사례집 발간 : 연간 1회, 각종 취업행사 및 교육 시 무료 배부

바. 전직지원정보시스템 운용 업무(www.moti.or.kr)

1) 방법 : 인터넷과 국방전산망(인트라넷) 동시 정보 게재

\* “길잡이 역할”과 취업활동 지원·관리 등 정보제공과 온라인 교육, 상담 실시

2) 인터넷 지원 정보

가) 채용정보 : 일학습 채용정보, 해외취업 채용정보, 전역군인 우대 채용정보, 기업제공 채용정보, 일반 채용 정보(외부 전문기관 제공)

나) 개인서비스 : 구직카드 등록/수정, 취업결과 등록, 입사지원 현황, 구직 카드요청 현황, 맞춤채용정보, 구직등록증명서 출력, 행사참가 현황 등

다) 기업서비스 : 기업회원 가입·수정, 채용공고 등록·수정, 온라인 입사지원 현황, 맞춤인재 검색, 채용결과 등록 등

라) 교육정보 : 교육접수, 입교안내, 연간교육계획, 진로설계교육, 진로교육, 기본교육, 창업·귀농교육, 군 특성화 맞춤형교육, 전직컨설팅, 교육수행기관 등

마) 취업가이드 : 군 관련 취업정보 / 취업상담, 취업뉴스, 해외취업안내, HR Executive, 청년창업가, 전직칼럼, 연봉정보, 공채속보 등

바) 고객서비스 : 공지사항, Q&A, 관련 사이트, FAQ, 자료실, 오류신고 등

사) 바로가기 서비스 : 공지사항, 포토현장뉴스, 행사참가신청, 취업정보 나누기, 사이버아카데미, 국방부 전역간부안내서, 연간 교육계획, 진로지도검사, 교육원칼럼, 온라인 창업교육, 정보공개, 청년 뉴스타트 사업, 해외취업정보, 군관련취업정보, 국방전직가이드 등

## 2. 국가보훈처(제대군인지원센터)

### 가. 보훈(지)청 보훈특별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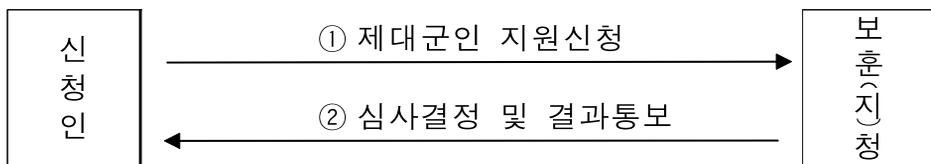
- 1) 관련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9조
- 2) 취업지원 대상 :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  
 \* 취업지원대상자 본인이 생활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녀 중 1인(자녀는 만 35세까지)
- 3) 취업대상 기관/업체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일상적으로 20인 이상 (단, 제조업의 경우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업체 및 단체
- 4) 직장 알선 횟수 : 3회
- 5) 취업지원 신청 및 직장 알선 절차

#### 가) 취업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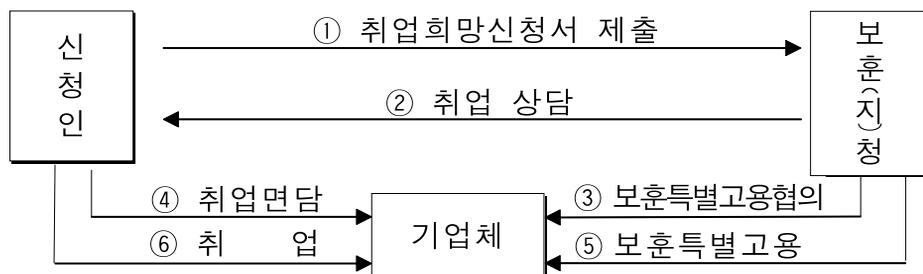
- (1) 제대군인지원 신청서 1통(붙임 #5 참조)
- (2) 제대군인 취업희망 신청서(붙임 #6 참조), 이력서·자기소개서 1통
- (3) 소득·재산신고서 1통(전역 후 3년 경과자 중 생계곤란자)
- (4) 진단서 등 질병 또는 장애에 관한 증명서류(자녀 대리취업 희망자)

#### 나) 직장 알선 절차

##### (1) 제대군인지원 신청



##### (2) 취업지원 신청



다) 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지)청 연락처 : 붙임 #9 참조

## 나. 제대군인지원센터 취·창업 지원

1) 대상 : 5년 이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2) 내용 : 진로상담 및 취·창업교육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제대군인의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3) 기능

가) 진로상담, 경력설계·목표설정, 이력서 작성·면접지도 등 전직컨설팅 지원

나) 취·창업 워크숍, 지방순회상담, 군부대 순회교육, 멘토링 등 전직지원

다) 전문기관 위탁교육·사이버교육 등 공공·민간기관, 협회, 기업체, 대학 등 전문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수행

라) 교육비지원신청(붙임 #7 참조) 및 전직지원금(붙임 #8 참조) 등 구직활동 촉진 장려금 지급

마) 기업 등의 채용계획과 잡서칭 활동으로 채용정보 제공

바) 동행면접, 일자리 두드림 데이 행사(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등 기업협력 활동을 통한 제대군인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 및 채용추천

사) 창업희망자에 대하여 업종 및 상권분석, 창업절차, 창업자금 조달, 창업능력 향상 등 창업컨설팅 지원

아) 제대군인지원센터 웹사이트(www.vnet.go.kr) 운영, 「다시 웃는 제대군인」誌(vnet-magazin.go.kr) 등 제대군인 홍보

4) 위치(제대군인지원센터)

구분	주소	연락처
서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73 양지빌딩 3층	☎ 1666-9279
경기북부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80 센트럴타워 1103호	
경기남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8 경기남부보훈지청 별관 2층	
강원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72, 삼성타워 6층	
부산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48번길 13, 4층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대전지방보훈청 5층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저층부 3층	
광주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1층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305 KT서성빌딩 2층	
인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1층	

#### 5) 신청 및 지원 절차

##### 가) 중·장기복무제대군인 지원 등록 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제대군인지원센터(붙임 #9 참조)

##### 나) 전화·방문상담 또는 온라인 취·창업 상담 신청

\*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vnet.go.kr) 회원가입

##### 다) 전문컨설턴트 취·창업상담(온라인, 오프라인)

##### 라) 취·창업 지원

#### 다. 전문교육기관 위탁과정

1) 대상 :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전역예정 포함)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제대군인지원센터 회원

2) 지역단위 과정별 현황('21년 현황)

구분	과정명
서울	지게차운전기능사, 스마트비파괴검사, 자격증 취득, 전기기능사 및 신재생(태양광), 에너지관리전문기능인, 전기기능사, 특수경비원양성
경기남부	2022년 소방·경찰공무원 채용 대비, 드론조종자 국가자격증 교육, 4차산업혁명과 유통물류 융합과정, 내선공사 실무 및 기능사 취득과정, 3D프린터운용기능사, 조경기능사 국가자격취득&드론방제과정
인천	중장비운전 자격증과정(지게차, 굴삭기), 전기기능사 취득과정, 드론(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경비지도사 취득과정, 빅데이터 분석과 시각화과정(엑셀+포토샵)
경기북부	전기기능사 자격취득, 중장비 자격취득(굴삭기+지게차), 유튜브전문가, 카페바리스타 전문자격증, 승강기기능사 자격, 경비지도사자격
강원	조경기능사&드론방제과정, 시퀀스제어 전기기능사(필기+실기), 소방안전관리자 1급, 잔디관리사 양성과정, 드론 국가자격증(이론+실기)
부산	경비지도사, 전기기능사, 품질/안전보건경영실무 및 ISO국제심사원 양성과정, 초경량비행장치 조종 및 pix4d 활용
경남	조경기능사, 전기기능사, 공무원시험, 굴삭기 및 지게차 운전기능사
대전	산업보안안전, 관리사전문가, 에너지관리(보일러)기능사, 경찰공무원 시험, 직업상담사 2급(여성제군전용), 유튜브 크리에이터, 전기기능사, 경비지도사, 특수경비원 직무교육
대구	전기기능사 자격취득과정, 보일러&공조냉동자격증 취득과정, 중장비운전 실무(굴착기,지게차운전), (유튜브)크리에이터(온라인창업) 교육, 드론전문 조종자 양성과정, 경비지도사
광주	3D프린팅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 및 편집과정, 영상편집디자인(프리미어, 에펙) 및 GTQ 2급 자격증 취득과정, 경비지도사, 전기기능사,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취득과정,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필기실기

\* 개인별 교육과정 선정, 교육 수수료 후 교육비 지급/ 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3) 유의사항

가) 교육비는 국가보훈처 지원 90%, 자부담 10%

나) 전문기관 위탁교육 과정 중 2과정 지원

\* 중도 퇴소의 경우도 이수료 간주(기회 상실)

다) 문의 및 신청 : 해당 교육훈련 기관 또는 각 센터(교육훈련팀)

라) 지원 우선순위

- (1) 1순위 :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2순위 : 1년 이내 전역 예정자
- (3) 3순위 : 전역 후 3년이 지난 자
- (4) 4순위 : 취업자

- (5) 5순위 : 5년 이상 복무자로 Vnet 회원으로 가입하고, 각 군  
본부로부터 당해 개설된 위탁교육 신청자로 통보된 자
- \* 모든 교육 신청자는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V-Net) 회원가입 및 관할  
보훈관서에 제대군인 등록(전역예정자는 해당 없음) 필수

### 3. 정부부처

#### 가. 원격교육

1) 국방부/각 군 : “M-kiss”(www.mkiss.or.kr)

가) 교육대상 : 전 장병(무료)

나) 교육과정 : 자격증 분야, 어학 분야, 은퇴 설계/상식 과정

2) 인터넷 : 나라사랑 포털 군 e-러닝(www.narasarang.or.kr)

가) 교육대상 : 전 장병(무료)

나) 교육과정 : 학점취득 과정, 자격증 과정, 어학 과정, IT 과정

나. 자기진단 / On-line 교육서비스 이용방법

## 1) 자기진단, 직업정보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진로 → 직업심리검사 실시 → 12개 검사 유형 중 선택</li> </ul> </li> <li>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vnet.go.kr) 직업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릭 → 군·신분선택 → 특기선택 → 검색(직업군, 필요자격, 교육기관 등)</li> </ul> </li> <li>직업흥미검사(www.career.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 접속 → 진로개발 준비검사(20분, 35문항), 주요능력 효능검사(20분, 49문항), 직업가치관 검사(10분, 28문항) 중 선택 검사</li> </ul> </li> </ul>
---

⇒ 해당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후 이용

### 다. 경력개발을 위한 취업(자격증) 정보

고용노동부	일자리정보망 워크넷(www.work.go.kr)
	직업훈련포털* HRD-Net(www.hrd.go.kr)
	고령자워크넷(www.work.go.kr/senior)
한국산업인력 관리공단	자격정보망(www.Q-Net.or.kr) * 보훈처제대군인지원센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연동 이용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커리어넷(www.careernet.re.kr)
	한국직업능력개발원(www.krivet.re.kr)
연봉정보	페이오픈(www.payopen.scout.co.kr)

⇒ 해당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관련 배너 선택 ⇒ 희망과정 수강

## 라. 고용노동부 취업 안내

1) 주관 : 전국 102개 고용(복지+)센터(www.work.go.kr/jobcenter) (붙임 #10 참조)

2) 이용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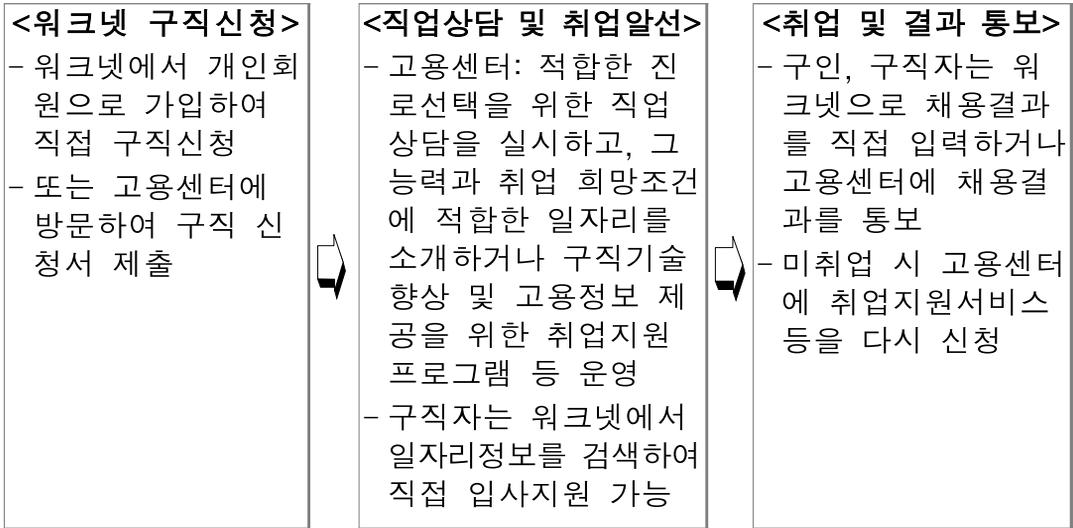
가) 고용(복지+)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work.go.kr)에서 구직 신청

(1) 구직자에게 일자리 정보 및 취업특강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2) 국민취업지원 제도\* 등을 통해 취약계층 대상 통합적인 고용서비스(취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 제공

\* 소득, 재산 등 지원요건 해당 시 생계지원(구직촉진수당)

< 고용센터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흐름도 >



나) 전역예정장병을 위한 제대군인 취업지원 프로그램(V-TAP)\* 운영

- \* 모집 : 국방부 / 운영 : 고용부
- \* V-TAP(Veteran-Transition Assistant Program) : 전직 스트레스 완화 및 원활한 전직을 위한 직업선택 및 구직방법 지원

다) 훈련비 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 \* 직업훈련포털 HRD-Net(www.hrd.go.kr)에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등의 지역별·직종별 훈련과정에 대한 세부정보 조회 및 확인 가능
- \* 추천 : 국방부, 보훈처 / 운영 : 고용부

3) 이용대상 : 전 국민, 전역 후 활용 가능

4) 문의처

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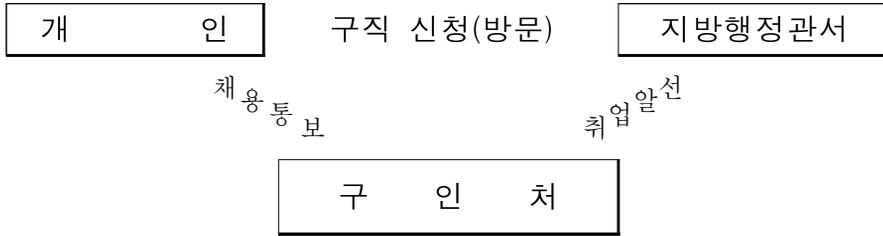
나) 워크넷(www.work.go.kr) 또는 HRD-Net(www.hrd.go.kr) 홈페이지

## 4. 지자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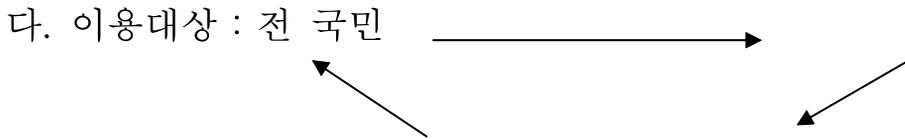
### 가. 업무주관

<b>업 무</b>	취업정보센터 운용	취업상담창구 운용
<b>기 관</b>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 나. 이용절차



\* 구직자는 사진 1매를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지방행정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구직표를 작성·제출하면 구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구인처 정보제공·취업알선



## 5. 취업지원기관 문의처

구 분	문 의 처
국 방 부	국방일자리정책과 02)748-6631 (군 : 900-6631)
국방전직교육원	대표번호 1588-9402 홈페이지 : <a href="http://www.moti.or.kr">www.moti.or.kr</a>
육군본부	육군취업지원센터 042)550-7536 (군 : 960-7536) 홈페이지 : <a href="http://www.army.mil.kr">www.army.mil.kr</a> (육군취업지원센터)
해군본부	일자리정책과 042)553-1153 (군 : 910-1153) 홈페이지 : <a href="http://www.navy.mil.kr">www.navy.mil.kr</a> (해군취업지원광장)
해병대사령부	전직/대외협력과 031)8012-2811~3 (군 : 928-2811~3) 홈페이지 : <a href="http://www.rokmc.mil.kr">www.rokmc.mil.kr</a>
공군본부	전직지원정책과 042)552-1232~9 (군 : 920-1232~9) 홈페이지 : <a href="http://www.airforce.mil.kr">www.airforce.mil.kr</a> (공군취업정보광장)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일자리과 044)202-5730~41 홈페이지 : <a href="http://www.mpva.go.kr">www.mpva.go.kr</a>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대표번호 1666-9279(군인친구) 홈페이지 : <a href="http://www.vnet.go.kr">www.vnet.go.kr</a>

# 제4장 취·창업 정보 제공사이트

## 1. 정부기관 사이트

사 이 트 명	인 터 넷 주 소	주 요 내 용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	통상/무역, 산업/기술 정책 소개
기획재정부	www.mosf.go.kr	금융 및 재정 정책
방송통신위원회	www.kcc.go.kr	정통부의 정책 소개
환경부	www.me.go.kr	환경정책, 국제협력, 자연보전
교육부	www.moe.go.kr	과학기술 정책, 기술지원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국토계획과 토지 등 각종 정보
고용노동부	www.moel.go.kr	노동부 조직 안내, 취업정보
인사혁신처	www.mpm.go.kr	공무원인사제도, 채용제도, 인재개발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전자박물관, 인터넷 길잡이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	농업정책, 농림법령정보 제공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정책, 홍보, 통계정보 등 소개
해양수산부	www.mof.go.kr	해양수산업 미래전략 수립,시행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공정거래,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금융위원회	www.fsc.go.kr	금융감독, 구조개혁, 금융동향 정보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	중소기업 정책, 각종 지원제도 안내
특허청	www.kipo.go.kr	특허정보, 제도·절차, 특허출원
조달청	www.pps.go.kr	법률, 해외입찰정보, 조달정보
관세청	www.customs.go.kr	관세, 수출입 업무, 관세환급
병무청	www.mma.go.kr	병역이행, 산업기능인력, 연구기관 정보

## 2. 인력/토지 사이트

사 이 트 명	인 터 넷 주 소	주 요 내 용
국가보훈처 세대군인지원센터	<a href="http://www.vnet.go.kr">www.vnet.go.kr</a>	구인, 구직정보,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고용안정정보망 (Work-net)	www.work.go.kr	구인, 구직정보, 직업상담, 고용보험
대한상공회의소	www.korcham.net	국내외 산업입지, 직업교육훈련
한국산업단지공단	www.kicox.or.kr	국가산업단지 분양 및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토지, 입지 정보

### 3. 취·창업(구인구직) 사이트

사 이 트 명	주 소	전화번호	주요대상
(주) 커리어	www.career.co.kr/	1577-9577	구인구직
인크루트	www.incruit.com	1588-6577	구인구직
(주)스카우트	www.scout.co.kr	02-3482-3366	구인/구직
워크넷	www.work.go.kr	1577-7114	구인구직
사람인	www.saramin.co.kr	02-2025-4733	구인구직
잡코리아	www.jobkorea.co.kr	1588-9350	구인구직
(주)제니엘	www.zeniel.com	1588-1581	인재아웃소싱
(주)케이서치	www.ksearch.co.kr	1544-3153	병역특례자
KB굿잡	kbgoodjob.kbstar.com	02-2073-4663	구인구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1588-1519	장애인
하이브레인넷	www.hibrain.net	055-282-8252	구인구직
미디어잡	www.mediajob.co.kr	02-6925-3724	방송미디어
피플앤잡	www.peoplenjob.com	02-6203-0105	외국기업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s://www.gojobs.go.kr/	110, 044-201-8355	공무원
꿈날개	www.dream.go.kr	1600-3680	온라인취업지원
EngJob	www.engjob.co.kr	02-990-4698	과학기술인력
아이디어 플라자	www.ideaplaza.com	02-565-7123	
맥시머스	www.maximuskkr.co.kr	1666-8219	취업지원
(주)외식과 사람들	www.foodwork.co.kr	02-2203-1141	외식업
K-Startup창업지원포털	www.k-startup.go.kr	1357	창업

#### 4. 기업/산업정보/경제지표 사이트

사 이 트 명	인 터 넷 주 소	주 요 내 용
중소기업 중앙회	www.kbiz.or.kr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안내
중소기업 통계	www.mss.go.kr	대상별, 조사별, 지역별 정보
한국은행	www.bok.or.kr	각종 경제지표, 통계, 중소기업금융지원안내
경기도청	www.gg.go.kr	경기도 산업경제, 무역, 환경정보
나이스평가정보	www.niceinfo.co.kr	기업개요검색, 신용평가정보
한국산업단지공단	www.kicox.or.kr	기업지원서비스, 산업단지 입주안내, 재정자금 융자, 기업경영정보
기업신용정보 서비스 CRETOP	www.cretop.com	기업정보, 신용조사정보, 기업재무 정보, 신설법인 총람

#### 5. 기술/특허/지적재산권 사이트

사 이 트 명	인 터 넷 주 소	주 요 내 용
국가기술표준원	www.kats.go.kr	KS관련정보, 기술개발 자금지원 지역기술정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www.kisti.re.kr	과학기술정보 DB, 산·학·연의 정보제공
기술혁신협회	www.kati.or.kr	기술혁신, 기술의 사업화 정보, 컨설팅
한국특허정보원	www.kipi.or.kr	특허뉴스, 조사분석, 산업재산권 안내
한국데이터산업 진흥원	www.kdata.or.kr/	DB 연구개발 및 표준화사업, 전문인력 양성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저작권 관련 법령, 판례, 조정상담, 정보DB
특허엘로우페이지	www.patyellow.co.kr	특허제품, 아이디어, 브랜드 네이밍, 자료검색
(주)웍스	www.wipson.com	각국 특허 및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상담실

## 6. 무역 및 투자/전시회 사이트

사 이 트 명	인 터 넷 주 소	주 요 내 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	북한정보, 해외박람회, 해외시장 조사대행, 무역정보, 시장정보
한국무역보험공사	www.ksure.or.kr	수출, 외환어음 매입지원, 자금대출 보증, 해외경제동향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서비스	www.kita.net	비즈니스리포트, 지방무역, 산업 정보세계 무역사이트 링크
한국무역정보통신	www.ktnet.com	무역절차 온라인서비스, 전자카달로그
한국수입업협회	www.koima.or.kr	무역자유화정책, 수입동향, 원자재 가격
농수산물식품수출지원정보	www.kati.net	농수산물전문수출입, 거래 알선, 국가별 속보, 품목별 무역정보
트레이드포트(영문)	www.tradeport.org	무역 디렉토리, 바이어, 수출전략 제공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www.kjc.or.kr	한일간 무역, 투자, 기술협력사업 등
코엑스	www.coex.co.kr	코엑스 국제·국내전시회 일정

## 7. 전자상거래 사이트

사 이 트 명	인 터 넷 주 소	주 요 내 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www.nipa.kr	표준전자문서, UN/EDIFACT 보급 제정

## 8. 창업자금 사이트

사 이 트 명	인 터 넷 주 소	주 요 내 용
중소기업중앙회	www.kbiz.or.kr	중소기업 육성 및 조사연구, 공제사업기금, 창업컨설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www.kosmes.or.kr	기업활동 종합지원 서비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www.kosha.or.kr	근로자의 안전보건 정보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리원	www.keit.re.kr	신기술창업보육사업, 산업기반기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www.kitech.re.kr	생산기술 연구개발사업 안내
K-Startup 창업지원포탈	www.k-startup.go.kr	창업정보
창업진흥원	https://www.kised.or.kr	창업 교육, 창업자 발굴 및 육성
신용보증기금	www.kodit.co.kr	신용보증, 어음보험, 신용, 경영지도
기술보증기금	www.kibo.co.kr	벤처기업지원, 기술평가센터, 신용정보사업
여신금융협회	www.crefia.or.kr	리스금융, 할부금융
한국벤처기업협회	www.venture.or.kr	창업, 경영, 투자, 벤처기업 정보

## 9. 유통/물류 사이트

사 이 트 명	인 터 넷 주 소	주 요 내 용
한국능률협회	www.kma.or.kr	정보화, 유통마케팅, 품질기술, 경영 등의 교육 및 연수

## 10. 판로/마케팅 사이트

사 이 트 명	인 터 넷 주 소	주 요 내 용
한국수입업협회	www.koima.or.kr	국제무역 애로, 신규거래선, 교육, 정보통신에 대한 지원

# 제5장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 1. 목적 및 관련 법령

공직자가 재직 중에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부정한 유착을 사전에 차단하고, 취업 후에는 퇴직 전 근무부대(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직윤리를 확립

## 2. 관련 법령

가.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제18조의3(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제18조의5(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 제19조(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제19조의2(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여부 확인방법 등)

나.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업무관련성의 범위), 제35조의4(청탁·알선에 대한 신고)

\* 퇴직재산등록의무자 취업심의 및 행위제한제도 안내 【붙임】 참조

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및 제83조(취업자의 해임요구)

## 3. 퇴직공직자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가. 사전 취업가능여부 심사

1) 대상자 : 재산등록의무자로 퇴직한 공직자

가) 대령 이상의 군인, 2급 이상의 군무원

나) 군사시설, 국방 관련 계약·검수, 방위력 개선, 군사법원 및 군 검찰, 수사 및 감찰업무 수행부서(별도 지정)에 근무하는 중령, 3급 군무원

다) 국방부 감사관실 직원 중 상사 이상의 군인

라) 국방부/소속기관 회계직 중 상사 이상의 군인

## 2) 내용

- 가) 전역(퇴직)일로부터 3년까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 나)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 대상기관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을 하고,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취업가능)되거나 특별한 승인사유가 인정(취업승인)된 경우에만 취업할 수 있음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소장 이상의 군인)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한 기관 전체 업무 기준

- 다) 재산등록직위(군사시설, 국방 관련 계약·검수, 방위력 개선, 군사법원 및 군 검찰, 수사 및 감찰 업무 등)에 근무하여 재산등록 대상자였으나 해당 보직을 마치고 의무면제 재산변동신고를 한 경우, 퇴직 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는 퇴직일이 아닌 의무면제신고 기준일로부터 3년까지임

\* 취업여부 판단 시 직위나 직책, 상근/비상근 여부를 불문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도 취업으로 간주함

## 3) 취업심사대상기관(인사혁신처장이 매년 관보에 고시)

- 가)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
- 나) 사기업체 등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협회)
- 다)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법무법인, 회계법인,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
- 라)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 원 이상인 세무법인
- 마) 시장형 공기업(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등)
- 바)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 업무를 위탁·대행하는 공직유관단체(국방기술품질원 등)
- 사)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단, 총장, 부총장, 학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등의 직위에 있지 않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및 겸임교원, 명예교수는 취업 가능(취업심사 대상이 아님)
- 아) 의료법상의 종합병원과 그 병원을 설립한 법인

- 자) 기본재산 100억 원 이상의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
- 차) 모든 방위산업체와 중개수수료를 신고한 군수품무역대리업체

\* 취업심사대상기관 조회방법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www.peti.go.kr)

## 나. 취업심사

- 1)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 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이 예정된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으면 취업 개시 30일 전까지 퇴직 당시 소속부대 감찰부서를 통해 국방부(감사관실)에 [붙임 #11, 12] 양식으로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
- 2) 취업승인요청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업무관련성이 있음에도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업 개시 30일 전까지 퇴직 당시 소속부대 감찰부서를 통해 국방부(감사관실)에 [붙임 #12, 13] 양식의 취업승인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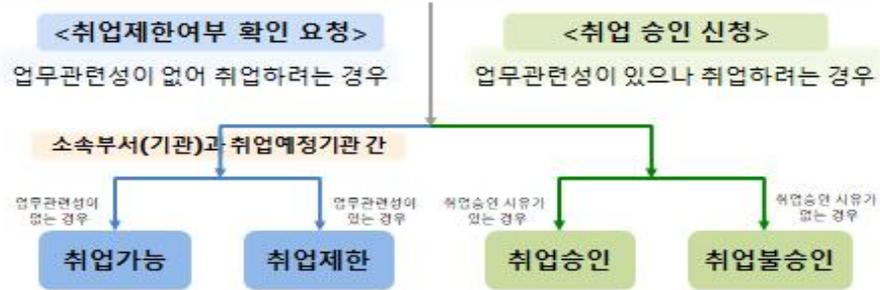
\* 특별한 취업승인사유가 있을 경우만 승인 신청(시행령 제34조제3항 각호)

###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시행령 제32조제2항)

### < 취업심사 운영 절차 >

- ① 취업심사대상자가 ②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 ③ 퇴직 전 5년 간 소속하였던 부서(2급/소장이상은소속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여부 심사결정



※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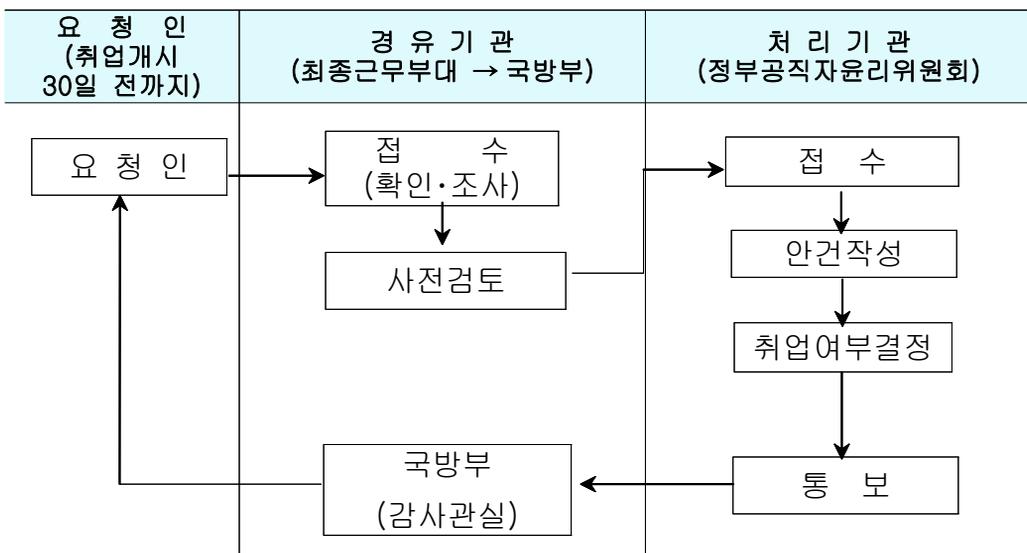
- ① 부서(3급, 준장 이하 퇴직 공직자 해당)
  - 과장·과원은 과, 그 상위직의 간부는 지휘·감독 부서의 업무
- ② 기관(2급, 소장 이상 퇴직 공직자 해당)
  - 소속기관을 포함한 기관 전체의 업무

#### 다. 벌칙

- 1) 취업심사대상자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공직자윤리법」 제30조)
- 2)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공직자윤리법」 제29조)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매년 2회 임의취업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결정 등 조치

#### 라.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 심의·의결 절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제도 안내문」 참조

## 4. 퇴직자 행위제한 및 업무취급 제한

가. 업무취급 제한(모든 퇴직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1) 제한내용

가) 본인이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는 퇴직 후 영구히 취급금지

\* 직접 처리한 업무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업무를 직제·정관·규정 등에 따라 공식적으로 수행한 업무

나) 다만, 국가안보, 공익목적 등의 사유로 해당업무의 취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급 가능

2) 벌칙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업무취급 제한 및 업무내역서 제출(2급 이상 공무원, 소장 이상 군인)

### 1) 제한내용

가) 퇴직 후 2년간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과 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일정업무(「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2조제2항) 취급금지

나) 다만, 국가안보, 공익목적 등의 사유로 해당업무의 취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급 가능

2) 벌칙 : 제한된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 업무내역서 보고의무

- 제출시기 : 퇴직한 날로부터 1, 2년이 경과한 후 각 1개월 이내
- 제출내용 : 취업기관에서 수행한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2년동안 근무했던 부서와 관련한 업무내역<붙임 #14 참조>, 취급 승인을 받은 경우 취급 업무내역 포함
- 절차 : 업무내역서 작성 및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 확인 후 퇴직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 → 국방부(감사관실) 의견서 첨부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업무내역서 비공개)
- 벌칙 : 업무활동 내역서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나. 부정한 청탁·알선 행위 금지(모든 퇴직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

1) 제한내용 :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부대)의 공무원(군인 등)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금지

2)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5. 비위면직자 취업제한(모든 직급에 해당)

가. 관련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 또는 3,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공기관이나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법무·회계·세무법인 또는 협회 등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 불가(제82조)
-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제82조를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 요구(제83조)
- 3) 국민권익위원회는 제82조를 위반하여 취업한 자에 대해 국방부 감사관실에 취업해제조치 요청 → 국방부장관 명의로 그 취업자가 취업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 법무·회계·세무법인 또는 협회에 그의 해임 요구 → 해임요구를 받은 영리사기업체, 법무·회계·세무법인 또는 협회의장은 이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할 의무 발생('16.9.30. 이후부터 적용)

나. 부패행위의 정의 :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사무운영지침(권익위)

- 1)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2)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3) 주요 유형 : 뇌물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문서 위·변조 등

다. 벌 칙 :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공공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법무·회계·세무법인,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협회에 취업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89조)

라.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절차(요청서식 : 붙임 #11)

- 1) 비위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5년 내에 영리사기업체, 법무·회계·세무법인 또는 협회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장(각 군 본부 감찰실)을 거쳐 국방부 장관(감사관실)에 본인의 취업 여부를 확인 요청
- 2) 국방부 감사관실은 접수받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취업제한 여부를 소속기관(각 군 본부 감찰실)을 통해 비위면직자에게 통지(사유도 통지)

## <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관련 법령 >

구 분	주 요 내 용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공직자</li> <li>-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이었던 자</li> </ul>
취업 제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li> <li>- 부패행위 관련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자가 소속했던 기관</li> <li>• 부패행위로 직접 이익을 얻은 기관</li> </ul> </li> <li>-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의료법인 등 포함) 및 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2항 제3호 각목의 법인 등</li> </ul> </li> </ul>
업무관련성 판단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고위 공직자는 기관 전체의 업무로 판단</li> </ul>
자료 요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근거 마련을 위한 범죄경력자료, 비위면직자 등의 인적사항 및 징계사항, 공무원·군인연금 급여제한 자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료, 기타 소득세 자료</li> </ul>
위반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제한 위반자 해임요구 및 자료요구를 거부한 기관장에 대한 과태료 규정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임요구 거부(1천만 원 이하)</li> <li>• 자료요구 거부(3천만 원 이하)</li> </ul> </li> </ul>

## < 취업제한규정 위반여부 판단 기준 >

구 분	주 요 내 용
공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취업 제한</li> </ul>
부패행위 관련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비위면직자등의 부패행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 취업이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위면직자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사람이 소속 하였던 기관, 법인 또는 단체</li> <li>• 부패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얻을 수 있었던 기관, 법인 또는 단체</li> </ul> </li> </ul>
영리 사기업체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인 경우에만 취업이 제한됨</li> </ul>
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제한대상 협회는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가 회원사로 속해 있는 협회가 해당됨</li> </ul>

## 【붙임】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제도 안내

안녕하십니까?

○○○님께서서는 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후 3년간**은 퇴직 전 5년 동안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국방부 감사관실 경유, 인사혁신처 제출 완료)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한 모든 공직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으며, 퇴직한 모든 공직자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행위 또는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고시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 관련 서류\*를 퇴직 당시 소속 부대에 취업 개시 30일 전까지 제출

\*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가 개최됨에 따라 관련 서류를 취업심사일 20일 전까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부서 또는 기관과 취업예정업체 사이에

-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붙임 #11, 12 제출)
-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 취업승인 요청(붙임 #12, 14 제출)

# 제3편

## 제대군인의 역할과 복지지원제도!

- 제1장 예비군 제도 및 비상사태 시 행동요령
- 제2장 예비역 단체 가입 안내
- 제3장 제대군인 복지지원제도
- 제4장 기타 참고사항

# 제1장 예비군 제도 및 비상사태 시 행동요령

## 1. 예비군 제도

### 가. 예비군 편성 및 복무

#### 1) 법적근거

- 가) 「예비군법」 제3조(예비군의 조직)
- 나) 「예비군법」 제3조의2(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
- 다)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조(예비군 편성기준)
- 라) 「주민등록법」 제17조(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 2) 편성기준 및 복무

- 가)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그 복무를 마친 다음날로부터 현역군인 계급별 연령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편성 및 복무
  - \* 연차별 편성은 군복무를 마친 날이 속하는 해를 해당 연도 차로 하고, 그 다음해를 1년 차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차를 편성
- 나) 여성 간부(장교, 부사관)의 경우 예비역, 퇴역 중 본인이 선택 가능하며, 예비역 선택 시 예비군에 편성되므로 신분별·연차별 예비군훈련을 이수해야 함.
  - 단, 임신부터 출산후 12개월까지, 6세이하 자녀를 둔 경우, 배우자가 군인·군무원·예비군일 경우, 불임치료 중인 경우 관련 증빙 제출 시 보류자로 관리되어 동원 및 훈련이 보류됨.
  - \* 예비역 선택 시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및 '예비군지휘관', '예비군 간부 비상근 예비군 복무' 선발 응시 자격 부여
- 다) 예비군 편성제외이후 예비군에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자는 최종 선발 예정일이 속한 해에 18세 이상 63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

#### 3) 편성절차

- 가) 예비역으로 전역한 후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함으로써 편성하였으나, '99.7.1일부터는 전역권 부대와 병무청 간의 행정 처리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예비군에 편성토록 개선(예비군 신고 불필요)
- 나) 예비군에 편성후 본인이 예비군동원 및 훈련의 보류 대상 직종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는 소속예비군지휘관 문의(171페이지 참조)

#### 4) 전역장병 유의사항

- 가) 전역예정 장병은 전역 또는 소집해제 전에 근무부대(기관)의 인사관계관이 주소지를 확인할 때에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여 제출  
\* 정보 연동으로 전역 후 거주지 예비군부대에 자동 편성
- 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 체계로 상세히 기록(예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5길 9-1,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수북로 14-22 등)
- 다) 연락처는 세대주 전화번호 및 개인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록
- 라) 불시 훈련소집 또는 불시동원에 대비한 동원태세 확립을 위하여 타지역 거주자나 7일 이상 장기 출타 시에는 행선지, 출타기간, 연락처 등을 소속 예비군지휘관에게 전화 등 가용한 방법으로 통보 의무

#### 나. 예비군 교육훈련

1) 법적근거 : 「병역법」 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예비군법」 제6조(훈련)

#### 2) 훈련의 종류

- 가) 병역법에 의한 병력동원훈련소집과 예비군법에 의한 예비군훈련(동미참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 등)을 예비군 편성 신분·연차별로 구분하여 실시
- 나) 동원훈련은 동원지정자 중 1~4년 차 병 및 1~6년 차 간부를 대상으로 소집부대별로 2박 3일 입영훈련 실시
- 다) 동미참훈련은 동원미지정 1~4년 차 병은 예비군훈련장에서 4일간(32H) 출·퇴근 훈련을 실시하며, 동원미지정 1~6년 차 간부는 각 군 책임 하 2박 3일 입영훈련을 실시(공군병은 입영훈련 실시)
- 라) 기본훈련은 5~6년 차 예비군 대상 예비군훈련장에서 1일(8H) 실시
- 마) 작계훈련은 5~6년 차 예비군 대상 작계지역에서 전·후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각 6H) 실시
- 바) 전역 후 7~8년 차는 예비군훈련을 면제하고 비상소집망 점검만 실시
- 사) 지휘요원(소대장)으로 편성된 간부는 작계훈련 2회(12H), 선소집훈련 2회(8H), 연 20시간 훈련 실시

### 3) 훈련 편의 보장제도

- 가) 인터넷 훈련소집 제도 : 예비군이 '예비군 홈페이지(모바일 앱)'에  
공시된 훈련 일정 중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훈련을 신청하는 제도
- 나) 휴일 예비군훈련 제도 : 예비군이 휴일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
- 다) 전국단위 예비군훈련 제도 : 예비군이 전국의 원하는 예비군훈련장에  
훈련을 신청하여 실시하는 제도

### 4) 벌 칙

- 가) 병력동원 훈련소집 무단 불참자 : 즉시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되며, 소집부대에 재입영 훈련 또는 동미참자 훈련 이수
- 나) 예비군훈련 무단불참자
  - (1) 기본교육 불참 : 1차 보충훈련을 기본교육시간과 동일하게 부과
  - (2) 1차 보충훈련 불참 : 2차 보충훈련을 기본교육시간과 동일하게 부과
  - (3) 2차 보충훈련 불참 : 고발(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되며, 기본교육시간과 동일하게 다시 보충훈련 이수

\* 이후 훈련 불참 시 매회 고발

### 5) 연기 및 보류신고

- 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예비군훈련을 연기 또는 보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 예비군지휘관에게 해당 원서를 제출
  -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예비군 홈페이지, 모바일 앱, FAX, 문자메시지 등
  - \* 연기 및 보류 원서 :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제19호 서식
- 나) 예비군훈련 보류(훈련 이수 처리) 해소 사유 발생 시 14일 내 신고(의무)
  - \* 신고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예비군 홈페이지, 모바일 앱, FAX
  - \* 해소신고서 :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문의처

- |                                  |                 |                |
|----------------------------------|-----------------|----------------|
| • 국방부 예비전력과                      | ☎ 군)900-5245, 7 | 02)748-5245, 7 |
| • 육 군 동원참모부 예비군조직관리과<br>예비군훈련정책과 | ☎ 군)960-5532    | 042)550-5532   |
|                                  | ☎ 군)960-5541    | 042)550-5541   |
| • 해 군 정보작전참모부 예비군과               | ☎ 군)910-3522    | 042)553-3522   |
| • 공 군 정보작전참모부 동원과                | ☎ 군)920-3422    | 042)552-3422   |

다. 예비역 간부 진급제도(육·해·공군)

1) 법적 근거 : 「병역법」 제55조 제2항, 「병역법 시행령」 제115조의2

2) 시행지침

가) 대상 : 병역법 제5조에 따라 역종이 예비역인 자(퇴역자 지원 불가)

나) 진급할 계급 : 하사 → 중사, 중사 → 상사, 소위 → 중위, 중위 → 대위,  
대위 → 소령, 소령 → 중령

\* 단, 당해 연도 진급 시행 계급은 각 군의 계급별 부족 소요를 고려 결정

다) 지원 자격

(1) 동원자원 :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경과한 예비역

구 분	최저복무기간 (현역 + 예비역)	연 령 (진급 후 3년 이상 예비역으로 복무 가능자)
하사 → 중사	하사로서 7년	40세까지
중사 → 상사	중사로서 12년	45세까지
소위 → 중위	소위로서 2년	40세까지
중위 → 대위	중위로서 6년	40세까지
대위 → 소령	대위로서 7년	42세까지
소령 → 중령	소령으로서 7년	45세까지

\* 진급 선발 후 동원지정 가능한 자원을 위주로 선발

(2) 지역/직장예비군 지휘관 : 예비역 대위 → 소령으로 임용 후 1년 이상(43세까지)

(3) 기타 당해 연도 진급대상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라) 진급심사 : 서류심사-신체검사-진급대상자교육(2박 3일)

3) 선발절차 및 시기

절 차	시 기	기 타
진급선발 공고	3~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비군 홈페이지(www.yebigun1.mil.kr) 공고 및 지원서 교부·접수</li> <li>기타 지원서 교부·접수 방법은 군별 공고 참조</li> </ul>
지원서 교부/접수		
서류심사	4~5월	합격자 통보 : 예비군/국방부 홈페이지 명단공고 등
신체검사	6~7월	
진급대상자교육	8~9월	학생군사학교, 병과학교 등
진급발령	8~9월	국방부(장교) / 각 군 본부(부사관)

\*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예비군/국방부 홈페이지, 국방일보 선발공고 참조

#### 4) 구비서류

가) 인터넷 접수 : 지원서 1부, 신원진술서(B) 1부, 신용정보조회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컬러사진(jpg파일)

#### 나) 우편접수

(1) 지원서 1부, 신원진술서(B) 1부, 신용정보조회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컬러사진 2매

(2) 예비군 편성카드 1부(예비군 중대장 관인 날인이 있는 것에 한함)

\* 기타 공고문에 추가양식 고려 첨부

#### 5) 평가 구분

가) 공통 : 현역/예비역 복무 시 평정, 경력, 교육성적, 상훈, 신체검사 등

나) 예비군 지휘관 : 지휘 추천(서열)

#### 6) 진급 대상자 교육 및 진급

가) 교육대상/장소 : 진급 예정자 전원/병과학교 및 기타 지정된 장소

나) 진급 대상자 교육 이수자는 동원훈련을 포함한 해당 연도 훈련 1회 면제(단, 해당연도 훈련 이수자는 다음해 훈련 면제)

### 문의처

• 국방부 자원동원과

☎ 02)748-5225

☎ 900-5225

• 육 군 동원참모부 예비군조직운영과

☎ 042)550-5536

☎ 960-5536

• 해 군 정보작전참모부 예비군과

☎ 042)553-3521

☎ 910-3521

• 공 군 정보작전참모부 동원과

☎ 042)552-3422

☎ 920-3422

## 2. 비상사태 시 행동요령

### 가. 공통 행동요령

- 1) 집에서 방송을 들으면서 정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
  - \* 무작정 피난에 나서는 것은 위험하며 혼란 초래
- 2)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귀가
- 3) 유·무선 전화는 꼭 필요한 때 외에는 사용 자제
- 4) 유언비어에 의한 현혹 및 적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 금지
- 5) 생활필수품, 연료 등의 사재기 금지
  - \* 양곡, 유류 등 주요 생활필수품은 충분히 비축, 필요시 배급제 실시
- 6) 비상급수원 확인 및 필수 준비물자 점검
- 7) 단수에 대비하여 모든 저장용기에 물을 받아 두고 아껴 씀
- 8) 헌혈 및 채혈, 부상자 수송 및 진료 보조, 전재민 구호 등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
- 9) 인력과 장비의 동원에 적극 응소
- 10) 기간산업시설, 동원업체 종사자는 즉시 직장에 복귀하여 비상근무
- 11) 수상한 사람, 물체 등 발견 시 신고(전화 112 또는 113번, 경찰서, 군부대, 행정관서)

### 나. 경계/공습경보 시 행동요령

- 1) 경계경보 시 :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1분 평탄음(대피 준비)
  - 가) 어린이, 노약자는 미리 대피, 비상용품을 대피장소로 옮김
  - 나) 화재위험이 있는 석유, 가스통 등을 안전한 곳으로 옮김
  - 다) 외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열기 코드를 뽑음
  - 라) 화생방 공격에 대비하여 화생방전 대비물자를 점검, 음식물과 우물 등은 뚜껑이나 비닐을 덮음
  - 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영업 중단, 손님 대피 준비 조치
- 2) 공습경보 시 : 적의 공습이 긴박하거나 공습 중일 때, 사이렌으로 3분 파상음(즉시 대피)
  - 가) 지하대피소, 고층건물에서는 지하실 또는 아래층으로 즉시 대피

- 나) 간단한 생활필수품, 비상약품과 화생방전 대비물자를 가지고 대피
- 다) 운행 중인 차량은 가까운 공터나 도로 우측에 정차 후 하차 대피  
 \* 경계/공습경보 시에는 밤에 불빛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등화관제 실시
- 다. 화생방 경보 시(적의 화생방 공격이 있거나 예상될 때 경보방송) :  
 방독면, 보호복 등을 착용하거나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비닐,  
 우의로 몸을 감쌌
- 라. 화학 공격 시 : 고지대, 고층건물의 상층부로 신속히 대피, 실내에서는  
 틈새를 막음
- 마. 생물학 공격 시 : 해충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끓인 물과 깨끗한  
 음식물만 섭취
- 바. 핵 공격 시 : 지하대피소로 신속 대피, 대피 못 한 경우 핵폭발 반대  
 방향으로 엎드려 눈과 귀를 막고 핵폭풍이 완전히 멈춘 후 일어남  
 \* 화생방 공격을 받은 지역에서는 해제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호 장비의  
 착용 등 개인 보호 조치를 계속 유지

### 3. 필수 준비물자

구 분	내 용
생활필수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량 : 가구별로 15일~1개월분 정도</li> <li>• 가공식품 : 라면, 통조림 등 적정 소요량</li> <li>• 취사도구 : 식기(코펠), 버너, 부탄가스</li> <li>• 침구 및 의류 : 담요, 내의 등</li> <li>• 기타 : 라디오, 핸드폰, 배낭, 휴대용 전등, 양초, 성냥(라이터), 비누, 소금 등</li> <li>* 연료 : 15일~1개월분 정도</li> </ul>
비 상 약 품 (비상구급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약품 : 소독제, 해열진통제, 소화제, 지사제, 화상연고, 지혈제, 소염제</li> <li>• 의료기구 : 핀셋, 가위</li> <li>• 위생재료 : 붕대, 탈지면, 반창고, 삼각건</li> </ul>
화 생 방 대 비 물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독면 또는 비닐, 수건, 마스크, 보호복, 보호두건 또는 비닐복, 방독장화 또는 고무장화, 방독장갑 또는 고무장갑, 해독재킷(해독제), 비누, 합성세제, 접착테이프 등</li> </ul>

# 제2장 예비역 단체 가입 안내

## 1. 재향군인회

가. 설립목적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운 병역 의무를 마친 전역군인들의 친목도모 및 권익신장,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단체

### 재향군인회 조직편성

- 기본조직 : 전국 각 행정구역별 설치 (\* 13개 시·도회, 223개 시·군·구회, 3,052 읍·면·동회)
- 직장조직 : 직장단위별 설치 \* 직장지회 2개회, 직장연합분회 6개회, 직장분회 15개회
- 해외지회 : 미국, 캐나다, 호주 등 13개국 22개회
- 산하업체 : 중앙고속, 향우산업 등 9개 업체
- 향군친목단체 : 63개 단체 (붙임 #16 참조)

## 나. 회원자격

1) 회원\* : 군 복무를 마친 자, 군번을 소지한 자

- \* ①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예비역
- ②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소집되어 군 복무를 마친 자
- ③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2) 정회원(평생회원) : 회원 중 회비를 납부한 자

## 다. 회비

1) 향군 정회원 가입회비는 평생 1회 납부 완결

2) 장성 : 10만 원/영관 : 5만 원/위관·부사관 : 2만 원/병 : 1만 원(실명입금)

가) 장성회비 입금계좌 : 우리은행 160-037289-13-103

나) 영관, 위관·부사관, 병 회비 입금계좌 : 국민은행 801701-04-163495

\* 회비는 지역 향군회관 건립과 회원 복지증진 등을 위해 사용

## 라. 가입절차

\* 가입문의 ☎ 02)417-5412/장성정회원 02)417-5414

1) 전화 또는 직접 방문 : 본부, 시·도회, 시·군·구회 사무실

2) 향군 홈페이지(www.korva.or.kr) 향군활동 → 정회원 가입안내

3) 향군 모바일 앱가입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민국재향군회 검색  
→ 상단에 나오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APP를 클릭  
→ 설치 후 실행 → 홈 화면 (향군 회원가입) 신청

- 4) 장성정회원 : 향군 홈페이지 → 향군활동 → 장성 정회원가입 안내 → 입회신청서 다운로드  
 \* 장성정회원은 향군 본부에서만 가입 가능하며, 정회원 가입이 완료되면 장성회원증 우편 발송

- 5) 서류 제출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대한성서공회빌딩) 조직복지국

마. 회원 혜택

- 1) 향군 각급회 및 산하업체 임직원 우선 채용
  - 가) 대상인원 : 본회 및 각급회 임직원, 9개 산하업체 임직원
  - 나) 직원은 4대보험, 퇴직금 지급, 건강검진 등 안정적인 직장생활 보장
- 2) 향군회원 및 자녀 장학금 지원 : 향군회원 본인, 자녀의 중·고교생/대학생/유학생
  - \* 문의 : 향군 장학재단 ☎ 02)417-5887, 각급회 (붙임 #26 참조) / 매년 400여 명
- 3) 6·25 참전자 중 생계곤란 회원 생계보조금 지원
- 4) 향군 할인가맹점/산하 업체 할인 혜택
  - 가) 향군 할인가맹점 : 10~30% 할인(1,172개소)
  - 나) 통일전망대(강원도 고성) 033)682-0389 : 입장료 50% 할인
  - 다) 중앙고속 해외관광 02)738-8844 : 특별할인(특가상품 제외)
- 5) 국립현충원 및 호국원 안장지원
  - 가) 현충원 : 대전, 서울 - 국가유공자, 20년 이상 군복무자
  - 나) 호국원 : 이천, 임실, 영천, 산청, 괴산 - 10년 이상 군복무자, 참전유공자
- 6) 인터넷 안보신문 코나스(www.konas.net) 무료 이용, 코나스 회원가입시 국가안전보장 관련 논문 및 전문자료 무료이용 가능
- 7) 법률구조활동 무료 지원
  - 가) 자문변호사 : 본회 및 시·도회별 5명 내외
  - 나) 지원 : 회원 법률 무료상담 안내
  - 다) 활용방법 : 향군 홈페이지(www.korva.or.kr) 각급회 연락처 참조
- 8) 기타 \* 재향군인회 주소/전화번호 (붙임 #17 참조)
  - 가) 향군마트(로그인 후) 혜택 부여
  - 나) 재향군인신문 일부 제공 등

**문의처**

• 재향군인회 조직복지국

☎ 02) 417-5412, 5255

## 2. 성우회

가. 설립목적 :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도모하고, 자유수호·국가보위와 조국의 평화통일에 관련된 문제를 연구, 분석하여 가치수호에 중대 위협이 되는 조짐이 있을 때는 결연히 정론으로 비판·계몽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를 위한 국민적 결의를 선도

나. 회원자격 : 육·해·공군 및 해병대 예비역 장성

다. 회비

회비종류	금 액	납부 시기	연회비 납부 방법
연 회 비	100,000원	연 1회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은행 : 852537-04-000078, 예금주 : 성우회</li> <li>* 반드시 회비 납부자 성명 기재</li> </ul>

라. 가입절차

가) 전화로 가입 신청(전화 시 상세하게 가입 안내)

나) 이메일로 가입 신청 : staradm@hanmail.net

다) 입회원서로 가입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대한성서공회빌딩 성우회

마. 회원 혜택

- 1) 성우회 주관 각종 행사에 초대
- 2) 안보 관련 제반 정보, 시사법률상식, 회원명부 열람, 무료 법률 자문
- 3) 활동에 직접 참여 : 정책자문위원(15명 내외), 운영위원(50여 명 운용)
- 4) 안보강사로 예비군 안보강의 : 100여 명 운용, 강사료 지급
- 5) 성우회 소식지 및 수첩 배포
- 6) 회원 애경사 지원 : 본인·부모·처·장인·장모 사망 시 조화 및 문자 전파 지원/자녀 결혼 시 청첩장 주소 라벨 지원

문의처

☎ 02) 417-5415, 02) 423-7713

E-mail : staradm@hanmail.net

### 3. 대령연합회

가. 설립목적 :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국가안보·헌법수호를 위한 활동 및 평화통일 정책연구,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 권익 보호에 힘쓰며, 나아가 군과 국가발전에 기여

나. 회원자격 : 육·해·공군 및 해병대 예비역 대령(희망자)

\* 인원현황

(단위 : 명)

계	육 군	해 군	공 군	해병대	여 군
8,475	6,112	932	1,070	348	13

\* 현재 활동회원 : 회장단 임원 22명 외 2,350명

다. 회비 (예금주: 예비역대령연합회)

- 1) 정회원 가입비 : 종신회비 10만 원, 연회비 3만 원, 후원금 : 액수 무관
- 2) 평생회원 : 50만 원(자녀 결혼, 애경사 지원)
- 2) 회비 입금계좌 : 국민 360101-04-099761
- 3) 후원계좌 : 국민 790801-04-038253

라. 가입절차

- 1) 전화 및 팩스로 의사표시 및 직접 방문 : 02)6392-0066 (팩스 0068)
- 2) 입회서 작성 및 회비 납부 즉시 회원가입

마. 회원 혜택

- 1) 안보, 통일 관련 세미나 포럼 등 일정 제공/초청
- 2) 안보 전문 강사 추천 및 교육기회 제공
- 3) 사회공헌 일자리 참여(봉사료 지급)
- 4) 산하 (사)을지나라사랑 연구위원 위촉 및 용역과제연구
- 5) 사무실(컴퓨터, 전화, 팩스) 사용, 모자·배지·명함 제공

바. 사무실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순환로 2569 재향군인회 빌딩 6층

- 1) 오시는 길 : 3호선 양재역 1번 출구 직진 100m  
(내비게이션 “대한성서공회” 빌딩 검색)

문의처

☎ 02) 6392-0065~7

FAX : 02) 6392-0068

카페 : 네이버 대한민국 수호대

#### 4. 대한민국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영관장교 연합회

가. 설립목적 : 자유민주주의 수호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안보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과 세계평화 증진에 공헌하며, 회원 상호 간 친목 도모와 자생을 위한 사업 및 교양 학술연구

나. 회원자격

- 1) 대한민국의 예비역 또는 퇴역 영관장교로서 본회의 창립 목적에 찬동하는 자
- 2) 위관급 장교로서 국가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인 자는 명예회원으로 가입 가능

다. 회비/가입절차 : 본회 소정양식에 의거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원서와 함께 입회비 납부(연회비 포함 30,000원)

라. 회원 혜택

- 1) 회보 발송(분기 1회)
- 2) 정기총회 초청(연 1회)
- 3) 사망 시 : ① 국방부 장관 조기 및 영관장교 연합회 조기 조치  
② 3단 조화 또는 꽃바구니 조화 조치 및 문상
- 4) 전적지 순례 시 및 친목 행사 시 초청(연 2회)
- 5) 향군 친목단체 행사 시 초청
- 6) 향군 상조회 가입 시 할인 혜택

문의처

☎ 02)415-3715~6

FAX : (02) 415-3717

## 5. 부서관총연합회

가. 설립목적 : 대한민국의 모든 예비역 부서관들의 모임을 통합하여 군복무 당시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여 호국정신을 지속 함양하고, 회원들의 복지증진을 도모

나. 회원자격

- 1) 육·해·공 및 해병대에서 부서관으로 명예롭게 복무 후 전역·퇴역한 자
- 2) 본회의 지정서식 입회신청서를 제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단체

다. 입회절차 : 본회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

라. 회비

- 1) 영구회비 : 30만 원(평생 1회, 연·월 회비 없음)
- 2) 연회비 : 5만 원(연 1회, 월회비 없음)
- 3) 월 회비 : 5천 원

마. 회원 혜택 : 연합회 회보 등 유인물 발송, 각종 행사에 초청 등

문의처

☎ 02) 928-1223

FAX : 02) 928-1226

## 6.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가. 설립목적 :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평화적 통일 성업 달성과 국가발전 기여와 동시에 지역사회 봉사 및 회원 복지증진

나. 회원자격

1. 무공수훈자 :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
2. 보국 수훈자 : ①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②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 개발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7호 및 8호

3. 유족회원 : 선 순위 승계 유족 1인

다. 회비 : 지회별 상이

\* 대한민국무궁수훈자회 홈페이지(<http://www.mugong.kr>)접속 → ‘우리단체는’ 클릭 → (좌측 하단) ‘지부 및 지회 안내’ 클릭 → 지회별 전화번호 확인

라. 가입절차 : 주소지 소재 시, 군, 구 지회에 방문하여 가입

\* 방문 전 지회로 전화하여 필요한 사항 문의

마. 회원 혜택

1.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보훈예우(명예)수당 신청 및 수령 절차 안내
2. 유공자 사망 시 영구용 태극기 및 대통령 근조기 증정
3. 국가유공자 장례의전 선양행사 지원(무료) 시 우선권 부여 - 근조화환, 플래카드, 단체 조문, 태극기 관포, 영현봉송 등
4. 지회·지부·본부 근무 인원(직원) 선발 시 지원 자격 부여
5. 지회 및 지부 선양단원(영구용 태극기 및 대통령 근조기 증정요원 포함) 결원 시 선발 우선권 부여(활동에 따른 실비 지급)
6. 지자체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제휴하여 회원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
7. 베트남 전적지 순방(4박 6일) 기회 부여(국비 지원)
8. 전국 전사적지 답사기회 제공(각 지회 및 지부별 시행)
9. 각 지역별 「무궁수훈자 공적비」에 입회 회원 각명(刻銘)
10. 지회 주관 각종 행사 시 초청, 회원 간 친목 활동 참여
11. 회원 상부상조 활동(고령·독거·불우회원 돕기, 위로연 행사 등)
12. 설·추석 등 명절선물 및 위문품 분배
13. 안보강연활동, 지역 현충시설 지킴이, 자연정화·질서 지키기 캠페인, 생명지킴이 활동 등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 기회 부여

문의처

☎ 02)790-9653

E-mail : [www.mugong.kr/](http://www.mugong.kr/)

## 7. 육군협회

### 가. 설립목적

\* 육군 후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유일한 비영리 민간단체

- 1) 국가안보와 육군정책의 가치 홍보
- 2) 친군화 도모를 위한 민·군간 상호협력
- 3)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국방정책과 군 발전을 지원 및 후원
- 4) 육군과 육군가족 지원

### 육군협회 조직편성

- 협회본부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29 전쟁기념관 432호
  - 회장 : 권오성(제44대 육군참모총장)
  - 부설 지상군연구소 : 연구소장 등 연구위원 150명
- 국내지부(7) : 계룡·충남, 인천, 충북, 경기, 대전·세종, 강원·춘천, 부산
- 해외지부(1) : 미국 서부(LA)

나. 회원자격 : 대한민국 육군을 사랑하는 남녀노소 및 기관·단체

다. 회 비 : 월 1만 원 정기후원

### 라. 가입절차

1) 인터넷으로 가입하기 : 육군협회 홈페이지(www.aroka.kr)에서 가입

①	②	③	④	⑤	⑥
홈페이지 (www.aroka.kr)	회원약관 동의	개인정보 입력	회비 입금	관리자 승인	회원가입 완료

2) 팩스로 가입하기 : 육군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①	②	③	④	⑤
홈페이지 (www.aroka.kr)	가입 신청서 다운로드	팩스 전송 02-749-6986	금융기관 회비납부	회원가입 완료

### 마. 회원 혜택(평생회원)

- 1) 정기 개인후원 가입 웰컴패키지 제공(가입 한 달 후)
- 2) 정기 개인후원 정기 감사패키지 제공(1년 후, 특정기념일)
- 3) 육군협회 홈페이지 열람(www.aroka.kr), 협회 주최 행사초청
- 4) 육군협회 발행 간행물 수령 : 육군협회 소식지(분기별 계간지) 등

\* 군 복지시설의 정회원·준회원에게 중복적용 되지는 않음

문의처

☎ 02) 749-6987~8

☎ 960-2155, 900-7715

FAX : 02) 749-6986

## 8. 해군협회(공식명칭: (사)대한민국 해군발전협회)

가. 설립목적 \* 2008년 10월 13일(국방부 등록, 비영리 사단법인)

- 1) 국가안보체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 2) 미래지향적인 국방정책과 해군발전 지원 및 후원
- 3) 대국민 안보의식 계도 활동
- 4) 회원 친목 도모 및 복지증진 활동

### 해군협회 조직편성

**본부**

- **의결기관** :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 **회장단** : 회장, 부회장(7명), 감사(2명)      ○ **고문** : 역대 해군참모총장
- **자문위원** : 정책, 안보, 군사,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 **연구소** : 연구소장 외 연구위원              ○ **사무국** : 사무총장 등 2명

**지회 및 해외 지부(각 1)** : 계룡시지회, 미국 서부지부

나. 회원자격 : 대한민국 해군의 발전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예비역을 포함한 모든 국민 및 기관(단체)

다. 회비

구 분		회 비	비 고
정회원	평생회원	30만 원 / 평생	평생 정회원
	후원회원	30만 원 이상 / 연	평생회원 자격 부여
	연회원	3만 원 / 연	1년간 회원 자격 부여
기관·단체회원		100만 원 이상 / 연	대표 : 평생회원 대우
일반회원		회비 없음	협회 지지자

라. 가입절차

- 1) 인터넷으로 가입 : 해군협회 홈페이지에서 가입
- 2) 팩스로 가입 : 해군협회 홈페이지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및 발송
- 3) 전화로 가입 : 해군협회 사무국

마. 회원 혜택(평생회원)

- 1) 해군협회 홈페이지 열람(www.arokn.org)
- 2) 협회 주최 행사 초청
- 3) 해군협회 발행 간행물 수령 : <해군협회지> 등

문의처

☎ 02) 810-3090

FAX : (02) 841-0317

## 9. 공군협회

### 가. 설립목적

- 1) 국가안보와 대한민국 번영에 기여
- 2) 미래지향적인 국방정책과 공군발전을 지원 및 후원
- 3) 친군화 여건 조성 및 공군사랑을 도모하는 민군 상호협력

### 공군협회 조직편성

- 본부** :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36길 92 공군항공안전단 태성관 2층
  - **의결기관** : 총회, 대의원회 및 이사회(이사는 15명 이내)
  - **회장단** : 회장, 부회장                      ○ **감사** : 2명 이내
  - **자문위원** : 역대 공군참모총장, 공군전우회장, 공군발전협회장, 본회 발전 공헌 인사
- 부설 항공우주력연구원** : 연구원장 등 연구위원 100여 명

나. 회원자격 : 대한민국 공군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과 기관·단체

### 다. 회비/가입절차

#### 1. 회비

구 분		회 비	비 고
정회원	평생회원	30만 원 / 평생 1회	평생 정회원
	연회원	3만 원 / 연	1년 정회원
기관·단체회원		100만 원 이상 / 연	대표(평생회원 대우)
일반회원		회비 없음	협회 지지자로서 인터넷(홈페이지) 회원

#### 2. 가입절차

- 1) 인터넷으로 가입 : 공군발전협회 홈페이지에서 가입
- 2) 전화로 가입 : 문의처 참조

### 라. 회원 혜택(평생회원)

- 1) 협회 홈페이지(www.arokaf.co.kr), 자료 열람·댓글 쓰기, 다운로드 가능
- 2) 공군협회 발행 간행물 수령과 협회 주최 행사에 초청
- 3) 전공에 따라 연구용역과제 수행에 연구위원으로 참여 기회 부여

문의처

☎ 02)811-1412 02)825-8461

군)923-7541

## 10.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가. 설립목적 : 국방·군사에 관한 제반 분야를 연구·분석하여 국방정책 수립 및 군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

나. 신청자격 : 10년 이상 근무한 예비역 중 전역한 지 5년 이내로 연구 활동이 가능한 자(학위 소지자 또는 연구논문 실적이 있는 자)

다. 연구 활동 분야

- |               |                    |
|---------------|--------------------|
| 1) 국방정책/군사 분야 | 2) 국방비용 분석 분야      |
| 3) 정보통신 분야    | 4) 무기체계 및 획득 분야    |
| 5) 군수/시설 분야   | 6) 작전 및 교육훈련 분야    |
| 7) 인사 및 복지 분야 | 8) 외국어 번역 분야(영어 등) |

라. 등록절차 : 등록신청서 제출(이메일) → 접수 → 심사 → 승인 → 예비역 연구위원 등록

마. 활동기간 : 예비역 연구위원으로 등록된 후 3년 이내 연구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자동 해촉

바. 지원사항 : 명함제작 지원(연구 활동 시), 주요 군사 이슈 뉴스레터 제공(이메일), 포럼·세미나 개최 안내, 연구용역 과제 입찰 관련 정보 제공(이메일, SNS 전송)

\* 연구위원이 연구용역 과제 획득 시 계약 관련 행정 처리 등 지원

### 문의처

- 연구활동 관련
- 예비역지원 관련

☎ 031)727-8119

☎ 031)727-8122

# 제3장 제대군인 복지지원제도

## 1. 장기복무(10년 이상) 제대군인

가. 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제대군인지원센터(붙임 #9 참조)

나. 취·창업 지원 : 보훈(지)청(보훈특별고용), 제대군인지원센터

1) 보훈특별고용 지원(붙임 #5, 6 참조)

\* 10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2) 제대군인지원센터 통한 취·창업 지원(장기복무 예비역 간부)

다. 교육지원(붙임 #18, 19 참조)

1) 자녀 고교 수업료 보조 :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기준 이하인 자로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 한하여 입학금·수업료 전액 보조

2) 본인 교육지원 :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으로 전역 후 3년 이내에  
전문대 및 대학 재학 시 입학금·수업료의 50% 국고보조

라. 대부지원 : 주택구입, 생활안정 등의 자금지원

마. 안장지원(국립호국원 : 영천, 임실, 이천, 산청, 괴산)

1) 대상 : 현충원 안장대상자, 장기복무 제대군인(배우자 합장 가능)

2) 신청 : 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에서 신청

바. 의료지원

1) 외래 진료 : 보훈병원, 군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액 50% 감면

2) 건강검진 : 보훈병원에서 검진 시 비용 50% 감면

3) 전상/공상으로 전역한 제대군인 : 상이처가 경미하여 신체검사 결과 등의  
판정자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상이처 진료 시 전액 국비 지원

사. 전직지원금 지급(붙임 #8 참조)

1) 대상 : 실업상태로 적극적 구직활동 중인 장기복무(10년~19.6년 미만)  
제대군인

### < 지급제외 >

- 전역 후 6개월이 지나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
-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등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2) 지급금액 : 월 7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

\* 수급기간 중 취·창업 시에는 잔여기간 총지급액의 1/2 일시금 지급

3) 신청 : 주소지 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 또는 보훈(지)청 (붙임 #9 참조)  
 아. 법률구조지원

1) 대상 : 군인연금수급권(10년~19.6년 미만)이 없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대상으로 등록·결정된 자 중 일정소득(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자

2) 지원내용

가) 소송비용 : 변호사 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제반 소송비용은 예산 부족 시 자부담)

나) 지원 대상 소송사건

(1) 민사·가사사건,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형사사건

\* 법률구조법 및 동 법 시행령,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에 의한 「대한법률  
 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소송사건

(2)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조신청 접수 후 구조대상 여부, 승소 가능성,  
 실익 및 타당성 등을 파악하여 구조 여부 결정

자. 공공시설 감면이용

공공시설	관 램 요 금	감면비율	감면요금
전쟁기념관	무 료		
독립기념관	무 료		
국가가 관리하는 고궁 및 능원 (서울·경기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복궁, 창덕궁 : 3,000원</li> <li>창경궁, 덕수궁 : 1,000원</li> <li>종묘, 조선왕릉 14개 : 1,000원</li> </ul>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궁 : 1,500원/500원</li> <li>조선왕릉 : 500원</li> </ul>
국립민속박물관	무 료		

\* 단, 특별 관람료는 감면대상 아님

차. 제출서류

구 분	지 원 사 항	구 비 서 류
10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업지원(직장알선)</li> <li>교육지원(본인)</li> <li>교육지원(자녀)</li> <li>대부지원, 직업훈련</li> <li>의료지원</li> <li>공공시설 감면이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원인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신청서 1부(소정양식, 보훈관서 비치)</li> <li>- 사진(3×4cm) 1매</li> <li>- 소득신고서(자녀 교육지원 신청자) 1부</li> </ul> </li> <li>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적 증명서 1부</li> <li>-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자녀의 교육지원 신청자에 한함)</li> </ul> </li> </ul>
경상이 제대군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신청서 제출</li> </ul>

\* 본인 동의 시 담당공무원이 병적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자녀 교육지원에 한함) 확인

## 2. 중기복무(5년 이상 ~ 10년 미만) 제대군인

가. 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붙임 #9 참조)

나.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한 취·창업 지원

다. 전직지원금 지급 :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붙임 #8 참조)

1) 대상 :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중기복무 제대군인

< 지급제외 >

- 전역 후 6개월이 지나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
-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등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 수급기간 중 취·창업 시에는 잔여기간 총지급액의 1/2 일시금 지급

2) 신청 : 주소지 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 또는 보훈(지)청(붙임 #9 참조)

라. 법률구조지원

1) 대상 : 군인연금수급권(5년~10년 미만)이 없는 중기복무 제대군인으로 등록·결정된 자 중 일정소득(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자

2) 지원내용

가) 소송비용 : 변호사 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제반 소송비용은 예산 부족 시 자부담)

나) 지원 대상 소송사건

(1) 민사·가사사건,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형사사건

\* 법률구조법 및 동 법 시행령,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소송사건

(2)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조신청 접수 후 구조대상 여부, 승소 가능성, 실익 및 타당성 등을 파악하여 구조 여부 결정

문의처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대표전화

☎ 1666-9279

### 3. 주택 우선공급

#### 가. 관련법령

- 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나. 공급대상자 :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자

다. 신청기간 및 장소 : 매년 1월 중 1주일간,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매년 1월 초 신문 공고를 통해 홍보

#### 라. 신청자격

-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에 따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동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자
- 2) 국민임대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분양전환 공공 임대주택은 동 규칙 제19조에 해당되는 자

마. 대상자 선정 : 무주택기간 등 배점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지원

문의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4. 국립묘지 안장 및 신청 절차

가. 안장 대상(「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1) 전·퇴역자

가) 20년 이상 군 복무한 자

\* 10년 이상 복무자·참전자는 국립호국원(영천, 임실, 이천, 산청, 괴산) 안장 가능

나) 장관급 장교이었던 자

다) 무공이 현저한 자(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무공훈장 수훈자)

2) 상이자 : 상이로 전역·퇴역·면역·퇴직한 후 사망한 자

\* 배우자 합장 가능(「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나. 안장 신청 절차

1) 인터넷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 및 국립서울현충원 홈페이지(www.snmb.mil.kr)에 접속 후 신청

\* 국가보훈처 및 각 국립묘지 홈페이지에서도 접속 가능

\* 서울현충원은 충혼당 납골시설 봉안만, 대전현충원은 묘역 안장만 가능

2) 배우자 합장의 경우 안장 대상자가 국립묘지 안장 이후 가능

다. 안장 비용 : 국립묘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안장 및 합장에 소요되는 물자 부담 및 규정에 의한 명패 및 묘비시설은 국고 부담

\* 다만, 장례·화장·유골의 국립묘지까지의 운구 비용, 안장된 자를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비용은 유족 부담

라. 국립묘지 안장의 제한

1)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현역군인

2)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1~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심의한 자

5) 국적 상실자(단, 2014.1.17. 이후 사망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안장될 수도 있음)

\* 참고 법령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 신청서류

구 분	무공수훈자 및 상이군경	장군, 20년 이상 군복무자		
		군인연금 수급자	군인연금 미수급자	
안 장 자	안장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증명서(사본) 1부</li> <li>● 혼인관계증명서(사본) 1부</li> <li>● 병적증명서(사본) 1부</li> <li>*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시 : 병적증명서만 제출</li> </ul>	좌 동 (일시금 수령자 : 확인증 첨부)	좌 동
	유골 봉안 시 (안장 당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증명서(원본) 1부</li> <li>● 혼인관계증명서(원본) 1부</li> <li>● 병적증명서(원본) 1부</li> <li>● 사망진단서(원본) 1부</li> <li>● 화장증명서(원본) 1부</li> <li>● 사진 3×4cm 2매</li> </ul>	좌 동	좌 동
이 장 자	이장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적등본(원본) 1부</li> <li>● 병적증명서(사본) 1부</li> <li>● 미망인 혼인관계증명(원본) 1부 (미망인 생존 시)</li> </ul>	좌 동 * 단, 1981.1.1. 이후 사망자만 이장 가능	
	유골 봉안 시 (이장 당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장신고필증(원본) 1부 또는 유골 반환증(원본) 1부</li> <li>● 사진 3×4cm 2매</li> <li>● 화장증명서(원본) 1부</li> </ul>	좌 동	
배우자 합장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합장신청서 1부</li> <li>● 국립묘지 안장자의 배우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제적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li> <li>● 화장증명서 1부 (이장·합장시 추가서류 :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반환증 1부)</li> </ul>		

문의처

-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팀 ☎ 02)826-6238
-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과 ☎ 042)820-7051
- 국립영천호국원 ☎ 054)330-0850
- 국립임실호국원 ☎ 063)640-6081
- 국립이천호국원 ☎ 031)645-2340
- 국립산청호국원 ☎ 055)970-0770
- 국립괴산호국원 ☎ 043)830-1133
- 재향군인회본부 참전복지부 ☎ 02)417-5255

## 5.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장 이용

### 가. 국군복지단 휴양시설(호텔/콘도)

#### 1) 이용대상

회 원
1. 현역군인(병사 포함)
2. 예 비 역(19년 6개월 이상 복무 후 전역한 군인)
3. 군 무 원
4.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 중사 이상으로 전역한 군인(19년 6개월 미만)</li> <li>• 10년 이상 복무 후 퇴직한 군무원 • 군 관련 국가유공자</li> <li>• 군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 근로자 • 국방부 공무원, 병역이행명문가</li> <li>• 국방부 산하기관 및 연구소 직원 • 20년 이상 장기근속 후 퇴직한 국방부 공무원</li> </ul>

#### 2) 지역별 예약체계

구 분	내 륙 지 역	제 주 지 역
신청/접수 (인터넷 또는 ARS신청)	이용일 기준 30일 전 00시~22일 전 24시	이용일 기준 50일 전 00시~30일 전 24시
	예약 대표전화 : 1577-9800, 984-6999(군)	
예약자 통보	이용일 기준 21일 전 10시	이용일 기준 29일 전 10시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 및 안내문자 발송	
예약자 입금 (미입금 시 자동취소)	이용 희망일 14일 전 24시까지	이용 희망일 22일 전 24시까지
잔여 객실 예약		29일 전 10시~4일 전 12시까지
환불 (선납 시설 기준)	100%	이용일 기준 5일 전 23:59 이전 취소 시
	100% (감점-2)	이용일 기준 4일 전 00시 이후부터 3일 전 23:59 이전 취소 시 * 현지납 시설 : -2점
	80%	이용일 기준 2일 전 00시 이후부터 2일 전 23:59 이전 취소 시 * 이용일이 일요일인 경우는 이용일 2일 전 17시 이전 취소 시 * 연휴일 경우는 연휴 시작 2일 전 17시 이전 취소 시 * 현지납 시설 : -3점
	미환불	이용일 기준 1일 전 00시 이후 취소 시(당일 취소 포함) * 현지납 시설 : -4점
	미환불 (1회분 접수 차감)	객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노쇼(NO-SHOW) * 현지납 시설 : -10점

### 3) 부대시설 할인

구 분	부 대 시 설 할 인
소 노 (구 대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체인 물놀이시설(사우나, 수영장 포함), 스키(리프트, 렌탈) 50%</li> <li>• 그 외 부대시설은 업체에서 운영하는 업장에 따라 10%~30% 상이</li> <li>※ 쏘비치 삼척 조식부페 20% 할인적용 : 투숙객 1실당 최대 5명 적용 기간 : '22.7.30일까지</li> </ul>
금 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영 : 요트/수영장/사우나 50%, 식음료 10%</li> <li>• 설악 : 사우나 50%, 식음료 20%, 노래방 30%</li> <li>• 화순 : 온천장(사우나)/아쿠아나 50%,</li> <li>• 제주 : 아쿠아나/사우나 50%, 식음료 10%</li> <li>• 아산스파 : 주중/주말 연중 50%, 성수기 40%(본인 포함 4인) 기간 : '23.6.30일까지</li> </ul>
한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워터파크/ 수영장 40-50%, 사우나 50%, 수목원(제이드가든) 20%, 63빌딩 한화직영식음업장 10%, 평창스키장 30-50%</li> </ul>
무 주	스키 리프트 30~50%, 렌탈 30%, 식음료 10%, 사우나/관광 곤도라 20~30%
켄싱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조트 식음 20%, 사우나(회원가)</li> <li>• 베어스타운(포천) : 리프트/렌탈/눈썰매장/수영장 50%</li> <li>※ 숙박 미연계시설 : 군 신분증(현역/군무원) 확인 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랜드크루즈(한강유람선) 승선권 20%</li> <li>- 대구 이월드 연간/자유이용권 30%</li> </ul> </li> </ul>
엘도라도	30% : 해수온천사우나/해양마사지/해수찜테라피/종합해양레저 10% : 식음료
리 슝 (구 엠캐슬)	덕산 : 천천향 50%, 온천사우나 30%, 식음료 10% 안면도 : 온천사우나 30%, 노천탕 20%
샤인빌	30 ~ 20% : 사우나, 바데풀, 해수풀, 헬스, 스쿼시, 요트, 바다낚시, 제트스키 등 샤인빌CC : 국군회원 30%, 동반인 20%
웰리힐리	40% : 스키(리프트/렌탈), 수영장, 사우나 10% : 식음업장
베어스 타운	50% : 스키(리프트/렌탈), 보드, 스키복 대여
보광 휘닉스	40 ~ 30% : 스키(리프트/렌탈) 40 ~ 30% : 워터파크(블루캐니언) 30% : 평창 퍼블릭골프장(9홀)(단, 골프연습장 40%) 10% : 노래방, 볼링장 외

4) 이용요금

(가) 직영호텔 및 콘도

(단위 : 원)

구분	면적(평)	객실 특이사항	예약 및 기타 회원		
			비수기 /성수기 주중	주말 /휴일	극성수기
서귀포	119.8㎡(36)		121,000	132,000	143,000
	82.6㎡(25)		82,500	99,000	115,500
	66.1㎡(20)		66,000	77,000	88,000
	39.7㎡(12)		44,000	55,000	66,000
화진포	138.8㎡(42)	방3(바다)	77,000	121,000	132,000
	109.1㎡(33)	방2(바다)	71,500	99,000	121,000
	82.6㎡(25)	방2(바다)	60,500	88,000	110,000
	66.1㎡(20)	방1(바다)	49,500	77,000	99,000
	66.1㎡(20)	방1(호수, 소나무)	44,000	71,500	93,500
	18.2㎡(5.5)	별관	27,500	44,000	55,000
	14.9㎡(4.5)	별관	22,000	38,500	44,000
청간정	158.7㎡(48)	방3(바다)	110,000	143,000	154,000
	158.7㎡(48)	방3(산)	99,000	132,000	143,000
	125.6㎡(38)	방2(측면바다)	88,000	110,000	121,000
	79.3㎡(24)	방2(바다)	60,500	88,000	104,500
	79.3㎡(24)	방2(산)	55,000	82,500	99,000
	72.7㎡(22)	방1(측면바다)	52,800	77,000	93,500
	66.1㎡(20)	방1(산)	49,500	71,500	88,000
	39.7㎡(12)	원룸(측면바다)	33,000	55,000	66,000
송정	126㎡(38)	방2	88,000	132,000	159,500
	106㎡(32)	방2	77,000	115,500	137,500
	86㎡(26)	방2	66,000	99,000	121,000
	60㎡(18)	원룸	49,500	77,000	88,000
	43㎡(13)	원룸	38,500	60,500	71,500
	43㎡(13)	원룸(호텔형)	38,500	60,500	71,500
대천1관	148.8㎡(45)	방3(바다)	99,000	132,000	148,500
	72.7㎡(22)	방2(바다)	55,000	82,500	99,000
	66.1㎡(20)	방2(산)	49,500	77,000	93,500
	49.6㎡(15)	원룸(바다)	38,500	66,000	77,000

구분	면적(평)	객실 특이사항	예비역 및 기타 회원		
			비수기/ 성수기 주중	주말/휴일	극성수기
대 천 2 관	126㎡(38)	방2	71,500	93,500	110,000
	106㎡(32)	방2	60,500	82,500	99,000
	86㎡(26)	방2	49,500	71,500	88,000
	73㎡(22)	방1	44,000	66,000	77,000
	60㎡(18)	원룸	33,000	49,500	66,000
	43㎡(13)	원룸	27,500	44,000	55,000

- \* 예비역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임
- \* 극성수기(7.19. ~ 8.24. / 탄력적 운영)
- \* 성수기(7월 ~ 8월 중 / 탄력적 운영)
- \* 비수기 주중 이용 시 개인 가점 2점, 고객만족도 작성 시 가점 1점 부여
- \* 가점(+1점) 부여 대상 시설(사기) : 대천/화진포(9월~다음해 6월 주중), 서귀포(12월~다음해 2월 주중, 주말)

(나) 민영콘도

\* 민영콘도 요금은 매년 조정

시 설 명	면적/㎡	요금 계산 방법	기준인원 ROOM	이용요금		
				주중	주말	성수기
금호 설악	92.5㎡	선입금	5인/2실	70,200	97,200	117,500
금호 제주	89㎡			103,500	120,600	130,100
금호 통영	91.7㎡			114,300	135,000	145,400
금호 화순	91.8㎡			67,500	86,400	96,300
소노캠 거제	106㎡			161,000	196,000	227,000
소노벨 경주	106㎡			117,000	157,000	200,000
소노문 단양	86㎡			100,000	140,000	180,000
소노벨 변산	102㎡			117,000	146,500	183,000
소노문 델피노	86㎡			104,000	140,000	166,000
쓸비치 양양	93㎡			136,000	170,000	204,000
소노문 양평	86㎡			100,000	130,000	180,000
소노벨 비발디파크	86㎡			117,000	150,000	200,000
쓸비치 삼척	102㎡			149,000	197,000	230,000
쓸비치 진도	102㎡			149,000	192,000	230,000
소노벨 천안	102㎡			110,000	150,000	190,000
소노벨 청송	85.88㎡			120,000	165,000	190,000
소노캠 여수 (엠블호텔)	56㎡			189,000	금	204,000
		토	249,000		스페셜 294,000	

시 설 명	면적/㎡	요금 계산 방법	기준인원 ROOM	이용요금		
				주중	주말	성수기
신세계(영랑호)	66㎡		5인/1실	70,000	83,000	88,000
신안 엘도라도	86~93㎡		4인/1실	89,000	99,000	105,000
	117.5㎡		5인/2실	129,000	143,000	152,000
	142㎡		6인/2실	157,000	171,000	180,000
리솜스파캐슬 (덕산)	60㎡ (콘도)/18평	현지불	4인/원룸	96,000	금110,000 토125,000	성125,000 극성수기 130,000
	79㎡ (콘도)/23평		5인/1실	115,000	금128,000 토146,000	성146,000 극성수기 152,000
	93 (콘도)/27평		5인/2실	128,000	금140,000 토160,000	성160,000 극성수기 168,000
리솜 오션캐슬 (안면도)	60㎡(호텔)	현지불	2인/원룸	81,000	금96,000 토119,000	성119,000 극성수기 123,000
	60㎡(콘도)		4인/원룸	81,000	금96,000 토119,000	성119,000 극성수기 123,000
리솜 제천(포레스트)	79㎡(호텔)		5인/1실	117,000	금 167,000	미운영
	93㎡(호텔)		5인/2실	166,000	금 187,000	미운영
무주 덕유산	63㎡		4인/원룸	80,000	100,000	105,000
	93㎡		5인/2실	110,000	145,000	160,000
베어스타운	96㎡		5인/1실	81,000	89,000	124,000
				하계주중 89,000	하계주말 97,000	105,000
				동계주중 97,000	동계주말 105,000	124,000
보광휘닉스 아일랜드	110.86㎡		4인/2실	156,000	176,000	190,000
소노캄제주(샤인빌)	66㎡		4인/원룸	114,000	156,000	195,000
웰리힐리파크	89㎡		5인/2실	84,000	94,000	110,000
현대수(설악)	76㎡		4인/2실	40,000	57,000	62,000

시 설 명	면적/㎡	요금 계산 방법	기준인원	이용요금		
			ROOM	주중	주말	성수기
한화 수안보	60㎡(호텔)	선입금	5인/1실	78,000	96,500	111,000
한화 설악	76㎡(콘도)		5인/1실	97,000	120,000	142,000
한화 양평	76㎡(콘도)		5인/1실	68,000	89,500	114,000
한화 용인(베잔송)	76㎡(콘도)		5인/1실	94,000	117,500	136,000
한화 백암	76㎡(콘도)		5인/1실	67,000	80,000	109,000
한화 산정호수	76㎡(콘도)		5인/1실	94,000	119,500	137,000
한화 제주	93㎡(콘도)		5인/2실	106,000	124,000	142,500
한화 해운대	63㎡		4인/1실	105,000	131,500	144,500
한화 경주	86㎡		5인/2실	95,000	112,500	139,000
한화 대천	93㎡		5인/2실	95,000	119,500	142,000
한화 평창	93㎡		5인/2실	86,000	102,500	181,000
한화 거제	109.6㎡		5인/2실	156,000	190,500	215,000
	59.4㎡		4인/1실	129,000	154,000	154,000
켄싱턴 총주 / 하동	66㎡	선입금	4인/1실	75,000	88,000	101,000
	89㎡		5인/2실	85,000	101,000	116,000
켄싱턴 해운대	59.4㎡		4인/1실	68,000	80,000	96,000
켄싱턴 경주	102㎡		6인/2실	92,000	106,000	123,600
켄싱턴 설악비치	69㎡		4인/1실	79,000	92,000	109,000
	86㎡		5인/2실	106,000	121,000	139,000
켄싱턴 설악밸리	119㎡		7인/3실	184,500	197,500	226,000
	109㎡		6인/3실	169,000	185,000	216,000
켄싱턴 지리산남원	83㎡		4인/1실	85,000	101,000	116,000
켄싱턴 서귀포	86㎡		5인/1실	88,000	103,000	118,000
켄싱턴 가평	83㎡		4인/1실	75,000	88,000	101,000

\* 성수기 : 여름(7.19.~8.24.), 겨울(12.20.~2.28. 스키장운영 콘도)

\* 보광 : 극성수기 / 연휴 추가요금 적용

\* 현지불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의 예약 및 환불규정에 따라 위약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현대수 : 취소 또는 당일 미투숙(No-Show)에 따른 위약금 발생 및 회원권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바람

\* 현지불 업체는 시즌별로 이용요금이 세분화되어 게시된 금액과 다를 수 있음

\* 예약은 국군복지단 홈페이지(www.welfare.mil.kr) 또는 ARS(1644-50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군복지단 예약실 1577-9800으로 문의

## 나. 밀리토피아호텔(민간위탁운영)

객실타입(실)	면적(평)	침대 수	이 용 요 금 (원) * 연중 이용요금 동일
스탠다드 트윈(64)	30.0m <sup>2</sup> (9)	싱글 2	55,000(현역) / 60,500(예비역)
스탠다드 더블(52)		더블 1	
패밀리 트윈(20)		더블 1+싱글 1	77,000(현역) / 84,700(예비역)
온돌 스위트(3)	68.0m <sup>2</sup> (21)	침구 2+추가	121,000(현역) / 133,100(예비역)
주니어 스위트(6)	68.0m <sup>2</sup> (21)	더블 1	
디럭스 스위트(3)	91.0m <sup>2</sup> (27)	더블 2+싱글 1	165,000(현역) / 181,500(예비역)
로얄 스위트(1)	186.0m <sup>2</sup> (56)	더블 1+싱글 1	440,000(현역) / 484,000(예비역)

\* 예비역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임

\* 예약, 기타 문의사항은 밀리토피아호텔 홈페이지(www.militopiahotel.com) 또는  
프런트 데스크 전화(02-524-9300, 031-727-9300)로 확인/문의

<p>국방부 건립, 군 최초 4성급 관광호텔 밀리토피아 현대적 스타일의 객실, 뷔페 레스토랑, 다양한 대·중·소 연회장, 고품격 웨딩시설, 피트니스 센터를 포함한 수준 높은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밀리토피아호텔에서 예비역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할인율 (일반가격 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객실 : 73%~45% 할인</li> <li>• 식음 : 26%~5% 할인(팝카페, 뷔페, 스카이라운지)</li> <li>• 웨딩 : 25%~15% 할인(그랜드 볼룸/웨딩센터)</li> <li>• 피트니스 센터 : 45% 할인(연 회원권)</li> </ul>
---

## 다. 국군복지단 국방컨벤션

### 1) 이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역 군인·군무원</li> <li>• 국방부 청사 내 근무하는 전 직원 (군인, 공무원, 군무원)</li> <li>• 10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퇴직군무원</li> <li>• 국가유공자(본인 및 직계·사촌 이내 가족)</li> <li>• 국방부 산하기관 일반직 공무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부 청사 내 종사자 및 고정출입이 인가된 업무수행 상주자</li> <li>• 용산구 지역주민, 용산구 기관 및 직원과 그의 직계가족</li> <li>• 일반인</li> </ul>
---	--

### 2) 서비스 내용 : 연회 / 웨딩 / 대관(세미나)

\* 문의전화 : 02)748-0744(프런트)/0707·0709(예약실), 900-0744·0707·0709(군)

\* 매주 월요일 휴관

## 라. 육군 복지시설

### 1) 이용대상

가) 일반회원 : 현역군인,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 후보생, 군무원 및 국방부 공무원, 10년 이상 복무한 전역한 군인 및 군무원, 유공자(6.25 참전, 베트남전), 보훈보상 대상자(유족증 소지자) 및 재해부상 군인

### 2) 이용방법 : 전화 및 인터넷 예약

- ① 카카오톡 친구 찾기→육군복지포털 검색, 친구추가
- ② 육군 인터넷 홈페이지([www.army.mil.kr](http://www.army.mil.kr))→정보마당 →육군 휴드림
- ③ URL 주소 입력 직접 접속(<https://welfare.army.mil.kr>)

### 3) 중앙 복지시설

지역	시설명	전화번호		객실수	비고
		군	일반		
대전	계룡스파텔	975-5915	042)602-1111	143실	예식, 연회, 온천사우나
서울	육군회관	예식 900-7350 객실 900-0701	02)793-4191 02)748-0701	34실	예식, 연회
부산	해운대 그린나래호텔	933-3449	051)744-8160	21실	공군과 공동투자

### 4) 지역 복지시설

#### 가) 서울·경기지역

지역	시설명	위치	연락처	
			일반	군
서울	관악회관	서울시 관악구	02-524-6996	961-6996
	관악카페, 베이커리	서울시 관악구	02-524-6997	961-6997
	관악레스토랑	서울시 관악구	02-524-6931	961-6931
	제일회관	서울시 강서구	02-2620-6851	881-7951
	화랑회관	서울시 노원구	02-2197-6120 02-2197-5940	950-5952~1
인천	충의휴양소	인천시 중구	031-440-7900	980-7900
	번개회관	인천시 부평구	032-502-8470	817-6794
	소래산사랑채	인천시 남동구	032-620-6817	889-6817
	온누리회관	인천시 계양구	032-450-6117	885-6117
경기	선봉레스토랑	경기도 용인시	031-321-1797	973-7250
	봉화회관	경기도 용인시	031-339-2614	855-6698
	제일회관	경기도 고양시	031-964-5814	981-7976
	전진회관 본점	경기도 파주시	031-947-6686	801-6682
	전진회관 선유점	경기도 파주시	031-954-0859	801-6684
	전진회관 연풍점	경기도 파주시	031-953-3955	801-6683
	백마회관	경기도 고양시	031-976-3018	809-6683
	에버나인	경기도 고양시	031-976-3018	809-6173

지 역	시 설 명	위 치	연 락 처	
			일 반	군
경기	상승회관	경기도 파주시	031-942-1520	809-3573
	감악산회관	경기도 파주시	031-959-4239	825-6676
	비룡회관	경기도 파주시	031-863-4239	825-6677
	필승회관	경기도 고양시	02-3158-5646	830-6611
	충성회관	경기도 파주시	031-945-7966	981-7015
	승진회관	경기도 포천시	031-531-9359	985-7940
	승진팰리스	경기도 포천시	031-531-9994	985-7945
	산정오코하임	경기도 포천시	031-533-2672	985-7970
	일동회관	경기도 포천시	031-455-0949	985-1951
	승포회관	경기도 남양주시	033-452-4364	846-6941
	전격회관	경기도 포천시	031-531-0636	985-1591
	전국진군레스텔	경기도 연천군	031-832-6064	986-7815
	포천진군레스텔	경기도 포천시	031-536-3169	986-7816
	열쇠회관	경기도 연천군	031-834-8432	805-6393
	상승회관	경기도 포천시	031-832-4038	805-6791
	태풍인의 집(양주)	경기도 양주시	031-820-6794	828-6794
	태풍인의 집(전곡)	경기도 연천군	031-820-6796	828-6796
	철풍회관	경기도 양주시	031-859-9835	986-7509
	상승레스텔	경기도 이천시	031-641-7916	987-7900
	맹호회관	경기도 가평군	031-584-5453	840-6790
	오뚜기회관	경기도 양주시	031-879-3925	808-6795
	천보대쉼터	경기도 양주시	031-836-6925	808-4199
	충호회관	경기도 남양주시	031-577-5793	987-5091
	충의레스텔	경기도 안양시	031-386-6950	980-7910
	전승회관	경기도 화성시	031-351-1113	851-6991
	정보회관	경기도 이천시	031-641-7190	987-7191
	화살회관	경기도 광명시	02-899-4555	852-6694
	북한산회관	경기도 고양시	02-381-9939	856-6673
	충성회관	경기도 이천시	02-3403-7860	962-7860
	아름회관	경기도 이천시	031-637-7107	962-7860
	비호회관	경기도 이천시	없음	883-6911
	백마클럽	경기도 광주시	031-760-6283	884-6283
	비승회관	경기도 이천시	031-634-7869	967-6904
	권율회관	경기도 고양시	02-350-6690	860-6990
	햇불회관	경기도 고양시	031-580-6801	866-6801
	올림픽회관	경기도 양주시	031-872-6693	872-6693
충일회관	경기도 남양주시	031-595-6832	873-6790	
철마레스텔	경기도 남양주시	031-527-4824	875-6842	

나) 영남지역

지역	시설명	위치	연락처	
			일반	군
대구	무열회관	수성구 만촌동	053-750-7900	972-7900
	강철회관	북구 국우동	053-320-6847	850-6846
	오성회관	수성구 연호동	053-790-6030	845-6030
부산	장산회관	해운대구 좌3동	051-742-2990	853-6931
경남	총무회관	함안군 군북면	055-298-1846	839-6104
	창생레스텔	경남 창원시	055-252-4722	890-7306
경북	총효회관	안동시 송현동	054-854-6275	850-5020
	총성대/생도회관	영천 고경면 창하리	054-330-3640	952-3640

다) 호남지역

지역	시설명	위치	연락처	
			일반	군
전남	상무레스텔	전남 장성군	061-390-1627	976-4970
	상무회관	전남 장성군	061-390-1520	976-1523
	학성회관	전남 장성군	061-390-1520	976-1523
	매화레스텔	전남 담양군	061-891-6564	891-7913
전북	총경회관	전북 임실군	063-644-1617	835-6890
	총용회관	전북 익산시	063-836-9681	958-4100
	총성회관	전북 익산시	063-836-7263	887-6261

라) 충청지역

지역	시설명	위치	연락처	
			일반	군
대전	칠성대회관	대전시 서구 반석동	042-616-1123	974-0701
충남	백룡회관	세종시 금남면 국곡리	042-829-0180	832-0180
	세종레스텔	세종시 연서면 당산로	041-867-8881	895-6680
	연무레스텔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041-740-7650	956-7650
	황산회관	충남 논산시	041-740-7117	956-7674
	구룡콘도	계룡 신도안면 부남리	042-550-6813	960-6813
	무궁화회관	계룡 신도안면 부남리	042-550-2866	960-2866
충북	총용회관	증평군 증평읍 중천리	043-837-6690	837-6690
	무극회관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043-883-9715	968-6690
	월류회관	영동읍 학산영동로	043-745-2301	896-7600
	문무레스텔	괴산군 괴산읍	043-832-2929	954-6497

마) 강원지역

지 역	시 설 명	위 치	연 락 처	
			일 반	군
강원	치악레스텔	강원도 원주시	033-766-6519	971-7981
	치악회관	강원도 원주시	033-766-6519	971-7991
	백호회관	강원도 원주시	033-731-7367	836-6940
	통일회관	강원도 원주시	033-740-6690	841-6690
	두미르레스텔1관/2관	강원도 춘천시	033-252-8800	982-7843
	칠성회관	강원도 화천군	033-442-2748	807-6681
	백암회관	강원도 화천군	033-442-7235	807-6682
	상승회관	강원도 화천군	033-441-2677	807-6683
	솔바람 아너스홀	강원도 화천군	033-441-2621	807-6692
	대성산회관	강원도 화천군	033-441-7746	815-6105
	승리회관	강원도 화천군	033-441-4933	815-3692
	필승회관	강원도 화천군	033-458-4185	815-2692
	적근산회관	강원도 화천군	033-442-6438	815-1692
	명월회관	강원도 화천군	033-441-6692	815-2679
	이기자회관	강원도 화천군	033-442-1288	827-6681
	이기자레스텔	강원도 화천군	033-440-1288	827-6991
	번개회관	강원도 홍천군	033-432-7775	971-7279
	산악코스텔	강원도 인제군	033-463-2088	983-7900
	산악회관	강원도 인제군	033-461-1741	983-7911
	백두회관상리점	강원도 양구군	033-482-2742	802-6820
	을지회관	강원도 인제군	033-462-2222	812-6691
	천도회관	강원도 인제군	033-462-5391	812-6692
	용대회관	강원도 인제군	033-462-4105	812-6694
	대암회관	강원도 양구군	033-481-7595	821-3918
	백두회관	강원도 양구군	033-482-6696	821-7914
	방산회관	강원도 양구군	033-480-2918	821-2918
	신남회관	강원도 인제군	033-461-9137	없음
	독수리회관	강원도 홍천군	033-432-3270	811-6791
	삼성회관	강원도 철원군	033-458-5539	803-6121
	백골회관/별관	강원도 철원군	033-458-7540	803-6123
	청성회관/별관	강원도 철원군	033-455-0949	806-6770
	화랑회관	강원도 홍천군	033-434-0731	811-6775
	충용회관	강원도 양양군	070-8286-8675	988-7868
	울곡회관	강원도 고성군	033-681-4692	822-6463
용촌회관	강원도 고성군	033-631-1656	822-6454	
철벽회관	강원도 삼척시	033-571-6910	823-6910	
바다회관	강원도 삼척시	070-7758-6000	823-6990	
일출회관	강원도 양양군	033-671-3142	988-7950, 7951	
설악회관	강원도 고성군	033-631-8265	988-7955, 7956	
KCTC회관	강원도 인제군	033-461-7345	879-7905	
KCTC별관	강원도 인제군	033-461-7345	879-7905	

마. 해군 복지시설

1) 중앙 복지시설

가) 서울 해군호텔/진해 해군회관

(1) 이용대상

구 분	대 상
정회원	현역 장병, 군무원 및 그 직계 존·비속, 국방부 일반직 공무원, 10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
준회원	5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 국가유공자, 국방부 산하기관 / 연구소 직원

(2) 이용방법 및 절차

구 분	예 식 / 연 회	객 실
예약시기	12개월 전 예약 가능(선착순)	- 해군 : 30일 전~1일 전 - 타군 : 7일 전~1일 전
연 락 처	- 서울 해군호텔 W웨딩홀 (02)841/810-4114, (군)927-4114 - 진해 해군회관 JK 컨벤션 웨딩홀 (055)552-7223	- 서울 해군호텔 : 가마산로 02)810-4318, (군)927-4318 - 진해 해군회관 : 총장로 055)543-5012, (군)919-4390
계 약 금	- 예식 : 50만 원 - 연회 : 10만 원(서울 해군호텔) 20만 원(진해 해군회관)	예약금 : 1만 원(1박당)

나) 제주 해군호텔

(1) 이용대상

구 분	대 상
정회원	현역 장병, 군무원 및 그 직계 존·비속, 국방부 일반직 공무원, 10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
준회원	5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 국가유공자, 국방부 산하기관 / 연구소 직원

(2) 이용방법

구 분	내 용
예 약 시 기	인터넷 : 이용기준일 60일 전~2일 전 *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경우 전화 예약 가능
방 법	제주호텔 : 제주 제주시 해안마을서2길 19 (일반) 064)748-7483~5(200번) (군) 916-5253(프런트), 916-5254(예약 담당)

2) 지역 복지시설

☞ 예약 방법 : 인터넷/전화 예약

가) 서울·경기지역

지역	시설명	위치	연락처	
			일반	군
서울	서울 해군호텔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02)810-4318	927-4318
경기	평택 해군호텔	평택시 포승읍 2함대길	031)685-1513	912-1513
	평택 해상콘도	평택시 포승읍 2함대길	031)685-4911	912-4911

나) 영남지역

지역	시설명	위치	연락처	
			일반	군
부산	부산 해군회관	부산 남구 이기대공원로	051)679-1640	917-1640
경남	진해 해군회관	창원시 진해구 총장로	055)543-5012	919-4390
경북	포항 청룡회관	포항시 남구 호미로	054)290-9820	914-2096

사. 체력단련장 운영

3) 체력단련장 현황

관리부대	시설명	전화번호	주소	출수
해군	한산대	055)549-4371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희로 270	18
	총무대	054)290-2601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5931	9
	만포대	031)685-1521	경기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2함대길 20	18
	낙산대	033)539-6764	강원 동해시 대동로 430-2	9

4) 이용요금

(단위 : 원)

구분		비면세		
		그린피	카트료	
정회원	한산대	25,300	5,000	
	만포대	25,300	5,500	
	낙산대/총무대	22,000	5,000	
준회원	한산대	평일	39,000	5,000
		휴일	44,000	
	만포대	평일	39,000	5,500
		휴일	44,000	
	낙산대/총무대	평일	34,000	5,000
		휴일	40,000	

바. 공군 복지시설

1) 공군호텔

가) 이용대상

- (1) 현역 장병 및 군무원(배우자/직계가족 포함)
- (2)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군무원(배우자/직계가족 포함)
- (3) 국방부 일반직 공무원(직계가족 포함)

나) 이용방법

- (1) 전화예약 : 군) 923-6080, (02) 810-6080, 844-0336
- (2) 예약시기 : 공군 15일 전, 타군 2일 전
- (3) 이용 가능기간 : 1회 2박 3일(2회 연장 가능)

2) 그린나래호텔

이 용 대 상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역 장병 및 군무원(배우자/직계가족 포함)</li> </ul>	현역요금 적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공군 군인/군무원(배우자/직계가족 포함)</li> <li>• 2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타군 군인/군무원(배우자/직계가족 포함)</li> </ul>	예비역요금 적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병역이행자(10% 요금할인)</li> <li>• 일반인</li> </ul>	일 반 인 적 용

\* 육군 계룡스파텔을 통해 예약하는 경우 육군 이용기준 적용

나) 이용방법

(1) 인터넷 예약

- ① 공군 인터넷 홈페이지 → 우측 복지시설예약체계
- ② 스마트폰 → 포털사이트 → 웹(공군 복지시설예약체계)

(2) 예약시기 : 이용일 기준 15~30일 전/ 확정 : 15일 전 12:00

(3) 이용 가능기간 : 1회 2박 3일

사. 체력단련장 운영

1) 운영 원칙 : 평일은 예비역, 주말·공휴일은 현역 위주 운영

2) 체력단련장

관리부대	시설명	전화번호	주소	출수
육군	계룡대	042)550-6841	충남 계룡 신도안면 계룡대로 976길	18
	구룡대	042)550-6842	충남 계룡 신도안면 용동리 산16	18
	자운대	042)868-6514	대전 유성구 자운로 272-83	9
	남성대	043)745-1700	충북 영동군 양강면 양정죽촌로 69	9
	창공대	041)730-6801	충남 논산시 노성면 노성로 438	9
	함안대	055)585-0761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함마대로 1065	9
	무열대	053)750-7933	대구 수성구 만촌동 무열로 73	9
	선봉대	031)331-7234	경기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57	9
	비승대	031)634-5527	경기 이천시 진상미로 1700-29	9
	사자대	031)632-3700	경기 이천시 마장면 억만리로 51	9
해군	한산대	055)549-4371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희로 270	18
	총무대	054)290-2601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5931	9
	만포대	031)685-1521	경기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2함대길 20	18
	덕산대	031)8012-5510	경기 화성시 봉담읍 당골길 86	9
	낙산대	033)539-6764	강원 동해시 대동로 430-2	9
공군	광주	062)941-8877	광주 광산구 송도로 114번길 53	9
	사천	055)852-3301	경남 사천시 축동면 길평리 6-2	9
	김해	051)973-3085	부산 강서구 대저1동	9
	원주	033)747-4139	강원 원주시 소초면 둔둔로	9
	수원	031)232-1482	경기 수원 권선구 경수대로 168번길 79	9
	대구	053)985-2536	대구 동구 해동로 201	9
	성남	031)720-3590	경기 성남 수정구 대왕판교로 1210	9
	예천	054)653-5162	경북 예천군 유천면 버느내길 27	9
	청주	043)214-4016	충북 청원군 내수읍 원통숲안1길 39	9
	강릉	033)645-8252	강원 강릉시 공항길 180	9
	충주	043)847-1268	충북 충주시 금가면 문산신대 1길 21	9
	해미	041)688-9898	충남 서산시 장동 옥동미길 37	18
	공사	043)298-4825	충북 청원군 남일면 단재로 635	9
	오산	031)669-2922	경기 평택시 서탄면 용소금각로 360	9

### 3) 회원자격

구 분	대 상
정회원	• 현역 장교 및 부사관·군무원, 예비역 장교 및 부사관, 군무원으로서 퇴직한 연금수급권자
준회원	10년 이상 근속한 예비역 장교 및 부사관

### 4) 이용요금

#### 가) 국군복지단

(단위 : 원)

구 분	입장료		카트료
	태릉/남수원/처인	동여주	
정회원 (대우회원)	36,300	29,700	태릉 / 동여주 / 처인 / 남수원 : 6,000
준회원 (대우회원)	66,000	55,000	태릉 / 동여주 / 처인 / 남수원 : 17,000

#### 나) 3군 공동운영위원회 및 육군

(단위 : 원)

구 분		비면세		
		그린피	카트료	
정회원	계룡·구룡대 (18홀)	29,000	6,000	
	자운대 등 8개소 (9홀)	22,000	4,000	
준회원	계룡·구룡대 (18홀)	55,000	6,000	
	자운대 등 7개소 (9홀)	평일	38,500	6,600
		휴일	44,000	
	창공대 (9홀)	평일	36,200	6,000
휴일		46,200		

다) 해 군

(단위 : 원)

구 분		비 면 세		
		그린피	카트료	
정회원	한산/낙산/덕산/총무대	19,800	5,000	
	한산대	23,100	5,000	
	만포대	23,100	5,500	
준회원	한산대	평일	30,000	5,000
		휴일	39,000	
	만포대	평일	30,000	5,500
		휴일	39,000	
	덕산대	평일	30,000	5,000
		휴일	39,000	
	낙산대 총무대	평일	25,000	5,000
		휴일	30,000	

\* 한산대 증설 (9홀 → 18홀 / '16. 9. 3.)

라) 공군

(단위 : 원)

구 분		비 면 세	
		그린피	카트료
정회원	현역	22,000 / 18홀 25,300	4,000~6,600 * 노캐디 시 코스관리비 6,000
	기타		
준회원	평일	39,000	
	휴일	44,000	

5) 예약신청, 시설안내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참조

가) 국군복지포털(www.welfare.mil.kr)

나) 육군 체력단련장(www.armywelfaregolf.mil.kr)

다) 해군 체력단련장 : 해군복지포털(www.welfare.navy.mil.kr)

라) 공군 체력단련장 : 공군복지시설예약체계(www.welfare.airforce.mil.kr)

# 제4장 기타 참고사항

## 1. 군인연금 급여제도

### 가. 군인연금 급여(총괄)

#### 1) 전역사유별 급여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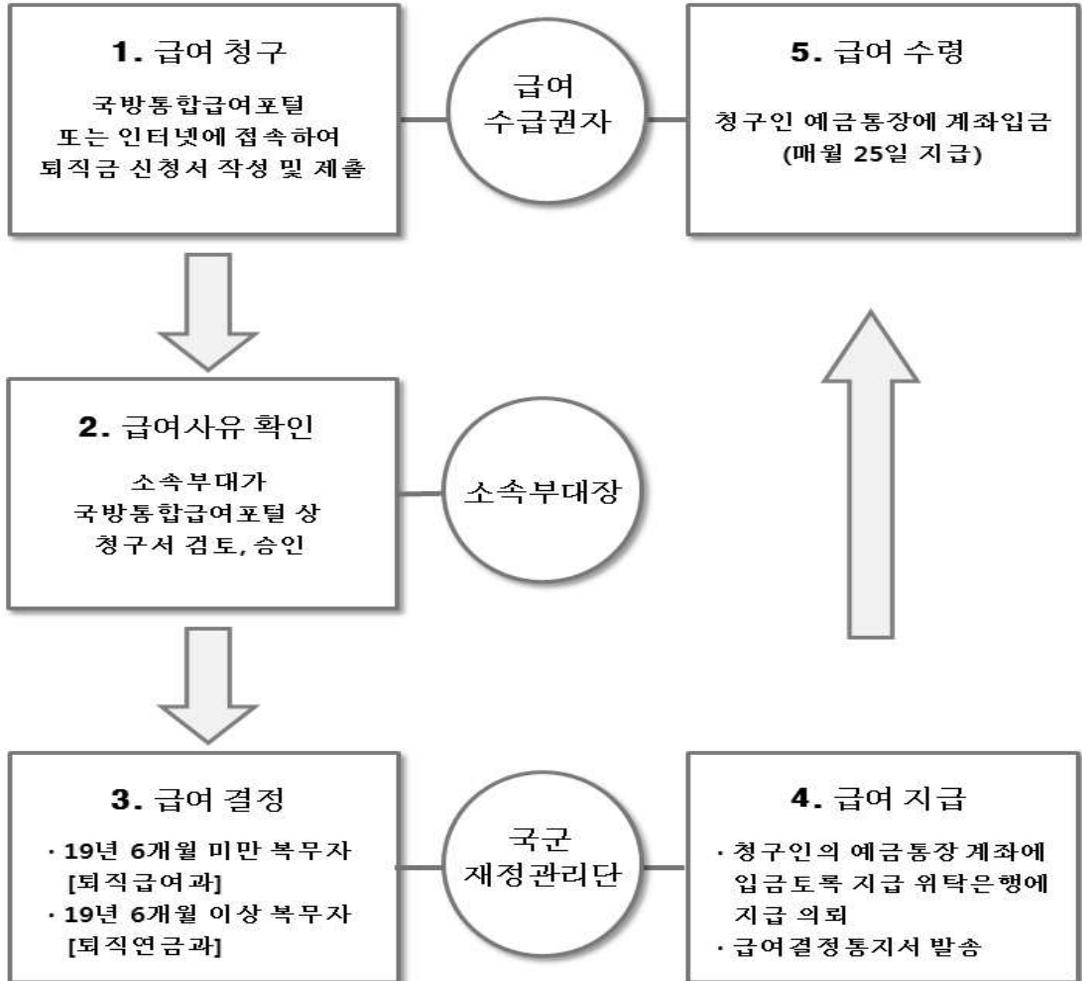
구분		지급요건		급여종류	지급처
정상전역		19년 6개월 이상		퇴역연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연금일시금	
		19년 6개월 미만		퇴직일시금	
상이전역		상이등급(1~7급)		상이연금(기준소득월액의 32.5~52%) * 정상 전역시의 퇴직연금과 비교, 유리한 급여 선택	
		장애보상금등급(1~4급)		- 일반장애보상금(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 * 간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특수직무공상(일반장애보상금의 1.88배) - 전상(일반장애보상금의 2.5배)	
사 망	일반 사망	19년 6개월 이상	연 금 선택 시	퇴역유족연금(퇴역연금의 60%), * 13. 7. 1. 이전 임관자 70% 퇴역연금부가금, 사망조위금	
			일시금 선택 시	퇴역연금일시금, 사망조위금	
		19년 6개월 미만		퇴직유족일시금, 사망조위금	
	순직 · 전투 사망	19년 6개월 이상	연 금 선택 시	순직연금(기준소득월액의 43%), * 유족가산액: 유족 1명당 5%씩, 최대 4명까지 20% 가산 퇴역연금부가금, 사망조위금	
			일시금 선택 시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사망조위금	
		19년 6개월 미만	연 금 선택 시	순직연금(기준소득월액의 43%), * 유족가산액: 유족 1명당 5%씩, 최대 4명까지 20% 가산 사망조위금	
일시금 선택 시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사망조위금		

※ 퇴직수당은 모든 지급요건에 해당(1년 이상 복무 시)

\* 군 재직 중 사망자에 대한 보훈연금 : 국가보훈처에서 지급

## 2) 급여의 청구 및 지급

\* 「군인연금법」 제8조, 제56조, 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58조



※ 군인연금 압류방지를 위한 「군인연금평생안심통장」 도입('19.7.1.부)

↳ 민사집행법 제195조에 따른 최저생계비 보장('21년 기준 185만 원)

## 3) 군인재해보상심의회 심의(「군인 재해보상법」 제5조, 제8조) : 공무상 재해에 대한 급여 결정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 가) 공무상 질병·부상 해당 여부
- 나) 상이등급의 결정·개정 및 소멸
- 다)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사망 해당 여부
- 라)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급여제한 해당 여부
- 마) 구상권 행사 여부 및 급여조정에 관한 사항

4) 급여지급 위탁은행(「군인연금법」 제56조)

지급처	지 급 금 용 기 관
국방부	국민, 농협, 하나, 신한, 우체국, 외환, SC제일, 우리, 기업
육 군	국민, 외환, 우리, 기업, 하나, 농협, 신한, 우체국, 동양증권
해 군	우체국 및 전 금융기관(한국은행, 특수은행, 외국계 은행, 새마을금고 제외)
공 군	전 금융기관(한국은행, 외국계 은행, 축협 제외)
군인연금 평생안심통장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지역농협, 수협, 신한, 미래에셋대우, 새마을금고

나. 퇴직급여

1) 퇴직급여의 종류, 지급요건 및 지급액(「군인연금법」 제21조, 제28조)

종 류	지 급 요 건	지 급 액
퇴역연금	군인이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때 (사망할 때까지 지급)	전기간평균기준소득월액×(복무연수×1.9%)
퇴역연금 일시금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군인이 퇴역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기준소득월액×복무연수× [0.975+{(복무연수-5)×0.0065}]
퇴역연금 공제일시금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군인이 20년을 초과하는 복무 기간 중 일부 기간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기준소득월액×공제복무연수× {0.975+(공제복무연수×0.0065)}
퇴직일시금	군인이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 미만 복무자 : 기준소득월액× 복무연수×0.78</li> <li>• 5년 이상 20년 미만 복무자 : 기준소득월액× 복무연수×[0.975+{(복무연수-5)×0.0065}]</li> </ul>

\* 기준소득월액 : 전년도(1.1.~12.31.) 소득 중 과세소득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에 당해 연도 군인보수 인상률을 곱하여 산출

2) 퇴직수당(「군인연금법」 제37조, 시행령 제39조)

가) 대상 : 1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 또는 복무 중 사망한 자에게 지급

나) 지급액 = 기준소득월액×복무연수×지급비율

(1) 복무연수별 지급률

기간	1~5년	5~10년	10~15년	15~20년	20년 이상
지급률	6.5/100	22.75/100	29.25/100	32.5/100	39/100

\* 복무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함

3) 연금지급

가) 지급기간 : 퇴역연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 달로부터 사망한 달까지 지급되며,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있을 때는 그 유족에게 퇴역연금액의 60%를 유족연금으로 지급함(13. 6. 30. 이전 임관자는 70% 적용)

\* 단, 19세 미만 및 장애 자녀 부양 시 지급률 70% 적용

나) 해외 이주 또는 국적상실의 경우(연금지급 특례) : 외국으로 해외 이주하게 된 때 또는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택일

(1) 국내에 대리인을 선임하고 연금을 계속 수령하거나

(2) 연금을 일시에 청산하여 지급받고 연금관계를 종료할 수 있음

(이 경우 출국한 다음 달 또는 국적상실 다음 달을 기준으로 1년 연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

4) 연금의 지급정지

지 급 정 지 사 유	정지금액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국가 및 지자체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채용된 임직원 중 근로소득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 이상일 때	전 액
상시 5인이상 근로사업장 기준 근로자 1인의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퇴역연금 및 상이연금 수급권자	일부정지 (연금의 50% 범위 내)

\* 전액 지급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연금법 제55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로 인한 과분 발생 시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함.

5)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 한 사 유	제한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 제외), 군사기밀보호법(제13조의 2와 제15조에 한정)에 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li> <li>* 급여는 전액 제한되나 이미 납부한 기여금 총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li> </ul>	전 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li> <li>•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li> <li>•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때(퇴역연금 수급권자가 지명수배·통보된 경우 포함)</li> <li>* 불기소처분을 받은 때,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지 않은 때, 지명수배·통보가 해제된 때는 잔여금 및 이자 가산 지급</li> </ul>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에 의한 징계로 해임된 경우</li> </ul>	25%

\*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친족은 그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국군재정관리단에 신고

6) 연금수급권자의 신상변동 신고

가) 신고사항 : 신분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지연 또는 미신고로 과오지급 된 급여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

구 분	구 비 서 류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에 임용·퇴직하였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취업·재퇴직신고서</li> <li>• 인사명령 사본</li> </ul>
수급권 상실 (사망, 재혼, 미성년자 19세 도래, 장애상태 해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수급권상실신고서</li> <li>• 사망진단서</li> <li>• 장애상태 해소 진단서</li> </ul>
수급권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족연금수급권이전청구서</li> <li>•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청구인통장사본</li> </ul>
외국 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국 시 : 대리인 선임장</li> <li>•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 (영주권자/시민권자/1년 이 외국 거주 대상, 매년 10월 31일 기준, 연 1회, 12월 31일까지 제출)</li> <li>• 국내 일시체류자(시민권자) : 주민센터에서 국내거소 사실 증명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제출</li> <li>• 영주귀국 : 주민등록초본에 '이민출국/국적상실말소' 후 주민등록 재등록 내역을 포함하여 제출</li> </ul>

나) 신고기간 :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7) 연금수급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 우편, FAX, 민원실 방문

가) 주소 : (우 04345)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 4 국군재정관리단 감사실

나) 전화 : (02)3146-6015~6

팩스 : (02)748-7693      태블릿(문자 수신 전용) : 010-5033-6015~6

8) 연금소득 과세

가) 과세대상 : 퇴역연금(유족, 상이연금은 비과세대상)

나) 과세금액 = 연금월액 × '02년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총 기여금 불입월수

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 : 연금소득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로 소득공제신고서 제출

\* 과세대상자에 한함, 변동사항 없을 시 제출 불요

라) 종합소득신고 : 연금소득 외 타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 타 소득이 없고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9) 연금일부지급정지 제도

가) 근거 : 「군인연금법」 제27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군인 재해보상법」 제30조(상이연금의 지급정지)

나) 대상 : 퇴역연금 및 상이연금수급자 중 연금 외 소득(사업 또는 근로 소득)이 있는 자

다) 정지금액 : 연금 외 소득이 고용노동부 고시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크기에 따라 연금액의 1/2까지

라) 소득확인 및 신고

(1) 근로소득자 : 소속 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취업사실 및 보수를 신고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소득사실을 확인

\* 단, 소속 회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군재정관리단 간 통보일자 차이로 인하여 적시에 소득 자료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제공 못할 수 있으므로 재취업자는 국군재정관리단(퇴직연금과)에 확인 후 연금 외 소득 신고서(붙임 #20)를 제출

(2) 사업소득자 : 창업 또는 소득변동 등 당해 연도 사업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예상 소득을 국군재정관리단(퇴직연금과)에 연금 외 소득신고서 제출

\* 미신고 시 국세청 확정소득에 따라 연금정지액이 과대(1~2년 상당 누적금액) 발생

마) 정산 : 국세청 최종 소득이 확정되면 지급정지액을 재계산하여 기존에 지급 정지했던 금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환수 또는 환급

바) 조정 : 소득변동(급여인상 · 감액, 이직, 퇴직, 개 · 폐업 등)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금 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붙임 #21 참조) 제출 (FAX : 02-797-0350)

\* 증빙서류

· 사업소득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폐업증명원

· 근로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증명서

#### 10) 퇴역연금 등 종류 변경 신청

가) 근거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7조(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의 신청),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0조(상이연금 등의 종류 변경의 신청)

나) 대상 :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을 신청한 사람 중 급여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 최초 지급일)부터 30일 이내

다) 신청방법 : 급여지급 시작 전 또는 지급일부터 30일 이내 변경신청서를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제출

\* 기수령한 급여는 수령한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해야 변경 신청 가능

\* 연금종류 변경신청서 서식은 군인연금홈페이지([www.mps.mil.kr](http://www.mps.mil.kr)) 서식방에서 출력

전화 : (02)3146-6498

#### 11) 해외송금 신청 서비스

가) 제도 : 해외 거주 중인 연금수급자 대상 해외은행으로 직접 송금하여 본인 계좌로 직접 수령 및 수수료 감면

나) 신청방법 : 해외송금 신청서, 신분증 및 통장(계좌) 사본을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제출

\* 전화 : (02)3146-6483, 6481(국제전화 82-2-3146-6483)

## 라. 재해보상급여

### 1) 정의

가) 군인이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복무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되어 퇴직 또는 요양 시 군인 및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종 류	지 급 요 건	지 급 액
상 이 연 금 (공무상 상이)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 또는 퇴직 후 퇴직 전의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된 경우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지급 1급 : 기준소득월액의 52% 2급 : 기준소득월액의 48.75% 3급 : 기준소득월액의 45.5% 4급 : 기준소득월액의 42.25% 5급 : 기준소득월액의 39% 6급 : 기준소득월액의 35.75% 7급 : 기준소득월액의 32.5%
순직유족연금 (공무상 사망)	19년 6개월 이상 복무 중 공무상 사망자 19년 6개월 미만 복무 중 공무상 사망자	기준소득월액의 43% * 유족가산액: 유족 1명당 5%씩, 최대 4명까지 20% 가산
사 망 보 상 금	전 사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
	특수직무 순직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일반 순직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
장 애 보 상 금	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는 경우 포함)	- 일반장애보상금 1급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9배 2급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배 3급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4급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배 * 간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특수직무공상 : 일반장애보상금의 1.88배 - 전상 : 일반장애보상금의 2.5배

\* 「군인 재해보상법」 제27조, 제33조, 제35조, 제39조

나) 재해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자의 가해사실 및 민사상 손해배상 사항을 반드시 소속부대의 장에게 신고하고 국방부장관(군인재해보상과장)과 협의(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

### 2) 상이등급 개정 및 소멸

가) 시기 : 상이연금 수급권자의 장애 정도가 악화 또는 호전된 경우에는 군인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상이등급을 개정하며, 장애의 정도가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권리가 소멸

## 나) 상이등급의 개정

상 이 연 금 수 급 권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이등급 개정신청서를 국방부에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이등급 개정신청서</li> <li>- 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li> </ul> </li> <li>• 군병원에서 신체검사 실시(장해상태 확인)</li> </ul>
국 방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이등급 개정신청서를 접수하여 군인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개정</li> <li>* 상이연금 수급권 소멸 시 19년 6개월 이상자는 퇴역연금 지급</li> </ul>

## 3) 재해보상 급여의 제한

### 가) 상이연금 지급제한(「군인 재해보상법」 제30조, 제42조~제44조)

제 한 액	제 한 사 유
전액 지급 제한	고의로 질병·부상 또는 장애 발생 시
반액 지급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과실로 또는 요양지시 불응으로 질병·부상·장애를 발생시키거나, 그 정도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 시</li> <li>• 고의로 질병·부상·장애의 정도를 악화, 회복을 방해 시</li> <li>• 신체의 진단 3회 이상 불응 시</li> </ul>
지 급 정 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 전액 지급정지
연금의 50% 범위 내 지급정지	취업 또는 사업개시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소득 발생 시

### 나) 장애보상금·사망보상금의 지급제한(「군인 재해보상법」 제45조)

- (1)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 징계에 의하여 파면 시, 금품·향응 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 시
- (2) 고의 또는 종과실로 지급 사유 발생 시
- (3) 군무이탈, 무단이탈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사망 시
- (4) 복무기간 1년 미만으로 공무 외 원인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시
- (5) 외국 근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사망 시 정부로부터 이 법령에 의한 재해보상금 이외의 보상금을 받게 된 때

## 마. 유족급여

### 1) 유족급여의 종류 및 신청

종 류	지 급 요 건	지 급 액
퇴역·상이 유족연금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자가 사망한 때	퇴역, 상이연금의 60% (*13.6.30. 이전 임관자 : 70%)
퇴역유족연금 특별부가금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자에 한함) 수급권자가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한 때	퇴역연금일시금×1/4× (36-연금수령 월수) 36
퇴역유족연금 부가금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한 때(유족연금을 청구할 때)	유족연금일시금의 1/4
퇴역유족연금 일시금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원할 때	퇴역연금일시금과 동일
퇴직유족일시금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군인이 공무 외 사망한 때	퇴직일시금과 동일

### 2) 신청 구비서류

- 가) 유족연금 청구서 1부
- 나)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 다)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 라)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마) 사망자 기준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바) 전역(제적) 인사명령 사본 1부(소속부대에서 제출)
  - \* 유족대표자를 선정,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 유족대표자 선정서 1부,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1부

### 3) 신청 시기 및 유의사항

- 가) 신청 시기 : 군 복무 중 또는 연금수급 중 사망 시
  - \*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02-3146-6483)과 신청, 유족연금청구서 서식은 군인연금홈페이지(www.mps.mil.kr) 「연금서식」 참조
- 나) 유의사항
  - (1) 유족급여의 청구시효는 5년이며, 기간 내에 미청구 시 청구권 소멸
  - (2) 군인이었던 자가 사망한 다음 달부터 유족연금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서류 제출 지연에 따른 반환(이자 가산)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

#### 4) 유족연금의 지급

##### 가) 유족의 범위

-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인 자 포함,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  
\* 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과 재결합 시 유족으로 인정('14.10.15. 이후)
- (2) 자녀 : 19세 미만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상태에 있는 19세 이상인 자녀(퇴직 후 61세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한 경우 제외)
- (3) 손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경우는 제외) :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19세 이상인 손자녀
- (4) 부모,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는 제외)

##### 나) 유족의 우선순위 및 동순위자의 경합

- (1)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의 재산상속 순위 적용
- (2) 동순위자의 유족이 2인 이상 있을 때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 (3) 대표자 선정 시는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

##### 다) 재산상속의 순위(「민법」 제1000조~제1003조)

- (1)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보다 선순위
- (2) 동순위자의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최근친을 선순위, 즉 자녀가 손자녀보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순위
- (3)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과 동순위이며, 다른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만 단독 상속인이 됨. 즉, 유족 중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녀와 배우자는 동순위임

##### 라)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사유

- (1) 사망한 때
- (2)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 (3) 사망한 군인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 (4)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에 달한 때
- (5) 19세 이상 자녀의 장애상태가 해소된 때

5) 유족이 없는 경우의 특례 급여 지급범위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액을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게 지급하고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도 없을 때는 소속기관의 참모총장에게 그 급여를 지급하여 군 사망자의 분묘, 제기, 기념비 마련에 사용

6) 유족연금의 지급제한

가) 전액 지급정지

- (1)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 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 (2)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 전에 그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동순위자/선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자

나) 1/2 정지

- (1)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수급권자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의한 상이연금수급권자가 퇴역유족연금 또는 상이유족연금을 받게 된 경우에는 각각의 유족연금액의 1/2을 감액
- (2)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군인연금법 및 군인재해보상법에 의한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당해 유족연금의 1/2을 감액 지급(순직유족연금 제외)
- (3)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불응함으로써 사망한 때

바. 심사청구

1) 군인연금법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국방부에 설치된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다음 기간 내에 그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되면 청구할 수 없음

2) 이의신청 기간

가) 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나) 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문의처

• 국방부 군인연금과

☎ 02)748-6672 군)900-6672

사. 인터넷 군인연금 홈페이지 이용 안내

1) 인터넷 주소 : www.mps.mil.kr

2) 이용대상 및 내용

대 상	내 용	비 고
연금수급자	• 증명서 발행(6종)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이용 가능
	• 각종 연금정보 조회 및 개인정보 변경, 민원신청(4종)	회원가입 시 이용 가능
연금수급자 현역, 국민	• 군인연금 제도 및 연금제도 연구자료 • 급여청구 및 절차 등 연금업무안내 • 민원신청안내, 연금통계, 유권해석 및 법원판례, FAQ 등 연금관련 정보조회	비회원도 이용 가능
현역	• 퇴역연금/일시금 신청	

3) 회원가입 및 증명서 발급 절차

가) 회원가입은 군인연금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가입 메뉴에서 ID, 비밀번호, 연금번호, 회원 기본정보 등을 입력하여 등록

나) 회원으로 등록한 ID로 로그인 후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등록

\* 공인인증서는 일반금융기관 또는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에 신청 및 발급

다) 증명서 발급 절차

(1) 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한 다음 인증서 암호 입력 후 확인

(2) 민원서비스 메뉴 → 증명서 발행 → 원하는 증명서 발급 매수 및 용도 지정 → 출력버튼 → 인증서 암호확인 → 증명서 발급

## 2. 공적연금 연계제도

가.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던 것을 연금 간 가입기간을 합한 기간이 20년 이상일 때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

\* 직역연금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나. 연계 대상자 : 법 공포일('09.2.6.) 이후 전역자 중 연계희망자

다. 신청절차·방법 : 전역 → 국민연금가입 → 연계신청(붙임 #22 참조)

- 1) 인터넷 신청 :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www.ppsl.or.kr)
- 2) 방문 신청 : 국민연금공단(지역 지사 및 지역본부)
- 3) 우편신청
- 4) 대리인 신청 : 해외 체류, 수감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라. 신청기한

- 1)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급여청구 시효인 5년 이내
- 2) 퇴직급여를 수령한 경우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음

\* 퇴직일시금 수령 시 「퇴직일시금 + 이자」 반납(일시납/분납 선택 가능)

재 직 기 간	5년 미만	5 ~ 10년 미만	10년 이상
분할납부 횟수	24회 이내	48회 이내	60회 이내

\* 분할납부 신청 시 이자 외 분납이자 추가 가산

마. 연금수급연령

출생연도	~52년	53~56년	57~60년	61~64년	65~68년	69년 ~
수급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바. 급여청구

- 1) 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기관에 청구(붙임 #23 참조)

\*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 2)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

사. 지급기관

- 1) 연계급여의 지급결정 권한이 있는 기관을 말하며, 연계퇴직연금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지급하고, 연계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
- 2) 각 연금기관에서 지급 결정된 금액은 청구인 통장 계좌로 직접 입금

아. 지급 사유 발생

1) 연계노령(퇴직) 연금

가) 연계기간 20년 이상인 자가 수급연령에 도달된 날

나) 수급연령에 도달한 자가 연계기간이 20년이 된 날

2) 연계노령(퇴직) 유족연금 :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

자. 급여의 종류 및 지급요건

구 분		지 급 요 건	지 급 액
연계노령 연 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계기간 20년 이상이고 수급연령에 도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연금액 50%+ 부양가족연금액</li> </ul>
	가입기간 10년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연금액 × 가입기간/20</li> </ul>
연계퇴직 연 금	재직기간 20년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급연령에 도달하고 연계기간이 20년이 될 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3. 6월 이전 기간 : 평균보수월액 × 종전 복무기간 × 2%</li> <li>'13. 7월 이후 기간 : 평균기준소득 월액 × 1.9% × 재직기간</li> </ul>
연계노령 유족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입기간 10년 이상 연계 노령연금수급권자 사망 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 연금액의 50%+ 부양가족연금액</li> <li>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부양 가족연금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입기간 10년 미만 연계 노령연금수급권자 사망 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연금액 40% × 가입기간/10</li> </ul>
연계퇴직 유족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사망 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계퇴직연금의 70/100</li> <li>* '13.7.1.이후 임관자부터 60/100</li> </ul>

차. 중복급여 조정

1) 정의 : 동일인에게 둘 이상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하나의 급여만 지급하고 나머지 급여는 지급을 제한 또는 정지

2) 조정 원칙

가) 직역연금에서 유족연금을 받다가 본인의 퇴직연금을 받으면 유족연금 1/2 감액 \* 직역연금 : 군인·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나) 국민연금에서는 중복급여 발생 시 수급자가 선택한 급여를 지급하고 선택하지 않은 급여는 정지되거나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이면 30%를 추가 지급하되 반환일시금이면 사망일시금 상당액만 지급

### 3) 연계법상의 중복급여 조정 유형 및 지급액

본인 급여	발생된 중복급여			선택한 급여	지 급 액
	연계법	국민 연금법	군인 연금법		
연계 노령 연금	연계노령 유족연금			연계노령연금	연계노령연금 전액 연계노령유족연금 30%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전액
		유 족 연 금		연계노령연금	연계노령연금 전액 유족연금 30%
				유족연금	유족연금 전액
	장 애 연 금		선택에 따라 결정	연계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연계 퇴직 연금	연계퇴직 유족연금			선택 없음	연계퇴직연금 전액 연계퇴직유족연금 50%
			유 족 연 금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전액 유족연금 50%
				유족연금	유족연금 전액
연계 노령 유족 연금	연계노령 유족연금			선택한 급여	연계노령유족연금 전액
				선택하지 않은 급여	연계노령유족연금 30%
		유 족 연 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전액 유족연금 30%
				유족연금	
		노 령 연 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전액
				노령연금	노령연금 전액 연계노령유족연금 30%
		장 애 연 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전액
				장애연금	장애연금 전액 연계노령유족연금 30%
	반 환 일 시 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전액 사망일시금 상당액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 전액	
연계 퇴직 유족 연금			퇴직 (퇴역) 연금	선택 없음	퇴직(퇴역)연금 전액 연계퇴직유족연금 50%

문 의 처

• 국군재정관리단 퇴직급여과

☎ 02)3146-6471

### 3. 군인분할연금(일시금)제도

#### 가. 군인분할연금(일시금)제도란?

군인연금법 제22조, 제26조 및 군인재해보상법 제32조에 따라 군인이었던 사람이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신적, 물질적으로 뒷받침한 배우자에게 재산 형성에 공동으로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이혼 배우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일부를 분할 해주는 제도로 2020년 6월 11일부로 시행됨

#### 나. 선 청구 요건

-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이혼 후 5년 이내 청구)
  - 2) 배우자였던 사람이 연금수급권자일 것(수급권 발생 후 5년 이내 청구)
  - 3) '20. 6. 11. 이후 이혼한 자로 전 배우자의 복무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별거, 가출 등 제외)이 5년 이상인 자
- ☞ 선청구 :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하는 제도  
(선 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1회로 제한)

#### 다. 분할방법

##### 1) 연금·일시금 분할금액 산정

\* 분할급여 산정식 = (퇴역연금·일시금액 × 혼인 기간 / 총 재직기간) ÷ 2

##### 분할연금 산정 예시

###### <가정 조건>

- 재직기간 30년, 퇴역연금액 300만 원
- 혼인기간 20년(재직기간 중 혼인기간 10년)

###### <분할연금액>

$$300 \times 10\text{년} / 30\text{년} \times 1/2 = 50\text{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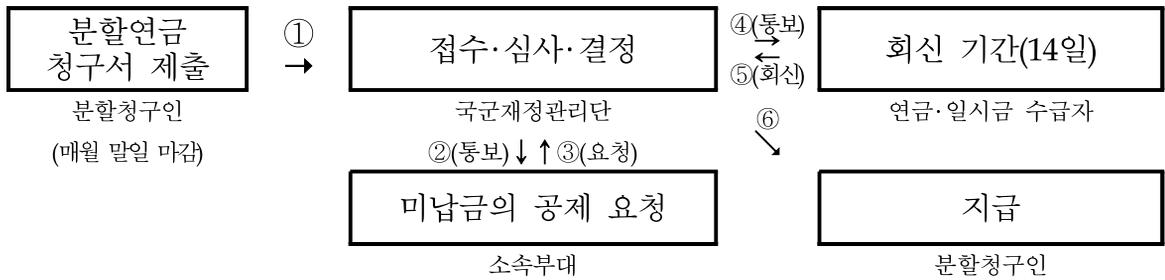
☞ 분할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변경 또는 취소 불가(당사자 합의로도 변경 불가)

##### 2) 총 재직기간과 혼인 인정 기간 산정

가) 총 재직기간 :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은 전체 기간

나) 혼인 인정 기간 : 군인 복무기간 중 혼인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혼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 라. 분할연금 및 미납금 처리절차



- ☞ 미납금(학자금, 전세자금 등)의 공제는 분할비율과 혼인 기간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균분하여 공제
- ☞ 혼인기간 중에 발생한 연금 지급정지액의 정산차액은 분할비율에 따라 분할연금에서도 공제(이혼 이후 발생한 정산차액은 공제하지 않음)

## 4. 전역 후 복장 착용 시기

가. 관련 법령 : 「군인복제령」 제18조

나. 복장 착용 가능 시기

- 1) 군사의식에 초청된 때
- 2) 본인의 결혼식 또는 약혼식 때(예복 또는 정복)
- 3) 친족의 결혼식 또는 약혼식에 참석하는 때
- 4) 주례로서 결혼식 또는 약혼식에 참석하는 때(예복 또는 정복)
- 5) 학생 군사교육 담당 교원이 예비역 장병 군사교육을 위해 필요한 때

문의처

• 국방부 병영정책과

☎ 02)748-5167 군)900-5167

## 5. 국방일보 구독방법

가. 국방홍보원(kookbang.dema.mil.kr) 및 국방일보 인터넷 홈페이지(www.dema.mil.kr) 접속

나. 홈페이지 좌측 상단 로그인 오른쪽 「구독 신청하기」 버튼 클릭!

다. 간단한 안내와 가격 확인 후 우측 하단 「구독 신청하기」 버튼 클릭!

## 6. 절세 관련 유용한 정보

### 가. 자동차세

- 1) 자동차세 연납 신고 : 정해진 납부기간 선납 시 세액 경감

납부 기간	1.16~1.31	3.16~3.31	6.16~6.30	9.16~9.30
경감되는 납부 세액	연 세액의 10% 경감	연 세액의 7.5% 경감	연 세액의 5% 경감	연 세액의 2.5% 경감

\* 납부 방법 : 전국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및 위택스(www.wetax.go.kr)

- 2) 승용차 요일제 신청 (서울시만 해당) : 자동차세 5% 경감

\* 대상차량 : 서울시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신청방법 : 동사무소, 구청 교통행정과 접수

### 나. 증여세

- 1) 부동산 경우 (아파트, 토지 등) : 저평가된 자산이 오르기 전에 증여

\* 증여받는 날로 3개월 이내 신고 시 10% 세액 공제

- 2)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할 경우 대출을 받아 증여하면 세율이 낮아져 세금을 경감할 수 있음

- 3) 모든 자산을 사전 증여하는 것보다는 ① 일부 재산을 사전 증여, ② 배우자에게 10년에 한 번씩 증여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

### 다. 상속세 : 종신보험 활용

- 1) 상속자산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종신보험에 가입한다면 사망보험금을 상속세 재원으로 확보 가능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2) 실제, 선진국의 자산가들은 종신보험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덜고 있으며, 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 가이드에서도 상속세 재원 마련에 종신보험 활용 권장

### 라. 창업 시 종합소득세

- 1) 부가세 신고 : 가장 큰 비중 차지 (매출과 매입이 확정)

\* 소득세 신고 때 별도로 인정되는 것은 인건비나 임대료, 기타 비용 등

- 2) 인건비 신고 : 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경우 신고 시 소득세 절세

- 3) 조정자산 감가상각비(소득세 절세) : 업체에서 인테리어, 기계장치나 또는 차량을 구입 (고정 자산) 한 경우

\* 고정 자산을 설치하거나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꼭 챙겨야 하며, 부가세 매입 세액공제도 받고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도 가능.

마. 임차료 처리

- 1) 임대인이 일반 과세자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 2) 간이 과세자면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하고 송금 명세서를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하면 경비로 인정

바. 노란우산공제(www.8899.or.kr)와 개인 연금저축 (은행/보험사) 가입

- 1)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 연간 300만 원 소득공제
- 2) 개인 연금저축의 경우 : 연간 400만 원 소득공제
  - \* 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경영주일 경우 상기 금융상품 이용 시 절세 가능

사. 기타 재산세

- 1) 과세표준에 의한 절세 : 매년 기준시가 또는 시가 표준액에 따라 변경
- 2) 사치성 재산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선박) 구매 금지 : 중과세 대상

-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
- 고급주택은 주택시가표준액 6억 원을 초과하는 건축물로서 연 면적이 331㎡를 초과하거나 대지 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물 내에 수영장이나 에스컬레이터 등이 설치된 건축물
- 고급선박은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초과하는 자가용 선박

3) 재산의 취득과 처분 시기 이용

- 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5월 31일까지 처분하면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절세 가능
- 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등기 접수 시점을 6월 1일 이후에 하면 재산세 절세 가능

재산세 과세 표준일	재산세 납부기한
매년 6월 1일	• 토지는 매년 9월 30일까지
	• 주택은 전반기 7월 31일, 후반기 9월 30일까지
	•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 31일까지

## 7. 군인공제회 이용 안내

### 가. 회원 퇴직급여저축

#### 1) 회원자격

가) 하사 이상 군인, 군무원

나) 국방부 본부 및 산하기관 임직원      다) 군인공제회 임·직원

2) 가입금액 : 1구좌 ~ 최고 400구좌까지 가능(1구좌당 5,000원)/'22. 1. 1.

\* 10구좌 이상 가입 시 재해위로금, 출산축하금 등 복지수혜자격 부여

3) 지급절차 : 전역·퇴직 시 국군재정단에서 회원부담금을 공제회에 일괄 청구하며, 공제회에서는 회원부담금을 전역월 말일 또는 익월 5일(휴일일 경우 휴일종료 후 첫 근무일)까지 회원 급여계좌로 자동지급

4) 회원자격 승계 안내(신분전환 시의 자격) : 회원이 전역(퇴직) 후 6개월 이내에 회원자격 기준에 해당되는 신분으로 전환 시 이미 수령한 회원 퇴직급여금에 군인공제회에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고 회원부담금을 계속 납부하는 경우 회원자격 유지

5) 전역(퇴직) 시 퇴직급여대여 및 보증대여 상황

가) 퇴직급여대여 : 회원퇴직급여금에서 퇴직급여대여 전액 상환 후 잔액 지급

나) 보증대여 : 회원퇴직급여금에서 ① 퇴직급여대여, ② 보증대여 순으로 상환되며, 상환 불가 시 한국씨티은행 확인 후 개별상환 처리

#### 문의처

• 한국씨티은행 도곡센터

☎ 02)6989-3374

### 나. 목돈수탁저축

1) 예금형 목돈수탁저축 : 회원의 여유자금을 높은 이율로 안전하게 증식

가) 가입대상 : 군인공제회원 또는 회원이었던 자

나) 가입기간 : 6개월, 1년, 2년 단위(만기 후 재가입 가능)

다) 가입금액 : 100만 원 이상 10억 원 한도(비과세종합저축 포함)

라) 금리('22. 1. 1.부)

가입기간	만기 지급식		매월 지급식	
	세전이율	세후이율	세전이율	세후이율
6개월	2.18%	1.84%	2.15%	1.82%
1년	2.50%	2.11%	2.47%	2.09%
2년	2.58%	2.18%	2.54%	2.15%

\* 이자소득세 : '05.1.1. 이후 세율 15.4%(소득세 14% + 주민세 1.4%)

\* 목돈수탁금리는 가입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 동안 고정금리(확정금리)임

마) 이자 지급 : 본인의 희망에 따라 매월 또는 만기 시 지급

바) 중도(부분)해약 시 적용금리

구 분	중도해약 이율		
	6개월 미만	6개월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또는 1년 만기가입자	가입 시 만기 금리의 50%	가입 시 만기 금리의 67%	
2년 만기가입자	1년 만기금리의 50%	1년 만기금리의 67%	1년 만기금리의 100%

2) 적립형 목돈수탁저축 : 회원의 라이프사이클별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정기적금처럼 매월 일정액을 높은 이율로 적립하는 저축제도('22. 1. 1.부 출시)

가) 가입대상 : 군인공제회 회원 또는 회원이었던 자

나) 가입금액 : 월 5만원 이상 1,000만원 한도(1만원 단위로 설정)  
\* 1인 최대 20건 가입 가능

다) 가입기간 : 3년, 5년, 7년, 10년

라) 수납/지급방법 : 신한은행 가상계좌 입금 / 만기 일시 지급

마) 가입금리 : 연복리 2.8%, 변동금리, 단일금리 (\*이자소득세 : 15.4%)

바) 중도해약 시 금리

구 분	중도해약 이율		
	6개월 미만	6개월 ~ 1년 미만	1년 이상 ~
지급 금리	적용금리의 50%	적용금리의 67%	적용금리의 100%

다. 분할급여

- 1) 가입대상 : 군인공제회 회원으로서 퇴직 또는 탈퇴 시 회원퇴직급여금 세후 수령액이 일천만 원 이상인 회원
- 2) 가입기간 : 5년 이상 30년 이하(5년 단위 가입)
- 3) 가입금액 : 1천만 원 이상 퇴직급여 세후 수령액 이내(원 단위 가입)
- 4) 금리('22. 1. 1.부) : 매년 지급식(연 3.0%), 매월 지급식(연 2.96%)
  - ※ 분할급여의 금리는 「회원목돈수탁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결정된 목돈수탁저축 1년제 금리를 적용. 다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적용 금리를 목돈수탁저축 1년제 금리와 다르게 할 수 있음
- 5) 이자소득세율 : 전·퇴직 시 적용된 이자소득세 적용(저율과세 0%~5.28%)
  - \*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 6) 원리금 지급 : 본인의 희망에 따라 매월 또는 매년 지급
- 7) 중도(부분) 해약 시 적용금리

구 분	중도해약 이율		
	6개월 미만	6개월 ~ 1년 미만	1년 이상
금 리	적용금리의 50%	적용금리의 67%	적용금리의 100%

\* 퇴직급여 재가입과 신분전환에 따른 퇴직급여 승계 및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중도 해약으로 처리하여 중도해약 금리를 적용하고 향후 재가입할 수 있으나(사망 제외), 가입자가 원하여 중도 해약한 경우에는 재가입할 수 없음

- 8) 신청기한 : 퇴직 또는 탈퇴 시 급여금 지급일 기준 2 근무일 전까지
  - \* 퇴직 또는 탈퇴 시 급여금 지급 이후에는 분할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

라. 비과세 종합저축(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1인당 5,000만 원까지)

\* 예금형 및 적립형 목돈수탁저축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 1) 가입대상 : 군인공제회 회원 또는 회원이었던 자로서 다음 각 항목 해당자가 만 65세 이상에 달한 자
  - \* 단, '15년(만 61세), '16년(만 62세), '17년(만 63세), '18년(만 64세), '19년(만 65세)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거 등록된 상이유공자
  -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마)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2조 2호 규정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함

마. 재해위로금 : 회원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전역(퇴직), 유공전투 장애군인이 현역 복무 후 전역 시 지급

1) 지급대상

가) 군인공제회에 10구좌(월 불입액 : 50,000원) 이상 가입 후 12회 이상 연속적으로 불입한 회원 \* 전사자는 회원부담금 1회 이상 불입자

나) 사망자(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

다)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퇴직)자 또는 전역(퇴직)전후 심신장애자로 보상 통보된 자

라)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신체장애를 입고 현역으로 계속 복무 후 전역 시

\* 지급제외 :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였을 때(다만, 군인재해보상법 제43조 제1항 단서,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조 제2항 단서 또는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였을 때

2) 지급금액

구 분	전 사	순 직	일반사망, 유공전투장애 현역 복무 후 전역자	심신장애
금 액	5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50~100만 원

3) 지급시기 : 서류 접수 및 검토 후 주 2회 지급

4) 청구 유효 기간 : 전역/퇴직일 이후 5년 이내

## 바. 군인공제회 주택분양

- 1) 군인복지기본법에 의한 입주자 선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군인에게 우선공급하며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게 순차적으로 공급(단, 1세대 1주택의 기준)

### 가) 분양신청 자격(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 (1) 1차 분양 : 현역군인 중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자
- (2) 2차 분양 : 군인공제회 회원자격을 갖추고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자
- (3) 3차 분양 : 군인연금(퇴직/상이/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10년 이상 현역군인으로 복무한 후 전역한 자로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자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만 해당)
- (4) 4차 분양 : 3차 분양 후 미분양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

### 나)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

- (1) 제1순위 : 군인공제회 공급주택 및 군인·공무원 특별공급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자로서, 국민주택 등이나 민영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첨 후 10년 이상 경과자
- (2) 제2순위 : 군인공제회 공급주택 및 군인·공무원 특별공급 주택 당첨 후 10년 이상 경과자 또는 국민주택 등이나 민영주택에 당첨된 후 5년 이상 경과자
- (3)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 미해당자

- 다) 평가요소 및 배점 : 근속기간, 무주택기간, 기타(부양가족 수, 장애인 가족 부양 여부, 공제회 회원부담금 원금 잔액) 등 고득점자순 선정

- 2) 군인공제회 자체 택지개발 등에 의한 입주자 선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군인공제회 회원인 세대주 및 세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되 전용 85㎡(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공급, 85㎡ 초과 주택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

\* 현역군인이 아닌 자는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함

### 가) 분양신청 자격(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 (1) 1차 분양 : 군인공제회 회원으로서 회원가입 후 1년이 경과자
- (2) 2차 분양 : 군인공제회 회원으로서 회원가입 후 1년 미경과자

(3) 3차 분양 : 군인공제회 회원가입 자격을 갖춘 자 중 회원이 아닌 자, 군인연금(퇴직/상이/유족연금) 수급권자, 10년 이상 현역군인으로 복무한 후 전역한 자

(4) 4차 분양 : 3차 분양 후 미분양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

나)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

(1)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가) 제1순위 : 군인공제회 공급주택 및 군인·공무원 특별공급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자로서, 국민주택 등이나 민영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첨 후 10년 이상 경과자

(나) 제2순위 : 군인공제회 공급주택 및 군인·공무원 특별공급 주택 당첨 후 10년 이상 경과자 또는 국민주택 등이나 민영주택에 당첨된 후 5년 이상 경과자

(다)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 미해당자

(2)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가) 제1순위 : 군인공제회 공급주택 및 군인·공무원 특별공급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자로서, 국민주택 등이나 민영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첨 후 10년 이상 경과자

(나) 제2순위 : 군인공제회 공급주택 및 군인·공무원 특별공급주택 당첨 후 10년 이상 경과자 또는 국민주택 등이나 민영주택에 당첨된 후 5년 이상 경과자

(다)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 미해당자, 2주택 이상 소유자

다) 평가요소 및 배점

(1)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근속기간, 무주택기간, 가입구좌 수, 기타(부양가족 수, 장애인 가족 부양 여부, 공제회 회원가입 총 기간) 배점에 의거 고득점자순으로 당첨자 선정

(2)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 근속기간, 가입구좌 수, 기타(부양가족 수, 장애인 가족 부양 여부, 공제회 회원가입 총 기간) 배점에 의거 고득점자순으로 당첨자 선정

3) 분양 공고 : 국방일보, 군인공제회 홈페이지에 게재

문의처

- 군인공제회 주택사업팀
- 군인공제회 컨택센터

☎ 02)2190-2104~6

☎ ARS 1544-9090 / 1599-9090

사. 군인공제회 건강검진 제휴 서비스 이용

1) 이용대상

가) 군인공제회 회원 및 회원이었던 자

나) 배우자 및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직계존비속

2) 검진비용 : 25만 원 정액 (기본제공 선택검사 초과 시 추가 비용 발생)

※ '22. 5월 중 28만원으로 인상 검토 중

3) 이용방법 : 온라인(health.mmaacnc.or.kr)을 통한 사전 예약

4) 검진항목 : 상세 내역은 건강검진 신청 사이트 참조

구 분	검진항목	비 고
기초 검사	혈압, 신체계측, 시력, 청력, 폐기능, 혈액, 심혈관, 간기능, 신장, 당뇨, 갑상선, 체장 등	기본 제공
기본 정밀	위내시경(일반, 수면), 초음파(경동맥, 갑상선, 상·하복부, 부인과, 체성분, 골밀도, 동맥경화, 스트레스검사 등	
정밀 선택	- MRA(뇌), MRI(뇌, 요추, 경추), 대장내시경 중 1개 선택 - CT(뇌, 요추, 경추, 심장, 폐), 심장초음파, NK검사 중 1개 선택 ※ 정밀선택항목 2개 기본제공	기본제공 초과 시 별도 청구

5) 제휴 검진기관

제휴업체	지 역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에스 헬스케어	하나로의료(종로) 하나로의료(강남) 소중한메디케어 KMI(광화문) KMI(강남) KMI(여의도)	KMI(수원)		KMI(광주)	KMI(대구) KMI(부산)

\* 전국 우수 검진기관 지속 확대 중

문의처

• 군인공제회C&C 전담사업2팀

☎ 02)2139-0629

아. 군인공제회 콘도 및 제휴복지 서비스 이용

1) 이용대상

가) 군인공제회 회원이었던 자로 분할급여 또는 목돈수탁(비과세)저축 가입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회원

2) 군인공제회 회원콘도

가) 콘도 보유 현황

콘도회사명	계	대명	한화
시설수	115실	75실	40실

나) 대명 리조트앤호텔 배정 지역

구분	양양	삼척	경주	거제	홍천	변산	단양	청송	여수	설악	천안	고양	제주
75	4	4	2	4	7	4	4	4	2	6	5	4	25

다) 한화 콘도 배정 지역

구분	해운대	경주	대천	설악	지리산	양평	백암	평창
40	2	3	3	12	1	2	2	15

2) 예약 조건

구분	예약확정	잔여객실 확정
대명	투숙일 30일 ~ 16일전	15일전 ~ 11일전
한화		15일전 ~ 3일전

3) 군인공제회 제휴 현황

분야	계	숙박시설	의료·실버	경조	생활·레저
시설수	189	94	49	6	40

\* 세부 제휴 현황은 군인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 8. 진료 미종결 전역자 진료안내

### 가. 진료 미종결 전역자 진료제도란?

군 병원 입원 또는 외래진료 (치과 등)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는 간부(군사교육 중 퇴교한 군간부후보생 포함)가 계속적인 입원 및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 군 병원에서 무상으로 진료를 제공하는 제도

### 나. 관련 법령 :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51조

### 다. 진료제공 기간 : 전역일로부터 6개월까지

\* 다만, 군 병원에서 실시한 수술의 후속 수술로써, 군 병원에서 금속판, 나사 등 내고정물 제거수술을 받고자 할 경우 전역 후 6개월 경과 시에도 진료 제공

### 라. 진료제공 군 병원

병 원	주 소	전화번호
국군강릉병원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동해대로 4371-34	1688-9165
국군고양병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215 사서함 111-8호	1688-9162
국군구리병원	경기도 구리시 인창2로 177	031-331-1777
국군대구병원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경로 425-41	1688-9154
국군대전병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운로 90	1688-9152
국군서울지구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10길 13	02-397-3973
국군수도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177번길 81 사서함 99호	1688-9151
국군양주병원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사서함 94-12호	1688-9163
국군포천병원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화동로 564	1688-9164
국군춘천병원	강원도 춘천시 방고개길 57번	1688-9166
국군함평병원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신해로 1027	1688-9153
국군홍천병원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아홉사리로 53	1688-9167
해군포항병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5961	054-290-2494
해양의료원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963번길 35	055-907-5737
항공우주의료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575	043-290-6669

\* 군 병원 내원 시 신분증, 전역증 지참

# 부 록

구비서류 및 각종 양식

붙임 #1(본문 23쪽)

## □ 국방전직교육원 구직등록카드

성명	<input type="text"/>	구직등록번호	<input type="text"/>
생년월일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일		
기존 비밀번호	<input type="text"/>	(휴대폰 변경시 기존비밀번호 입력)	
휴대폰	<input type="text"/>	SMS수신	<input type="radio"/> 수신 <input checked="" type="radio"/> 거부
이메일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직접입력	<input type="text"/>
군번	<input type="text"/> ※ 최종군번 입력	임관일자	2001년 01월 01일
군별	육군	계급	<input type="text"/> 예비역 진급자는 전역시 계급입력
병과	<input type="text"/>	출신구분	<input type="text"/> 기수 <input type="text"/> 기
전역(예정)일자	2022년 10월 01일	복무기간	21년 9개월 (전역일 기준)
전직기간(구, 직업보도교육) 시작일자	2021년 12월 01일		
주소	<input type="text"/> 우편번호검색 <input type="text"/>		
자택전화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소속(사여단급)	<input type="text"/>
전직희망분야	<input checked="" type="radio"/> 취업 <input type="radio"/> 창업 <input type="radio"/> 귀농/귀촌/귀어 <input type="radio"/> 기타		
결혼여부	<input type="text"/>	시력	좌: <input type="text"/> 우: <input type="text"/>
신장	<input type="text"/> cm	체중	<input type="text"/> kg
학력사항	<input type="text"/> 고등학교	2005년 06월	졸업
	<input type="text"/> 대학	전공 <input type="text"/> 2013년 08월	재학 <input type="text"/> 학사 <input type="text"/> 서울 <input type="text"/> 예체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대학교	전공 <input type="text"/> 2017년 04월	졸업 <input type="text"/> 학사 <input type="text"/> 서울 <input type="text"/> 인문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 추가"/>
	<input type="text"/> 대학원	전공 <input type="text"/> 선택 <input type="text"/> 년 선택 <input type="text"/> 월	선택 <input type="text"/> 학위 <input type="text"/> -소재 <input type="text"/> 계열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 추가"/>
경력 사항 (군 및 사회경력)			
※ 재입대의 경우 재입대전 복무기간을 아래 서식에 따라 입력, 준위의 경우 총 복무기간을 아래 서식에 따라 입력			
재직기간(현재기준)	소속(회사명)	직책	계급(직급)
2001년 01월 ~ 2001년 12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015년 01월 ~ 2017년 02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사원 <input type="text"/>
2014년 07월 ~ 2017년 02월	<input type="text"/>	과장 <input type="text"/>	과장 <input type="text"/>

□ 교육 사항 (군 포함)

교육과정명	교육기관	교육기간(예>2년3개월)	구분
교육과정명1	교육기관1	2년 3개월	군교육 ▼
교육과정명2	교육기관2	3년 3개월	전직지원교육 ▼

+ 추가  
o 삭제

분류	자격증명	취득일자	발행기관
□ 자격사항	국가자격사항	2015 ▼ 년 04 ▼ 월 06 ▼ 일	
		2016 ▼ 년 03 ▼ 월 07 ▼ 일	
		2020 ▼ 년 01 ▼ 월 01 ▼ 일	
		2021 ▼ 년 01 ▼ 월 02 ▼ 일	
기타자격사항		2016 ▼ 년 08 ▼ 월 05 ▼ 일	
		2013 ▼ 년 02 ▼ 월 06 ▼ 일	
		2015 ▼ 년 05 ▼ 월 03 ▼ 일	

+ 추가  
o 삭제  
+ 추가  
o 삭제  
+ 추가  
o 삭제

회망근무지	회망직종
1 전국 ▼	1 군교관요원 ▼
2 --선택-- ▼	2 --선택-- ▼

외국어능력	외국어명	회화	독해	작문
1	영어 ▼	가능 ▼	가능 ▼	가능 ▼
2	스페인어 ▼	가능 ▼	가능 ▼	가능 ▼

공인평가시험	외국어명	평가시험	점수
1	독일어 ▼	BCT ▼	100 점 --선택-- ▼ 급
2	영어 ▼	OPic ▼	0 점 --선택-- ▼ 급

+ 추가  
o 삭제

컴퓨터능력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인터넷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 검색키워드 (예) 인사관리, 건축, 전기기능사, 해외취업, 전역장교, 회계, 무기체계, 시험평가 등

자기 소개서 (주요경력 상의 특징적 내용, 지원 사유 및 기타 특기사항 등을 상세히 기술 바랍니다.) \*5000자 이내

제목 기본 자기소개서  대표 자기소개서

첨부파일 sample\_recruit\_list (1).xlsx

전역구분	--선택--	주특기		희망연봉	--선택--
희망고용형태	<input type="checkbox"/> 정규직 <input type="checkbox"/> 계약직 <input type="checkbox"/> 기간제 <input type="checkbox"/> 신입직 <input type="checkbox"/> 경력직				
관심 프로그램	전직지원교육	<input type="checkbox"/> 진로설계 <input type="checkbox"/> 진로교육 <input type="checkbox"/> 전직기본교육 <input type="checkbox"/> 맞춤형전문교육			
	전직컨설팅	<input type="checkbox"/> 경력상담 <input type="checkbox"/> 전직상담 <input type="checkbox"/> 창업멘토링			
	일자리지원	<input type="checkbox"/> 진로도움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 <input type="checkbox"/> 청년장병뉴스타트(취업사관학교, 기업맞춤형, 현장채용설명회)			

※ 국방전직교육원

- 홈페이지 : [www.moti.or.kr](http://www.moti.or.kr)
- 전 화 : 구직등록 및 교육관련 안내 (031)760-9441~3  
구직등록 및 취업관련 안내 (031)760-9343~5
- 주 소 : (우:1364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대로83(창곡동)

## ■ 구직카드 작성요령 ■

### ● 주요경력

- 가급적 취업희망직종과 관련한 최근의 주요 군 또는 민간경력을 기재.  
단, 군 경력 기재 시는 부대명칭 없이 근무제대명과 직책만 명시  
<예> 소속 ; 보병사단/직책 ; 작전참모
- “담당업무” 란에는 본인이 경험한 각각의 직책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핵심적인 키워드 위주로 기재

- |        |              |              |              |
|--------|--------------|--------------|--------------|
| • 인사관리 | • 보안 및 정보 관리 | • 작전 지원 및 보급 | • 기획/총괄      |
| • 조직관리 | • 교관/교수      | • 장비정비/관리    | • 장비시험평가     |
| • 안전관리 | • 전산개발/관리    | • 방위력개선      | • 대외협력       |
| • 시설관리 | • 매장관리       | • 대내외 홍보     | • 항공기(선박) 조정 |

### ● 취업희망사항

- 희망직종은 세부직종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

구 분	세 부 직 종
군 관련직	· 군무원 · 기타 군관련직 · 비상계획관 · 예비군 지휘관
금융, 법률, 교육, 방송	· 법무/특허 · 번역, 통역 · 교육, 교사, 교수, 강사 · 보험, 부동산 · 은행, 증권, 투신 · 방송/미디어/문화 · 편집/자료관리/출판/인쇄
보안, 경비, 시설관리	· 경비/경호요원 · 폭발물 처리 · 시설관리 · 창고관리 · 안전
사무, 회계, 무역, 유통	· 경리/회계/세무/재무 · 일반사무/총무 · 기획/전략 · 비서/인포메이션 · 물류/유통/구매 · 일반공무원 · 인사/노무/인재개발 · 무역/수출입관리 · 경영/컨설팅/연구 · 사회복지/봉사 · 상담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기능직공무원
여행, 이벤트, 서비스	· 인포메이션/이벤트 · 여행/숙박/레저 · 배송/운전 · 식품/조리 · 서비스 · 생활체육 · 사진
연구개발, 기술, 생산	· 금속/재료/요업 · 전기/전자/제어 · 건축/토목/조경/설비 · 기계/기계설비 · 연구개발 · 품질관리/품질보증/생산관리 · 생산직/기능직 · 섬유/패션/의류 · 화학/화공/에너지 · 생명공학/식품공학 · 환경/안전 · 의약/의료/제약/보건 · CAD/CAM · 도시/교통 · 농수축산
영업, 마케팅, 판매, TM	· 영업/영업관리 · 기술영업 · 마케팅 · 광고/홍보/PR · 상품기획/개발/판매 · 매장관리/판매 · TM · 디자인
인터넷, 통신기술	· 서버/네트워크관리/DB관리 · 프로그래머 · 웹기획/웹마케팅/콘텐츠 · 멀티미디어 · 통신기술 · IT기술영업/기술지원 · 모바일 · IT디자인
해양, 항공, 우주	· 항해 · 해양정비 · 회전익조종 · 고정익조종 · 항공정비 · 관제 · 기상 · 조선 · 우주항공
기타	· 기타

- 희망근무지역을 선택하여 기재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 수도권 · 서울 · 인천 · 경기 · 강원 · 충청권 · 대전 · 충남 · 충북 · 호남권</li> <li>• 광주 · 전남 · 전북 · 영남권 · 부산 · 경남 · 대구 · 경북 · 울산 · 제주 · 해외</li> </ul> |
|--|

2022년도 보훈보상금 등 월 지급액

□ 국가유공자 및 유족(기존 등록자)

○ 상이군경 등

(단위 : 천원)

상이등급별		보상금	수 당		합계
			고령·무의탁	중상이부가	
1급1항	고 령	3,323	97	2,492	5,912
	일 반	3,323	-	2,492	5,815
1급2항	고 령	3,134	97	1,724	4,955
	일 반	3,134	-	1,724	4,858
1급3항	고 령	3,000	97	1,050	4,147
	일 반	3,000	-	1,050	4,050
2급	고 령	2,667	97		2,764
	일 반	2,667	-		2,667
3급	고 령	2,493	97		2,590
	일 반	2,493	-		2,493
4급	고 령	2,092	97		2,189
	일 반	2,092	-		2,092
5급	무의탁	1,733	274		2,007
	고 령	1,733	97		1,830
	일 반	1,733	-		1,733
6급1항	무의탁	1,581	274		1,855
	고 령	1,581	97		1,678
	일 반	1,581	-		1,581
6급2항	무의탁	1,455	274		1,729
	고 령	1,455	97		1,552
	일 반	1,455	-		1,455
7급	무의탁	521	274		795
	고 령	521	97		618
	일 반	521	-		521
* 간 호 수 당		· 1급1항 2,763, 1급2항 2,659, 1급3항 2,556, 2급 883			
* 전 상 수 당		· 90			
재일학도 의용군인	무의탁	1,455	274		1,729
	고 령	1,455	97		1,552
	일 반	1,455	-		1,455
4·19혁명공로자		· 361			
생활조정수당 (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 이하 : 220~283, 4인 이상 : 273~336			

○ 균경유족 등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수당	합계		
유	배우자	전몰·순직	무 의 탁	1,751	274	2,025	
			무의탁부모부양	1,751	149	1,900	
			고 령	1,751	149	1,900	
			일 반	1,751	-	1,751	
		상이 1급~5급, 6급상이사망	무 의 탁	1,518	274	1,792	
			무의탁부모부양	1,518	149	1,667	
			고 령	1,518	149	1,667	
			일 반	1,518	-	1,518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557	274	831	
			무의탁부모부양	557	149	706	
			고 령	557	149	706	
			일 반	557	-	557	
	*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 1인 양육 50 / 2인 양육 185 (추가 1인당 185 가산)			
	족	부	전몰·순직	무 의 탁	1,720	274	1,994
				독 자 사 망	1,720	274	1,994
				고 령	1,720	97	1,817
일 반				1,720	-	1,720	
모		상이 1급~5급, 6급상이사망	무 의 탁	1,493	274	1,767	
			고 령	1,493	97	1,590	
			일 반	1,493	-	1,493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528	274	802
고 령		528	97	625			
일 반		528	-	528			
* 2명 이상 사망수당			2인 사망 : 274 (1인 추가 시 274 가산)				
미성년(성년장애)자녀		전 몰 · 순 직		2,030	-	2,030	
	상 이 1급 ~ 5급 · 6급상이사망		1,762	-	1,762		
	6급비상이 · 7급상이사망		804	-	804		
	* 미성년장애 양육수당			· 1인 양육 100 / 2인 양육 370 (추가 1인당 370 가산)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 이하 : 220~283, 4인 이상 : 273~336				
6·25 자 녀 수 당			· 제적자녀 : 1,456(위로가신금 80추가), 승계자녀 : 1,239, 신규승계자녀 : 364(생계곤란한 경우 114천원 추가 지원)				
무공영예수당			· 인헌 400, 화랑 405, 충무 410, 을지 415, 태극 420				
참전명예수당			· 340				

□ 고엽제후유의증 및 2세 환자 수당

(단위 : 천원)

대 상 별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후 유 의 증 수 당	1,061	782	513
후유증2세환자수당	1,889	1,468	1,179

□ 국가유공자 및 유족(2012. 7. 1. 이후 등록자)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중 상 이 부가수당	합계	
상 이 자	1급 1항	3,323	2,492	5,815
	1급 2항	3,134	1,724	4,858
	1급 3항	3,000	1,050	4,050
	2 급	2,667		2,667
	3 급	2,493		2,493
	4 급	2,092		2,092
	5 급	1,733		1,733
	6급 1항	1,581		1,581
	6급 2항	1,455		1,455
	6급 3항	977		977
	7 급	521		521
	* 간 호 수 당	· 상시 2,763 / 수시 1,843		
	* 전 상 수 당	· 90		
* 부 양 가 족 수 당	· 배우자 100 / 자녀 100			
* 고 령 수 당(60세 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 시 97			
유 족	배우자	전몰·순직	1,751	1,751
		상이 1~5급	1,518	1,518
		상이 6급	557	557
	부 모	전몰·순직	1,720	1,720
		상이 1~5급	1,493	1,493
		상이 6급	528	528
	미성년 (성년장애) 자녀	전몰·순직	2,030	2,030
		상이 1~5급	1,762	1,762
		상이 6급	804	804
* 부 양 가 족 수 당	· 자녀 100 / 제매 200			
* 2명 이상 사망수당	· 274			
* 고 령 수 당(60세 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 시 배우자 149 / 부모 97			
생 활 조 정 수 당 (생활수준 고려, 신청 시)	· 가족 3인 이하 : 220~283, 4인 이상 : 273~336			

□ 보훈보상대상자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중 상 이 부가수당	합 계	
상 이 자	1급 1항	2,327	1,662	3,989	
	1급 2항	2,194	1,150	3,344	
	1급 3항	2,100	700	2,800	
	2 급	1,867		1,867	
	3 급	1,745		1,745	
	4 급	1,465		1,465	
	5 급	1,213		1,213	
	6급 1항	1,108		1,108	
	6급 2항	1,020		1,020	
	6급 3항	684		684	
	7 급	365		365	
	* 간 호 수 당		· 상시 2,763, 수시 1,843		
	* 부양가족수당(6급 이상)		· 배우자 100 / 자녀 100		
* 고 령 수 당(60세 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 시 97			
유 족	배우자	사망	1,226	1,226	
		1~5급 유족	1,064	1,064	
		6급 유족	390	390	
	부 모	사망	1,204	1,204	
		1~5급 유족	1,046	1,046	
		6급 유족	371	371	
	미성년 (성년장애) 자녀	사망	1,422	1,422	
		1~5급 유족	1,234	1,234	
		6급 유족	564	564	
	* 부양가족수당		· 자녀 100 / 제매 200		
* 고 령 수 당(60세 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 시 배우자 149 / 부모 97			
생활 조정 수당 (생활수준 고려, 신청 시)		· 가족 3인 이하 : 220~283, 4인 이상 : 273~336			

## 재해보상금 및 사망일시금

[재해보상금]

군인 사망 보상금	전사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
	특수직무 순직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일반 순직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
군인 장애보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장애보상금 <span style="float: right;">* 간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sp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급 : 공무원 전체기준소득월액 평균액×9배</li> <li>- 2급 : 공무원 전체기준소득월액 평균액×6배</li> <li>- 3급 : 공무원 전체기준소득월액 평균액×4.5배</li> <li>- 4급 : 공무원 전체기준소득월액 평균액×3배</li> </ul> </li> <li>○ 특수직무공상 : 일반장애보상금의 1.88배</li> <li>○ 전상 : 일반장애보상금의 2.5배</li> </ul>

[사망일시금]

(단위 : 천원)

대 상 별				지급액	대 상 별		지급액	
독립유공자 본 인	건국 훈장	1~3등급		3,268	상 이 군 경	1급		1,704
		4등급		3,208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	1,444
		5등급		1,704				
	건국포장			1,208			유족 보상금승계	1,127
	대통령표창			1,127				
독립유공자 유 족	건국 훈장	1~3 등급	배우자	2,261	재 일 학 도 의 용 군			1,127
			기타유족	2,200				
		4등급유족		1,989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 (보상금 종결시)			1,127
		5등급유족		1,127				
건국포장유족 대통령표창유족			1,127					

## 민원이용 안내

\* 지역번호 미명시한 것은 서울임

담당부처(서)	전 화	담당부처(서)	전 화
국방부 민원팀	1577-9090	공군본부 민원실	506-7940, 7945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해병대 전직/대외협력과	031)8012-2811~3
국방일자리정책과	748-6631~6	국방전직교육원	1588-9402
군인연금과	748-6671~2	서울지방병무청 민원실	820-4353, 4355, 4357
군인재해보상과	748-6851~2		
국방부 동원기획관실	748-5249	국립서울현충원 민원실	813-9625
예비전력과			
국군재정관리단 민원실	3146-6014~6	국립대전현충원 민원실	042)822-0026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3146-6481~5	재향군인회 교환	417-0641
		군인공제회 공제사업팀	
		회원퇴직급여	2190-2063~5
국군재정관리단 퇴직급여과	3146-6471~5	목돈수탁저축	2190-2070,2082,2088
		회원대여	2190-2073~4
		컨택센터	1544-9090/1599-9090
육군본부		군인공제회 대표전화	1544-9090
전직지원정책과	505-7411	국민권익위원회	1588-1517
제대군인직위개발 /협력과	505-7421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	2100-3161
육군취업지원센터	505-7531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해군 일자리정책과	819-1151~6	노동부 상담전화	1544-1350
공군 전직지원정책과	506-1231~7	경찰청 민원전화	1566-0112
육군본부 민원실	505-6446~7	서울시청 민원안내	국번 없이 120
해군본부 민원실	819-0632~3		

붙임 #5(본문 145, 180쪽)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4. 1.>

정부24(www.minwon.go.kr)에  
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대군인지원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기간 제외)
------	-----	-------------------------------

제대군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_____, 전자우편주소: _____)					
	군별	계급	군번	병과			
	입대일	전역일	복무기간	년 개월			

군복무 기간	입대일	전역일	복무기간	년 개월
	입대일	전역일	복무기간	년 개월
	입대일	전역일	복무기간	년 개월

분리

군인연금 수급여부	수급[ ] / 미수급[ ]
--------------	----------------

지원 사항	① 직업교육훈련	② 취업지원	③ 전직지원금
	④ 교육 지원	⑤ 보철구의 지급	⑥ 대부 지원
	⑦ 법률구조 지원	⑧ 주택의 우선 공급	⑨ 의료 지원
	⑩ 공공시설의 이용	⑪ 진로·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등	

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②부터 ⑦까지의 지원을 받으려는 신청인은 그에 해당하는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2. ① 또는 ⑩의 지원을 받으려면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V-net.go.kr)에서 별도 회원 가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신청인 제출 서류	신청인의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1장[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병적증명서	없 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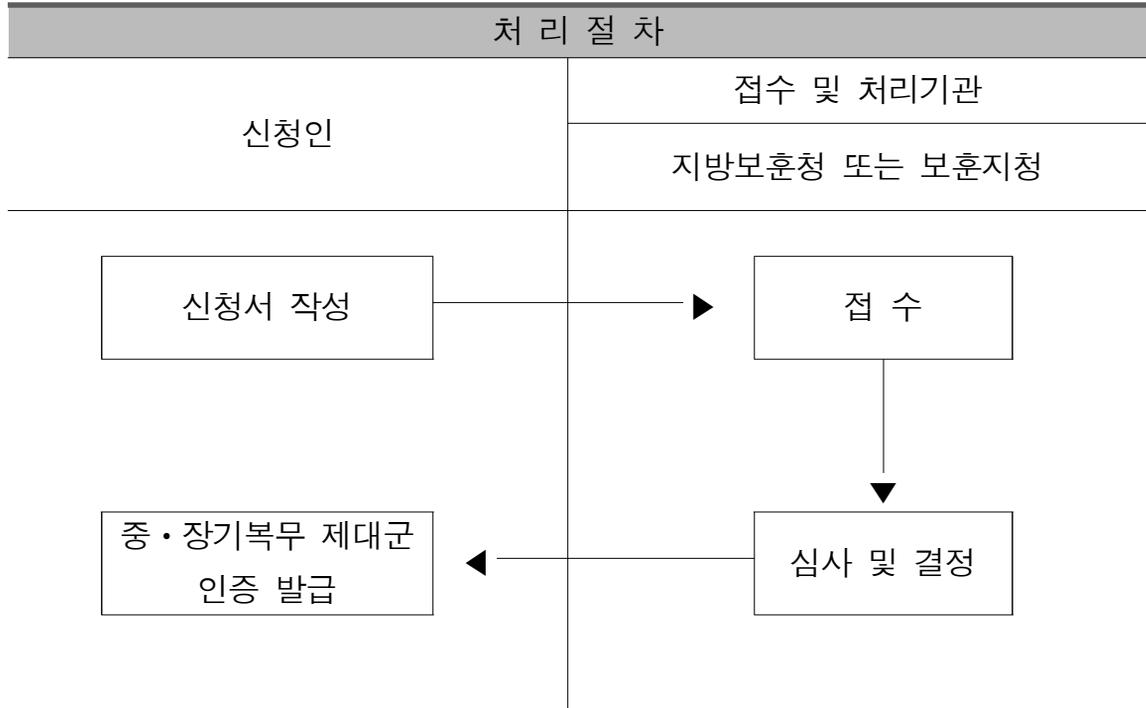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또는 중질지 80g/m<sup>2</sup>)

(뒤쪽)

### 처 리 절 차



### 확 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붙임 #6(본문 145, 180쪽)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4.1.17.>

### 제대군인 취업희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제대 군인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군별	계급	군번
	입대일	전역일	복무기간 년 개월
	전역 후 3년 경과 여부 [ ] 전역 3년 이내 [ ] 전역 3년 경과		

취업 지원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제대군인 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최종학력	학교 년	전공(부전공)	졸업성적
		[ ] 졸업(예정) [ ] 중퇴 [ ] 휴학 [ ] 수료 [ ] 검정고시 [ ] 독학사		/
	직업훈련	훈련기관	훈련과목	훈련기간 ~ 복무기간 년 개월
	자격·면허	1 운전면허 [ ] 종, [ ] 대형 [ ] 보통 3 ~ 4	2	
	외국어능력	외국어명	수준	공인시험 등급·점수 취득일
		[ ] 상 [ ] 중 [ ] 하 [ ] 상 [ ] 중 [ ] 하		
	주요경력	취업처	직위	담당직종 재직기간 년 개월 년 개월
	취업희망 조건	순위	희망직종	희망근무지역 희망직무내용(구체적으로)

그 밖에 희망 및 특기 사항(질병 등 건강상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 전역 후 3년이 지난 제대군인만 해당합니다. 1.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소득·재산 신고서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3.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 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취업지원 대상 여부 확인 (\*담당 공무원이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대상 여부 [ ]대상 [ ]비대상	취업인원 보훈특별고용( 명), 특별채용( 명)	취업횟수 회
--------------------------	------------------------------	-----------

취업 추진사항

일련번호	연월일	직종확보 및 상담안내 또는 상담내용	담당자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	----	-------

## 직업능력개발 교육비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군별	계급	군번	입대(임관)일
	주소			전화번호
훈련 희망 내용	교육 기관명	사업자 번호	소재지	
	과정명	과정 구분	오프라인( )	교육기간
			온라인( )	
정부 및 공공기관 연계 교육 해당 여부			해당( ) 비해당( )	
교육비	총액 (A+B)	자부담 (A)	지원예정금액 (B)	
	금융 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 ※유의사항 - 교육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교육기간이 교육수료확인서의 사실과 다를 경우, 교육수료확인서의 기간에 따라 지원됩니다.  
 - 교육과정,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되지 아닐 수도 있으므로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사전 문의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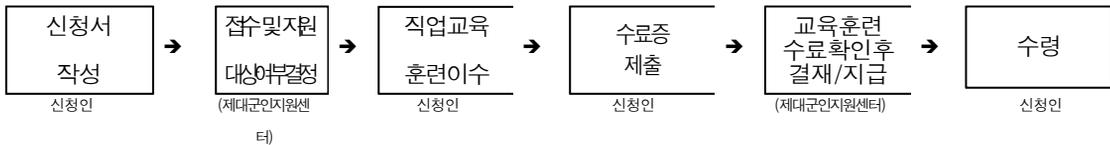
신청인 제출서류	1. 교육비납부 확인서류 1부 2. 비정규직 취업 확인용 증빙서류 또는 휴·폐업사실증명서 등 1부(해당 시)	수수료 : 없음
----------	---	----------

### 담당 상담사 확인사항

직업훈련 계획	(희망 훈련과정과 희망 취업분야와의 연관성 등 상담사 의견기재)		
수혜구분 : 신규 ( ) 기수혜 ( )	취업구분 : 미 취·창업 ( ) 취·창업 ( )		확인서명
교육기관 인증 여부	평생직업교육학원 ( ), 평생교육시설 ( ), 원격평생교육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 법령에 의한 기관 ( ), 학교 ( ), 기타 ( )		
중복수혜	교육기관명 ( ), 과목( ), 기간( ~ )		

###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확 인

접수자	행정팀장	센터장
-----	------	-----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또는 중질지 80g/m<sup>2</sup>)





(뒤쪽)

적극적인 구직활동 추진사항(담당 공무원이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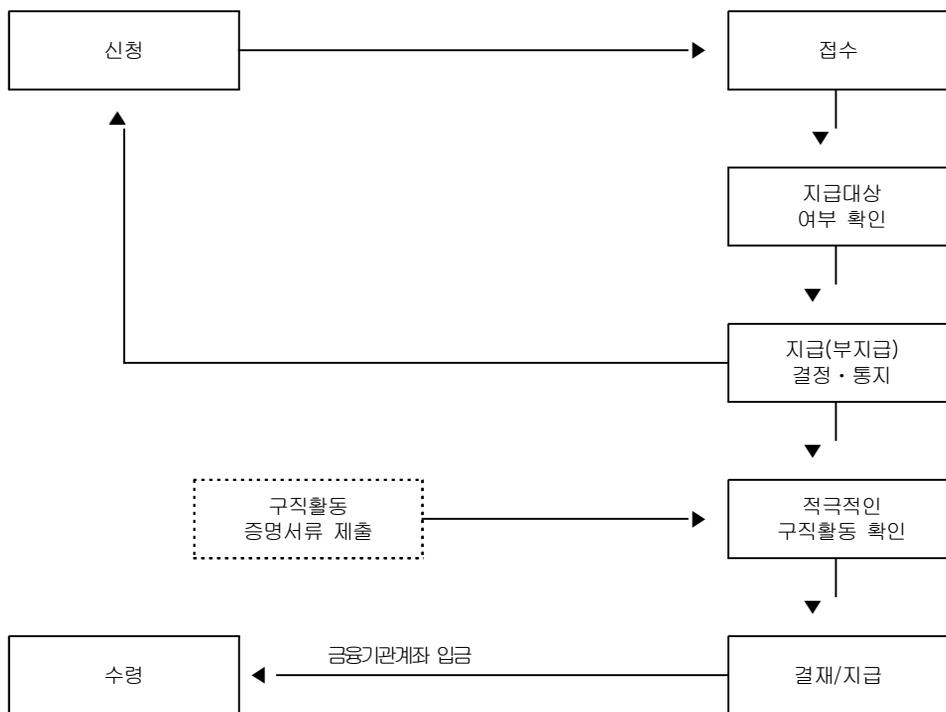
일련번호	연월일	적극적인 구직활동 내용	담당자

처리절차

신청인

접수 및 처리기관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제대군인지원센터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국가보훈처 보훈(지)청 연락처

관 서 명	주 소 지	전 화 번 호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 제대군인일자리과 제대군인지원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02)1577-0606 (044)202-5714 (044)202-5732 (044)202-5754
서울 제대군인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73 양지빌딩 3층	1666-9279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80 센트럴타워 1103호	
인천 제대군인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1층	
경기남부 제대군인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8 경기남부보훈지청 별관 2층	
강원 제대군인지원센터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72 삼성타워 6층	
부산 제대군인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48번길 13 부산지방보훈청 4층	
경남 제대군인지원센터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305 KT서마산지점 2층	
대전 제대군인지원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대전지방보훈청 5층	
대구 제대군인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301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저층부 3층	
광주 제대군인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1층	
서울지방보훈청 서울남부지청 서울북부지청 경기남부지청 인천지청 경기북부지청 경기동부지청 강원서부지청 강원동부지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6(한강로 1가 10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42(방배3동 985-8)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50 나길 6(방학 1동 707-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8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691번길 12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589(의정부1동 238-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54(마북동)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 64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후평1동 240-3)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3310(죽헌동)	(02)2125-0815 (02)3019-2300 (02)944-9260 (031)259-1702 (032)430-0100 (031)843-5748 (031)289-2311 (033)258-3609 (033)610-0606
부산지방보훈청 울산지청 경남동부지청 경남서부지청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48번길 13(중앙동4가)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입구로 7(옥동)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도로 10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5층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82-5(초전동)	(051)469-8991 (052)228-6500 (055)981-5600 (055)752-3881
대전지방보훈청 충남서부지청 충남동부지청 충북남부지청 충북북부지청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월평동)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91(오관리 488-2)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1길 19(원성동)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47(분평동) 충청북도 충주시 중원대로 3230(호암동)	(042)280-1114 (041)630-3700 (041)589-0912 (043)285-3213 (043)841-8800
대구지방보훈청 경북북부지청 경북남부지청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2~3층 경상북도 안동시 마들큰길 21 경상북도 경주시 금성로 355	(053)230-6010 (054)820-9310 (054)778-2600
광주지방보훈청 전남동부지청 전남서부지청 전북동부지청 전북서부지청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1~2층 전라남도 순천시 팔마2길 7(연향동 1692-6) 전라남도 목포시 관해로 29(용해동 49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흥산남로 10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1길 58-5	(062)975-6500 (061)720-3200 (061)273-0093 (063)239-4500 (063)850-3702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제주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3층	(064)710-8411

## 전국 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전화

지역	고용(고용복지+)센터명	관할지역	대표전화
서울	서울고용복지+센터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02)2004-7301
	서초고용센터	서초구	02)580-4900
	서울강남고용복지+센터	강남구	02)3468-4794
	서울동부고용복지+센터	송파구, 강동구	02)2142-8924
	성동광진고용복지+센터	성동구, 광진구	02)2047-9900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	마포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02)2077-6000
	서울남부고용복지+센터	영등포구, 양천구	02)2639-2300
	서울강서고용복지+센터	강서구	02)2063-6700
	서울북부고용복지+센터	중랑, 노원, 도봉	02)2171-1700
	강북성북고용복지+센터	강북구, 성북구	02)3406-0900
	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02)3282-9200
부산	부산고용복지+센터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남구, 부산진구, 연제구	051)860-1919
	부산사하고용복지+센터	사하구	051)520-4900
	부산동부고용복지+센터	동래구, 금정구,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051)760-7100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	북구, 사상구, 강서구	051)330-9900
대구	대구고용복지+센터	대구 중구, 수성구	053)667-6000
	대구강북고용복지+센터	대구 북구, 군위군	053)606-8000
	대구동부고용복지+센터	대구 동구	053)667-6900
	경산고용복지+센터	경상북도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053)667-6800
	대구서부고용복지+센터	대구 남구, 서구, 달서구	053)605-6500
	대구달성고용복지+센터	대구 달성군, 경북 고령군	053)605-9510
	칠곡고용복지+센터	경상북도 칠곡군, 성주군	054)970-1919
인천	인천고용복지+센터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	032)460-4701
	인천북부고용복지+센터	인천 부평구, 계양구	032)540-5641
	인천서부고용복지+센터	인천 서구, 강화군	032)540-2001

지 역	고용센터명	관 할 지 역	일반전화
광주	광주 고용복지+센터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전남 나주시,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062)609-8500
	광주광산고용복지+센터	광주 광산구, 전남 영광군, 함평군	062)960-3200
대전	대전 고용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동구, 유성구, 중구, 대덕구, 충남 금산군	042)480-6000
울산	울산 고용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동구, 북구, 중구, 울주군	052)228-1919
경 기	부천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부천시	032)320-8900
	김포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김포시	031)999-0900
	의정부고용복지+센터	의정부시, 포천시	031)828-0900
	구리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구리시	031)560-5800
	남양주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031)560-1919
	동두천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동두천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031)860-1700
	고양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031)920-3937
	양주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양주시	031)849-2300
	파주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파주시	031)860-0401
	수원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일부(금곡동, 기산읍, 능동, 동탄면, 목동, 반송동, 반월동, 반정동, 방교동, 병점동, 산척동, 석우동, 송동, 신동, 연천동, 오산동, 장지동, 중동, 진안동, 청계동)	031)231-7864
	용인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031)289-2210
	화성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화성시(수원 관할지역 제외)	031)290-0800
	성남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031)739-3177
	경기광주고용복지+센터	경기도 광주시, 양평군	031)799-2760
	이천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이천시, 여주시	031)644-3820
	하남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하남시	031)730-7000
	안양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군포시, 안양시 동안구·만안구	031)463-0700
	광명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광명시	02)2680-1500
	안산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상록구	031)412-6600
	의왕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의왕시, 과천시	031)463-7460
시흥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시흥시	031)496-1900	

지 역	고용센터명	관 할 지 역	일반전화
경 기	평택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평택시	031)646-1205
	안성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안성시	031)686-1705
	오산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오산시	031)8024-9805
강 원	춘천 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춘천시, 화천군,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경기도 가평군	033)250-1900
	강릉 고용복지+센터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033)610-1919
	속초 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033)630-1919
	원주 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033)769-0900
	태백 고용복지+센터	강원도 태백시	033)552-8605
	삼척 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삼척시	033)570-1900
	영월 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033)371-6260
충 북	청주 고용복지+센터	충북 괴산군, 보은군,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상당구, 서원구, 청원구, 흥덕구	043)230-6700
	옥천 고용복지+센터	충북 옥천군, 영동군	043)730-4100
	충주 고용복지+센터	충북 충주시	043)850-4000
	제천 고용복지+센터	충북 제천시, 단양군	043)640-9310
	음성 고용복지+센터	충북 음성군	043)880-8600
충 남	공주 고용복지+센터	충남 공주시	041)851-8501
	논산 고용복지+센터	충남 논산시, 계룡시	041)731-8600
	세종 고용복지+센터	세종특별자치시	044)865-3219
	천안 고용복지+센터	충남 예산군, 당진군,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	041)620-7400
	아산 고용복지+센터	충남 아산시	041)570-5500
	보령 고용복지+센터	충남 보령시, 홍성군, 청양군, 서천군, 부여군	041)930-6200
	서산 고용복지+센터	충남 서산시, 태안군	041)661-5600
전 북	전주 고용복지+센터	전북 전주시,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덕진구, 완산구	063)270-9100
	남원 고용복지+센터	전북 남원시, 순창군	063)630-3900
	정읍 고용복지+센터	전북 정읍시	063)530-7500
	익산 고용복지+센터	전북 익산시	063)840-6500
	김제 고용복지+센터	전북 김제시	063)540-8400
	군산 고용복지+센터	전북 군산시	063)450-0600
	부안 고용복지+센터	전북 부안군, 고창군	063)580-0501
전 남	목포 고용복지+센터	전남 목포시, 신안군, 진도군, 무안군, 영암군	061)280-0500
	해남 고용복지+센터	전남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장흥군	061)530-2900

지 역	고용센터명	관 할 지 역	일반전화
전 남	순천고용복지+센터	전남 순천시, 보성군, 고흥군	061)720-9114
	여수고용복지+센터	전남 여수시	061)650-0155
	광양고용복지+센터	전남 광양시	061)798-1900
경 북	포항고용복지+센터	경북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포항시 남구, 북구	054)280-3000
	경주고용복지+센터	경북 경주시	054)778-2500
	구미고용복지+센터	경북 구미시, 칠곡군	054)440-3300
	김천고용복지+센터	경북 김천시	054)429-8900
	영주고용복지+센터	경북 영주시, 봉화군	054)639-1122
	문경고용복지+센터	경북 문경시, 상주시	054)556-8200
	안동고용복지+센터	경북 안동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054)851-8061
경 남	창원고용복지+센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055)239-0900
	마산고용복지+센터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합안군, 의령군, 창녕군	055)259-1500
	김해고용복지+센터	경남 김해시	055)330-6400
	밀양고용복지+센터	경남 밀양시	055)350-2800
	양산고용복지+센터	경남 양산시	055)379-2400
	진주고용복지+센터	경남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055)753-9090
	하동고용복지+센터	경남 하동군, 남해군	055)880-5544
	거창고용복지+센터	경남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055)949-6589
	통영고용복지+센터	경남 통영시, 고성군	055)650-1800
	거제고용복지+센터	경남 거제시	055)730-1919
제 주	제주고용복지+센터	제주시	064)759-2450
		서귀포시	064)710-4438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350

##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서

(앞쪽)

요청인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자택
	직위			휴대전화
	직급 등			전자우편주소
	퇴직일자			주소
취업예정 사실	취업예정기관 명칭			취업예정일
	기관의 규모 (억원)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연간 외형거래액
취업경위	취업예정직위			
	취업후 담당업무			
	취업 후 활동계획 * 본인의 특정한 업무경력과 취업예정업체의 담당 예정 업무와의 관련성 등 구체적으로 작성			
	취업동기 및 경로 * 공모나 추천 등 구체적 경로를 자세히 작성			
	취업예정기관에서 본인을 채용하려는 이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별지 제18호의4서식(취업예정확인서)

### 작성방법

1. 소속·직위·직급 등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직위·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 [예: 서기관, 8등급]
3.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외형거래액을,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 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은 연간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 취업 예정 확인서

취업 예정자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등	
취업예정 사실	취업예정기관 명칭	기관의 규모 (억원)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연간 외형거래액
	취업예정 직위 및 예상연봉액		취업예정일
채용 경위 및 채용 후 역할	채용방법 ※ 공모·추천 등 구체적 경로를 적고, 공모인 경우 홈페이지 등 채용공고문 별첨		
	채용이유		
	채용 후 담당업무		
	역할 및 활용계획		
작성자		연락처(사무실/휴대폰/FAX/E-mail)	

위 신청인이 해당 기관에 취업할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

기관명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 작성방법

1. 소속·직위·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직위·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휴직 등으로 인사관리 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 [예: 서기관, 8등급]
3.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외형거래액을,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 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은 연간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 I.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자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및 직급 등

### II. 취업예정기관 및 직위 등

취업예정기관 명칭	취업예정직위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및 외형거래액	취업예정일
주요 사업 내용 ※ 구체적으로 파악 작성	담당예정업무 ※ 구체적으로 파악 작성

### III. 검토 사항

1. 취업심사대상자인지 여부
2. 취업제한기관 해당 여부
3.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 등  
(업무분장규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파악)

근무기간	직위	직급 등	부서명 (기관명)	주요업무	비고

4.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구체적으로 작성)
  - 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나.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다.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라.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마.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바.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사. 취업예정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아. 그 밖의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5. 해당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위 제4호 각 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등·회계법인·세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여부
  6. 해당자가 취업예정기관에 취업되었을 경우 퇴직 전 소속기관·단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여부
  7.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퇴직 사유, 공무원 연금 수급여부 등)

#### IV. 종합 검토 의견

#### 작성방법

1. 소속·직위·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직위·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 [예: 서기관, 8등급]
3.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및 외형거래액 작성방법
  -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외형거래액을,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 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은 연간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 취업승인 신청서

(앞쪽)

신청인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 처	자택
	직위			휴대전화
	직급 등			전자우편주소
	퇴직일자			주소
취업예정사실	취업예정기관 명칭			취업예정일
	기관의 규모 (억원)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연간 외형거래액
취업경위	취업예정직위			
	취업후 담당업무			
	취업 후 활동계획 * 본인의 특정한 업무경력과 취업예정업체의 담당예정업무와의 관련성 등 구체적으로 작성			
	취업동기 및 경로 * 공모나 추천 등 구체적 경로를 자세히 작성			
취업승인 신청사유 및 근거	취업예정기관에서 본인을 채용하려는 이유			
	근거	사유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각 호 중 해당 호를 기재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별지 제18호의4서식(취업 예정 확인서)을 함께 첨부하십시오.
------	------------------------------------

### 작성방법

1. 소속·직위·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직위·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휴직 등으로 인사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3.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외형거래액을,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 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은 연간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 업무내역서(년차)

제출구분	퇴직일 기준 1년차	~	퇴직일 기준 2년차	~
------	------------	---	------------	---

제출인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퇴직 전 소속	퇴직 전 직위
	퇴직일	퇴직 전 직급 등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취업기관 현황	기관명	취업직위	
	취업일	기관규모 (억원)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외형거래액
	주요 사업내용		
	담당업무 (담당부서 전화번호 : )		

업무 활동 내역	월별	주요 업무활동내역
		※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

취업기관 장의 확인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인의 업무활동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취업기관장	(서명 또는 인)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에 따라 업무내역서를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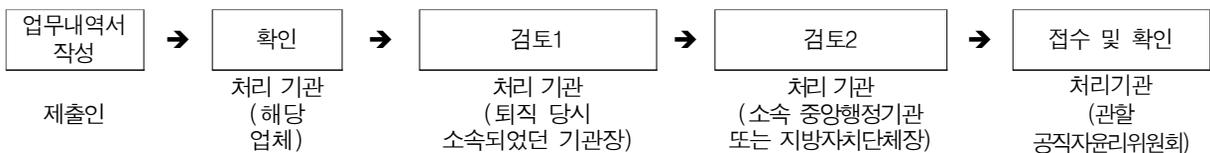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제출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증명서류(첨부할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업무 처리절차



## 향군 참전/친목단체 연락처

2021.10.31. 현재

계	계급별	군 별	임관별	병과별	부대별	참전별	기 타
63	6	3	16	16	7	13	2
회 명		연 락 처 (사 무 실)					
		주 소			전 화 번 호		
계 급 별 (6)	성 우 회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5층 (대한성서공회빌딩)			02) 417 - 5415 (F) 417 - 5448		
	불 암 회	강남구 논현로 507 성지하이츠 3차 1715호			02) 557 - 6445 (F) 3453 - 6443		
	대한민국예비역 영관장교연합회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6층 (대한성서공회빌딩)			02) 415 - 3715 ~6 (F) 415 - 3717		
	6·25 참전 80동우연합회	인천시 남구 경원대로 896, 향군회관 304호			032) 423-3715 (F) 032) 423-3716		
	예비역대령 연합회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6층 (대한성서공회빌딩)			02) 6342 - 0067 (F) 02) 6342-0068		
	대한민국부사관 총연합회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5층 (대한성서공회빌딩)			02) 928 - 1223 (F) 928 - 1226		
군 별 (3)	해병대전우회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70 C동 3층 가열3호			02) 417 - 0928 (F) 417 - 0953		
	대한민국 공군전우회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92(대방동)			02) 825 - 8461 ~2 (F) 825 - 8460		
	대한민국 해군동지회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나길 20 해군 복지마트 203호			02) 849- 6896 02) 810 - 3088 (F) 849 - 6862		
임 관 출 신 별 (15)	육사총동창회	노원구 화랑로 564 육사화랑회관 2층			02) 971 - 3064 (F) 972 - 3064		
	해사총동창회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나길 20(2층)			02) 810 - 3087 02) 847 - 6211 (F) 847 - 6210		
	공사총동창회	동작구 여의대방로36길 92 공군항공안전단 태성관 3층			02) 823 - 1091 (F) 823 - 1092		
	국군간호사관 학교총동문회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6층 (대한성서공회빌딩)			02) 2205-1017 (F) 070-8871- 1017		
	ROTC중앙회	서초구 사평대로 98 (반포동, ROTC회관 6층)			02) 552 - 1961 ~3 (F) 784 - 7260		

회 명		연 락 처 (사 무 실)	
		주 소	전 화 번 호
임 관 출 신 별 (16)	3 사 총 동 문 회	서울 양천구 중앙로 312 (진주빌딩 4층)	02) 534 - 6334 (F) 534 - 6377
	학 사 장 교 총 동 문 회 ( 맥 회 )	서울 강동구 성내로 6길33 4층 (성내동, 성광빌딩)	02) 6095 - 5141 (F) 6095 - 5142
	기술행정사관총동문회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5층 (대한성서공회빌딩)	02) 468-0169 (F) 02) 468-0234
	간 부 사 관 총 동 문 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27가길9, 4층(이태원동)	
	호 국 군 사 관 학 교 총 동 창 회	서초구 잠원로3길 20(잠원동) 중앙하이츠B동 701호	02) 537 - 0059
	전 시 사 관 학 교 전 우 회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5층 (대한성서공회빌딩)	02) 424 - 4353 ~ 4 (F) 424 - 4354
	갑 종 장 교 전 우 회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5층 (대한성서공회빌딩)	02) 416 - 5305 ~ 6 (F) 416 - 5306
	육 군 예 비 사 관 총 동 문 회	용산구 청파로 353(서계동) 동일곡산 3층	02) 418 - 9521 (F) 418-9533
	재 향 여 군 연 합 회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6층 (대한성서공회빌딩)	02) 417 - 5205 (F) 499 - 5205
	무 술 지 도 사 범 전 역 군 인 회	노원구 석계로 5길 37-6(월계동) 태광빌라 바동 101호	02) 913 - 5248 ~ 9 (F) 913 - 5250
( 사 ) 해 군 O C S 장 교 중 앙 회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51길 8, 1층	02) 798 - 1900 (F) 02) 798 - 1919	
병 과 별 (16)	대 한 민 국 포 병 전 우 회	송파구 가락로 40길 3-3 창운기업 3층	02) 412-7301 070-7124-2355 ~ 6 (F) 412 - 7302
	기 갑 장 교 전 우 회	경북 경산시 삼성현로 91길 45, 103동 901호 (화성파크드림)	
	공 병 전 우 회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84길 22-15 B-1호	031) 752 - 8708 (F) 031) 758 - 8730
	병 기 동 우 회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32 903호	02) 545 - 5102 (F) 02) 545-5102
	수 송 동 우 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9-15, 4층 (이주빌딩)	02) 2281-9527 (F) 02) 2294-2800
	화 우 회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쟁기념관 4층 430-1호(국제안보교류협회)	02) 406-3740 (F) 02) 409-9791
	대 한민국헌병전우회	강남구 테헤란로 313(역삼동) 성지하이츠빌딩 1009호	02) 552 - 3278 ~ 9 (F) 561 - 8947
인 사 병 과 동 우 회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11 202동 C-1303호 (파크하비오프르지오)		

회 명		연 락 처 (사 무 실)	
		주 소	전 화 번 호
(16)	정 훈 동 우 회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국방홍보원	
	재 정 동 우 회	용산구 이태원로 169 히트타운 402호	
	의 우 회	중랑구 신내로 21길 16 신내대림(아) 504-1101	02) 3421-3314
	육 군 항 공 협 회	경기 하남시 검단로 19번길 23 보훈회관 2층	070-4863-8902 (F) 031) 701 - 3014
	의 정 총 동 우 회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94번길 274 104-1603	031) 287 - 0694
	병 참 동 우 회	송파구 백제고분로 509 대중빌딩 1205호	02) 418-1313 (F) 418 - 4343
	정 보 통 신 장 교 동 우 회	서초구 반포대로 14길 36, 405호	02) 3472 - 7885 (F) 02) 3472-7885
	향 군 합 주 단 회 친 목 회	동작구 흑석2동 한강현대(아) 102-904	02) 814 - 8928
(7)	총 호 안 보 연 합	중구 서소문로 89-10 1층 103호	778 - 4202 (F) 02) 731 - 3691
	대 한 민 국 특 전 동 지 회	광진구 광장동 401-10	02) 448 - 9716 (F) 430 - 9034
	정 보 동 우 회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5층 (대한성서공회빌딩)	02) 6949- 5280 (F) 6949-5281
	J S A 판 문 점 전 우 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0번지 505호 (비전타워21)	
	대 한 민 국 K A T U S A 전 우 회	강서구 양천로 401, B동 904호	02) 3664-0815 (F) 02) 2657-6100
	U D U 예 비 역 중 앙 회	인천시 중구 흥예문로4 (2층)	032) 772-0065 (F) 032) 766 - 0911
	해군UDT/SEAL전우회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643번길 10 1154동 1503호	
(13)	대 한 민 국 6·25 참전유공자회	서울 강동구 천중로 206 호국영웅보훈회관 3층	02) 419 - 3851 (F) 419-3852
	대 한 민 국 학 도 의 용 군 회	경기 고양시 양주시 고암길 306-4, 210동 1701호(주원마을)	070-7600-2188
	한 국 유 격 군 전 우 회 총 연 합 회	종로구 비봉길 64(구기동 139) 통일회관 117호	02) 391 - 8240 (F) 396 - 8829

회 명		연 락 처(사 무 실)	
		주 소	전 화 번 호
(13)	백 골 전 우 회	금천구 시흥대로 97 시흥유통상가 19동 231호	02) 2103-0115
	호 립 안 보 협 의 회	종로구 종로 17길 45 경동빌딩 601호	02) 762 - 9298 (F) 743 - 9298
	대 한 호 국 무 공 훈 장 자 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일로 29번길 7 4층	031) 521-0625 (F) 031) 521-0625
	육군본부직할 결사대 전 우 회	마포구 잔다리로 77 (서교동, 대창빌딩 6층 601호)	02) 325-4896 (F) 02) 338-1153
	백 마 고 지 참 전 전 우 회	동대문구 약령 중앙로 13-1	02) 432 - 6630 (F) 960 - 2978
	다 부 동 전 투 구 국 용 사 회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19 라길 4, 1501호	02) 962-9904 (F) 963-9904
	영 도 유 격 부 대 전 우 회	경기도 구리시 아치울길3번길 15, 201호 (아천동)	02) 585- 9707 (F) 02) 6455-3163
	강 화 청 소 년 유 격 동 지 회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409번길 3, 4층 (강화읍,황소곱창)	032) 933 - 6254
	대 한 민 국 월 남 전 참 전 자 회	서울 강서구 강서로 56가길 45 호국보훈회관 4층 (등촌동)	02) 412 - 7445 ~ 6 (F) 02) 412 - 7462
	해 병 해 외 참 전 전 우 회	성북구 길음로 119 길음뉴타운 207동 303호	02) 916 - 6023 (F) 02) 916-6023
기타 (2)	기 동 봉 사 단 친 목 회	서울 은평구 진관1로 21-10 122동 304호 (진관동, 은평뉴타운 박석고개)	02) 463-3840
	재 향 호 국 전 우 회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6층 (대한성서공회빌딩)	02) 413-6250 (F) 02) 413-6257

## 재향군인회 연락처

시·도회명	주 소	전 화 번 호
분 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대한성서공회빌딩)	02) 417-0641~5
서 울 시 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9(인의동)	02) 763-9251~5
부 산 시 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60번길 3-2	051) 625-2111
대 구 시 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491	053) 521-4541~2
인 천 시 회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896(향군회관 5층)	032) 441-2651~3
경 기 도 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19번길 46-21 향군회관	031) 233-9790
강 원 도 회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249(효자동)	033) 244-2921~3
충 북 도 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189(운천동)	043) 266-3881~2
대전·충남도회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70(부사동)	042) 252-9659
전 북 도 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41	063) 284-4305
광주·전남도회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291(우산동)	062) 524-0002~3
경 북 도 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307 (장성동 향군회관 2층)	054) 251-4353~4
경남·울산시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17번길 34	055) 288-9090~2
제 주 도 회	제주도 제주시 신대로 166(연동)	064) 747-4605~7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신설 2014.1.17.>

## 제대군인(자녀) 입학금·수업료 및 기성회비 지급청구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학교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보조사업의 목적	장기복무 제대군인(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보조사업의 내용	장기복무 제대군인(자녀)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보조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필요한 경비 총액	지급받으려는 보조액	자기자본의 부담액
보조금 송금 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3항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대군인(자녀)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학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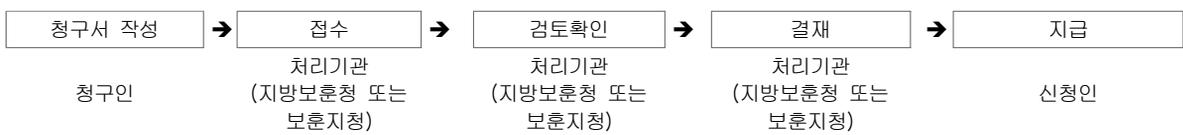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제대군인(자녀)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보조대상자 명단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처 리 절 차



확 인

	연월일	번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접 수	. . . . .		결 재				





##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연 금 수 급 자	성명	생년월일	연금증서번호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 예 [ ] 아니요
	주소		e-mail
신 청 내 용	사유 [ ] 퇴직(폐업) [ ] 소득변동		소득 종류 [ ] 근로소득 [ ] 사업소득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변동일(퇴직일·폐업일)		변동 소득금액
	세부 사항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금지급정지액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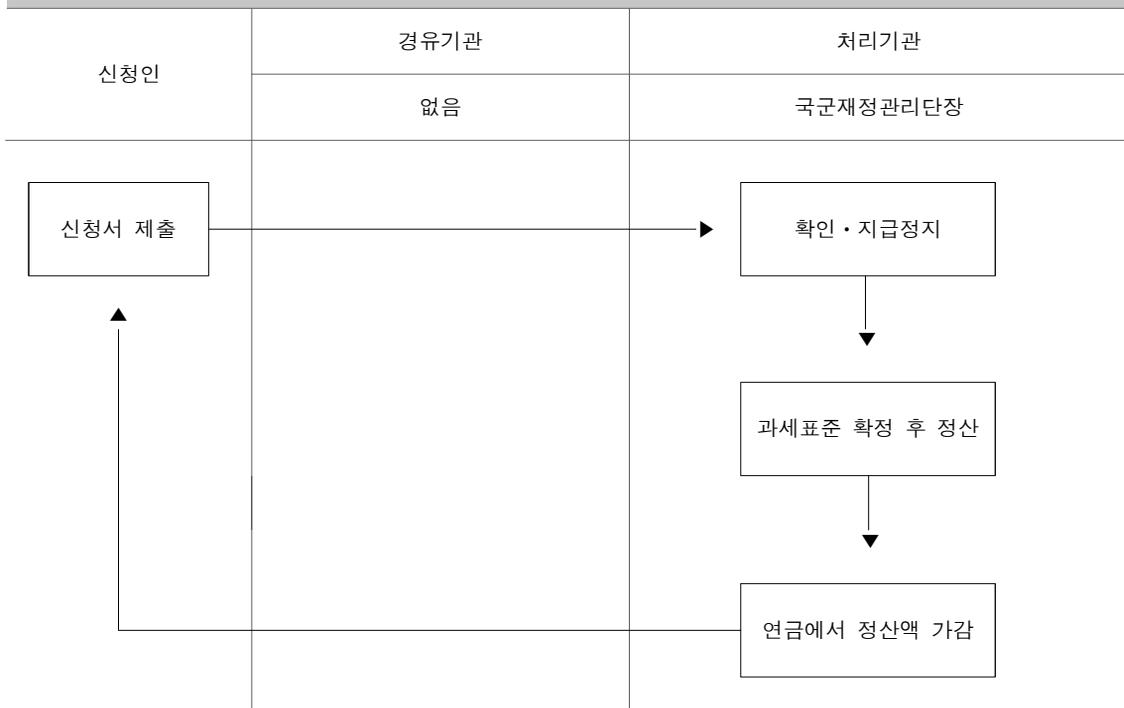
**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

첨부서류	1. 조정을 받으려는 기간 동안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 등 해당 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봉계약서 사본 등 해당 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퇴직 또는 폐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사업소득의 경우: 폐업사실 증명원, 휴업사실 증명원 등 폐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근로소득의 경우: 퇴직(경력) 증명서, 인사발령문 등 퇴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 작성방법

1. 연금수급자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2. 신청내용의 변동일란에는 퇴직 또는 폐업을 한 날 등 소득이 변동된 날짜를 적으십시오.
3. 신청내용의 변동 소득금액란에는 당초 소득액에서 변동된 소득액을 적으십시오.  
※ 과세표준 확정 후 실제 소득과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연금지급정지액을 다시 산정하여 정산합니다.
4. 신청내용의 세부 사항란은 변경 사유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 연금수급자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자택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

### 처리절차



붙임 #22(본문 220쪽)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6.16.>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전자우편주소(e-mail)		

가 입 내 용	연 금 종 류	가 입·재 직(복 무) 기 간				퇴 직 급 여 등 수 령 여 부
		국민연금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공무원연금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 ] 수 령 [ ] 미수령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 ] 수 령 [ ] 미수령	
	군인연금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 ] 수 령 [ ] 미수령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 ] 수 령 [ ] 미수령	

※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으신 분은 아래의 반납금 납부란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납금 납부	퇴직급여 등 지급기관	
	국민연금가입자 자격 취득일	
	반납금 납부방법	[ ] 일시 납부                      [ ] 분할 납부( 회)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	관계
	주소		
	신청인 확인	기관장 확인	

(인)

(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 리 인)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국군재정관리단장/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23(본문 221쪽)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6.16.>

## 연계노령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e-mail)					
	사망자와의 관계	동 순 위 수급권자	[ ] 단 독 [ ] 동순위자(   명)	대 표 자 선정여부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		계좌번호			
사 망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자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장애표시	
	①		-			
	②		-			
	③		-			
동 순 위 수급권자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선정		※장애표시
				선정일	날 인	
	①		-			
	②		-			
급 여 액 조정사항	업무상 재해 여부	[ ] 대 상 [ ] 비대상	재해보상금 수령 여부	[ ] 수 령 [ ] 미 수 령		
	제3자 가해 여부	[ ] 있 음 [ ] 없 음	손해배상금 수령 여부	[ ] 수 령 [ ] 미 수 령		
※ 급여 선택	발생급여 ①	②	③	선택급여		
	(발생일)	( / / )	( / / )	(발생일)	(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청구인과의 관계		
	주소					
	청구인 확인			(인)	기관장 확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연계노령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6.16.>

## 연계퇴직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e-mail)			
	사망자와의 관계	동 순 위 수급권자	[ ] 단 독 [ ] 동순위자(   명)	대 표 자 선정여부
				[ ] 선 정 [ ] 미선정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			계좌번호	

사 망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일
-------	-----	--------	---	-----

동 순 위 수급권자	번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대표자 선정		※장애여부
				선정일	날 인	
	①		-			
	②					
	③					
	④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청구인과의 관계
	청구인 확인 (인)		기관장 확인 (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국군재정관리단장/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도움을 주신 분들 ♣

### ○ 국방부

복지정책과, 보건정책과, 군인재해보상과, 군인연금과, 인사기획관리과, 예비전력과, 병영정책과, 군무원정책과, 교육훈련정책과, 운영지원과, 직무감찰담당관, 국군복지단, 국군재정관리단, 국군출판지원단 등

### ○ 각 군

전직지원, 일자리, 복지, 인사 관련 부서 등

### ○ 유관 부처 및 기관

국가보훈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군인공제회, 예비역단체 등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편 집 위 원 ]

국방부 일자리정책과	과 장	김 영 배	사무관	추 원 식
	중 령	이 범 재	사무관	백 선 경
	주무관	이 은 경	사무관	박 수 현
	주무관	정 옥 연	주무관	박 영 임
	주무관	정 진 진		
각 군	육군 사무관	이 중 우	해군 대위	손 혜 립
	공군 상사	구 자 현	해병대 소령	신 명 재
국방진직교육원	기획조정 실장	정 상 원	일자리지원 부장	윤 희 철
	교육운영 부장	한 수 련		